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9호 2020. 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홍지혁 ▣ 우하량 유적을 통해 본 홍산문화의 제사체계 형성과 변화 7
- 배현준 ▣ 요서지역 전국 연문화의 전개와 그 배경
-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65
- 김영길 ▣ 발해 마구 연구 117
- 최은진 ▣ 1920~1930년대 초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과정 155
- 김민철 ▣ 호주군의 재판자료로 본 조선인 BC급 전범 203
- 박종상 ▣ 6·25전쟁 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재검토 243
- 양시은 ▣ 문화정책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 283

서평

- 계승범 ▣ 1637년 청나라의 조선 정복 전쟁
-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까치, 2019)에 대한 서평 329
-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43

Contents

Artic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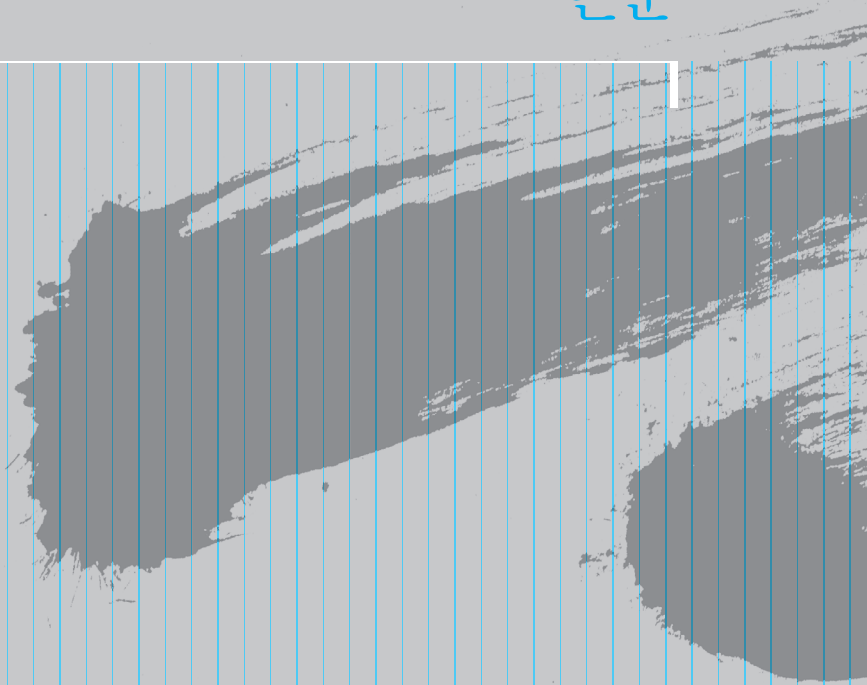
- Hong Jihyeog ■ Formation and Change of Ritual System in Niuheliang Site, Hongshan Culture, Chifeng, China 7
- Bae Hyunjoon ■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Yan-Culture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Liaoxi through the Excavated Artifacts 65
- Kim Younggil ■ A Study on the Horse Trappings of Balhae 117
- Choi Eunjin ■ A Process of Tenant Farming Legisla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20s~Early 1930s 155
- Kim Minchul ■ Korean BC-class War Criminals Viewed from the Court Data of the Australian Army 203
- Park Jongsang ■ Review of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during the Korean War 243
- Yang Sieun ■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Museums in Northeast China according to Cultural Policy 283

Book Review

- Kye Seung B. ■ The Qing's War with Joseon in 1637 329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하량 유적을 통해 본 홍산문화의 제사체계 형성과 변화

홍지혁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연구보조원

- I. 머리말
- II. 우하량 유적 연구 대상 자료
- III. 우하량 유적 제사의 변천
- IV. 맺음말



I. 머리말

홍산문화는 기원전 4500~3000년경 중국 동북지방에서 등장한 문화이다. 홍산문화는 주로 내몽골 동부와 요서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했다. 동북지역 내 이전 문화들과의 차이점은 이 시기에 처음으로 제사유적이 발견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제사유적에서는 적석총, 제단 등 취락유적에서 볼 수 없는 규모의 유구와 채도, 옥기, 인물/동물상 등 취락유적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유물이 확인되었다.

1970년대, 쑤빙치(蘇秉琦, 1906~1997)는 중국 문명의 다원적 기원설을 주장하는 ‘구계유형론(區系類型論)’을 주장했다.¹ 동산취 유적이 발견된 후, 연구자들은 홍산문화 제사유적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중국 문명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가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은 홍산문화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쑤빙치는 중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동산취 유적 발견 이후, 홍산문화 유적에 대한 발굴은 더욱 활발해졌고, 1981년 우하량 유적 등 ‘문명’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있는 제사유적들이 발견되면서 홍산문화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다.

우하량 유적은 많은 중국 내 연구들에서 홍산문화를 문명으로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곳이다. 이는 우하량 유적이 홍산문화의 가장 규모가 크고 제사 유구와 유물이 가장 많은 제사유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홍산문화와 우하량 유적에 관한 연구는 제사 자체보다는 우하량 유적

* 투고: 2020년 4월 13일, 심사 완료: 2020년 5월 15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14일

** 이 글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요약,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1 강인옥,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56, 8~10쪽.

을 통해서 ‘홍산문화를 문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홍산문화의 주체가 어떤 민족인지’ 등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고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물질문화 분석을 기반으로 과거 정신문화를 복원하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제사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²

제사에 관한 연구는 제사의 틀 내에서 혹은 제사의 틀을 넘어 제사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으로 이어져야 한다.³ 그리고 제사는 집단을 통합하고 동시에 차별성을 부여하기 때문에,⁴ 제사가 사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우하량 유적을 대상으로 하여 홍산문화 제사 자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하량 유적에 대한 유구 및 유물의 분석과 문화사적 편년을 통해 이들의 변화와 제사체계의 변화를 연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를 받아들여 기존의 편년 및 형식분류가 제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형식분류 체계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제사와 제사체계의 변화에 대한 초보적인 고찰이며, 이를 시작으로 홍산문화 사회에서 제사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등 제사 중심의 홍산문화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 2 강인욱, 2018, 「유라시아 제사 고고학과 한반도」, 국립전주박물관 편, 『북방유라시아 제사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주류성, 13~15쪽.
 - 3 E. Swenson, 2015, “The Archaeology of Ritual”,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4, pp. 330~331.
 - 4 C. Bell, 1997, *Ritual-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73~177; C. Bell, 2009,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118~124; H. Whitehose, and I. Hodder, 2010, “Modes of religiosity at Çatalhöyük”, In I. Hodder (ed.), *Religion in the Emergence of Civilization: Çatalhöyük as a Case Stud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23~127.

1. 연구사(중국과 한국의 연구를 중심으로)

홍산문화는 일본인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서 1906년 처음 알려졌다. 그는 내몽골 동남부의 임서현과 적봉현에 대한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석기 유적과 적석총 등을 발견했다. 이 유적을 발견한 지역이 홍산(紅山)의 뒤쪽이었기 때문에 홍산후 유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일제가 식민지화한 지역을 군부의 도움을 받아 조사했는데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도 그 일환이었다.⁵ 일본은 중국 동북지역, 한반도 등으로의 영역 확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고 도리이 류조의 연구는 국가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목적을 만족시켰다.

1930~1940년대에는 만주국의 주도 아래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1930년대에 적봉 홍산후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간행했다.⁶ 이후, 만주국에서는 「考古事上より見たる熱河」를 통해 홍산문화에 대해 정리했으며 적석총, 채색토기, 부장 석기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⁷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주도 아래에서 고고학 발굴이 이루어졌다. 귀모뤄(郭沫若, 1892~1978)의 주도 아래 마르크스주의를 고고학 해석과 이론으로 삼았고 이를 발굴에 적용하고자 했다.⁸ 하지만 실제 발굴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학과 문화사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양소

5 강인욱, 2010, 「鳥居龍藏으로 본 일제강점기 한국 선사시대에 대한 이해」,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506~511쪽; 귀다순·장성덕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269쪽;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 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 기원론-‘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문화연구』 29, 565쪽.

6 東亞考古學會, 1938, 『赤峯紅山後-滿洲國熱河省赤峯紅山後先史遺蹟』.

7 滿洲帝國民生部, 1942, 『滿洲國古蹟古物調査報告』, 滿洲國國務院文教部.

8 안신원, 2017, 「중국의 문명과 국가기원론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고고학과 역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52, 10~12쪽.

문화 단일 기원설이 주류를 이루었고⁹ 이에 따라 당시 중국 문명의 기원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중국 동북지역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한편, 적봉 제1기 문화라는 명칭으로 불렸던 홍산문화가 1954년 인다(尹達, 1906~1983)에 의해 홍산문화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¹⁰

1956년 귀모뤄가 고대사보다 현대의 문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후금박고(厚今薄古)’를 주장하면서 고고학 연구는 그 활력을 잃었다.¹¹ 그리고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 고고학 발굴은 중단되었다.¹²

197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고고학 발굴이 재개되었다. 이 시기부터 중국에서는 기존의 중원 중심의 문화발전체계에서 벗어나 다원론적인 문화발전체계를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전역의 신석기 유적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졌다.¹³ 그 대표적인 학자로는 쑤빙치가 있다. 쑤빙치는 ‘구계유형론’을 주장했다.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했고 이들 문명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중화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이 ‘구계유형론’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 고고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발굴을 진행하고 문화사고 고학적 방법과 형식학을 통한 편년틀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¹⁴ 하지만 이 시기에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발굴은 여전히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동북지역에서 ‘중국 문명의 기원’을 보여줄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산문화가 중국 문명의 기원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은 동산취 유적이 발견되면서였다. 동산취 유적에서는 임신한 여신상과 이 여인상과 관련된 제사유

9 L. Liu, 2017, “A History of Chinese Archaeology”, In J. Habu et al.(eds.), *Handbook of East and Southeast Asian Archaeology*, New York: Springer Nature, p. 46.

10 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우하량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6, 8~9쪽.

11 강인욱, 2005, 앞의 글, 13~16쪽.

12 L. Liu, 2017, 앞의 글, 47쪽.

13 L. Liu, 2017, 위의 글, 48쪽.

14 강인욱, 2005, 앞의 글, 8~10쪽.

적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여인상이 제사 유구와 함께 발견된 것을 들어 일종의 여신문화가 존재했음을 주장했다.¹⁵ 그리고 부장 옥기는 형태와 공예기법에서 상주시대의 것과 달랐는데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이 옥기를 홍산문화의 것으로 추정했다.¹⁶ 연구자들은 동산취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홍산문화가 중국 문명의 기원임을 보여주는 다른 유적을 찾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조사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된 조사 결과 동산취 유적보다 훨씬 규모가 큰 제사유적군인 우하량 유적이 1981년에 발견되었다. 우하량 유적은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으며 적석총이 확인되었다.¹⁷ 적석총에서는 옥기가 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단과 여신묘(女神廟)가 함께 발견되었다. 쑤빙치는 1982년 홍산문화 만기(晩期)에서 말기(末期) 시기의 “단묘총(壇廟塚)” 유적을 근거로 “중화 5천 년 문명의 서광”이라는 견해를 최초로 제기했다. 이후 1990년대에 쑤빙치는 중국 고대국가 형성이 고국(古國)-방국(方國)-제국(帝國)의 단계를 거쳤다는 3단계설(三部曲)을 주장했으며 국가 형성의 세 가지 모델로 원생형(原生型), 속생형(續生型) 및 차생형(次生型)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홍산문화는 원생형 고국의 대표적 사례였다.¹⁸ 이들은 제사를 통해 문명 단계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중국 동북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했다.¹⁹

우하량 유적 발견 이후, 중국 내에서 홍산문화에 대한 관심은 커졌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체로 홍산문화의 제사에 대

15 座談東山嘴遺址, 1984, 『座談東山嘴遺址』, 『文物』 11, 12~21쪽.

16 座談東山嘴遺址, 1984, 위의 글, 12~21쪽; 귀다순·장성터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57~363쪽.

17 귀다순·장성터 저, 김정열 역, 2008, 위의 책, 370~371쪽.

18 귀다순·장성터 저, 김정열 역, 2008, 위의 책, 365~370쪽; 린원 저, 정재남 역, 2016, 「중국 고고학에서 “古國” “方國” “王國”의 이론과 방법문제」, 『동아시아고대학』 42, 296~309쪽.

19 홍은경, 2018, 「중국 요서지역의 신석기 제례」, 『북방유라시아 제사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주류성, 208쪽.

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홍산문화 연구의 목적이 제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수단으로 하여 홍산문화 내 문명의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국내학계에서도 많은 홍산문화 및 우하량 유적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정열, 오대양, 홍은경, 김재운, 원중호, 이청규·우명하 등이 이전에 홍산문화를 연구한 학자들이다.²⁰

우선, 김정열은 홍산문화 제사유적에서 발견된 대형 적석총, 여신묘, 제단 등의 제사 유구와 옥기 등의 유물을 바탕으로 홍산문화를 문명 및 국가 단계로 정의하는 중국학계의 시각을 비판했다. 오대양은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홍룡와문화 단계부터 홍산문화 단계까지 이어지는 적석총문화의 지속성에 주목했다. 시기 변화에 따른 부장품의 이질적 요소는 동일 문화권 내 사람들의 관념체계 변화로 이해했다. 한편, 묘실 위치와 무덤 입지 등을 근거로 요동지역 적석총과의 연속성은 부정했다. 홍은경은 문명의 조건으로 넓은 영역, 중앙집권적 경제체제, 이에 따른 장거리 교역과 분업, 공예 전문화를 제시했다. 홍은경은 홍산문화를 문명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취락이 증가하고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생계방식의 다양화와 사회계층화, 전문화가 이루어진 족장 사회로 보았다.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 지(之)자문토기의 시간성과 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이청규와 우명하는 우하량 유적 적석총 내 옥기부장묘에 대해 연구했다. 이

20 김정열, 2014, 앞의 글, 5~54쪽; 오대양, 2014,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5, 199~258쪽; 홍은경, 2016a, 「遼河文明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2, 187~212쪽; 홍은경, 2016b, 「지자문(之字紋)토기 연구」, 『인문학연구』 31, 7~40쪽; 김정열, 2017,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215~250쪽; 김재운, 2019, 「홍산문화 편년에 대한 검토-‘압인-자문토기’를 중심으로」, 『고고학』 18-2, 69~90쪽; 원중호, 2019, 「中國 遼寧省 牛河梁 積石塚 變遷過程 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대양, 2020, 「요서와 요동지역 적석총문화의 상관성 검토」, 『동북아고대역사』 2020-2, 79~122쪽; 이청규·우명하, 2020,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107, 5~37쪽.

들은 우하량 적석층 내 무덤에 대해 새로운 형식분류 체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간 변화에 따라 부장된 옥기 숫자와 무덤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과 유아의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부장된 옥기와 무덤의 크기가 사회적 위계화의 결과임을 부정했다. 피장자의 경우, 처음에는 남성 위주였다가 점차 남성과 여성이 비슷해짐을 지적했는데 이청규와 우명하는 우하량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집단이 확대된 결과로 보았다. 원중호도 이청규, 우명하와 마찬가지로 우하량 적석층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여 적석층 간의 위계관계를 부정했다. 김재운은 중국학계의 채색토기와 유적의 절대연대 중심의 편년을 비판하고 압인지(之)자문토기를 중심으로 한 홍산문화 편년체계를 제시했다. 김재운은 시문방법, 시문도구, 문양형태, 기형을 분류기준으로 삼았고 총 5시기로 나누었다. 그녀에 따르면, 우하량 유적은 5기에 해당하며 이전 시기와 토기 기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 학계의 연구는 ‘중화민족’ 혹은 ‘한민족’의 기원의 근거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고학 문화로서 홍산문화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 역시 홍산문화 제사 자체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가 일부 유물 및 유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홍산문화 제사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홍산문화 유물과 유구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홍산문화 연구는 선행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및 이 연구의 방법론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존의 연구는 제사유적이 홍산문화 사회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홍산문화 취락 내에서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유적만 가지고 국가를 이야기하는 데 치중했다.

이는 홍산문화가 ‘중화 민족의 뿌리 찾기’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²¹ 그리고

이러한 시각에 대한 비판 또한 특정 유물 혹은 유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글자, 성터, 대형 취락 등이 부재하고 취락 내에서 계급 분화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체계에 대한 연구는 홍산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²² 특히, 제사유적을 고대문명과 국가의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제사가 어떻게 문명과 국가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명과 국가 형성에서 제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쉬자오핑(徐昭峰)과 위하이밍(于海明)은 우하량 유적을 일종의 대형 센터로 간주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킴으로써 홍산문화 전체 집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연구는 중국 내에서 거의 없고, 쉬자오핑과 위하이밍의 연구 역시 ‘홍산문화=문명’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²³

이 연구에서는 홍산문화의 제사체계를 밝히기 위해 우하량 유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하량 유적을 선택한 이유는 우하량 유적이 지금까지 발견된 홍산문화 제사유적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제사 유구 또한 제사체계 분석에 가장 용이한 유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산문화 유적 보고서 중 가장 자세하게 유적의 특성을 기재한 것이 우하량 유적 보고서였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제사 유구, 옥기, 토기로 선정했다. 이들이 제사체계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유물들로 제사체계와 가장 관련이 깊은 물질문화이기 때문이다. 제

21 강인욱, 2017, 「영혼과 나비-홍산문화 출토 나비형 옥기로 본 고대인의 생사관에 대한 접근」,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발간 30주년 기념 학회』, 2쪽.

22 물론, 제사유적과 무덤은 살아 있는 사회를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덤을 만드는 주체는 살아 있는 사람이고 따라서 무덤과 제사유적을 만든 사람의 생사관이 반영되어 있다. 강인욱, 2017, 앞의 글, 8~9쪽.

23 徐昭峰·于海明, 2017, 「牛河梁遺址與紅山文化祭祖權的壟斷」, 『遼寧師範大學學報』 40-1, 39~45쪽.

사 유구와 옥기는 제사체계의 변천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이다. 토기, 그중에서도 채도는 제사체계의 변천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의 대상들에 비해 덜 중요하지만, 편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토기의 편년을 중심으로 그 토기가 출토되는 유구와 토기와 함께 공반하는 옥기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제사 유구와 옥기에 대한 분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제사체계의 변천 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옥기의 경우 제작공정에 따라 형식분류를 진행한 후 각 무덤에서 출토되는 옥기 양상을 옥기 제작공정을 중심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옥기 제작공정의 변화가 옥기의 형태 변화로 이어졌고 옥기의 형태 변화가 궁극적으로 제사체계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사 유구+토기+옥기에 대한 문화사적 분석을 통해 제사 유구 및 유물의 변천 과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홍산문화 제사체계의 형성, 발전, 소멸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국 동북지역에서 홍산문화가 차지하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한다.

II. 우하량 유적 연구 대상 자료

우하량 유적은 요녕성(遼寧省) 조양시 경내의 건평현과 능원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호범위 58.95km², 건설통제지대 23.56km²이다. 위도는 위도는 N 41°16'15", E 119°27'9"이다.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요령과 하북, 내몽골의 세성 사이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다.²⁴ 현재까지 총 16개 지점이 보고되었으며 총 40여 개 지점이 확인되었다.

우하량 유적은 여러 기존 연구에 의하면 홍산문화 후기 혹은 최말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1981년 발견 이래로 여신묘, 제단, 적석층 등이 확인되었다. 또

24 朝陽市牛河梁遺址管理處, 2014, 『牛河梁國家考古遺址公園』, 朝陽: 朝陽市牛河梁遺址管理處, 6쪽.

한 이러한 유구 안에서는 제사용 채도와 옥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서 취락유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홍산문화 무덤유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²⁵

보고서²⁶에 따르면, 우하량 유적은 크게 하층유존 시기, 하층적석층 시기, 상층적석층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상층적석층 시기의 경우, 제2지점 1호층에 대한 탄소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3779~3517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고서의 시기 구분을 따르고자 한다. 그 근거로 우하량 유적 제5지점의 층위관계를 주목하고자 한다. 제5지점은 지금까지 발굴한 홍산문화 지점 중에 유일하게 세 시기 모두에서 점유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층위의 교란이 심하지 않았으며 층위에 따라 발견되는 유구 또한 달랐다.

아래에서는 분석 대상인 유구와 유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사유적에서 발견되는 물질문화들은 당시에 이루어진 제사의 구성요소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시간 흐름에 따라 제사유적 내 물질문화가 변화하는 것은 곧 제사와 제사체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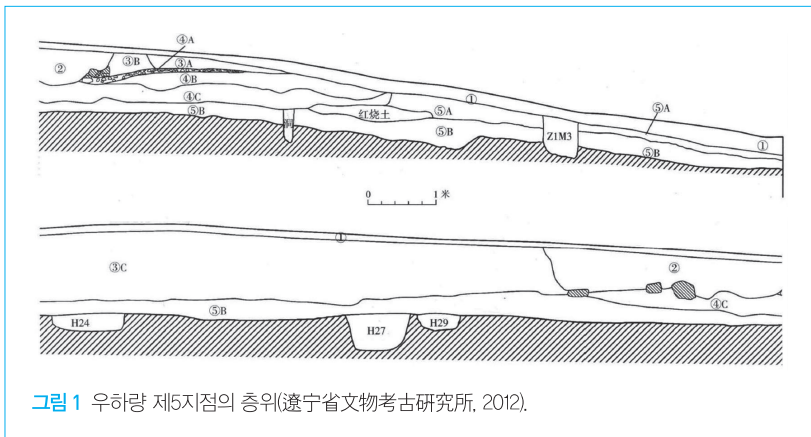


그림 1 우하량 제5지점의 층위(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5 귀다순·장성터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410~411쪽.

26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北京: 文物出版社.

변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하량 유적의 유구와 유물을 분류하고 검토하는 것은 우하량 제사 유적 내 제사체계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1. 유구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구로는 적석총, 제사갱, 제단 등이 있다. 이들 유적들은 공통적으로 ‘제사’라는 특정 행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적석총은 제사의 대상이 되는 장소이고 제사갱과 제단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로 추정된다.²⁷

1) 적석총

적석총은 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을 말하며, 그 내부에 1개 또는 다수의 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적석총과 무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적석총은 돌로 쌓아서 만들었고 내부에 매장 유구가 있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무덤은 적석총 내부에 있는 실제 인골이 매장된 유구로 지칭하고자 한다. 적석총 내 피장자는 제사의 대상으로 아마도 사망 이전에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⁸ 이들은 옥기의 형태에서 상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되고, 옥기 등 생활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유물들이 부장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27 기존의 연구는 적석총을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자 제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귀다순·장성터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78~379쪽; C. E. Peterson, and X. Lu, 2013, “Understanding Hongshan Period Social Dynamics”, In A. P. Underhill(ed.), *A Companion to Chinese Archaeology*, Chichester: Wiley-Blackwell, pp. 88~89). 피터슨(C. E. Peterson)과 루(X. Lu)에 따르면 적석총과 제단은 모두 정상부가 지면에 비교 높게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용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제사의 대상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석총을 높게 쌓았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28 C. E. Peterson, and X. Lu, 2013, 위의 글, p. 88.

적석총은 구릉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로 하나의 구릉에 하나의 적석총이 존재하고 있다.²⁹ 적석총이 만들어진 시기는 크게 하층적석총 시기와 상층적석총 시기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하층적석총 시기에는 작은 적석총 내에 단독으로 무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상층적석총 시기에 이르면 적석총의 크기도 커지고 내부의 무덤도 더욱 늘어나게 된다. 가장 큰 적석총인 제2지점 1호층의 경우 무덤이 총 27기가 확인된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적석총 내부에 석판을 층층이 쌓은 석판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³⁰ 층위별로 확인되는 적석총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상층적석총 시기 적석총 내에서 확인되는 무덤의 형식, 부장품 종류와 수량 차이 등에 대하여 중국의 여러 연구에서는 피장자들 간의 위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³¹ 한국에서는 피장자들 간의 위계 차이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표 1> 층위별 적석총의 속성

	적석총 크기	적석총 내 무덤	부장품 종류	부장 옥기 종류 ³²	무덤 손질 정도	적석총 내 무덤 종류 ³³
하층적석총	큼	대부분 단독	옥기, 토기	적음	적음	석판묘
상층적석총	작음	다수	옥기	많음 (문양새김 공정 옥기 등장)	많음	석판묘, 석판묘

29 예외적으로 제5지점은 하나의 구릉에 2개의 적석총이 있고 제2지점의 경우 하나의 구릉에 5개의 적석총과 1개의 제단이 존재하고 있다. 귀다순·장성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71쪽.

30 석판묘라는 용어는 피터슨과 루의 stone slab graves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하층 적석총 시기에 등장하지 않는 무덤 축조방식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했다. C. E. Peterson, and X. Lu, 2013, 앞의 글, p. 88.

31 귀다순·장성더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74~380쪽; 劉國祥, 201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294~297쪽; 索秀芬·李少兵, 2011, 「紅山文化研究」, 『考古學報』 2011-3, 316~319쪽.



그림 2 우하량 유적 제2지점 4호층 하층적석층 시기의 무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그림 3 우하량 유적 제2지점 2호층 상층적석층 시기의 무덤(필자 촬영)

이를 홍산문화의 부흥 및 쇠퇴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³⁴

32 옥기의 수량은 평균적으로 상층적석층 시기에 더 많지만, 개별 무덤 간에 부장 옥기 수량이 상이하여 속성으로 정의할 수 없다.

33 토광묘는 적석층 외부에 있다.

34 이청규·우명하, 2020, 앞의 글, 23~31쪽; 원중호, 2019, 앞의 글, 318~325쪽.

2) 제단

이 연구에서 제단은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적석층과 명확한 형태 차이가 보이고 내부에 무덤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제2지점 3호 제단의 경우, 상단부에 원형 단상을 세운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제단으로 정의한 석조 구조물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제단의 목적은 적석층에 매장된 조상에 대한 제사로 볼 수 있다. 제단의 형태는 크게 원형과 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실하는 원형 제단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방형 제단은 땅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으나³⁵ 이는 후대에 나온 사상³⁶에 기반한 것으로 홍산문화도 이러한 사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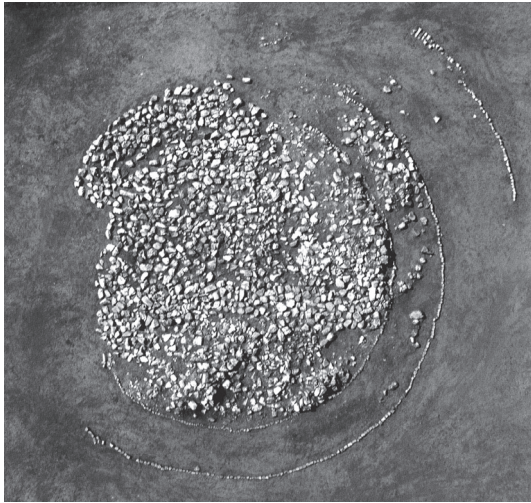


그림 4 우하량 2지점 3호 제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35 우실하, 2018,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 지식산업사, 476~478쪽.

36 우실하에 따르면 선도문화

를 공유했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원형 제단은 제2지점 3호 제단이 있고 방형 제단은 제5지점 3호 제단과 제2지점 5호 제단이 있다.

3) 제사갱

여기에서 제사갱은 별다른 무덤의 시설이 없이 유구 전체의 특징이 제사를 위한 구덩이로 판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 보고서에서는 회갱(灰坑)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도 이 글에서는 제사갱으로 칭하도록 하겠다.

그 증거로는 우선, 적석층이 확인되지 않는 시기의 구덩이에서도 일상생활 용이라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거 공간으로 상정하기에는 구덩이의 크기가 최대 직경 1.5m 정도로 작고, 일상용 구덩이로 상정하기에도 주변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거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사를 추정할 수 있는 니질 채도가 확인된 것도 중요한 증거이다. 니질 채도는 제사유적에서만 확인되는 유물인데 보고서에서 회갱이라고 지칭한 구덩이 내에서 확인된다.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일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 제사갱으로 보고하는 구덩이와 형태, 출토 유물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이다.

제사갱은 하층유존 시기, 하층적석층 시기에 확인되다가 상층적석층 시기에 이르면 거의 사라지고 소수의 제사갱도 제단 내에서 확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제사갱 → 제단으로 변화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다.

제사갱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제사갱 내에서 확인되는 유물이다. 층위별로 확인되는 제사갱을 정리했을 때, 유물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유물의 변화는 제사갱에서 이루어진 제사 행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리고 제사갱 형태의 경우 시간의 흐름, 용도, 위치 등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고 형태의 차이가 용도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류의 속성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유물에 따른 제사갱의 분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제사갱의 분류 속성

	석기 유무	사질토기 유무	동물뼈 유무	채도 유무	확인되는 시기	제사갱의 위치
A식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하층유존 시기	제사갱만 확인
B식	없음	있음	없음	있음	하층적석총 시기	적석총 주변
C식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상층적석총 시기	제단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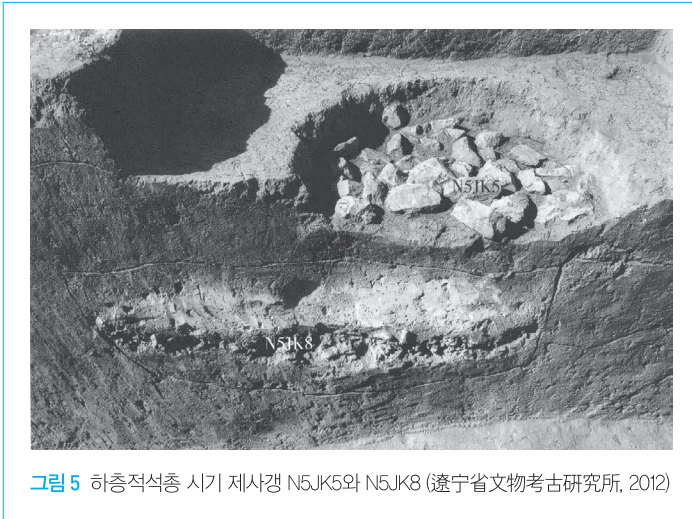


그림 5 하층적석총 시기 제사갱 N5JK5와 N5JK8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 유물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물로는 토기, 옥기, 석기, 토제품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중에서 제사체계 복원에 중요한 유물인 토기와 옥기를 중심으로 서술 하도록 하겠다.

1) 토기

우하량 유적에서 발견되는 토기로는 무저원통형채도, 통형관, 통복관, 절복관,

발, 탑형토기 등이 있다. 우하량 유적의 토기들을 분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속성은 토기 생산에 사용된 점토의 속성이다. 크게 사질과 니질로 나눌 수 있는데 사질인지 니질인지 여부에 따라 토기의 용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³⁷ 물론 사질과 니질의 차이는 다소 자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기형 및 문양을 새기는 방식, 용도 등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측면에서 점토 속성을 기준으로 1차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1) 사질토기

홍산문화에서 사질토기는 취락유적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된다. 사질토기 전통은 홍산문화 이전의 중국 동북지방 문화인 홍룡와 문화 및 조보구 문화에서 확인되는데 이를 계승한 것이다. 우하량 유적의 경우 사질토기가 제사갱 내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동물뼈가 함께 출토되었다. 동물뼈 중 96%가 야생동물로 꿩, 노루, 고라니, 흑곰, 멧돼지 등이 있고 4%의 가축은 개로 판명되었다.³⁸ 따라서 우하량 유적에서 사질토기는 취락유적에서와 달리 제사를 위한 음식을 담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되 그 대상이 동물성 자료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사질토기에는 주로 지(之)자문을 새겼고, 평행사선문, 평행단선문 등도 보인다. 홍산문화 사질토기 문양은 공통적으로 선을 그어서 새긴 문양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압날, 압인, 침선 기법과 대응한다.³⁹ 일부 토기의 구연부 아랫부분에는 단사선문, 압인문, 단사선돌대문 등을 새겼다. 사질 채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저부는 모두 편평한 형태이다. 사질토기의 기종 및 문양 등에 대해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7 劉國祥, 2015, 앞의 글, 491~492쪽.

38 袁靖, 2016, 「新石器時代至先秦時期東北地區的生產初探」, 『南方文物』 2016-3, 178쪽.

39 홍은경, 2016b, 앞의 글, 12쪽.

〈표 3〉 우하량 유적 출토 사질토기

출토 시기	기종	출토 유구	문양 ⁴⁰	용도
하층유존 시기, 하층적석층 시기	관(통형관 등), 발, 소형기명(小型器 皿) 등	제사갱	之자문, 압인문(押 引紋), 단사선돌대문 (戡印堆紋), 단사선 문(戡印紋), 평행사 선문 등 선을 굵거나 눌러서 문양을 새김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사용



그림 6 하층 유존 및 하층 적석층 시기 출토 사질토기(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2) 니질토기

니질토기는 홍산문화 취락유적에서 확인되지 않고 제사유적에서만 확인된다. 니질토기는 발, 옹형, 저부가 없는 원통형 등 여러 형태가 있다. 용도 또한 부장품, 적석층 경계 표시 등 다양하다. 일부 토기는 흑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제사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사를 나타내는 유물로 볼 수 있다.

니질토기는 하층유존 시기부터 꾸준히 확인된다. 니질토기는 채색하여 시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확인되는 기종은 발, 관, 유개쌍이옹, 무저원통형채도, 탑형토기 등이 있다. 하층유존 시기에는 제사갱 내에서 발견된다. 하층적석층 시기에는 제사갱과 적석층에서 확인된다. 적석층 주변에서 출토되는 니질토기의 기종은 주로 무저원통형채도이고, 탑형 토기와 발 등도 확인된다. 제사갱 내에서는 무저원통형채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무덤 내 부장품으로도

40 괄호 안은 중국학계의 용어

채도(유개쌍이웅)가 출토된다는 특징이 있다. 상층적석총 시기에는 적석총 주변에서 무저원통형채도가 출토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표 4〉 우하량 유적 출토 니질토기

출토 시기	기종	출토 유구	문양	용도
하층유존 시기, 하층적석총 시기, 상층적석총 시기	발, 탑형토기, 무저원통형채도, 유개쌍이웅, 쌍이관 등	적석총, 제단	용기선문(凹弦紋) ⁴¹ 겹비늘문(垂鱗紋), 구련와문(勾連渦紋), ⁴² 평행선문, 삼각형문 등 채색문	부장품, 적석총과 경계 담장 사이에 배치



그림 7 우하량 유적 제2지점 4호총 5호묘 출토 유개쌍이웅(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토기 표면에 구련와문을 새겼다.

41 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문양이다. 3형식 무저원통형채도 구연부 아랫부분에 시문되어 있다.

42 소용돌이 형태의 갈고리 문양이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는 문양이다. 대체 가능한 용어가 없어 중국 학계에서 쓰이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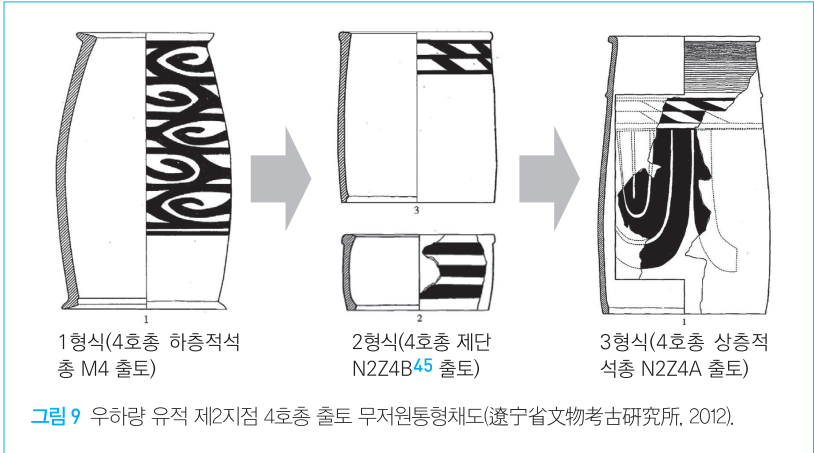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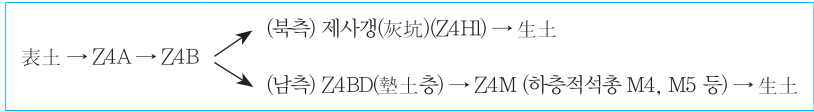


그림 8 우하량 유적 제2지점 4호총 4호묘와 무저원통형채도(필자 촬영). 적석총 주변으로 무저원통형채도가 띠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던 발굴 당시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다.

니질채도 중에서 무저원통형채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저원통형채도를 통해서 제사유구의 제작 시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저원통형채도는 적석총의 등장과 동시에 나타난다. 이는 다른 기형의 채도와 달리 무저원통형채도가 적석총과 제단 등 석재 구조물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층위와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홍산문화 토기에 대한 형식분류를 진행했다.^{43,44}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분류체계를 받아들여 다른 토기들을 제외하고 무저원통형채도를 대상으로 기존의 형식분류를 재적용했다. 이는 무저원통형채도가 층위에 따라 형태의 차이가 뚜렷하고 적석총과 제단을 둘러싸는

-
- 43 劉國祥, 2015, 앞의 글, 15~19쪽; 劉藝飛, 2016, 「紅山文化彩陶研究初探」, 『文化學研究』 2017-6, 80~83쪽; 朱延平, 2007, 「紅山文化彩陶紋樣探源」, 『邊疆考古研究』 6, 1~10쪽.
- 44 류이페이(劉藝飛)는 채도 기술이 중원 지역과의 교류로 나타났다고 보고 채도 문양의 변화를 기준으로 편년했다. 층위를 기준으로 삼은 점은 다른 연구들과 같다.

〈표 5〉 우하량 유적 제2지점 4호층의 층위관계(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용도로 사용되는 등 제사와 분명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종이기 때문이다. 즉, 제사체계의 변화를 민감하게 보여주는 기종이 바로 무저원통형채도이다. 층위에 따른 무저원통형채도의 형태 차이는 〈표 5〉와 같다.

1형식 무저원통형채도(구경: 21.4~26.0cm, 기고: 37.0~47.0cm)는 보고서 상에서 하층적석층 시기에 출토된 것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등장한다. 상단부에 용기선문이 확인되지 않고, 구연부에서부터 채색 문양이 칠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45 보고서에서는 적석층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석조 구조물 N2Z4B1과 N2Z4B2 내에 무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적석층으로 볼 수 없다. 이청규와 우명하는 N2Z4B를 원형제단으로 보았다. 이청규·우명하, 앞의 글, 15쪽.

단체통형기(短體筒形器)로 보고한 2형식 무저원통형채도는 다시 두 종류, 즉 기고와 구경의 비율이 비슷한 것(구경: 23.2~28.5cm, 기고: 20.0~26.0cm)과 구경이 기고보다 더 큰 것(구경: 23.5~29.5cm, 기고: 12~13.7cm)으로 나눌 수 있다. 문양은 전자의 경우 구연부에 있고, 후자의 경우 토기 전체에 그려져 있다. 편년과 용도 측면에서는 1형식, 3형식 무저원통형채도와 같이 묶을 수 있으나 제단 주변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는 1, 3형식과 차이가 있다. 이는 2형식 무저원통형채도의 의례적 의미에서도 1, 3형식과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부의 형태는 이후에 등장하는 3형식과 유사하고 구연부 바로 아래에 문양이 그려져 있는 점은 1형식과 유사하다.

3형식 무저원통형채도(구경: 32.0~37.0cm, 기고: 59.7~64.0cm)는 가장 늦은 시기에 나타난다. 이 토기는 구연부에 용기선문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동체부에 새긴 문양은 겹비늘문(垂鱗紋), 구련와문(勾連渦紋), 평행선문 등이 있다. 그리고 세 형식 중에서 기고가 가장 크다.

무저원통형채도의 형식 변화는 제사체계의 변화로 볼 수는 없다. 전 시기의 걸쳐서 적석총 또는 제단 주변에 놓이는 용도는 변화가 없고 형식 변화 내에서 부 혹은 위계와 관련된 속성의 등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2) 옥기

옥기는 홍산문화와 우하량을 대표하는 유물이다. 우하량 유적은 옥기가 가장 많이 출토된 유적으로 모두 무덤 내의 부장품으로 발견된다. 인골 위 또는 아래에서 출토되거나 인골의 팔목 부분에서 출토되는데 이는 피장자가 옥기를 패용했음을 나타낸다.

옥기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물론 합민망합 유적에서 무덤 매장이 아닌 맥락에서 옥기가 확인된 사례가 있고, 옥기 수리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46,47} 따라서 옥기가 부장품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님을 알 수

46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5, 「內蒙古科左中旗哈民忙哈新石器時代遺址



그림 10 우하량 유적 제5지점 1호총 1호무덤. 인골 주변에 옥기가 부장되어 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우하량 유적의 옥기를 피장자들이 생전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옥기가 홍산문화 및 우하량 유적 제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옥기 수량 증가, 더 정교화된 옥기 문양 등 옥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제사체계의 강화를 보여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옥기는 장신구, 제사용품, 도구 및 무기, 매장 옥기로

2012年的發掘」, 『考古』 2015-10, 1105~1125쪽.

- 47 단, 김재운은 합민망합 유적의 제작 기법이 이전 시기인 홍릉과 문화와 조보구 문화, 이후 문화인 소하연 문화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홍산문화의 범주로 보지 않았다(김재운, 2019, 앞의 글, 74쪽). 하지만 옥기의 경우 우하량 유적을 포함한 홍산 문화의 것과 유사함을 고려하면, 홍산문화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

나눌 수 있다. 리우는 홍산문화 옥기가 대형 제사유적의 출현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은 옥기의 사용이 사회적 불평등 및 의례 권력의 통제와 관련이 깊음을 나타낸다.⁴⁸

류귀상(劉國祥)은 홍산문화 옥기를 장식형 옥기, 공구 및 무기형 옥기, 동물형 옥기, 옥인, 특수형 옥기, 기타류 옥기로 나누었다.⁴⁹ 다른 연구들 역시 대략적인 형태 또는 추정 용도에 따라 1차 분류를 하고 형태에 따라 2차 분류를 진행하거나 2차 분류 없이 형태를 통해 분류했다.⁵⁰

이 연구에서는 우선 옥기의 기술적 속성으로 구분한 후 형태적 속성으로 세분했다. 옥기의 용도에 따른 분류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는 옥기가 무덤 내에서 몸에 착용한 상태로 출토되었으므로 모두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몸에 지니고 다닌 목적에 대해서는 장신구로 이해하는 시각, 위신재로 보는 시각, 샤먼이 제사용 목적을 가지고 패용했다는 시각 등이 있지만, 무덤의 규모와 부장된 옥기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고 형태만으로 그 용도를 추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옥기의 사회적 의미에 주목했으며, 옥기를 분류하여 그 의미를 밝히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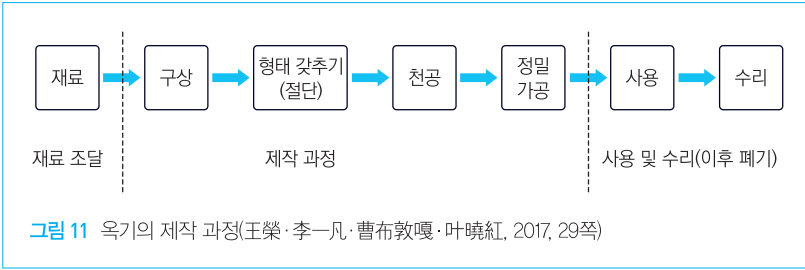
분류의 기준을 제시하기 이전에 홍산문화 옥기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옥기는 다른 유물들과 마찬가지로 재료 조달, 생산 및 가공, 사용 및 폐기 과정을 거친다. 옥기 제작은 구상하고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구멍을 뚫고 정밀가공을 거쳐서 옥기를 완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48 L. Liu, 2003, "The Products of Minds as Well as of Hands: Production of Prestige Goods in the Neolithic and Early State Periods of China", *Asian Perspective*, 42-1, pp. 5~8.

49 劉國祥, 2015, 앞의 글, 492~559쪽.

50 劉淑娟, 1995, 「紅山文化玉器類型探究」, 『遼海文物學刊』 19, 21~34쪽; 呂昕娛, 2011, 「紅山文化玉器類型探析」, 『赤峰學院學報』 298, 160~162쪽; 張懿燚, 2016, 「淺談紅山文化玉器類型」, 『赤峰學院學報』 37-8, 5~6쪽.

51 김정열, 2017, 앞의 글, 221~224쪽.



이 글에서 주목한 제작 과정은 옥기 가공 과정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문양을 새기는 과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옥기의 1차 분류 속성으로 옥기 제작 과정에서 문양새김 공정을 거쳤는지 유무로 보고자 한다. 문양새김(琢紋) 공정은 옥기의 장식을 새기는 과정이다. 홍산문화의 경우 무딘 마석을 이용하여 앞뒤로 밀어서 무늬를 새겼으며, 각 무늬선에는 곡선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와구문(瓦溝紋)이 나타난다.⁵²

문양새김 공정은 장식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데 필요하다. 즉, 단순한 옥기의 기능뿐 아니라 동물이나 기타 장식을 넣는 옥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필요한 기법이다. 따라서 이 기법은 기능적인 속성 및 그것을 사용하는 장식적



52 國立故宮博物院, 2012, 『教天拾揚-中國歷代玉器導讀』, 34~38쪽.

인 속성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형식분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문양새김 공정이 다른 옥기 제작 과정에 비해 많은 기술을 요구한다는 것도 고려하고자 한다. 이 공정은 옥기의 형태를 갖추는 것에 비해 세밀한 손질이 이루어진다. 반면, 문양새김 공정이 없는 옥기는 옥이라는 재질 자체에 그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우하량 유적의 경우, 문양새김 공정이 있는 옥기는 늦은 단계에 대형화된 적석층에서 출현하기 때문에 편년적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문양새김 공정이 있는 옥기는 그 장식의 종류에 따라 다시 분류했다. 동물형 옥기와 비동물형 옥기가 바로 그것이다. 동물(혹은 인물)형 옥기는 제사의 대상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⁵³ 비동물형 옥기는 구름형 옥기가 해당하는데 하늘과 소통하기 위한 일종의 성물이었다는 연구가 있다.⁵⁴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문양을 새긴 옥기들이 제사를 위한 목적으로 한 대상을 형상화했음을 주장했다. 문양새김 공정이 있는 옥기는 상층적석층의 무덤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적석층 내에서 무덤 형태에 따른 옥기 형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문양새김 공정이 없는 옥기는 천공의 유무를 통해 다시 분류했다. 천공이 있는 옥기의 경우, 실 등을 작은 구멍에 끼우고 이를 이용하여 몸에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서 천공은 실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을 옥기에 뚫은 것을 말한다. 옥배, 옥걸 등 일부 옥기 등에서는 천공이 확인되지 않는데 부장품으로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천공이 있는 옥기와 마찬가지로 다른 방식으로 몸에 패용한 옥기였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
- 53 索秀芬·李少兵, 2010, 「紅山文化玉龍」,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10-5, 61-64쪽; 付維鵠, 2014, 「紅山文化“玉豬龍”考析」, 『蘭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41~46쪽.
- 54 陶建英, 2015, 「紅山文化勾云形玉器淺議」, 『赤峰學院學報』 36-12, 21~23쪽.

〈표 6〉 우하량 유적 옥기 분류

1차 분류	문양새김 공정이 없는 옥기	2차 분류	천공이 있는 옥기	출현 시기 ⁵⁵	하층적석층, 상층적석층
			천공이 없는 옥기		
	문양새김 공정이 있는 옥기	2차 분류	동물형 옥기	출현 시기	상층적석층
			기하학 장식 옥기		

이를 바탕으로 한 분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우하량 유적 출토 옥기 분류 결과

1차 분류	2차 분류	옥기 종류
문양새김 공정이 있는 옥기	a. 동물형 옥기 ⁵⁶	옥인, 옥저룡, 옥룡봉패, 옥봉황, 옥제 봉황머리, 옥조, 옥여치, 옥제 짐승머리 패식, 조개껍데기형 옥기, 옥거북이, 옥누에, 삼공옥기 ⁵⁷
	b. 비동물형 옥기	구름형 옥기
문양새김 공정이 없는 옥기	a. 천공이 있는 옥기	옥주식, 옥관, 사다리꼴형 터키석질 장식, 쇠뇌손잡이형 장식, 반원형 터키석질 장식, 사구통형 옥기, ⁵⁸ 옥벽, 쌍련옥벽, 삼련옥벽, 북통형 옥기, 삼공옥기, 옥도끼
	b. 천공이 없는 옥기	옥심, 올가미형 옥기, 방공구, 옥결, 옥환, 사구통형 옥기, 고리형 옥기

55 발굴보고서 시대 구분 기준

56 옥인은 사람을 형상화된 장식이기 때문에 동물형이 아니지만, 동물형 장식에 포함하도록 하겠다.

57 양끝에 새 혹은 동물 문양을 새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58 천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 확인되고 있다. 용도의 차이에 따른 크기 및 형태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 13 우하량 유적 출토 옥기(필자 촬영). 모두 문양새김 공정을 거치지 않은 옥기이다. 왼쪽부터 사구통형 옥기, 고리형 옥기, 옥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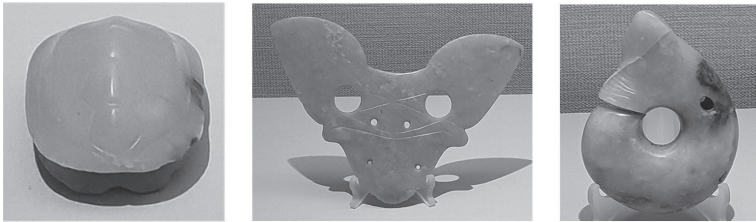


그림 14 우하량 유적 출토 옥기(필자 촬영). 문양새김 공정을 거친 옥기들로 모두 동물형 옥기이다. 왼쪽부터 옥거북이, 옥제 짐승머리 패시, 옥저룡이다.

Ⅲ. 우하량 유적 제사의 변천

1. ‘제사(祭祀)’의 개념과 제사체계의 정의

1) 제사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제사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 또는 그런 의식을 나타낸다. 고고학적으로 제사는 비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물질적 흔적을 남기는 인간 행위의 형태 중 하나이다.⁵⁷ 제사 행위는 다

른 생계 활동과 달리,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고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흔적이 뚜렷하고 유구 및 유물에 관념적인 속성이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제사는 기념비적 무덤, 제단, 제사용 유구 및 유물로 시각화되며 고고학자들은 이러한 시각화된 물질문화들을 바탕으로 제사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⁶⁰ 벨에 따르면, 제사는 총 여섯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⁶¹

제사의 특성⁶²

- 형식성: 제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형식적 또는 제한된 행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 전통성: 제사는 고대 또는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사용한다.
- 불변성: 제사는 엄격하고 반복되는 패턴을 따른다.
- 규칙성: 제사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 신성성: 제사는 신성한 상징주의를 도입한다.
- 공개성: 제사행위는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제사는 형식성, 전통성, 규칙성, 신성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별성을 부여한다. 동시에, 그러한 제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하지 않은 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성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기억을 형성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담당한다.⁶³ 높은 빈도의 제사는 복잡한 사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성

59 L. Fogelin, 2007, "The Archaeology of Religious Ritual",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6, pp. 59~62.

60 E. Swenson, 2015, 앞의 글, p. 330.

61 C. Bell, 1997, 앞의 책, pp. 138~169.

62 L. Fogelin, 앞의 글, p. 58에서 일부 재인용.

원들에게 각인시키고 집단 기억의 표준화를 이끈다.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는 특정한 종류의 창조적 사고를 억제함으로써 혁신의 위험을 줄이고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⁶⁴

위에 제시한 제사의 특성은 인류학에서 나온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이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벨의 개념을 일부 변형하여 적용했다. 포겔린은 제사 유구와 유물의 배치를 통해 제사의 목적에 접근할 수 있고, 제사 유물 및 부산물을 통해 제사 행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⁶⁵ 이를 따르다면 벨의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고고학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한 벨의 개념에 대해서는 Ⅲ장 2절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2) 제사체계의 정의

제사체계는 한 사회 내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제사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 및 모델은 많지 않다. 그중 하나는 여러 제사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공통된 상징과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다.⁶⁶

벨에 따르면 제사체계는 숭배, 제사의 대상이 되는 여러 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및 구조물의 배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제사를 담당하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⁷ 숭배는 연례적인 숭배와 비정기적인 숭배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사회 유지 기능과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을 담당한다.⁶⁸ 제사의 대상 역시 숭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될 것이다.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구성원이 제사의 의도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웅장함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구성된다.⁶⁹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자면, 제사

63 C. Bell, 1997, 앞의 책, pp. 173~177; C. Bell, 2009, 앞의 책, pp. 118~124.

64 H. Whitehose & I. Hodder, 앞의 글, pp. 123~127.

65 L. Fogelin, 2007, 앞의 글, p. 59.

66 C. Bell, 1997, 앞의 책, p. 173.

67 C. Bell, 2009, 앞의 책, p. 118.

68 C. Bell, 1997, 앞의 책, pp. 175~176.

행위를 위한 제사 유물의 생산체계, 제사 장소를 만들기 위한 노동력 조달체계 등도 제사체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하량 유적 및 다른 제사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사체계의 구성요소들은 제사 관련 유구와 제사 관련 유물이다. 제사 관련 유구는 제사의 대상이 되거나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되는 일종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제사 관련 유물은 제사 대상의 형상화 및 신성화, 제사의 진행 등에 사용되는 일종의 도구로 볼 수 있다. 우하량 유적의 경우, 제사 관련 유구는 적석총, 제단, 제사갱이고 제사 관련 유물은 토기, 옥기, 석기, 기타 토제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구와 유물들의 변화는 제사의 변화를 의미하고 제사의 변화는 제사를 구성하는 체계의 변화를 동반한다.

2. 우하량 유적의 제사체계의 성립과 전개

이 글에서는 우하량 유적의 시기를 여섯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편년은 단순히 편년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편년을 통해 우하량 유적 제사체계의 변천 과정을 밝히고 더 나아가 제사 중심의 홍산문화 사회 규명의 토대를 다지기 위한 목적이다.

편년의 지표 유물로는 토기와 옥기를 사용했다. 토기의 경우, 층위에 따른 무지원통형채도의 형태 변화를 주목했다. 옥기는 층위에 따른 문양새김 공정의 등장 여부를 주시했다. 두 유물을 편년의 지표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채도의 경우 제사 유구의 등장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견되지만 옥기의 경우 부장품으로 적석총이 출현하고 나서야 등장한다. 그리고 적석총의 등장 이후에는 옥기가 시기적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두 유물 모두 하나의 제사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채도는 주로 제사체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옥기는 제사체계의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드

69 L. Fogelin, 2007, 앞의 글, pp. 61~62.

리낸다. 따라서 옥기와 채도는 제사체계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제사체계의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두 유물을 함께 고려했다.

제사체계의 성립과 변화, 쇠퇴 과정은 총 6단계로 나누었다.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우하량 유적이 점유되지 않는 시기이다. 이 두 단계를 언급한 것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제사문화가 홍산문화 단계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하량 유적에서는 홍산문화 전후로 유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역의 다른 유적에서의 양상을 위주로 언급했다.⁷⁰

2~5단계는 우하량 유적의 유물과 유구의 변화에 따라 분류했다. 토기는 3단계의 형태 변화를 거치고 옥기의 경우 적석총의 대형화와 함께 문양새김 공정을 거친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구의 경우, 층위에 따라 제사갱 → 하층적석총 → 제단, 상층적석총의 등장 단계를 거친다. <표 8>은 유적 내 유물과 유구의 변화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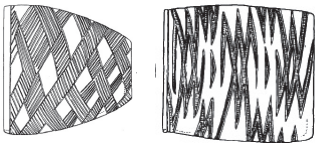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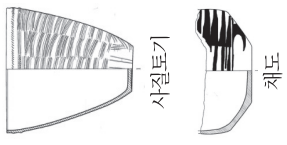
<표 8> 제사체계의 변화에 따른 우하량 유적 물질문화의 형식 변화

시기 구분	유구	무저원통형채도	옥기
Ⅱ기	제사갱	×	×
Ⅲ기	단독 적석총, 소형 적석총	1형식 ⁷¹	문양새김 공정 없는 옥기
Ⅳ기	제단, 대형 적석총	1형식, 2형식, 3형식	문양새김 공정 없는 옥기
Ⅴ기	제단, 대형 적석총	3형식	문양새김 공정 없는 옥기 문양새김 공정 있는 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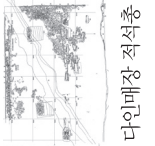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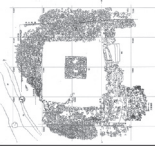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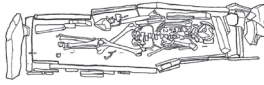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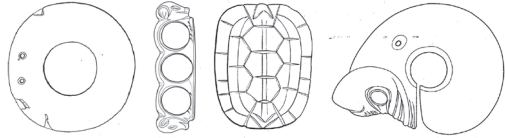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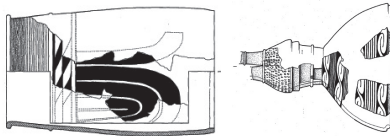
70 후술하겠지만, 하가점하층문화 시기에는 우하량 유적 제16지점이 있는 곳에서 취락 유구 및 생활 관련 유물이 확인된다. 다만, 하가점하층문화는 홍산문화 직후가 아니다. 홍산문화 이후에 등장하고 하가점하층문화 이전에 존재했던 소하연문화 관련 유구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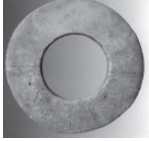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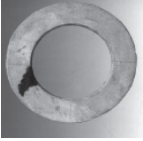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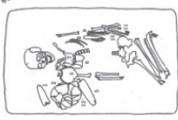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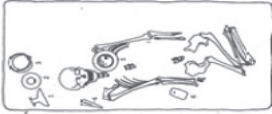
71 제단과 적석총 2지점 4호층 B1, B2의 경우, 출토된 무저원통형채도가 1형식과 2형식이고 3지점 적석총과 2지점 4호층 상층적석총에서는 3형식 무저원통형채도 편이 출토되었다.

〈표 9〉 홍산문화 제사 물질문화의 변천 과정

분기	제사체계	연대 ⁷²	제사강, 제단형태	적석총형태	부장품	무덤형태	옥기	토기
I	제사체계 등장 이전 ⁷³	기원전 5250~4500	?	?	?	무덤유적이 발견되지 않았음 ⁷⁴	?	
II	제사강의 건립 ⁷⁵	약 기원전 4000~3800	 제사강	?	?	?	?	 시질토기 채도

<p>사질토기</p>	<p>체도(유개쌍이음)</p> <p>체도(무저원통형 체도)</p>	
		<p>석관묘</p>
<p>토기(유개쌍이음), 옥기(문양 새김 공경이 없는 옥기)</p>	<p>옥기로 단입화</p>	<p>옥기로 단입화</p>
<p>단독 적석층</p>	<p>다인매장 적석층</p>	<p>적석층 내에 무덤 없음</p> <p>다인매장 적석층</p>
<p>제사갱</p>	<p>제단</p>	<p>제단</p>
<p>약기원전 3800~3600</p>	<p>약기원전 3600~3500</p>	<p>약기원전 3600~3500</p>
<p>적석층 축조</p>	<p>제단 축조</p>	<p>제단 축조</p>
<p>III</p>	<p>IV</p>	<p>IV</p>

분기	V								
제사체계	적석총의 대 형화								
연대	약기원전 3500~3000								
제사경, 제단형태	 제단								
적석총형태	 단독 적석총  다인매장 적석총  다인매장 적석총								
부장품	옥기, 문양새김 공경 이 있는 옥장 등장								
무덤형태	 석관묘  석관묘								
옥기									
토기									

			
			79
	토광묘		토광묘 78
	토기, 석기 (석월)		
	?		
	?		
	기원전 3000~2200		
	제사체계의 붕괴 ⁷⁷		
VI			

그리고 홍산문화 제사체계 변화 전 과정에서 벨이 제시한 제사의 특징들을 홍산문화에 대입시켜서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본래 인류학적인 벨의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일부 변환했다.⁸² 이 연구에서는 제사체계가 체계화될수록 제사의 특성이 더 많이 확인될 것이라고 가정했고 이는 유물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더 ‘화려하고 거대한’ 유구와 유물을 통해 제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와 <표 10>은 홍산문화 제사 물질문화의 변천 과정과 제사체계 변화에 따라 제사의 어떤 특성이 등장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개념 제시에 앞서 제사의 특성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쇄 작용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제사의 특성은 첫째, 한정성이다. 이는 벨이 제시했던 형식성의 개념을 일부

-
- 72 II, III, IV단계의 경우 추정 연대
- 73 우하량 유적에서는 홍산문화 이전 문화인 조보구문화 관련 유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조보구 문화 유구 및 유물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74 富寶財, 2018, 「中國東北地方の新石器時代における社會形態變遷の研究」, 『九州大學大学院人文科學府』, 博士學位論文, 41~43쪽.
- 75 중국 학계에서는 홍산문화에서 공개적인 제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홍산문화 후기로 보고 있다. 이는 홍산문화 제사유적을 홍산문화 후기로 편년하기 때문이다.
- 76 현재 적석총의 형태가 남아 있지 않으나 적석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77 우하량 유적의 경우, 제사체계 붕괴 직후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하가점하층문화 주거지가 발견되지만 이 표에서는 제사체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홍산문화 바로 뒤에 등장한 소하연문화를 위주로 언급하도록 하였다.
- 78 鄭鈞夫, 2012,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晚期遺存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15쪽.
- 79 周曉晶, 2014, 「紅山文化玉器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35쪽.
- 80 富寶財, 2018, 앞의 글, 90쪽.
- 81 鄭鈞夫, 2012, 앞의 글, 52쪽.
- 82 벨이 제시한 개념 중 규칙성과 같은 몇몇 개념은 민족지적 관찰을 통해 도출한 것이다. 따라서 유물을 통해서 밝히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0〉 홍산문화 제사체계의 변화에 따른 제사의 특성 변화

	한정성	전통성	신성성	공개성
I기	×	×	×	×
II기	○	△	×	×
III기	○	○	○	○
IV기	◎	○	○	◎
V기	◎	◎	◎	◎
VI기	×	×	×	×

△: 약하게 있음, ○: 있음, ×: 없음, ◎: 강하게 있음

변경하고 용어를 변환한 것이다. 벨의 형식성은 제사에서의 한정되고 특수한 ‘행위’를 강조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한정성은 일상 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유구와 유물의 유무를 통해 판단하고자 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구 및 유물은 일상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차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신성함을 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용 공간과 다른 형태의 거대한 공간은 홍산문화인들에게 일종의 위압감을 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상 도구가 사라지고 제사용 도구만 출토될 때 한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자 했다. 이는 제사 전문 도구의 사용을 통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전통성이다. 벨에 따르면, 제사는 조상들의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강화하는 특성이 있다.⁸³ 홍산문화의 경우, 채도의 등장 자체는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었지만 이후에 시간 흐름에 따라 처음 도입한 유물들이 지속되고 거기에 새로운 유물들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전통성은 물질문화의 지속성 여부를 위주로 살펴보고자 했다. 그리고 유구 및 유물의 배치 또한 전통성에서 고려했는데, 유구 및 유물의 배치는 제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83 C. Bell, 1997, 앞의 책, p. 145.

치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성은 일상 유구 및 유물과의 ‘차이’를 보았다면, 전통성은 그러한 유물의 ‘문화적 지속성’에 주목했다.

셋째, 공개성이다. 즉, 제사 장소 및 제사의 대상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는 지 여부이다. 홍산문화에서 유구의 공개성은 신성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대형 기념물은 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규범을 상징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⁸⁴ 그 기념물의 종류가 적석총과 제단이라면, 조상 숭배와 관련된 규범이 강화될 것이고 이는 곧 신성성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홍산문화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제사 유구들이 대형화된다. 이는 제사 대상에 대한 숭배의 정도가 강해지는 동시에 제사 대상이 묻힌 장소가 구성원들에게 드러나는 정도가 강해지는 것이다. 제사갱에서 제단으로 제사의 장소가 전환되는 것도 대형 제단을 통해 제사가 더 쉽게 드러나면서 동시에 신성성이 강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넷째, 신성성이다. 전술하였듯이 제사의 공개성과 신성성은 고고학적으로 연결되는 특성이다. 단, 이는 유구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무덤 내 부장품의 종류 및 수량 변화는 공개성과 상관없는 신성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유물들은 제사 과정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요소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물건들을 부장함으로써 제사 대상의 위상과 함께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이다. 정리하면 공개성은 ‘유구의 공개성과 신성성’을 나타낸 것이고 신성성은 ‘유물의 신성성’을 나타낸 것이다.

1) 1기: 제사체계 등장 이전(기원전 5250~4500)

제사유적 건립 이전에 우하량 유적에서는 어떠한 거주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홍산문화 등장 이전과 홍산문화 초중기에는 주로 취락유적이 입지하는데 우하량 유적이 위치한 곳에는 어떠한 유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홍산문화의 제

84 M. Hegmon, 1989, “Social Integration and Architecture”, In W. D. Lipe and M. Hegmon(eds.), *The Architecture of Social Integration in Prehistoric Pueblos*, Cortez: Crow Canyon Archaeological Center, pp. 7~9.

사문화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흥릉와 문화의 경우, 취락 유적 내 제사의 흔적은 확인되지만, 제사유적은 확인되지 않는다.⁸⁵ 벨이 제시한 제사의 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취락 유적 내 제사갱만 확인될 뿐, 제사용 유물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2) II기: 제사갱의 건립(약 기원전 4000~3800)

이 시기에 홍산문화 제사체계가 처음 등장한다. 보고서의 층위 분류상으로 하층 유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는 적석총과 제단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제사갱만 여러 기 확인된다. 이는 제사체계가 아직 체계화되기 전이었음을 보여준다. 주거지 또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주거지의 부재와 함께 동물자원에 편중되어 있는 잔존물,⁸⁶ 채도의 등장 등은 우하량 유적이 이미 일종의 신성한 공간으로서 제사유적의 기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옥기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석기와 토기가 확인된다. 주로 사질토기 위주에 니질채도가 일부 확인된다. 사질토기는 홍산문화 이전 단계와 홍산문화 취락유적에서 일상용으로 확인되는 토기로 이 시기에 제사가 체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니질채도는 주로 발이 확인되고 무저원통형채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질토기의 형태는 홍산문화 이전 토기 형태를 이어받은 것이다.

제사 대상은 유추하기 쉽지 않은데 제사를 진행한 장소로서의 제사갱만 남아 있고 제사 대상이 되는 유구 및 유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제사갱 내에서 식물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동물뼈가 대량으로 확인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바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사용 동물은 사냥을 통해서 대부분 조달했다.⁸⁷

85 오대양, 2014, 앞의 글, 220~223쪽.

86 제사갱 출토 토기에 대한 잔존물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식물자원도 검출될 확률이 있다.

87 袁靖, 2016, 앞의 글, 178쪽.

이 시기에 확인되는 제사의 특성은 한정성과 전통성이다. 취락유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채도 등을 이 시기부터 활용하기 시작했다. 제사의 전통 또한 이 시기에 시작된다. 이 시기 제사의 전통은 이후 시기들과 비교해서 약한 편이다. 유구의 형태에서 제사 전통의 시작이 확인되지 않고 유물에서만 제사의 시작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만들어진 채도의 형태 및 문양이 이후 시기까지 변형을 거치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전통성의 시작 시기를 II기로 보았다.

3) III기: 적석총 축조(약 기원전 3800~3600)

층위상으로 적석총은 하층적석총 시기부터 등장한다. 초기에 적석총은 제사갱과 인접하여 확인되는데 이는 적석총이 제사의 대상으로서 등장했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제사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적석총의 축조는 제사 대상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제 제사의 대상이 기념비적 건물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제사 권력의 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적석총의 크기는 이후 시기에 비해 더 작고 무덤의 수도 더 적다. 한 적석총 내에 하나의 무덤만 확인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이후 시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적석총 형태이다. 무덤의 형태는 석관묘이며 토광묘는 적석총 외부에서만 확인된다. 적석총 외부에서 발견되는 무덤에서는 부장품이 없는데 적석총 내 무덤의 피장자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⁸ 석관묘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석관묘와 비교해 제작 과정이 더 복잡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는 기념비적 건물 건립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았거나 동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88 이청규와 우명하는 적석총 외부의 무덤에 대해서 하가점하층문화식 구리제 고리 1점이 출토된 것을 근거로 우하량 유적 내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청규·우명하, 2020, 앞의 글, 15쪽.

적석층 주변에는 저부가 없는 무저원통형채도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며 부장품으로는 옥기와 채도가 확인된다. 옥기와 채도는 홍산문화 취락유적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품목이다. 홍산문화 취락들 사이에서 위계 혹은 부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고려하면⁸⁹ 이 시기에 옥기와 채도가 부와 위계를 나타내는 지표였던 것으로 보인다. 채도의 경우 이후 시기에서는 부장품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만 위신재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제사용구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⁹⁰

이 시기에 발견되는 옥기는 그 수량과 종류가 이후의 시기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다. 대부분의 무덤에서 옥기가 확인되지 않으며 극소수의 무덤에서만 1~2점씩 확인된다.

적석층의 축조가 시작되면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사의 특성이 모두 확인되기 시작한다. 신성성과 공개성은 이 시기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다. 적석층의 등장은 제사 대상이 대중들에게 거대한 기념물로 보여지기 시작했음을 나타낸다. 거대한 제사 유구의 등장함으로써 제사를 주관하는 집단은 제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했을 것이다. 특히, 정치권력이 없는 사회에서 신성함은 “정치권력의 기능적 대안”이 될 수 있었다.⁹¹ 즉, 신성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용 기념물의 대형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공개성이 연계되지 않는 유물의 신성성은 이 시기에 무덤이 처음 확인되기 시작하고 그러한 무덤 내에서 옥기, 토기 등 여러 부장품이 확인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옥기가 확인되기 시작하고 제사용 토기의 종류가 증가하

89 R. Drennan, C. Peterson, X. Lu, and T. Li, 2017, “Hongshan households and communities in Neolithic northeastern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47, pp. 66~67.

90 이러한 위신재는 제사권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정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을 것이다.

91 M. Hegmon, 1989, 앞의 글, p. 6.

는 등, 이전보다 많은 제사용 유물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를 한정성의 강화로 보지 않았는데 이는 이 시기의 제사갱에서 여전히 사질토기와 같은 일상용 유물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전통성은 강화되는데 이 시기에는 적석총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무저원통형채도의 배치가 이루어지는 등 유구와 유물이 패턴을 이루며 배치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4) IV기: 제단 축조(기원전 3600~3500)

적석 제단의 축조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화려해지고 대형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단은 적석총이 축조되고 적석총이 대형화되기 이전에 등장했다. 이러한 시간적 순서는 단채무저원통형채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하층적석총 시기의 것과 상층적석총 시기의 무저원통형채도 사이에 등장하는 기종이다. 제단이 등장하면서 적석총 주변에 존재했던 제사갱은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제단으로 단일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제사갱에서 제단으로 제사 장소가 변화하는 것은 그만큼 제사의 역할이 강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의 제단이 한 지점에 있는 적석총군에 대한 제사를 진행하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귀다순은 무덤과 제단의 결합이 홍산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적석총이 제단의 기능을 겸함과 동시에 별도의 제단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⁹² 이 연구에서는 제단의 축조 위치가 적석총 주변이라는 것을 근거로 적석총이 제사의 대상일 것으로 보았다.

이 시기에는 제2지점의 4호층 내에서 제단 Z4B1과 Z4B2가 하층적석총 시기의 무덤과 상층적석총 시기의 무덤 사이에 확인되는데 두 무덤 모두에서 적석총 내부에 무덤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석총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다. 한편, 이 단계에 만들어진 적석총도 있다. 제2지점 4호층 상층적석총과 제3지점 적석총이 바로 그것이다.⁹³ 이들 내부에 여러 기의 무덤이 있고 옥기만

92 귀다순·장상터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78~379쪽

93 이들 적석총에서 발견되는 무저원통형채도는 3형식으로 가장 늦은 단계에 출토되

확인된다는 점에서는 Ⅴ기와 유사하지만, 확인되는 옥기에서 문양새김 공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Ⅲ기의 무덤과 유사한 특성이다. 이 시기에 부장품이 옥기로 단일화되지만, 옥기의 형태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석총 축조와 적석총 대형화 사이에 만들어진 제단은 2지점 3호 원형 제단 뿐이다. 이 외의 제단들은 축조 시기를 알 수 없거나 Ⅴ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제사체계가 단선적인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었으며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단이 더 만들어지는 것은 적석총의 규모가 커지고 수량이 증가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제사의 특징에서 이전 시기와 가장 큰 차이는 제사의 한정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이르면, 취락유적에서도 확인되는 유물인 사질토기가 사라진다. 대신 채도와 옥기 등의 수량이 증가한다. 전통성은 이전과 유사하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물 형식의 변화가 있지만, 옥기, 적석총, 무저원통형채도 등의 유구 구성과 배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적석총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제사를 지내는 장소인 제단이 등장하는 것은 공개성이 강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제사용 기념물의 크기 증가는 해그먼이 제시한 대형 기념물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⁹⁴ 부장유물의 신성성의 경우, 이전에 부장품으로 확인되던 채도가 사라지고 옥기로 부장품이 단일화되는 변화가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이 연구에서는 신성성의 강화로 보지 않고자 한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제사체계의 중요한 변화 지표로 본 문양새김 옥기의 부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같은 단계로 분류하였지만, 제단의 축조 시기와 적석총의 축조 시기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94 M. Hegmon, 1989, 앞의 글, pp. 7~9.

5) V가: 적석총의 대형화(기원전 3500~3000)

상층적석총 시기의 적석총은 이전 시기의 것과 비교해서 규모가 커지고 안에 있는 무덤의 숫자도 많아진다. 그리고 부장품의 경우 옥기로 단일화되고 관의 형식도 몇몇 무덤의 경우 얇게 다듬은 석판을 층층이 쌓아 만들 정도로 정교해진다. 이는 제사체계가 더욱 정교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우선 적석총의 규모가 커지고 관의 형식이 정교화된 것은 제사 권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⁹⁵ 앞에서 언급했듯이 홍산문화의 경우 취락유적에서 위계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데 이와 달리 적석총이 대형화되고 정교화되는 것은 제사 권의 강화로 볼 수 있다. 가장 정교한 무덤 양식으로 볼 수 있는 석판묘는 여전히 소수이지만, 다른 석판묘들도 하층적석총 시기의 무덤에 비해 돌의 손질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차장으로 매장된 무덤도 증가하는데 이들 무덤의 경우 관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학계에서는 위계가 낮은 사람들이 묻힌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지만,⁹⁶ 부장 유물 등을 볼 때 적절한 지적으로 볼 수 없고 이차장 무덤의 주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노동력 동원은 강제로 이루어졌을

95 물론, 이 시기의 적석총이 처음부터 대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제 2지점 1호총의 경우 25호, 26호 무덤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 여러 주변부의 무덤이 만들어졌다. 제 2지점 2호총의 경우에도 1호 무덤이 중심부에 만들어진 후에 여러 무덤이 주변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이청규·우명하, 2020, 앞의 글, 15쪽).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무덤이 만들어진 순서가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제사체계 변화의 지표로 볼 수 있는 무덤이 초기에 만들어진 무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무저원통형채도의 배치 등 다른 요소에서 적석총이 커진 이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폐기된 결과로서의 적석총에서는 대형화된 이후의 상황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석총 내 무덤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문양새김 공정을 거친 옥기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문양새김 옥기가 확인되는 중심 무덤은 26호뿐이지만, 25호 무덤의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제사 대상이 적석총 전체이기 때문에 제사체계 변천을 보는 단위 역시 적석총 전체이다’라는 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묶어서 볼 수 있다.

96 귀다순·장성덕 저, 김정열 역, 2008, 앞의 책, 374~380쪽; 劉國祥, 2015, 앞의 글, 294~297쪽.

가능성은 낮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부장 옥기의 수량이 증가하고 제작 공정이 복잡해지는 현상 또한 제사 권력의 강화 및 이데올로기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비로소 부장품으로 문양 새김 공정이 있는 옥기가 처음 등장한다. 문양새김 공정을 이용하여 홍산문화인들은 용, 새, 짐승, 사람 등을 묘사했다. 이는 이전의 옥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옥이라는 재질뿐만 아니라 옥기의 형태를 통해서도 자신들의 부와 위신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동물숭배 사상이 확인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전부터 동물숭배 사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기부터 동물숭배가 유물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시기에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제사의 모든 특성이 강화된다. 전통성의 경우, 이전 시기의 유물이 확인되는 동시에 문양새김 공정이 이루어진 옥기가 등장한다. 전체 옥기의 부장량도 증가한다. 문양새김 공정을 거친 옥기의 등장은 신성성의 강화이기도 하다. 공개성은 이전 시기에 강화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적석총이 지속적인 확대 과정을 통해 더욱 대형화되고 대형 제단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⁹⁷ 한정성도 일상생활용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정리하면, 유구 규모의 확대, 부장 유물의 단일화, 부장 유물에 대한 비용 증가 등이 제사 및 제사 권력의 강화를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제사에서 제사 행위자의 주관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라는 점이다. 라파포르트(Rappaport)는 미리 정해진 순서를 따르는 예배적(canonical) 제사는 주로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과 관련이 있고, 따라서 정교한 예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⁹⁸ 이러한 제사에서 제사 행위자의 자기주도성은 축소되고 이러한 제한성은 제사의 신성성과 제사 행위자의 권위를 강화

97 적석총이 처음부터 대형화된 현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형화되고 이는 곧 공개성의 강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98 C. Bell, 1997, 앞의 책, pp. 176~177에서 재인용.

시킨다. 고고학적으로 홍산문화 내의 제사가 철저히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사 과정에서 제사 행위자가 차지하는 위치는 줄어들고 있음은 추측할 수 있다.

6) Ⅶ기: 홍산문화 이후(제사체계의 붕괴)(기원전 3000~2200)

홍산문화 이후, 우하량 유적에서는 이전과 같은 제사유적이 지속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진다. 이는 우하량 유적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동북지역 전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산문화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북방의 문화요소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김재운은 홍산문화 이후에 등장한 문화들이 홍산문화와 함께 바이칼 유역에서 등장한 세로보 문화 및 글라스코보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측한다. 홍산문화와 뒤이은 하가점하층문화의 과도기적 문화인 소하연문화의 경우, 대규모 무덤유적이 등장하지만, 적석총의 형태가 아닌 토광묘의 형태이고 제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장품으로 옥기가 확인되는 사례가 있으나, 극히 드물며 옥기 형태도 홍산문화 시기에 비해 조잡해짐과 동시에 문양새김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 부장품들의 형태도 홍산문화의 것과 거리가 멀고 바이칼 지역의 것과 유사하다. 김재운은 이를 토대로 소하연문화가 홍산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부정하고 홍산문화와 함께 바이칼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김재운의 주장이 옳다면 홍산문화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서 대형 제사유적이 사라지고 제사체계가 붕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⁹⁹ 대신 제사는 각 주거지 내에서 이루어지는데¹⁰⁰ 이는 제사의 규모가 공동체 또는 전체 문화 단위에서 가구 단위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제사가 일상 생활 속의 일부로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소하연문화가 영향을 받은 바이칼 지역의 여러 문화는 북방 유목문화의 영

99 김재운, 2018, 「요서지역 소하연문화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 28~35쪽.

100 강인욱, 2018, 앞의 책, 14~15쪽.

향을 받은 문화였다. 그러한 문화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은 농경을 중심으로 한 홍산문화가 더 이상 살아남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는 증거이다. 특히, 전쟁과 같은 갈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홍산문화가 소멸단계에 들어선 이후에 내려왔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신석기 초기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기후가 온난 습윤했기 때문에 농경이 쉽게 도입될 수 있었다.¹⁰¹ 우하량 유적의 경우, 소하연문화 이후의 문화인 하가점하층문화의 주거지가 등장하는데 우하량 유적 내 유적에서 제사의 흔적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¹⁰²

IV. 맺음말

홍산문화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성행한 신석기 제사문화이며, 우하량 유적은 홍산문화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제사유적이다. 취락유적이 소규모로 존재하고 정치적 위계의 흔적이 보이지 않음을 고려하면 우하량 유적의 존재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따라서 우하량 유적을 통한 제사체계의 연구는 홍산문화 이해에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우하량 유적에는 제사체계의 등장, 강화, 쇠퇴의 과정이 잘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제사갱의 등장 → 적석총의 등장 → 제단의 등장 → 적석총의 대형화 순서로 이어지는 우하량 유적의 전개 양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제사유적에

101 X, Jia, H. Lee, W. Zhang, L. Wang, Y. Sun, Z. Zhao, S. Yi, W. Huang, and H. Lu, "Human-environment interactions within the West Liao River Basin in Northeastern China during the Holocene Optimum", *Quaternary International*, 426, pp. 14~15.

102 하가점하층문화의 다른 유적에서는 복골, 의례용 그릇 등의 의례용 유물이 나타난다. 이를 볼 때, 하가점 하층문화에서도 제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제사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유적 혹은 방어용 유적에서 확인된다. G. Shelach, and G. Shelach, 2002, *Leadership Strategies, Economic Activity,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Social Complexity in Northeast China*,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 pp. 110~115.

대한 집중적 투자는 제사가 홍산문화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제사가 홍산문화 내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제사유적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홍산문화 연구는 제사가 홍산문화의 핵심 요소임을 인정하면서도 홍산문화를 만든 주체에 대한 연구와 홍산문화가 어느 단계의 문화인지에 대한 연구에 치중해왔다. 이 연구에서는 우하량 유적을 통해 제사 중심의 홍산문화에 대해서 접근했다. 그 초기 단계로 우하량 유적에서의 제사체계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홍산문화의 다른 제사유적 및 취락유적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사유적이 정치적 압력, 사회적 합의 등 어떤 형태로 노동력을 동원했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를 기반으로 한 홍산문화의 사회시스템을 복원하는 데 이 연구가 기초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문

- 강인욱, 2005, 「區系類型論과 중국 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56.
- _____, 2010, 「鳥居龍藏으로 본 일제강점기 한국 선사시대에 대한 이해」,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_____, 2017, 「영혼과 나비-홍산문화 출토 나비형 옥기로 본 고대인의 생사관에 대한 접근」,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발간 30주년 기념 학회』.
- _____, 2018, 「유라시아 제사 고고학과 한반도」, 『북방유라시아 제사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 귀다순·장성더 저, 김정열 역, 2008, 『동북문화와 유연문명(상)』, 동북아역사재단.
- 김정열, 2014, 「홍산문화론-우하량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76.
- _____, 2017, 「홍산문화, 현상과 쟁점」, 『한국상고사학보』 96.
- 김재윤, 2018, 「요서지역 소하연문화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9.
- _____, 2019, 「홍산문화 편년에 대한 검토-‘압인-자문토기’를 중심으로」, 『고고학』 18-2.
- 린원 저, 정재남 역, 2016, 「중국 고고학에서 “古國” “方國” “王國”의 이론과 방법문제」, 『동아시아고대학』 42.
- 세키네 히데유키(關根英行), 2011,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와 오카 마사오(岡正雄)의 일본민족 기원론-‘문화전파’와 ‘민족이동’의 관점에서-」, 『동북아문화연구』 29.
- 안신원, 2017, 「중국의 문명과 국가기원론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과 역사학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 52.
- 오대양, 2014, 「요서지역 적석총문화의 기원과 형성 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5.
- _____, 2020, 「요서와 요동지역 적석총문화의 상관성 검토」, 『동북아고대역사』 2020-2.
- 우실하, 2018, 『고조선문명의 기원과 요하문명』, 지식산업사.
- 원중호, 2019, 「中國 遼寧省 牛河梁 積石塚 變遷過程 研究」,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이청규·우명하, 2020, 「紅山文化 牛河梁 玉器副葬墓에 대한 理解」, 『한국상고사학보』.

홍은경, 2016a, 「遼河文明論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2.

_____, 2016b, 「지자문(之字紋)토기 연구」, 『인문학연구』 31.

_____, 2018, 「중국 요서지역의 신석기 제례」, 『북방유라시아 제사 고고학의 현황과 과제』, 주류성.

중문

國立故宮博物院, 2012, 『敎天拾揚-中國歷代玉器導讀』.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15, 「內蒙古科左中旗哈民忙哈新石器時代遺址2012年的發掘」, 『考古』 2015-10.

陶建英, 2015, 「紅山文化勾云形玉器淺議」, 『赤峰學院學報』 36-12.

劉國祥, 2015, 「紅山文化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博士學位論文.

劉藝飛, 2016, 「紅山文化彩陶研究初探」, 『文化學研究』 2017-6.

劉淑娟, 1995, 「紅山文化玉器類型探究」, 『遼海文物學刊』 19.

付維鵠, 2014, 「紅山文化“玉豬龍”考析」, 『蘭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徐昭峰·于海明, 2017, 「牛河梁遺址與紅山文化祭祖權的壟斷」, 『遼寧師範大學學報』 40-1.

索秀芬·李少兵, 2010, 「紅山文化玉龍」, 『內蒙古師範大學學報』 2010-5.

_____, 2011, 「紅山文化研究」, 『考古學報』 2011-3.

呂昕娛, 2011, 「紅山文化玉器類型探析」, 『赤峰學院學報』 298.

王榮·李一凡·曹布敦嘎·叶曉紅, 2017, 「內蒙古巴林右旗紅山玉器制作工藝研究」, 『考古與文物』 2017-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12, 『牛河梁-紅山文化遺址發掘報告(1983~2003年度)』, 北京: 文物出版社.

袁靖, 2016, 「新石器時代至先秦時期東北地區的生業初探」, 『南方文物』 2016-3.

張懿燚, 2016, 「淺談紅山文化玉器類型」, 『赤峰學院學報』 37-8.

鄭鈞夫, 2012, 「燕山南北地區新石器時代晚期遺存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朝陽市牛河梁遺址管理處, 2014, 『牛河梁國家考古遺址公園』, 朝陽: 朝陽市牛河梁遺址管理處.

座談東山嘴遺址, 1984, 『座談東山嘴遺址』, 『文物』 11.

朱延平, 2007, 「紅山文化彩陶紋樣探源」, 『邊疆考古研究』 6.

周曉晶, 2014, 「紅山文化玉器研究」, 『吉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일문

東亞考古學會, 1938, 『赤峯紅山後-滿洲國熱河省赤峯紅山後先史遺蹟』.

滿洲帝國民生部, 1942, 『滿洲國古蹟古物調查報告』, 滿洲國國務院文教部.

富寶財, 2018, 「中國東北地方の新石器時代における社會形態變遷の研究」, 『九州大學大學院人文科學府』, 博士學位論文.

영문

Bell, C., 1997, *Ritual-Perspectives and Dimensi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9, *Ritual Theory, Ritual Prac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rennan, R., Peterson, C., Lu, X., and Li, T., 2017, “Hongshan households and communities in Neolithic northeastern China”.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47.

Fogelin, L., 2007, “The Archaeology of Religious Ritual”,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6.

Hegmon, M., 1989, “Social Integration and Architecture”, In W. D. Lipe and M. Hegmon(eds.), *The Architecture of Social Integration in Prehistoric Pueblos*, Cortez: Crow Canyon Archaeological Center.

Jia, X., Lee, H., Zhang, W., Wang, L., Sun, Y., Zhao, Z., Yi, S., Huang, W., and Lu, H., “Human-environment interactions within the West Liao River Basin in Northeastern China during the Holocene Optimum”, *Quaternary International*, 426.

Liu, L., 2003, “The Products of Minds as Well as of Hands: Production of

- Prestige Goods in the Neolithic and Early State Periods of China”, *Asian Perspective*, 42-1.
- _____, 2017, “A History of Chinese Archaeology”, In J. Habu et al.(eds.), *Handbook of East and Southeast Asian Archaeology*, New York: Springer Nature.
- Peterson, C. E., and Lu, X., 2013, “Understanding Hongshan Period Social Dynamics”, In A. P. Underhill(ed.), *A Companion to Chinese Archaeology*, Chichester: Wiley-Blackwell.
- Shelach, G., 2002, *Leadership Strategies, Economic Activity, and Interregional Interaction Social Complexity in Northeast China*, New York: Kluwer Academic Publishers.
- Swenson, E., 2015, “The Archaeology of Ritual”,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44.
- Whitehose, H., and Hodder, I., “Modes of religiosity at Çatalhöyük”, In I. Hodder(ed.), *Religion in the Emergence of Civilization: Çatalhöyük as a Case Stud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우하량 유적을 통해 본 홍산문화의 제사체계 형성과 변화

홍지혁

홍산문화는 기원전 4,500~3,000년경 중국 동북지방에서 등장했다. 홍산문화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제사가 처음 등장했고 제사가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홍산문화에 대한 연구는 홍산문화를 문명 혹은 국가로 정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바라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홍산문화 제사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한 연구 대상으로 우하량 유적을 정했는데 우하량 유적의 경우, 유구 및 유물의 형태 변화가 층위별로 비교적 뚜렷하다. 따라서 유물 및 유구의 형식분류를 통해 제사체계를 구성하고 그 변화를 고찰할 수 있었다.

우하량 유적은 제사 유구의 등장 이전에 어떠한 인간의 점유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우하량 유적이 철저하게 제사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구 및 유물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데 이는 제사의 강화를 나타내며, 이후 홍산문화가 붕괴되면서 제사유적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물질문화의 변화를 조망함과 동시에 제사고고학적 개념을 도

입하여 그 변화에 대입하고자 했다. 그리고 캐서린 벨의 개념을 고고학적으로 일부 수정하여 도입했는데, 그 결과 홍산문화의 제사가 강화될수록 제사의 특성이 새롭게 등장하거나 강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산문화는 정치적인 위계가 보이기 이전의 제사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위계가 뚜렷하지 않은 홍산문화 사회에서 제사가 어떻게 사회통합 및 분리에 기여했는지 탐구할 수 있다면, 홍산문화 사회체계에 대한 이해도 보다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홍산문화, 우하량 유적, 제사체계, 옥기, 적석총, 제단

ABSTRACT

Formation and Change of Ritual System in Niheliang Site, Hongshan Culture, Chifeng, China

Hong Jihyeog

The Hongshan culture appeared in northeast China, around 4500-3000 BC. Since ritual was a key factor of the Hongshan culture society, understanding ritual and ritual system of the Hongshan culture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ngshan culture. However, the current stream of research regarding the Hongshan culture looks at ritual as a way to define Hongshan culture as a civilization or sta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ritual system of Hongshan culture. The Niheliang ritual center is possible to organize the ritual system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structures and artifacts and to examine the change.

The Niheliang was only made for rituals. Also, as time passes, the cost of structure and artifacts increases, which indicates the strengthening of ritual. Finally, as Hongshan culture collapses, the ritual site of Niheliang stopped to function.

In this study, I introduce the concept of archeology of ritual and apply this concept when investigating the change of material culture. For this purpose, I used a partially modified concept of Catherine Bell to assess archaeological material culture. As a result, I confirmed that as the ritual of the Hongshan culture transforms, new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 appear and such characteristics strengthen.

Hongshan culture is important since it shows rituals preceding the political hierarchies. By exploring how ritual contributed to social integration and separation in Hongshan culture society, of which the hierarchy is unobserved, this study contributes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Hongshan culture social system.

Keywords: Hongshan culture, Niuheiliang, ritual system, jade, Stone Mound Tomb, Altar

요서지역 전국 연문화의 전개와 그 배경

–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배현준 |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주요 유적의 시간성 검토
- III.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개와 특징
- IV. 요서지역 연문화의 출현 배경
- V. 맺음말



I. 머리말

기원전 1천 년기 후반의 어느 시점에 중원세력의 하나였던 연나라가 연산 이북의 중국 동북지역으로 진출(또는 영역지배)했다는 사실에 대해 한중일 학계에서는 현재 별다른 이견이 없다. 과거에는 문헌에 기록된 연장 진개의 동호 또는 고조선 경략 기사를 근거로 진개의 활동시기가 연나라 소왕(昭王, 기원전 311년~기원전 279년)대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원전 4세기 말~기원전 3세기 초 사이로 비정하다가 최근에는 연나라의 대외정세를 고려하여 기원전 3세기 초¹로 특정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발견되는 고고자료의 증가로 인해 연나라가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중국 동북지역에 진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현재는 기원전 4세기설,² 기원전 3세기설³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연대관의 출현 배경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기원전 3세기 설은 고고자료와 함께 문헌기록을 증시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순수한 연문화 유물이 출토된다고 여겨지는 유적은 대부분 기원전 3세기 이후로 편년된다. 기원전 4세기설은 고고자료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대를 설정한 것인데, 연구자들마다 다른 기준으로 관련 유적의 연대를 설정하거나, 어느 수준의 연문화 관련 유적을 연나라의 진출 증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문

* 투고: 2020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25일

1 裴眞永, 2003, 「燕昭王之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裴眞永, 2005,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 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 『中國史研究』 36.

2 石川岳彦, 2017, 『春秋戰國時代燕國の考古學』, 雄山閣.

3 조진선, 2011, 「동북아시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편년의 열쇠」, 『한국고고학보』 제80집; 오강원, 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 遺蹟의 諸類型과 燕文化와의 관계」, 『韓國上古史學報』 71.

제가 있다. 가령 기원전 4세기대 중국 동북지역의 연문화 요소를 상호 교류의 결과⁴로 보는 관점과 연문화의 직접적인 진출의 결과⁵로 보는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토착계 유물과 공반되더라도 다수의 연문화 유물이 부장된다면 이미 연나라가 동북지역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교류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서 관점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위의 문제들은 당시 연나라와 중국 동북지역, 특히 요서지역 토착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당시의 사회상을 어떻게 그려내고 해석할 것인지로 직결된다.

결국 이러한 논쟁의 가장 큰 원인에는 연나라의 물질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무덤이나 생활유적에 대한 정치한 분석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연나라 물질문화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모두 동일 시기에 출현한 것인지, 우리가 연나라 물질문화로 보는 것이 진짜로 연산이남 연나라에서 또는 연나라 출신 집단에 의해서 제작된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연문화가 언제 출현하여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별·시기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고 당시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해당 연문화 유적의 시간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II장에서는 연문화와 관련된 주요 유적의 시간성과 특징에 대해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이후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개과정을 재구성하는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III장에서는 요서지역을 일정 지역으로 구분한 후 지역별 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핀다. 기 연구를 참고하면 지역별로 연문

4 이후석, 2015,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제 28집; 이후석,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제 94집; 襄炫俊, 2017b, 「春秋戰國시기 燕文化의 중국동북지역 확산과 토착집단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7.

5 石川岳彦, 2017, 앞의 책.

화의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⁶ 유의미한 공간구분 속에서 전개 과정을 살피는 것이 요서지역의 연문화의 특징을 드러내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IV장에서는 요서지역 연문화의 출현배경을 고고자료와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살펴볼 것이다.

II. 주요 유적의 시간성 검토

1. 건창 동대장자 유적⁷

동대장자 유적은 지금까지 총 47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발굴된 무덤자료가 모두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무덤은 어느 정도 정식으로 보고된 상태이다. 묘제는 토광묘와 봉석묘[封石墓, 적석목관(곽)묘]를 기본으로 하며 십이대영자문화와 관련된 토착계 문화와 중원계와 관련된 연문화 유물들이 주요 부장품을 구성한다.⁸ 출토된 연문화 관련 유물을 보면, 청동예기는 M5에서 청동 돈(敦),

-
- 6 배현준, 2018, 「전국 연의 동진과 철기의 확산」, 『동북아시아철기문화연구의 새로운 움직임』, 역사공간.
- 7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a,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2001年發掘簡報」, 『考古』2014-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b,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2002年發掘簡報」, 『考古』2014-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a,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M40的發掘」, 『考古』2014-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b,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M47的發掘」, 『考古』2014-1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局, 2015,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0年發掘簡報」, 『文物』2015-11;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5,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3年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18; 張依依, 2016, 「東大杖子墓地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于佳靈, 2018, 「東大杖子墓地葬制初步考察」,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王騰飛, 2019, 「東周燕墓再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지도 1 요서지역 연문화 관련 주요 유적 분포도

M11에서 청동 정(鼎), 호(壺), 제량호(提梁壺), 두(豆), 반(盤), 이(匱), M12에서 토기 호, M16에서 청동 둔, M28에서 청동 두, M32에서 청동 정, 호, 둔, M37에서 청동 둔, M45에서 청동 정, 호, 두, 준(樽), 반, 이 등이 출토되었으며, 토제예기는 M5에서 토기 호, M20에서 토기 두, M34에서 토기 호, M20, M44, M46 등에서 토기 두, M40에서 토기 정, 호(원호, 방호), 두, 소구호(小口壺), 궤(簋),

- 8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이청구,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 연구의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이후석, 2016, 앞의 글.

반, 수(盞), 대류관(帶流罐), 등잔(盞), 력(曆) 등이, M47에서 토기 정, 호(방호), 반, 이, 수, 우준(牛尊)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 M42에서는 생활토기인 연식부(燕式釜)가 출토되기도 하였다.⁹ 이들 연문화의 청동예기나 토제예기가 부장되는 무덤은 토착계의 토기류나 말기 비파형동검 또는 초기 요령식 세형동검이 공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이들 무덤군의 시간성은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검토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합일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주요 유물의 구체적인 시간성을 바탕으로 무덤의 연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동예기

청동 돈과 두는 전형적인 연문화의 것인데, M16 출토 돈은 북경(北京) 중조보(中趙甫),¹⁰ 천서(遷西) 대흑정(大黑汀) M1,¹¹ 당산(唐山) 가각장(賈各莊) M16¹² 출토품과 기형, 문양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이들은 대체로 전국전기로 편년된다.¹³ 반면 M37 출토 돈은 기형상으로는 앞의 것과 동일하지만 측면 환형 파수가 배신과 뚜껑에 대칭되게 부착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기형의 돈은 산서 장치(長治) 분수령(分水嶺) M12¹⁴에서 출토된 바 있고, 문양은 M16 출토품과 차이가 있다. M37 출토 돈은 뚜껑 정수리 부분에는 원형 문양대 안에 3개의 운문(雲文)이 배치되어 있으며, 동체의 삼각형 문양대 내 변형 수면문(獸面文)은 위아래, 좌우가 분리된 세련된 형태이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삼

9 간보가 아닌 별도의 학위논문을 통해 발표된 미보고 유물은 이 글의 분석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하되, 논의 전개상 필요시 일부 유물은 포함하였다.

10 程長新, 1985, 「北京市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 1985-8.

11 顧鐵山·郭景斌, 1996, 「河北省遷西縣大黑汀戰國墓」, 『文物』 1996-3; 唐山市文物管理所, 1992, 「河北省遷西縣大黑汀戰國墓出土銅器」, 『文物』 1992-5.

12 安志敏, 1953, 「河北省唐山賈各莊發掘報告」, 『考古學報』 1953-6.

13 배현준, 2015, 「동주시기 연나라와 동대장자 유적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 『白山學報』 103.

14 山西省考古研究所·山西博物院·長治市博物館, 2010, 『長治分水嶺東周墓地』,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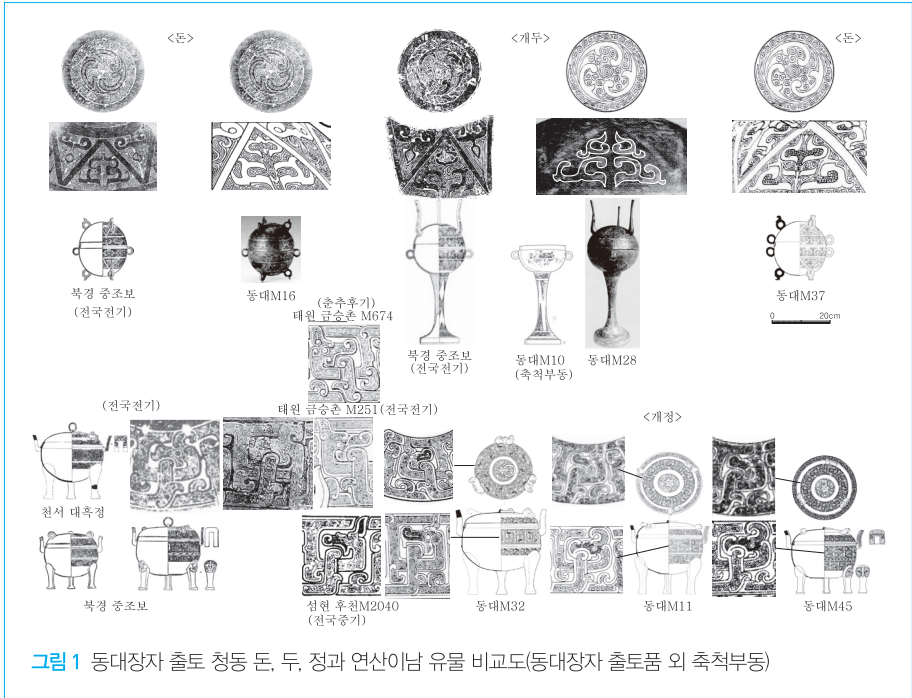


그림 1 동대장자 출토 청동 돈, 두, 정과 연산이남 유물 비교도(동대장자 출토품 외 축척부동)

각형 문양 구획 내의 변형 수면문이 위아래, 좌우가 분리된 형태는 M28 출토 두의 문양에서도 볼 수 있다. M28 출토 두는 대각의 문양대가 천서 대흑정 M1이나 북경 중조보에서 상단, 중단, 하단의 3단 문양대에서 중단이 사라진 2단 문양대로 변화된 것이다. M37과 M28은 문양 구성에서 M16이나 기존의 연산이남지역에서 발견된 청동 돈, 두보다 늦은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고,¹⁵ 장치 분수령 M12의 연대를 고려하여 전국중기로 편년할 수 있다(그림 1).

이 외에 M32와 M5에서도 청동 돈이, M11에서 청동 두가 출토되었지만 전형적인 연문화의 청동 돈, 두와는 차이가 있다. M11 출토 두의 배신과 대각은 전형적인 전국전기 연문화 두의 특징을 보이지만 개부의 문양과紐(紐)의 형태

15 裴炫俊, 2016, 「東周燕國銅敦·豆之年代辯微」, 『考古與文物』 2016-2.

는 상당히 이질적이다. M5 출토 돈의 전체적인 문양은 초문화에서 유행하는 것으로 석천(浙川) 화상령(和尚嶺)¹⁶이나 섬현(陝縣) 후천(後川) M2041¹⁷ 출토 유개호 표면의 형태와 거의 동일하다. 한편 돈의 동체부 문양이나 개부의 삼각형 변형 운문은 북경 회유성북 출토 개원호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회유성북 개원호는 기형이나 문양이 전국전기 섬현 후천 M2041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대체로 전국전기로 편년할 수 있다(그림 2).

청동 정은 M32, M11, M45에서 출토되었다. 개정으로 동체와 뚜껑에 용문(龍文)이 새겨져 있다. 기형은 기본적으로 천서 대흑정 M1과 북경 중조보 출토 정과 거의 동일하다. 문양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M32 개정의 동체와 뚜껑, M11, M45 개정의 뚜껑에 새겨진 용문은 용의 뿔이 곧게 뻗어 있는 형태로 산서 태원(太原) 금승촌(金勝村) M674,¹⁸ M251,¹⁹ 하남 섬현 후천 M2040 등에서 확인된다. 비교 무덤의 연대는 각각 춘추후기, 전국전기, 전국전기의 늦은 단계 또는 전국중기로 편년된다.²⁰ 한편 M11, M45 개정의 동체에 새겨진 용문은 뿔이 휘어진 형태로 북경 중조보, 천서 대흑정 M1 출토품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개정의 기형과 문양을 고려하면 M32 출토품이 제일 이르고, M11, M45는 대체로 비슷한 시기로 판단된다(그림 1).

청동 호는 종류가 다양한데, 개원호, 무개원호, 제량호로 구분 가능하다. 개원호부터 살펴보자. M32 출토 개원호는 뚜껑에 운형(雲形)의紐가 3개 부착되어 있고, 동체는 5개의 문양대 속에 ‘C’자형 용문이 뺨뺨하게 채워져 있다. 이러

16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浙川和尚嶺與徐家嶺楚墓』, 大象出版社.
 17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4, 『陝縣東周秦漢墓』, 科學出版社.
 18 李建生, 2012, 「輝縣琉璃閣與太原趙卿墓相關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 2, 6~42쪽.
 19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96, 『太原晉國趙卿墓』, 文物出版社.
 20 이하 청동예기의 편년은 盧國權(2019)의 연대를 따랐으며, 의견이 다를 경우 따로 참고문헌을 명기하였다. 盧國權, 2019, 『東周青銅容器譜系研究(上)』, 上海古籍出版社.

한 ‘C’자형 용문은 춘추후기에 주로 유행하지만, 전국시기에도 일부 지속된다. 이와 유사한 기형과 문양 구성은 전국전기로 편년되는 하남 낙양(洛陽) 서공구(西工區) M2717²¹ 출토 제련호에서 확인 가능하지만 동최대경의 위치는 M32 출토품이 서공구 M2717보다 다소 상단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시기차가 있을 수 있다. M11에서는 M32와 유사한 개원호가 출토되었는데, 동체 전면과 뚜껑 부분의 문양은 전혀 다르다. M11 출토 개원호는 동체 전면을 ‘工’자문을 이용하여 6개의 문양대로 나누고 각 문양대에 봉조문(鳳鳥文) 및 용문, 사슴문(鹿文) 등을 새겨 넣었고, 뚜껑에는 변형 권운문(卷雲文) 등이 확인된다. 이러한 문양이 시문된 개원호는 초문화권에서는 춘추시기부터 유행하는 것으로 초문화권 이외 지역에도 간간히 확인되며, 춘추후기 또는 전국전기로 편년되는 하남 석천 화상령 M2, 전국전기로 편년되는 섬현 후천 M2041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M11 개원호는 동최대경이 중단에 위치한다는 점과 동체 위에서 아래로 네 번째 문양이 단독 용문이 아닌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얽혀 있는 형태의 문양이라는 점에서 산둥 임치(臨淄) 신점(新店) M2²² 출토 개원호와 더 유사하다. 동최대경은 여전히 다소 중상단에 위치하지만 동체의 문양과 뚜껑의 문양은 동대장자 M11 개원호와 동일한데, 보고서는 전국전기로 편년하고 있지만 공반유물의 시간성을 고려할 때 전국중기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²³ M11 출토 제련호는 소형 호 2개가 연결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제련호는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없어 편년을 내리기 어렵지만 호 자체의 형태와 문양 구성만 놓고 본다면 전국중기로 편년되는 하남 낙양 서공구

21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中州路(西工段)』, 科學出版社.

22 王會田, 2013, 「山東淄博市臨淄區辛店二號戰國墓」, 『考古』 2013-1.

23 임치 신점 M2에서 전국전기로 소급되는 청동예기가 많이 출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동 이는 주구의 형태가 위로 뺀 이른 시기의 것과 달리 저부와 평행하게 앞으로 뺀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청동 이는 형문 포산 M2, 강릉 망산 M1 등 전국중기로 편년되는 무덤에서 주로 출토된다. 따라서 임치 신점 M2의 중심 연대는 전국중기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盧國權, 2019,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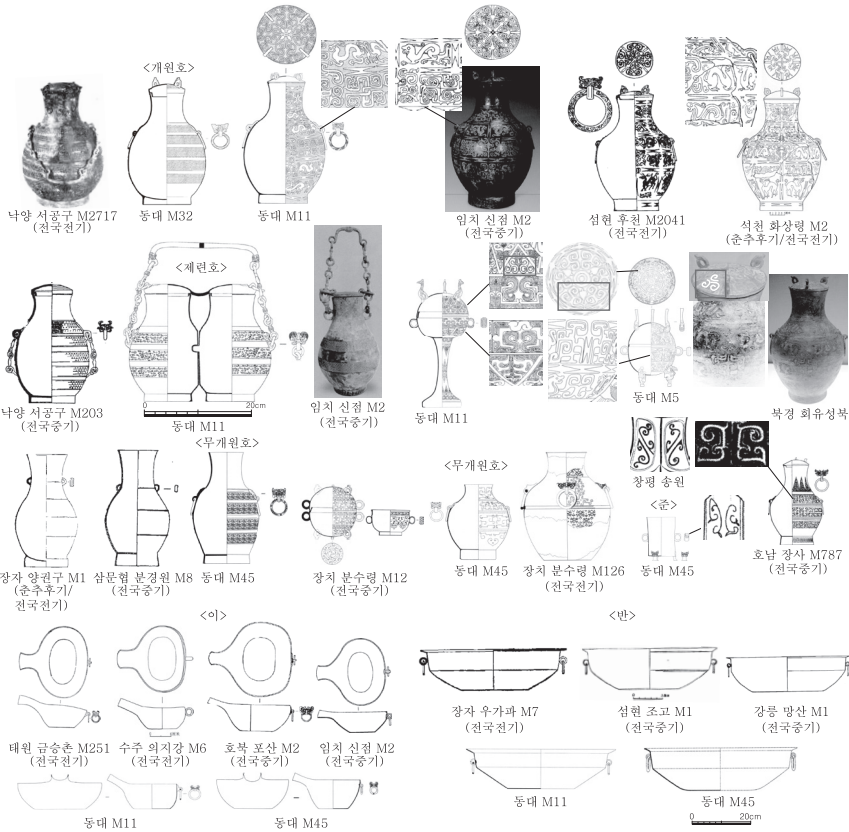


그림 2 동대장자 출토 청동 호, 반, 이와 연산이남 유물 비교도(동대장자 출토품 외 축척부동)

M203²⁴이나 산동 임치 신점 M2 출토품과 비교 가능하다. 이를 정리하면 M32 출토 개원호는 전국전기의 늦은 단계, M11 개원호는 전국중기를 중심연대로 볼 수 있다(그림 2).

무개호는 동체부와 경부가 긴 것과 납작한 것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24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앞의 책.

M45에서 출토되었다. 이 중 긴 것은 전국전기의 산서 장자(長子) 양권구(羊圈溝) M1²⁵과 전국중기의 하남 삼문협(三門峽) 분경원(分景園) M8²⁶과 비슷한 기형을 가진다. 다만 동대장자 M45 출토품은 동체에 4단의 문양대 내 용문이 채워져 있고, 어깨 부분에 포수(鋪首)가 부착된 점이 다르다. 납작한 기형의 무개호는 전체적으로 전국전기의 장치 분수령 M126 무개호보다 납작하고 표면의 문양은 전국중기의 분수령 M12의 청동 돈이나 주(舟)의 문양과 다소 유사하다.

M45 출토 청동 준(樽)은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기형을 찾을 수 없으나 손잡이의 문양이 호북 형문(荊門) 좌총초묘(左塚楚墓) M3,²⁷ 호남 장사초묘(長沙楚墓) M787²⁸ 출토 유개호 동체의 문양과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전국중기의 중반에서 후반에 해당한다.²⁹ 동시에 전국중기로 편년되는 북경 창평(昌平) 송원(松園) M1, 2³⁰ 토기 방호 문양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그 외 M11과 M45 출토 청동 이(匱)는 전국중기의 호북 형문(荊門) 포산초묘(包山楚墓) M2³¹와 비교 가능하고, 반(盤)은 전국전기·중기에 유행하는 형태와 유사하다(그림 2).

2) 토제예기

토기 호는 M5와 M34, M12에서 출토되었다. 연산이남 지역의 토기 호는 뚜껑紐의 변화에 따라 ‘환형 뉴 1개 → 환형 뉴 3개 → 운형 뉴 3개’의 변천과정을 거

25 山西省考古研究所, 1984, 「山西長子縣東周墓」, 『考古學報』 1984-4.

26 三門峽市文物工作隊, 2002, 「三門峽市分景園8號戰國墓」, 『中原文物』 2002-1.

27 湖北省文物研究所·荊門市博物館·襄荊高速公路考古隊 編著, 2006, 『荊門左塚楚墓』, 文物出版社.

28 湖南省博物館·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長沙市博物館·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長沙楚墓(上)』, 文物出版社.

29 裴炫俊, 2017b, 앞의 글.

30 蘇天鈞, 1969, 「北京昌平區松園村戰國墓葬發掘記略」, 『文物』 1959-9.

31 湖北省荊沙鐵路考古隊, 1991, 『包山楚墓(上)』, 文物出版社.



그림 3 동대장자 출토 토기 개원호와 연산이남 유물 비교도

치므로³² M34 출토품은 M12 출토품보다 이른다. M5 출토품은 뚜껑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동체의 호문(虎文)은 M34보다 이른 형태를 보인다.³³ 따라서 동대장자 M5, M34는 천서 대흑정 M2와 연하도 동침촌 M5 사이에 위치 지을 수 있으며, 대체로 전국전기와 전국중기 사이로 편년할 수 있다.³⁴ M12 출토품은 뚜껑에 다소 간략화된 운형 뉴를 가지고 있어 연하도 동침촌 M5, 당산 각각 장 M23과 비슷한 시기인 전국중기의 이른 단계로 생각된다(그림 3).

그 밖에 토제 무개두는 단각두와 장각두가 있는데, 단각두는 전형적인 연문화의 두로 보기 어렵고³⁵ 장각두는 전형적인 연문화 무개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무개 장각두는 M20, M44, M46 등에서 출토된다. 연산이남지역에서는 전국시기에 큰 기형 변화 없이 존속하기 때문에 시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M20에서 M11, M45와 비슷한 요령식동과가 출토된 점을 참고하면 대체로

32 裴炫俊, 2017a, 「燕下都 土製禮器 副葬무덤의 年代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배현준, 2019, 「연산이남 연문화 토제예기의 변천과 지역성」, 『선사와 고대』 61.

33 이후석, 2016, 앞의 글.

34 裴炫俊, 2017b, 앞의 글.

35 후술하겠지만 동대장자 무덤에서 출토되는 단각두는 연산이남 연문화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대각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단각두가 그러한데, 요동지역과 관련이 있다. 장각두를 축소한 듯한 단각두는 전형적인 연문화 단각두와는 차이가 있어 토착집단에서 연문화의 장각두를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M11, M45가 속한 전국중기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M40과 M47에서는 다량의 토제예기가 출토되었다. 앞서 살펴본 무덤들이 연문화 계통의 청동예기나 토제예기와 함께 토착계의 토기류나 무기류가 공반 되는 것과 달리 이 두 무덤에서는 그러한 토착계 유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연문화의 직접적인 파급으로 인해 조성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M40과 M47은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그림 4).

M40의 연대는 연하도 구녀대 M16의 연대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최근 연구자의 견해를 보면, 먼저 구녀대 M16을 전국후기로 편년하고 동대장자 M40의 토제예기 조합과 개두의 배신 형태, 원호의 조문(鳥文)과 활석 장식의 형태가 구녀대 M16과 거의 같기 때문에 동대장자 M40 역시 전국후기인 기원전 3세기 전반으로 편년하는 견해,³⁶ 구녀대 M16을 전국중기 후반의 늦은 단계로 동두성촌 M29는 전국중기 후반의 이른 단계로 보고 동대장자 M40 출토 개정의 동체 문양이 동두성촌 M29와 동일한 것을 근거로 기원전 4세기 후반 초경으로 편년하는 견해,³⁷ 구녀대 M16과 동두성촌 M29를 전국중기의 늦은 단계로 편년하고 동대장자 M40 및 M47 역시 동일한 시기로 편년하는 견해³⁸ 등이 있다.

그러나 M40을 연하도 동두성촌 M29나 구녀대 M16과 동일 시기로 볼 경우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최근 연나라 토제예기의 변천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개원호나 개방호, 반의 경우 시기가 늦을수록 굽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³⁹ M40 출토 개원호, 개방호와 반의 굽을 보면 확실히 동두성촌 M29나 구녀대 M16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사실 하북 승덕(承德) 난하진(灤河鎮) 전국무덤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다. 난하진 전국무덤에 부장된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 개방호의 굽이 구녀대 M16보다 훨씬 과장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난하진 전국무덤에서 공반된 연식력의 경우 전형적인 전국후기의 기형을 띠고 있어 전국중기로 편년될 가능성은 없으며, 동대장자 M40을 전국중기의 늦은 단계로 편년하는 연구자 역시 하북 난하진 전국무덤은

36 이후석, 2016, 앞의 글.

37 石川岳彦, 2017, 앞의 책.

38 王騰飛, 2019, 앞의 글.

39 배현준, 2019, 앞의 글.

전국후기로 편년하고 있다.⁴⁰ 신장두 M30의 방호 역시 비록 소형이지만 비율적으로 높은 굽을 가지고 있다. 또한 M40에서 출토된 다량의 활석제 장식품 중 원형과 방형 장식은 구녀대 M16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하트형과 용형 장식은 연하도 허량총 M8이나 신장두 M30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러한 하트형 장식과 용형 장식을 동시기 무덤의 계급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구녀대 M16 역시 허량총 M8이나 신장두 M30보다 낮은 등급으로 볼 이유가 없기에 성립하기 어렵다. 결국 허량총 M8과 신장두 M30은 전국후기~진한고체기의 시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하트형 장식이 부장된 M40은 구녀대 M16보다 늦으며 대체로 전국후기로 편년 가능하다(그림 4).

M47은 M40과는 달리 만듬새가 다소 거칠고 토제예기의 형태도 다소 이질적이다. 문양은 간략화되어 있으며, 토기의 소성온도가 낮고 채회(彩繪)는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는 무덤 주인의 신분 및 지위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M40보다 늦은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필자도 M40과 M47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를 가지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후술하겠지만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고려한다면 전국말~진한고체기로 편년하는 것이 안정적이다.⁴¹

이를 종합하여 각 무덤의 연대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전기: M16, M32

(M5, M34)

전국중기: M11, M12, M45, M28, M37, M20, M44, M46

전국후기~진한고체기: M40, M47

40 石川岳彦, 2017, 앞의 책.

41 IV장의 1절과 그림 11 참조.

2. 조양 원대자 유적⁴²

유적은 요녕성 조양시 조양현 원대자촌 내 대릉하 우안의 대백산(大栢山) 북편에 위치한다. 서남쪽 약 1km 지점에는 십이대역자 유적이 위치한다. 유적은 서주시기부터 오호십육국시대까지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 무덤군과 전국시대~서한대 유구들이 발견되는 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유적에서는 ‘유(柳)’자와 ‘유성(柳城)’자가 찍힌 한대(漢代)의 기와편이 다량 발견되고 81WM29 무덤에서 ‘유성(西城)’명 도량기(陶量器)가 출토되어 전국시기부터 성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무덤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크게 10개의 그룹으로 나뉘며 보고서는 이를 갑류(甲類)·을류(乙類)·병류(丙類)·정류(丁類)·무류(戊類)·기류(己類)·경류(庚類)·신류(申類)·임류(壬類)·계류(癸類) 무덤으로 총 192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다. 이 중 토착계는 갑류·을류·병류·정류 무덤이 해당하고, 연문화 계통은 무류무덤을 중심으로 정류무덤 일부와 기류 무덤, 경류무덤 일부가 포함된다. 연문화의 토제예기가 다량으로 부장되는 무류 무덤을 중심으로 하되 서한 이전인 진한교체기의 기류무덤과 연식부가 출토되는 경류무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류무덤

무류무덤은 연문화의 토제예기가 부장되어 있어 이 지역에 연문화가 언제부터 출현하였는지에 대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보고서는 무류무덤을 전국중기로 편년하고 있지만 기원전 3세기 초부터 조영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⁴³ 최근 연산이남 지역의 연문화 토제예기에 대한 고고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연문화 토제예기의 시간성과 지역성이 어느 정도 밝혀진 상태여서⁴⁴ 이를 참

42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台子』, 文物出版社.

43 조진선, 2011, 앞의 글, 141~142쪽

44 裴炫俊, 2017a, 앞의 글; 배현준, 2019, 앞의 글.

고하여 원대자 연문화의 시간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류무덤은 총 19기로 모두 토광목관곽묘이다. ‘개정+개두+무개두+개호+소구호+반+이’의 토제예기를 기본조합으로 하며 동대구와 소석판, 연도폐 등이 공반된다. 그런데 무류무덤의 토제예기는 연문화 계통은 맞지만 연하도로 대표되는 연산이남지역의 연문화 토제예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만들새가 다소 거칠기도 하지만, 연산이남지역에서는 주로 개정의 뚜껑에서 보이는 동물장식이 개정뿐만 아니라 개호나 개두, 소구호의 뚜껑에도 보편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반(盤)의 경우 저부에 3개의 다리가 부착되어 있는 점은 연산이남지역의 연문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형이다.

따라서 무류무덤의 시간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개원호 개부의 파수 형태와 동물장식의 출현시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대략의 시간성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연산이남지역에서 개원호의 뚜껑은 뉴의 형태에 따라 A식~E식으로 구분된다.⁴⁵ 이를 기준으로 무류무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개원호 A식 개부 특징을 가진 M11은 1그룹, 개원호 B식 개부 특징을 가진 M35, M37, M60, M76, M111은 2그룹, 소구호 B식 개부 특징을 가진 M8은 3그룹, 개정 Ca식 특징을 가진 M1, M6은 4그룹, 개원호 Dc식 특징을 가진 M3, M4, M31은 5그룹, 그 외 무덤은 6그룹으로 구분 가능하다.

개원호 A식과 B식 개부는 전국전기에 유행하기 때문에 1그룹과 2그룹은 전국전기, 소구호 개부 B식은 전국중기에 출현하기 때문에 3그룹은 전국중기, 개정 Ca식과 원개정 Dc식 개부 역시 전국중기에 유행하기 때문에 4그룹과 5그룹도 전국중기로 볼 수 있다. 나머지 6그룹은 앞의 그룹 출토 토제예기와는 다소 이질적인 형태를 보이며, 줄곧 유행하던 동물형·막대형 뉴가 거의 사라지고 삼족반과 이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류무덤 중 제일 늦은 전국후기로 판단된다. 또한 줄곧 유행하던 동물형·막대형 뉴가 거의 사라지고 삼족반과 이는 더

45 배현준, 2019, 앞의 글.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⁴⁶ 따라서 무류무덤 중 제일 늦은 전국후기로 판단된다.

한편 무류무덤의 특징인 삼족반은 연산이남 연문화 지역에서 볼 수 없고, 하남성 북부의 휘현(輝縣) 유리각(琉璃閣) M104와 M108에서 확인된다.⁴⁷



그림 5 원대자 무류무덤, 기류무덤, 경류무덤 출토 유물과 주변 유물 비교도

46 배현준, 2017a. 앞의 글, 138쪽.

47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編著, 1956, 『輝縣發掘報告』中國田野考古報告集 第1號, 科學出版社.

M108은 춘추후기로, M104는 전국전기로 편년되며,⁴⁸ 원대자 출토 삼족반의 형태는 이들과 비슷하지만 다리는 더 길어진 형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삼족반이 부장되는 무류무덤은 전국전기부터 출현한 것으로 보는 데 큰 무리는 없으며, 구체적으로는 전국전기의 늦은 시기부터 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

2) 기류·경류 무덤

기류무덤은 M119, 81WM29, 81WM31 총 3기가 있다. 81WM29, 81WM31은 연하도의 일상토기인 토기 준(罍)이 부장되고, 공반된 개두의 형태는 연산이남 지역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M119에서 출토된 표면에 채회(灰)가 있는 산두호(蒜頭壺)는 진대(秦代)의 전형적인 산두호와 유사하다. 그리고 공반된 옥인(玉印)에는 ‘장고(張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문자보다 늦은 형태라고 한다. 기류무덤은 대체로 진한교체기를 중심으로 하되 상한은 전국후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⁹

경류무덤은 4기로 M24, M55, M75, M131이 해당되며 모두 옹관묘이다. 출토된 연식부는 저부가 비교적 둥글고, 외면의 승문이 동체 상부와 하부가 방향을 달리하여 타날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체로 전국후기 이전에 유행하는 것인데, 선뜻 전국중기나 전국전기로 편년하기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그 이유는 M75와 중복 관계를 가지는 정류무덤 M88에서 출토된 토기는 흘구연⁵⁰을 가지고 있어 전국중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렵고, 도면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고서에 의하면 M131 출토 대형 옹(瓮)이 천진 보저현(寶坻縣) 우도구(牛道口) M24⁵¹ 출토품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우도구 M24에서는 전형적인 전국후기의

48 張辛, 2002, 『中原地區東周陶器墓葬研究』, 科學出版社.

49 裴炫俊, 2017b, 앞의 글, 138~139쪽

50 정류무덤은 이중구연점토대토기가 주를 이룬다. 이중구연의 흘구연화는 전국후기부터 보인다.

51 天津市歷史博物館考古隊·寶坻縣文化館, 1991, 「天津寶坻縣牛道口遺址調查

연식부가 공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토기가 다수 출토된 원대자유적의 상한이 전국후기보다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경류무덤은 대체로 전국후기 또는 그보다 늦은 진한고체기의 시간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객라심기 철영자 유적⁵²

내몽골자치구 적봉시(赤峰市) 객라심기(喀喇沁旗) 서교진(西郊鎮) 궁가영자촌(宮家營子村) 철영자(鐵營子) 마을에 위치한다. 무덤 59기가 확인되었으나, 5기를 제외한 나머지 54기는 이미 도굴되었고, 약 2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윤제(輪製)와 수제(手製)가 있고 무문이 주를 이룬다. 일부 승문과 사선문이 시문된 것도 있으며, 니질도와 협사도 두 종류가 있다. 표면 색은 회색, 갈색 두 종류가 있으며, 갈색은 회갈색, 흑갈색, 황갈색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일부 토기는 표면에 마연을 하였다.

무덤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10열 정도 배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장방형 토광묘이며, 석판묘는 소수이다. 그리고 사람을 순장하는 현상이 있으며, 대·중형 무덤은 동물 머리나 다리를 순장하기도 한다. 피장자는 성년에서 아동까지 다양하다. 무덤은 크기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중형 무덤이 제일 많다. 이 중 M23에서 다량의 연문화 및 중원계 청동예기가 출토되었다.

M23은 장방형 토광묘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굴되었고, 무덤의 잔존상태도 좋지 않은 편이다. 무덤 내부에는 이층대가 조성되어 있다. 무덤 내 교란된 부분에서 사슴, 말, 소, 개의 머리와 다리뼈가 수습되었다. 무덤 바닥의 요갱(腰坑)에서는 청동기 20점이 출토되었다. 호 2점, 돈 1점, 정 1점, 반(盤) 1점, 이 1점, 통

發掘簡報」, 『考古』 1991-7.

52 趙國棟 編著, 2014, 「喀喇沁旗西橋鐵營子戰國墓地」, 『赤峰古代墓葬』, 內蒙古文化出版社; 于文苙·張穎, 2015, 「赤峰西橋鎮戰國墓地的發掘」, 『赤峰學院學報』 36-8.

배(筒杯)⁵³ 2점, 이배(耳杯) 10점, 두(斗) 1점, 비(匕) 1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 금박편, 동도, 동단추, 화살촉, 석주(石珠) 등이 출토되었다.

청동 돈은 기형과 표면의 문양이 당산 각각장 M16, 천서 대흑정 M1, 북경 중조보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다. 청동 정은 형태와 문양이 북경 중조보 출토품과 유사하며, 이들은 모두 전국전기의 범위에 속한다. 청동 호는 개원호와 제련호가 있다. 제련호의 기형은 산동 임치 신점 M2 출토품과 비슷하고, 문양 구성은 하남 낙양 서공구 M203과 비슷한데, 모두 전국중기로 편년된다. 개원호는 동체와 경부가 전체적으로 길고, 뚜껑의 늪은 새 모양에 가까운 변형 운문이다. 전체적인 기형과 문양은 하북 용성(容城) 남양(南陽) 출토품⁵⁴과 거의 동일하며, 전국전기의 동대장자 M32 출토품보다 한 단계 늦은 형식으로 생각된다.

청동 이배는 평면 타원형의 배신 측면에 반타원형의 손잡이가 대칭되게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다. 주변 지역에서 발견되는 청동 이배는 소량이지만 타원형의 손잡이가 부착된 것과 장방형의 손잡이가 부착된 것으로 구분된다. 전국전기의 태원 금승촌 M251에서 타원형 손잡이가 달린 청동 이배가 출토된 바 있으며, 전국중기의 호북 조양시(棗陽市) 구련둔(九連墩) 초묘 M2⁵⁵에서 장방형 손잡이가 달린 이배가 출토된 바 있다. 역시 전국중기로 편년되는 호북성 강릉(江陵) 마산(馬山) M1⁵⁶과 전국후기의 산동 치박(淄博) 임치(臨淄) 상왕촌(商王村) M1⁵⁷에

53 보고문에는 고(觚)로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보고서에는 동일 기물을 통배(筒杯), 통형배(筒形杯), 투배(套杯)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배(筒杯)로 표기하였다.

54 容城縣文化館, 1993, 「河北容城縣南陽遺址調查」, 『考古』 1993-3; 容城縣文化館, 1982, 「河北省容城縣出土戰國銅器」, 『文物』 1982-3.

55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湖北棗陽市九連墩楚墓」, 『考古』 2003-7, 10~14쪽;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棗陽市文物考古研究所·棗陽市文物考古隊, 2018, 「湖北棗陽九連墩M2發掘簡報」, 『江漢考古』 2018-6, 3~55쪽.

56 보고서는 이 무덤이 기원전 340년~기원전 278년(진나라 장수 백기에 의해 도성 郢이 함락될 때까지)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체로 전국중기 후반에 해당한다.

57 은제 이배이다. 2점이 출토되었으며 각각 ‘四十年’, ‘卅一年’이라는 기년명이 새겨져 있다. 발굴자는 이를 진소왕(秦昭王) 40년, 41년으로 보고 기원전 265년과 기

서는 타원형과 장방형 손잡이가 부착된 이배가 공반된다. 철영자 M23 출토 이배의 손잡이 너비나 배신 바닥의 길이 등을 고려하면 태원 금승촌 M251과 강릉 마산 M1 사이에 위치 짓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배와 함께 통배는 청동예기 중 주변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기물이다. 이러한 통배는 중국 내지의 몇몇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호북 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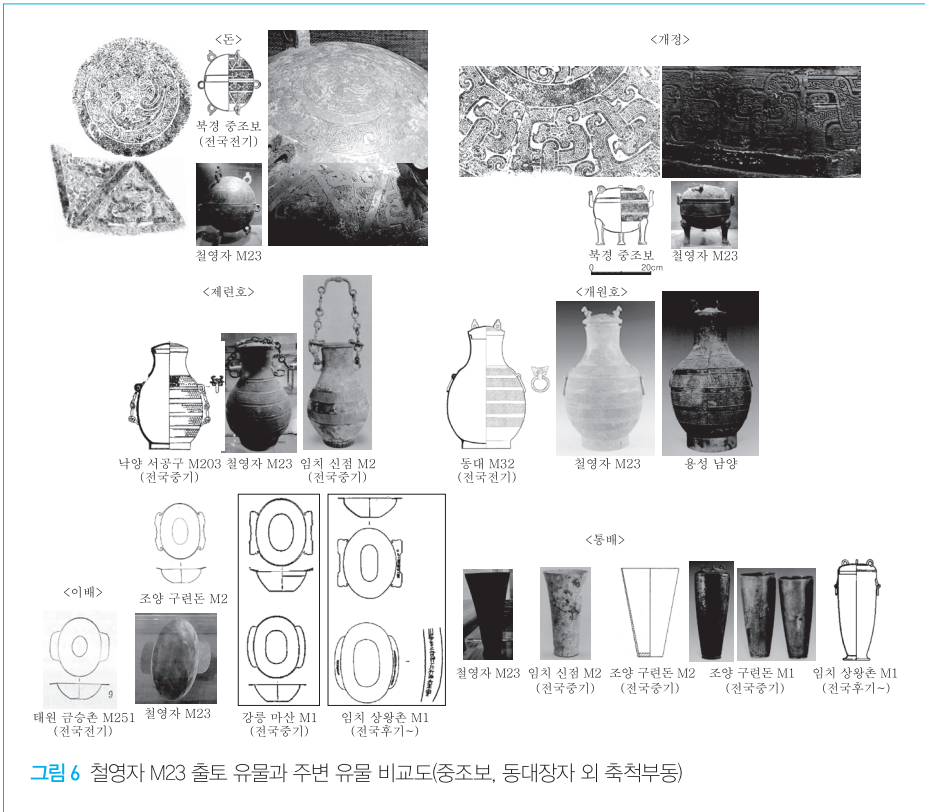


그림 6 철영자 M23 출토 유물과 주변 유물 비교도(중조보, 동대장자 외 축척부등)

원전 266년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무덤은 그 이후로 진이 제를 멸망하기 전인 기원 전 266~기원전 221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淄博市博物館, 1977, 『山東臨淄商王村一號戰國墓發掘簡報』, 『文物』 1977-6.

구련돈 M1,⁵⁸ 산동 임치 상왕촌 M1 출토품은 상부에 뚜껑이 결합된 형태인데 각각 전국중기와 전국후기~진한고체기로 편년된다. 철영자 M23 출토품은 약한 굽이 형성되어 있고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는 사선을 그리며 위로 올라가는 형태여서 이들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산동 임치 신점 M2에서 출토된 청동 통배는 철영자 출토품과 거의 동일하다. 대체로 전국 중기로 편년된다(그림 6).

결국 M23은 전국전기의 청동 정과 돈이 부장되기는 하지만 다른 공반유물은 대체로 전국중기에 해당하여 정과 돈이 전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무덤의 연대는 전국중기로 보는 것이 안정적이다.

Ⅲ.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개와 특징⁵⁹

1.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개

요서지역은 전통적으로 노로아호산을 기준으로 서쪽은 하가점상층문화 분포권, 동쪽은 십이대영자문화 분포권으로 구분된다.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개 역시 이러한 문화권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전개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노로아호산 일대 역시 앞의 두 지역과는 다른 양상이 확인되어 노로아호산 일대를 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노로아호산 이서의 영성, 적봉, 오한기 지역은 요서 북부로, 노로아호산 일대와 대능하 중상류역의 조양, 능원, 건평, 객좌 지역은 요서 중부로, 노로아호산 이동의 건창, 금주 지역은 요서 남부로 구분하여 연문화의 전개양상을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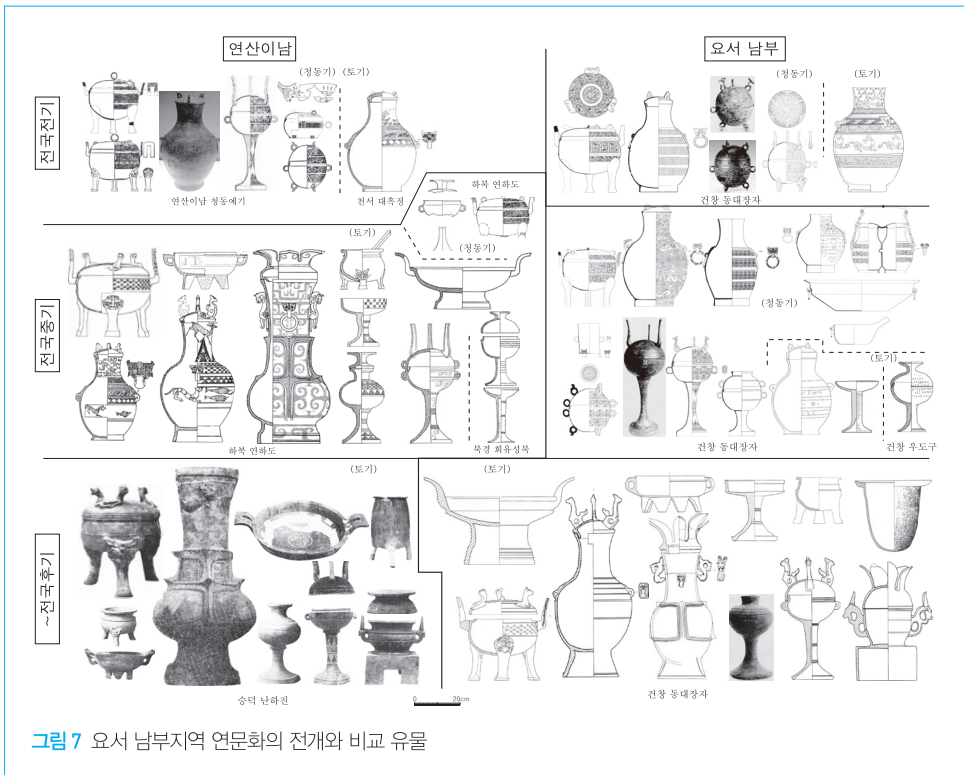
58 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 1985, 『江陵馬山一號楚墓』, 文物出版社, 96~100쪽.

59 이 장은 ‘배현준, 2017b, 「춘추전국시기 연문화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 집단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7과 배현준, 2018, 「전국 연의 동진과 철기의 확산」, 『동북아시아철기문화연구의 새로운 움직임』’의 내용을 기초로 보다 상세하게 구체화하였다.

1) 요서 남부지역(그림 7)

요서 남부지역은 전국전기(또는 전기의 늦은 단계)와 전국중기에 건창 동대장자 유적을 필두로 건창 우도구 유적 등에서 연나라 청동예기 및 기타 청동기류와 토제예기가 출현한다. 동대장자 유적의 경우 전국전기부터 연문화 또는 중원계 청동기류 및 토제 호가 토착의 단경호, 단각두, 말기 비파형동검 등과 공반되어 청동기의 종류와 수량은 요서 중부에 위치한 춘추후기의 남동구유형(南東溝類型)보다 증가했지만 토착계 유물 속에서 연문화 유물이 공반되는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국중기가 되면 M11, M45처럼 초기 세형동검과 요령식 동과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풍부한 청동예기와 거마구류, 공구류, 무기류, 장신구류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전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 시기 연산이남지역은 무덤의 부장품이 청동예기에서 토제예기로 거의 전환된 상태이다.⁶⁰ M11과 M45에 부장되는 청동예기의 종류와 수량은 전국전기 단계의 대표적인 청동예기 부장무덤인 천서 대흑정 M1이나 북경 중조보보다 훨씬 풍부하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문양을 가진 청동 호, 돈, 두 등이 출현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특히 동대장자 M11 출토 청동 두 뚜껍의 문양과 새머리 장식, M5의 청동 돈의 전체 문양과 뚜껍의 막대형 장식은 연문화 지역에서 아직까지 발견된 예가 없다. 한편, 이들 예기에 새겨진 문양 중 삼각형 형태의 변형 운문은 상당히 특색 있는 문양인데, 전형적인 초문화 청동예기인 M11 출토 개원호 뚜껍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양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들이 같은 계통에 속하며 제작지 역시 비슷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외 M45의 무개원호는 삼진지역에서 유사한 기형의 청동예기를 찾을 수 있어 전국중기 동대장자 유적에서는 다양한 연원을 가진 청동예기가 출토됨을 알 수 있다.⁶¹ 동시에 연문화 토제예기 중 이전 단계의 토기 호가 지속되고 새롭게 장각의 두형토기가 동대장자와 우도구 등지에서 토착계 토기 및 초기 세형동검과 공반된다. 요서 남부지역은 토착의 비파형동검문화를 유지한 상태에서 연문화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후기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본적으로 토착적인 요소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건창 동대장자 M40의 경우 동물 순생 현상이 확인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연산이남 연하도 구녀대 M16이나 승덕 난하진 전국무덤 출토품과 비견될 만큼 전형적인 연나라 토제예기가 다량 부장된다. 그 외에 M42에서는 생활토기인 연식부 옹관묘로 사용되어 상위 계층과 함께

60 물론 연하도 서관성촌 M14에서 청동 정, 두가 부장되고, 능원 삼관전자에도 청동정이 부장되며, 기타 출토 정황이 불확실한 채집 청동예기 중 전국중기의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연나라의 도성인 연하도에서는 서관성촌 M14를 기점으로 토제예기가 청동예기를 대체한다.

61 이러한 다양한 연원을 가진 청동예기는 동대장자 유적 집단이 독자적인 관계망을 통해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시 하북성의 연나라를 통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위 계층의 연나라 집단이 진출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호로도시(葫蘆島市) 소황지고성(小荒地古城)⁶² 등지에서 생활유적이 출현한다. 소황지고성은 전국후기 이전인 2기 유존에 이중구연점토대토기 등의 토착유물과 연문화의 장각두가 공반되지만, 전국후기 이후인 3기 유존에는 연문화의 생활유물 일색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이 시기 요서 남부지역에 연문화의 전면적인 진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요서 중부지역(그림 8)

요서 중부지역은 춘추후기부터 연문화 청동예기가 등장한다. 객좌(略左) 남동구(南東溝) 유적이 유일한데, 청동 궤와 차축두, 말재갈, 동대구, 중원식 동과가 각각 출토되었다. 동시에 비파형동검, 가오리형 장식, 렴구발(斂口鉢) 등이 공반되어 순수한 연문화 무덤으로 볼 수 없으며, 비파형동검문화 집단과 연문화 집단의 교류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전기부터는 토제예기 부장무덤이 등장하는데, 객좌 미안구와 조양 원대자 무류무덤이 대표적이다. 객좌 미안구(眉眼溝) M1⁶³ 출토품과 채집품을 보면, 연하도 및 북경지역에서 출토된 것과 동일한 것도 있지만 지역색을 지닌 것도 존재한다. 조양 원대자 무류 1, 2그룹 무덤은 연산이남 연문화의 토제예기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기형이나 문양 등에서는 차이점도 있어 지역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그중 무개두는 북경, 하북 동북부지역에도 자주 보이고, 삼족반은 연산이남 연문화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토제 개정과 함께 삼진(三晉)지역과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원대자 무류무덤은 연문화 외에도 삼진지역의 영향을 일정 정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중기에 해당하는 조양 원대자 무류 제3, 4, 5그룹의 토제예기는 동시기

62 吉林大學考古系·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 「遼寧錦西市邵集屯小荒地古城址試掘簡報」, 『考古學集刊』第十一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63 朝陽地區博物館·喀左縣文化館, 1985, 「遼寧喀左大城子眉眼溝戰國墓」, 『考古』19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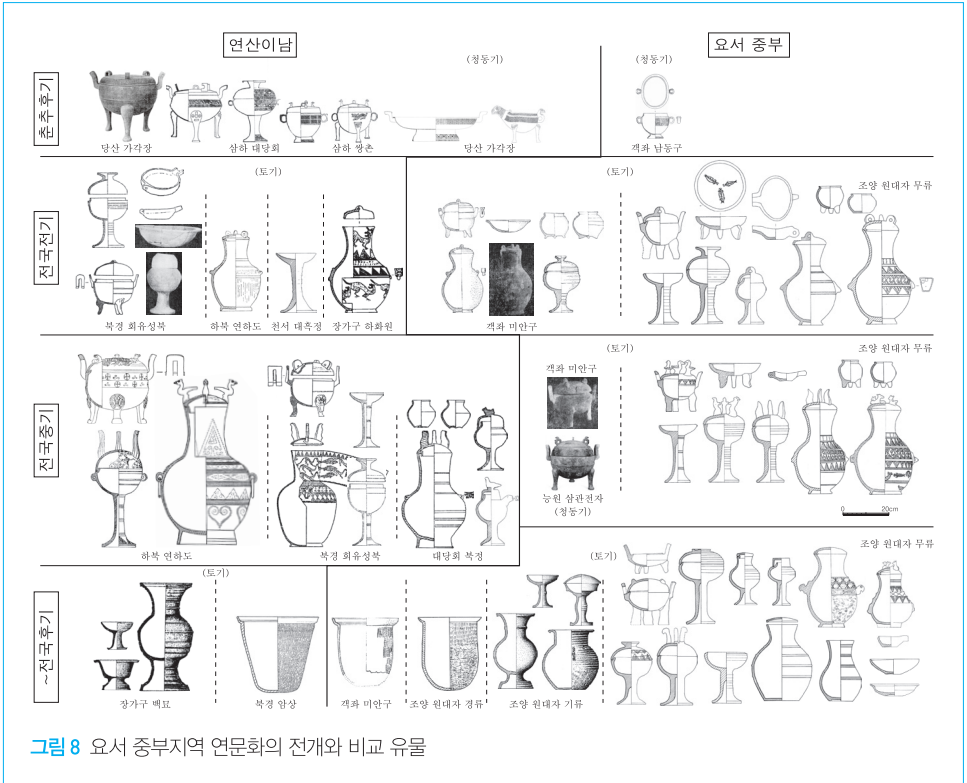


그림 8 요서 중부지역 연문화의 전개와 비교 유물

연산이남지역에서 정, 개두, 소구호, 개원호 등의 뚜껑의 뉴 형태가 정형성 없이 정, 개원호, 개두, 소구호 뚜껑에 장식된다. 이는 원대자 무류무덤이 비록 지역성을 가지기는 하지만 연산이남 연문화의 변천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한편, 능원(凌源) 삼관전자(三官甸子)⁶⁴ 출토 청동 개정은 연산이남에서 발견되는 토제 개정과 유사하다. 북부와 개부에 바퀴 모양의 문양이 반복적으로 음각되어 있는 점이 특징인데, 이러한 특징은 연하도 해촌(解村) M2 토제 개정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동예기와 동과, 동도, 뉴종(鈕鐘) 외의 부장품은

64 遼寧省博物館, 1985, 「遼寧凌源縣三官甸子青銅短劍墓」, 『考古』 1985-2.

모두 토착계 유물이어서 역시 비파형동검문화 집단이 연문화 집단과 교류 속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전기와 전국중기 객좌 미안구와 조양 원대자는 연문화 토제예기가 출토되는 무덤이지만, 정작 둘 사이에 기형이나 유물 조합의 공통성을 거의 보이지 않아 연문화의 확산이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후기에는 청동예기가 더 이상 출토되지 않으며, 토제예기는 조양 원대자 무류 6그룹 무덤에서만 지속된다. 그러나 토제예기의 형태는 이전 시기와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변한다. 또한 기류 무덤군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전술한 것처럼 일상토기가 예기화하여 부장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기류무덤의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하한은 원대자의 연문화 무덤 중 제일 늦은 시기인 진한고체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연식부와 웅 같은 생활토기를 이용한 옹관장과 생활유적이 출현한다. 능원 안장자고성(安杖子古城),⁶⁵ 건평(建平) 객라심하동(喀喇沁河東),⁶⁶ 조양 원대자 유적, 원대자 경류무덤 등이 있으며 역시 대체로 연산이남 연문화 생활유적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다만 원대자 경류무덤에서 출토되는 연식부는 연산이남의 전형적인 연식부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원대자의 경류무덤의 승문은 복부 상단과 하단의 방향이 다른데, 연산이남지역의 전국후기 연식부는 기본적으로 복부 상단에서 하단까지 수직 방향으로 승문이 시문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후기부터 요서 중부지역에 연산이남지역과 동일한 생활유적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연문화의 전면적인 진출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양 원대자 무류무덤의 경우 전국후기에는 오히려 이전 단계의 연문화적인 요소가 약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연나라 이외의 주변지역 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된다.

65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遼寧凌源安杖子古城址發掘報告」, 『考古學報』1996-2.

66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組, 1983, 「遼寧建平縣喀喇沁河東遺址試掘簡報」, 『考古』1983-11.

3) 요서 북부지역(그림 9)

요서 북부지역은 요서 남부와 요서 중부보다 늦은 전국중기부터 연문화 및 중원계 청동예기를 중심으로 한 청동기류가 등장한다. 현재 적봉 서교 철영자 유적 M23이 대표적인데, 이들 청동기는 청동 돈이나 정처럼 전형적인 연문화의 청동기가 있긴 하지만, 청동 통배, 제련호, 이배처럼 연문화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이들 청동기가 연나라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그 외 다른 지역과 독자적인 교류에 의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류를 제외한 토기류는 기본적으로 토착계에 속하며,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요서 남부의 건창 동대장자처럼 토제예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동시에 연계 토제예기가 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오한기(敖漢旗) 오란보랍격(烏蘭寶拉格),⁶⁷ 영성 소흑석구(小黑石溝)⁶⁸ 등지에서 연문화 토제예기가 출현한다. 그런데 이 토제예기들은 연문화의 전형적인 토제예기와는 차이가 있다. 대체로 난하 중류 승덕지역과 강한 동질성을 가지며 중국 학계에서도 ‘모방 연식예기(仿燕式陶禮器)’⁶⁹로 불러 토착에서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국후기~진한고체기에는 영성 소흑석구와 적봉(赤峰) 홍산구(紅山區),⁷⁰ 정전자(箭亭子),⁷¹ 하북 위장(圍場) 동대자(東臺子)⁷² 등지에서 연계 토제예기가 출현한다. 이 중 소흑석구, 홍산구의 토제예기는 정, 호, 소구호의 개부에 부착된 파수가 극도로 과장되는 특징이 있다. 역시 승덕지역⁷³과 강한 동질성을 가진다. 이 중 위장 동대자나 적봉 정전자는 연문화의 일상토기가 부장되기 시작

67 郭治中, 2000, 「水泉墓地及相關問題之探索」, 『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68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編著, 2009, 『小黑石溝-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69 郭治中, 2000, 앞의 글.

70 張松柏, 1961, 「赤峰市紅山區戰國墓葬清理簡報」, 『內蒙古文物考古』 1961-1.

71 王兆軍, 1964, 「內蒙古昭盟赤峰市發現戰國墓」, 『考古』 1964-1.

72 圍場縣文物管理委員會, 1987, 「河北圍場東臺子戰國晚期至秦代墓地出土文物」, 『文物資料叢刊』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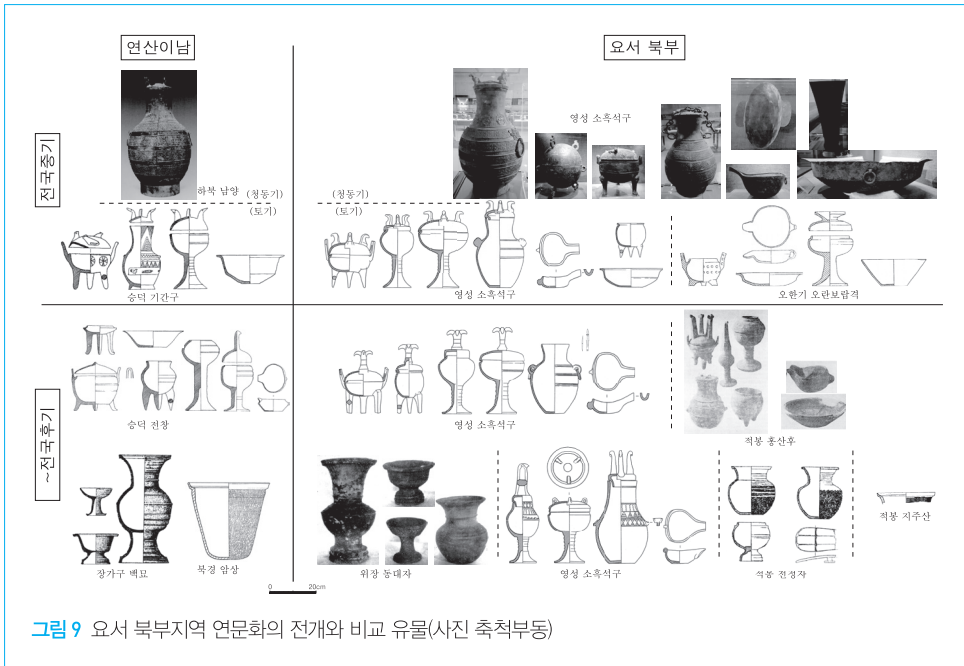


그림 9 요서 북부지역 연문화의 전개와 비교 유물(사진 축척부동)

한다. 예기 준과 함께 일상용 궤, 준, 단각두,⁷⁴ 분(盆) 등으로 구성되며, 그중 준과 궤의 굽이 과장되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하북 서북부의 장가구(張家口) 백묘(白廟),⁷⁵ 요서 조양 원대자 기류무덤에서도 확인된다. 동시에

- 73 李林·劉樸, 1990, 「承德縣西三家村·旗杆溝發現戰國墓葬」, 『文物春秋』 1990-3.
- 74 연하도의 예를 참고하면, 연문화에서 단각두는 대부분 생활유적에서 출토된다. 구녀대 M16과 신장두 M30에서 예기로서의 단각두가 부장되기는 하지만, 연산이남 연문화 토제예기 부장무덤에서는 보통 장각두가 부장되어 일반적인 양상은 아니므로 보인다. 따라서 전국후기 이후 요서 북부지역에서 출토되는 단각두는 일상용 토기가 예기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 75 張家區市文物事業管理所, 1985, 「張家區市白廟遺址清理簡報」, 『考古』, 1985-10.

요서 북부지역 전역에서 건평(建平) 수천(水泉),⁷⁶ 적봉 지주산(蜘蛛山),⁷⁷ 오한기 사도만자(四道灣子)⁷⁸ 등과 같은 생활유적이 출현한다.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연산이남지역의 생활유적 토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요서지역 연문화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서지역의 연문화는 단일하지 않고 지역별·유적별·시기별로 상사성과 상이성이 혼재한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연나라의 권역으로 여겨지는 연산이남지역 역시 연하도와 북경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천진지역, 하북 동북부지역, 하북 북부지역, 하북 서북부지역에서 출토되는 토제예기에 강한 지역성이 보인다.⁷⁹

요서 남부지역은 전국전기부터 청동예기가 소량 부장되다가 중기에는 다량 부장되고,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가 출토되는 반면, 요서 중부지역은 춘추 후기부터 청동예기가 출현하기는 하지만 한 두 점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와 지역성을 띠는 연문화 토제예기가 유적별로 분리되어 등장한다. 요서 북부지역은 전국중기부터 청동예기가 출현하며 모방 연식 토제예기가 등장한다. 즉, 요서 남부, 중부, 북부지역은 연문화가 출현하는 시점과 양상에 차이가 있고, 토제예기의 경우 기형, 문양, 부장조합에서 지역 간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월등한 것이다.

76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86-2.

77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9,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 『考古學報』, 1979-2.

78 邵國田, 1989, 「內蒙古敖漢旗四道灣子燕國“狗澤都”遺址調查」, 『考古』, 1989-4.

79 배현준, 2019, 앞의 글.

한편 청동예기는 요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집중 출토되는 양상이 간취된다. 당시 요서 남부와 북부의 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연산이남 연문화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두 지역 중에서도 남부지역에 보다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토제예기는 요서 남부, 중부, 북부지역에서 모두 확인되는데 요서 남부지역과 중부지역은 전국전기부터, 북부지역은 전국중기부터 출현하며 출현시점부터 전국후기까지도 지역적 차이가 유지된다. 대체로 요서 북부지역은 하북성 북부지역과 요서 중부지역은 하북성 동북부지역, 요서 남부지역은 북경 및 연하도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생활유적에 한해서는 요서 전역이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연나라가 요서지역으로 진출했다고 해서 단순히 연산이남 어느 한 지역의 물질문화만 요서지역에 균일하게 출현하는 것은 아니며, 각 지역별로 개별적인 교류 또는 확산이 이루어졌고 때로는 토착세력이 연문화의 물질문화를 모방하여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양상은 주로 예기류에서만 보여 교류 또는 확산의 계층별 증층성도 엿보인다.

IV. 요서지역 연문화의 출현 배경

1. 고고학적 배경

현재 요서지역에서 연산이남의 연문화 중심지와 제일 강한 친연성을 가지는 요소가 보이는 곳은 요서의 남부지역, 즉 건창 동대장자 유적으로 대표되는 동대장자 유형의 중심 분포지이다. 그 외 요서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은 전형적인 연문화요소가 출현하는 곳은 아니다.⁸⁰ 이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80 전국후기 생활유적을 제외한 무덤유적에 국한한다.

요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은 비파형동검문화의 십이대영자유형이 분포했던 지역이다. 이 중 춘추 말~전국 초인 기원전 6·5세기에 십이대영자유형의 중심지가 조양지역에서 그 서쪽의 객좌지역과 동쪽의 심양지역으로 이동한다.⁸¹ 그러나 전국전기인 기원전 5세기 후반부터 그 자리를 건창지역에게 내어주고 만다. 이는 동대장자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청동기류와 빠짐없이 공반되는 말기 비파형동검 또는 초기 세형동검을 통해서 증명된다. 동대장자 유적은 연문화요소를 제외하고도 상당히 풍부한 재지문화를 가지고 있다. 동대장자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기형의 단경호, 창구우(敞口盂), 주전자형 토기(甗), 단각두, 동체부 주판알형의 장경호,⁸² 이중구연점토대토기 등이 이 지역의 기저를 이루는 재지문화일 것인데, 이 토기들이 동대장자 유적에서 모두 확인되는 것이다. 사실 단경호는 십이대영자문화의 중심 토기라기보다는 옥황묘 문화나 정구자-철장구유형의 중심 토기이다. 그리고 동체부 주판알형의 장경호는 동대장자 유적을 제외하고는 조양 오가장자(吳家杖子),⁸³ 흥성(興城) 마권자(馬圈子)⁸⁴ 등에서만 출토되는 특징적인 기종으로 유사한 기형의 장경호가 심양(瀋陽) 정가와자(鄭家窪子)⁸⁵나 길림 쌍요(雙遼) 후태평(後太平)⁸⁶ 등지에서

81 오강원, 2006, 앞의 책; 오강원, 2007,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 과정」, 『단군학연구』 16, 99~136쪽.

82 표형장경호로 불리기도 한다. 오강원, 2017, 「중국 동북 지역 瓢形 長頸壺의 부장양상과 확산의 배경과 맥락」, 『영남고고학』 78.

83 田立坤·萬欣·杜守昌, 2010, 「朝陽吳家杖子墓地發掘簡報」,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84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興城市文物管理所, 2004, 「興城馬圈子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2003)』, 遼寧民族出版社.

85 沈陽故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年 1期.

8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四平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雙遼市文物管理所·雙遼市鄭家屯博物館, 2011, 『後太平-東遼河下游右岸以青銅時代遺存爲主的調查與發掘』, 文物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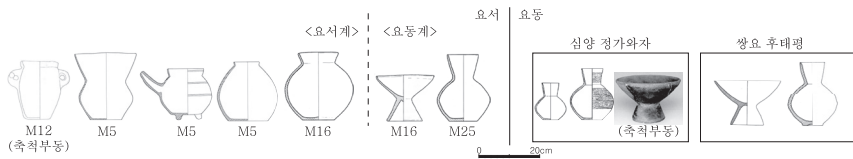


그림 10 동대장자 유적 출토 토착계 토기와 비교 유물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요동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각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전 단계의 십이대영자유형에는 원래 두형토기가 보이지 않고, 하가점상층문화에서 두형토기가 있긴 하지만 기형 면에서 동대장자 유적의 두형토기와 연결시키기 어렵다. 이러한 단각의 두형토기는 역시 심양 정가와자 3지점 3문화층에서 찾을 수 있으며, 후태평 제2지점 채집 유물 중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각두 역시 요서의 토착계 토기라고 보기 어렵고 요동지역과의 관련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그림 10). 이상의 요동지역 요소가 어떠한 경로로 동대장자 유적까지 유입되었는지는 아직 자료의 부족으로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⁸⁷ 그 외 창구우와 주전자형 토기도 이전 단계 십이대영자유형의 주요 토기로 알려져 있지만 출토 예는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쌍이의 이중구연점토대토기는 요서 북부지역 수천유형의 중심을 이루는 토기이며 정구자유형과 조양 원대자유적에서도 폭넓게 발견된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주 분포 범위나 연원에 차이가 있는 토기들이 동대장자 유적에서 모두 출토되는 것은 이 유적에서 다양한 청동기류가 풍부하게 출토되는 것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동대장자 유적은 요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연나라와의 교류를 담당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다. 연나라와의 교류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하는 토착 문화

87 이에 대해 오강원(2017)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견해라고 생각한다.

요소가 이곳으로 집중되었는지, 토착 문화가 이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연나라와 중심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그 이면에는 동대장자 유적의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남쪽에 위치한 연나라에서 요서의 토착집단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연산을 넘어야 하는데, 서북쪽으로는 옥황묘문화 집단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하가점상층문화 이후 정구자-철장구유형 집단이 위치한다. 남동구 유적이 위치한 객좌지역도 능원 오도하자 유적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방계 요소가 전국전기 또는 전국중기까지 강하게 남아 있었다. 이 지역은 산지에 위치하기에 접근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동대장자 유적이 위치한 동북쪽은 동대장자유적 형성 이전까지 십이대영자문화의 중심지는 아니었고, 이 지역과 인접한 하북성 동북부는 전통적으로 당산 가각장이나 천서 대당회 등 연문화 유적의 존재로 볼 때 연나라의 비교적 강한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하북성 동북부에서 해안을 따라 펼쳐진 평지를 통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해 동대장자유적으로의 접근이 보다 용이했고 동대장자유적은 건창 우도구나 조양 오가장자, 흥성 마권자의 동대장자와 강한 관련을 가진 유적들의 제일 서남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산이남 연문화 집단과 교류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구자-철장구유형에 속하는 철영자 유적은 전국중기에 요서 북부지역에서 연나라 및 중원지역과의 교류를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철영자 유적은 동대장자 유적과 달리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가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대장자 유적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교류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요서 북부의 영성 소혹석구나 오한기 오란보랍격의 연문화 토제예기가 중부의 객좌 미안구나 조양 원대자 또는 동대장자 출토품과 비교해서 지역성이 강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모방 연식예기’로도 불리는데 하북성 북부 승덕지역의 연문화 토제예기와의 친연성이 보다 강하다. 즉, 전국중기에 요서 북부지역은 연산이남의 연문화와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교류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이남지역에서도 희소한 청동예기를 통한 교류를 보면 당시 철영자 유적의 위상은 상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국후기에는 연나라와 가장 왕성한 교류관계를 가졌던 건창 동대장자 유적에 M40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부장무덤이 출현하면서, 호로도시 소황지고성, 능원 안장자고성, 조양 원대자 생활유적과 같은 연문화 생활유적이 전면적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지역에 토착계 유물은 현재로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요서 북부지역의 양상은 요서 남부지역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소흑석구에서 여전히 이전 시기와 연속성을 가지는 연문화 토제예기 부장무덤이 확인되고, 범위를 더 넓혀서 적봉지역에도 연문화 토제예기 부장무덤이 존재한다. 동시에 적봉 사도만자, 적봉 지주산, 내몽골 수천, 객라심동 등지에서 연문화 생활유적이 출현하는데, 이들 생활유적의 양상은 요서 남부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양 지역에 대한 연나라의 서로 다른 확산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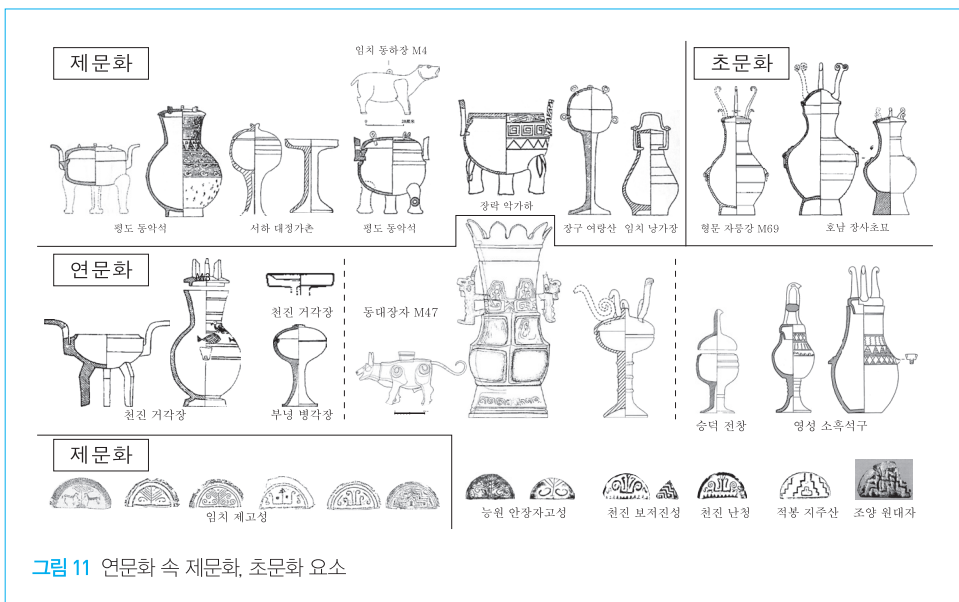


그림 11 연문화 속 제문화, 초문화 요소

남부지역은 토착의 상위계층까지 장악한 전면적인 점령이라면, 요서 북부지역은 토착의 상위계층은 여전히 유지시킨 채 그 하위계층을 장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서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연나라 측 세력은 난하 전국무덤의 등장을 고려했을 때 난하의 승덕지역이 최대 경계였을 것이다. 승덕지구, 적봉지구, 영성지구는 토착세력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양상은 전국말~진한고체기에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몇 유적에서 전국말~진한고체기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보인다. 요서 남부 동대장자 유적의 M47은 기존의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가 아닌 제나라 및 초나라와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토기 방호와 유개두는 먼저 전체 성형을 완료한 후 따로 제작한 측면 파수와 뚜껑의 뉴를 미리 뚫어놓은 접합 구멍에 부착하는 특징이 간추된다. 이렇게 파수나 장식적인 요소를 ‘조립식’으로 부착하는 제작방식은 산동지역에서 전국시기에 걸쳐 유행하는 특징이다. 사실 선행 연구⁸⁸를 참고하면 전국후기 이후는 그 사례가 적어 전국전기와 중기에 주로 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동대장자 M47을 전국후기 이전으로 볼 경우 연문화 토제예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완성된 상황에서 제(齊)문화 요소가 돌출적으로 융합된 것이 되는데 정황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요서지역의 생활유적에서 제문화 계통의 와당이 출현하는 점, 천진 동교(東郊) 장귀장(張貴莊),⁸⁹ 하북 무녕(撫寧) 병각장(邢格莊)⁹⁰ 처럼 동대장자 유적과 산동반도 사이 연안을 따라 분포한 유적에서 제문화 요소가 출현하는 점, 그리고 개두 뚜껑의 뉴가 과장되는 특징은 초(楚)문화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전국후기 이후에 유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형적인 연문화 무덤인 M40의 등장 시점보다 늦은 시기의 양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전국말~진한고체기는 연

88 王青, 2012, 『海岱地區周代墓葬與文化分區』, 科學出版社.

89 天津市文物組, 天津市曆史博物館聯合發掘組, 1957, 「天津東郊發現戰國墓簡報」, 『文物參考資料』1957-3.

90 邸合順·吳環露, 1995, 「河北省撫寧縣郝各莊出土戰國遺物」, 『考古』1995-8.

나라는 물론 중국 전역에서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문화, 초문화, 연문화가 복합된 양상이 동대장자 유적은 물론 요서지역 전체에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기존의 연문화와 다소 이질적인 양상은 요서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양 원대자 기류무덤을 필두로 무덤에 장각, 단각두와 생활토기가 부장되고 굽이 과장되어 있는 토기 준 등이 새롭게 기존의 연문화 계통 토제예기를 대체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는 당시 연나라에서도 사회 문화적 변화가 상당했고, 이는 결국 전국말~진한교체기의 사회적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2. 역사적 배경

전국시기 요서지역 연문화의 양상은 문헌에 기록된 연나라와 요서지역 토착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의 북벌 대상에 대해 여러 문헌에 각기 다른 정치체가 언급되어 있어⁹¹ 다소 혼란이 있지만 위의 고고학적 양상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문헌기록은 『사기』 흉노열전과 『위략』의 기사로 생각된다.

연나라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크게 동호와 고조선 관련 기사로 나누어볼 수

〈표 1〉 사료에 나타난 연의 북벌 대상(조원진, 2017, 160쪽)

연번	문헌	공략 대상	결과
1	『史記』朝鮮列傳	眞番朝鮮	복속시키고 장새를 씌움
2	『史記』匈奴列傳	東胡	5군 설치
3	『山海經』海內西經	獬國	멸망시킴
4	『鹽鐵論』伐功	東胡, 朝鮮	동호를 천 리 밖으로 내쫓고, 조선을 침
5	『三國志』所引『魏略』	朝鮮	조선의 서방 2,000리를 뺏고 만변한을 경계로 함

91 조원진, 2017,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교류」,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있다.⁹² 『삼국지』 『위략』에 ‘조선후는 주가 쇠약해지고 연이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을 침략하려 하자 조선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을 쳐서 주왕실을 받들려 하였다. 이에 대부 예가 간하므로 중지하고 예로 하여금 연을 설득하게 하니 연도 전쟁을 멈추고 조선을 침략하지 않았다’⁹³는 기사와 ‘연장 진개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 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만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으니 마침내 조선이 약해졌다.’⁹⁴라는 기사가 있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장 진개가 동호에 잡혀 있다가 신임을 얻은 후 연으로 돌아와 동호를 습격하여 동호가 1,000리를 물러나고, 연은 조양(造陽)에서 양평(襄平)까지 장성을 쌓아 상곡·어양·우북평·요서·요동군을 두고 호를 막았다.’⁹⁵는 기록이 있다.

위의 기사에는 연이 동호 또는 고조선을 침공하기 전과 침공하기 후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연이 동호를 침공하기 전에 연장 진개는 동호에 인질로 붙잡힌 적이 있고, 조선을 침공하기 전에는 ‘칭왕(稱王)’ 문제를 두고 조선과 전쟁 상황까지 이룬 적이 있다. 연이 ‘칭왕’을 하는 것은 연역왕(易王) 10년으로 기원전 323년이다. 즉, 전국중기의 늦은 단계에 연과 고조선이 대립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연이 동호나 조선을 침공한 것은 소왕 대의 일로 소왕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311년~기원전 279년까지이다. 이 중 연나라의 대외정세를 고려했을 때 기원전 282~기원전 280년으로 비정하는 것⁹⁶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다.

92 이하 원문 해석은 조원진(2017)의 글을 참고하였음.

93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韓傳第30 所引『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見周衰燕自尊爲王欲東略地朝鮮侯亦自稱爲王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其大夫禮諫之乃止使禮西說燕燕止之不攻”

94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韓傳第30 所引『魏略』,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取地二千餘里至滿番汗爲界朝鮮遂弱”

95 『史記』 卷110 匈奴列傳第50, “其後燕有賢將秦開爲質於胡胡甚信之歸而襲破走東胡東胡卻千餘里 … 燕亦築長城自造陽至襄平置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郡以拒胡”

96 裴眞永, 2003, 앞의 글.

한편 연나라는 전국시기 주변 제후국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특히 전국 중기에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공 6년(기원전 356년)에 조성후(趙成侯)와 아(阿)에서 회맹을 하고, 문공 8년(기원전 354년)에 제나라와 구수(溝水)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역왕 7년(기원전 326년)에는 조숙후(趙肅侯)가 죽자 진(秦)나라, 초나라, 제나라, 위(衛)나라와 함께 장례에 참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역왕 10년(기원전 323년)에는 스스로 왕을 칭함과 동시에 위나라, 초나라, 중산국, 한(韓)나라와 함께 진나라를 공격하기도 한다.⁹⁷

이상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연나라가 늦어도 전국중기에는 중원의 여러 제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하였고, 연하도 및 그 주변지역의 연문화 유적에서 주변 제후국들의 문화요소가 발견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동북지역의 동호·조선과도 모종의 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서교 철영자 유적이거나 건창 동대장자 유적에서 출토되는 연문화 및 주변 제후국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청동예기 등이 출토될 수 있는 밑바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중국 동북지역에서 풍부한 청동예기가 출토되는 것과 달리 동시기 연산이남 연문화 지역에서는 관련 청동예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연나라의 도성인 연하도의 경우만 보아도 상위 무덤의 부장품은 이미 청동예기를 모방한 토제예기로 전환된 상태였다. 그런 만큼 청동예기는 더욱 희소성을 띠었을 것인데, 그런 희소가치를 가진 청동예기를 중국 동북지역의 집단에게 제공한 것은 이들과의 교류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으며 상호 간의 관계도 어느 정도 대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당시 주변 제후국과도, 특히 제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던 연나라는 자신의 북방지역에 대한 안정화가 중요한 화두였고 그 결과 이들과 단순히 적대적 긴장관계에만 있던 것이 아닌 일정한 정치관계를 맺고 북방으로부터의 위협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항상 친연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았더라도 모종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

97 彭華, 2019, 『燕國八百年』, 中華書局, 356쪽.

각된다.⁹⁸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전국전기 객좌 미안구나 조양 원대자 무류무덤처럼 연문화 계통의 토제예기로 구성된 무덤이 타 지역에 단독으로 출현하고, 더 나아가서 조양 원대자 무류무덤이 토착계인 정류무덤과 전국전기부터 계속 동일 공간에 공존하는 양상도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전국후기 요서 전역에 연문화 생활유적이 광범위하게 출현하는 것은 연이 동호 또는 고조선을 침공하고 이 지역을 점령한 후 장성을 쌓고 5군을 설치했다는 기록과 연결시킬 수 있다. 즉, 문헌에는 분리되어 기재된 이유로 동호를 침공한 것인지, 고조선을 침공한 것인지, 동호와 고조선을 둘 다 침공한 것인지 논란이 있지만 고고학적 양상을 고려하면 동호와 고조선을 둘 다 침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동호와 관련 있는 철영자 유적의 경우 전국후기 연나라 상위계층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데, 아마 요서 북부지역 동호의 상위 집단은 생각보다 연나라에 우호적으로 이미 연화(燕化)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때문에 동호의 중심지가 아닌 승덕지역에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조선과 관련된 동대장자 유적 집단은 토착문화를 비교적 강하게 유지하고자 했고 세력 또한 상당했기 때문에 고조선의 서쪽 중심지였던 건창지역을 직접적으로 점령하고 거점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한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요서지역 연문화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주요 유적의 시간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서 남부, 중부, 북부지역은 연문화가 출현하는 시점과 양상에

98 裴眞永, 2003, 앞의 글, 21~25쪽.

차이가 있고, 토제예기의 경우 기형, 문양, 부장조합에서 지역 간에 연문화 계통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차이점이 더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문화가 요서지역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전국후기까지도 이어진다. 이는 각 지역별로 연산이남 연문화 집단과 개별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고 때로는 토착세력이 연문화의 물질문화를 모방하여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전국중기부터 요서 남부와 북부로 이원화되어 집중 출토되는 청동예기는 당시 토제예기를 소유한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소유한 것으로 연산이남 연문화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국중기는 연산이남 연문화 지역의 경우 무덤에 청동예기가 부장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토제예기를 부장하는 양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서지역에 풍부한 청동예기를 부장한 무덤의 출현은 이 두 지역에 연나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요서 남부의 동대장자 유적은 연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토착계 요소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토기류가 그러한데, 주변 유적에서 개별적으로 산재하여 출토되던 것이 동대장자라는 한 유적에서 거의 모두 확인되는 것이다. 이는 동대장자 유적이 요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방증한다. 그 배경으로 해안가를 따라 연결되는 평지가 연산이남에서 연산이북으로 왕래를 용이하게 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산지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철영자 유적은 요서 북부의 중심지였지만 지리적 이점을 확보하지 못해 동대장자 유적에 비해 제한적인 교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지역에 존재하는 중심지의 존재는 문헌 기록을 고려했을 때, 요서 북부지역은 동호와의 관련성을, 요서 남부지역은 고조선과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당시 중원 제후국들과 경쟁하던 연나라에게 연산이북지역의 안정화는 중요한 화두였고, 이들과 일정한 정치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에 풍부한 청동예기를 부장한 무덤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국후기가 되면 이러한 양상은 거의 사라지고 요서 전역이 연문화 일색으

로 변한다. 그러나 지역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요서 남부지역은 동대장자 M40처럼 전형적인 연문화 토제예기가 그대로 이식되는 반면, 요서 북부지역은 이러한 양상은 확인되지 않고 ‘연식 모방예기’가 존속된다. 이것은 요서 남부지역은 연나라에 대해 다소 적대적이었던 반면, 요서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연나라에 우호적이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志』.

『史記』.

국내

裴眞永, 2003, 「燕昭王의 政策과 ‘巨燕’의 成立」, 『中國史研究』 25.

_____, 2005, 「燕國의 五郡 설치와 그 의미 - 戰國時代 東北아시아의 勢力關係 -」, 『中國史研究』 36.

배현준, 2015, 「동주시기 연나라와 동대장자 유적 청동예기 부장무덤의 연대」, 『白山學報』 103.

_____, 2017a, 「燕下都 土製禮器 副葬무덤의 年代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_____, 2017b, 「春秋戰國시기 燕文化의 중국동북지역 확산과 토착집단과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87.

_____, 2018, 「전국 연의 동진과 철기의 확산」, 『동북아시아철기문화연구의 새로운 움직임』, 역사공간.

_____, 2019, 「연산이남 연문화 토제예기의 변천과 지역성」, 『선사와 고대』, 61.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 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_____, 2007, 「비파형동검문화 십이대영자 단계 유물 복합의 기원과 형성 과정」 『단군학연구』 16.

_____, 2011, 「기원전 3세기 遼寧 地域의 燕나라 遺物 共伴 遺蹟의 諸 類型과 燕文化와의 關係」, 『韓國上古史學報』 71

_____, 2017, 「중국 동북 지역 瓢形 長頸壺의 부장 양상과 확산의 배경과 맥락」, 『영남고고학』 78.

이청규, 2008,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청동기문화 연구의 성과」, 『중국 동북지역 고고학 연구현황과 문제점』, 동북아역사재단.

- 이후석, 2015, 「기원전 4세기대 요서지역의 문화변동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28.
 ———, 2016, 「동대장자유형의 계층 분화와 그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94.
 조원진, 2017, 『고조선의 발전과 대외교류』,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진선, 2011, 「동북아시아 청동기~초기철기시대 편년의 열쇠」, 『한국고고학보』 80.

국외

• 중국어

- 顧鐵山·郭景斌, 1996, 「河北省遷西縣大黑汀戰國墓」, 『文物』 1996-3.
 郭治中, 2000, 「水泉墓地及相關問題之探索」, 『中國考古學跨世紀的回顧與前瞻』, 科學出版社.
 吉林大學考古系·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7, 「遼寧錦西市邵集屯小荒地古城址試掘簡報」, 『考古學集刊』 第十一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四平市文物管理委員會辦公室·雙遼市文物管理所·雙遼市鄭家屯博物館, 2011, 『後太平-東遼河下游右岸以青銅時代遺存爲主的調查與發掘』, 文物出版社.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寧城縣遼中京博物館 編著, 2009, 『小黑石溝-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盧國權, 2019, 『東周青銅容器譜系研究(上)』, 上海古籍出版社.
 唐山市文物管理所, 1992, 「河北省遷西縣大黑汀戰國墓出土銅器」, 『文物』 1992-5.
 裴炫俊, 2016, 「東周燕國銅敦·豆之年代辯微」, 『考古與文物』 2016-2.
 山西省考古研究所, 1984, 「山西長子縣東周墓」, 『考古學報』 1984-4.
 山西省考古研究所·山西博物院·長治市博物館, 2010, 『長治分水嶺東周墓地』, 文物出版社.
 山西省考古研究所·太原市文物管理委員會, 1996, 『太原晉國趙卿墓』, 文物出版社.
 三門峽市文物工作隊, 2002, 「三門峽市分景園8號戰國墓」, 『中原文物』 2002-1.
 邵國田, 1989, 「內蒙古敖漢旗四道灣子燕國“狗澤都”遺址調查」, 『考古』 1989-4.
 蘇天鈞, 1969, 「北京昌平區松園村戰國墓葬發掘記略」, 『文物』 1959-9.
 沈陽故宮博物館·沈陽市文物管理辦公室, 1975, 「沈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1.

- 安志敏, 1953, 「河北省唐山賈各莊發掘報告」, 『考古學報』 1953-6.
- 王騰飛, 2019, 『東周燕墓再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王兆軍, 1964, 「內蒙古昭盟赤峰市發現戰國墓」, 『考古』 1964-1.
- 王青, 2012, 『海岱地區周代墓葬與文化分區』, 科學出版社.
- 王會田, 2013, 「山東淄博市臨淄區辛店二號戰國墓」, 『考古』 2013-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1996, 「遼寧凌源安杖子古城址發掘報告」, 『考古學報』 1996-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a,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M40的發掘」, 『考古』 2014-12.
- _____, 2014b,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M47的發掘」, 『考古』 2014-1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2010, 『朝陽袁台子』,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管理所, 2014a,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2001年發掘簡報」, 『考古』 2014-12.
- _____, 2014b, 「遼寧建昌縣東大杖子墓地2002年發掘簡報」, 『考古』 2014-12.
- _____, 2015,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3年發掘簡報」, 『邊疆考古研究』 1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建昌縣文物局, 2015, 「遼寧建昌東大杖子墓地2000年發掘簡報」, 『文物』 2015-1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葫蘆島市博物館·興城市文物管理所, 2004, 「興城馬圈子青銅時代遺址發掘報告」, 『遼寧省道路建設考古報告集(2003)』, 遼寧民族出版社.
- 遼寧省博物館, 1985, 「遼寧凌源縣三官甸子青銅短劍墓」, 『考古』 1985-2.
- 遼寧省博物館文物工作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組, 1983, 「遼寧建平縣喀喇沁河東遺址試掘簡報」, 『考古』 1983-11.
- 遼寧省博物館·朝陽市博物館, 1986, 「建平水泉遺址發掘報告」, 『遼海文物學刊』 1986-2.
- 容城縣文化館, 1982, 「河北省容城縣出土戰國銅器」, 『文物』 1982-3.
- _____, 1993, 「河北容城縣南陽遺址調查」, 『考古』 1993-3.
- 于佳靈, 2018, 「東大杖子墓地葬制初步考察」,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 于文莅·張穎, 2015, 「赤峰西橋鎮戰國墓地的發掘」, 『赤峰學院學報』 36-8.
- 圍場縣文物管理委員會, 1987, 「河北圍場東臺子戰國晚期至秦代墓地出土文物」,

『文物資料叢刊』10.

- 李建生, 2012, 「輝縣琉璃閣與太原趙卿墓相關問題」, 『中國國家博物館館刊』2.
- 李林·劉樸, 1990, 「承德縣西三家村·旗杆溝發現戰國墓葬」, 『文物春秋』1990-3.
- 張家區市文物事業管理所, 1985, 「張家區市白廟遺址清理簡報」, 『考古』, 1985-10.
- 張辛, 2002, 『中原地區東周陶器墓葬研究』, 科學出版社.
- 張松柏, 1961, 「赤峰市紅山區戰國墓葬清理簡報」, 『內蒙古文物考古』1961-1.
- 張依依, 2016, 「東大杖子墓地研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 邸合順·吳環露, 1995, 「河北省撫寧縣邴各莊出土戰國遺物」, 『考古』1995-8.
- 田立坤·萬欣·杜守昌, 2010, 「朝陽吳家杖子墓地發掘簡報」, 『遼寧考古文集』(二), 科學出版社.
- 程長新, 1985, 「北京市通縣中趙甫出土一組戰國青銅器」, 『考古』1985-8.
- 趙國棟 編著, 2014, 「喀喇沁旗西橋鐵營子戰國墓地」, 『赤峰古代墓葬』, 內蒙古文化出版社.
- 朝陽地區博物館·喀左縣文化館, 1985, 「遼寧喀左大城子眉眼溝戰國墓」, 『考古』1985-1.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 1959, 『洛陽中州路(西工段)』, 科學出版社.
- 中國科學院考古研究所編著, 1956, 『輝縣發掘報告』中國田野考古報告集 第1號, 科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4, 『陝縣東周秦漢墓』, 科學出版社.
- 中國社科院考古研究所內蒙古工作隊, 1979, 「赤峰蜘蛛山遺址的發掘」, 『考古學報』, 1979-2.
- 天津市文物組·天津市曆史博物館聯合發掘組, 1957, 「天津東郊發現戰國墓簡報」, 『文物參考資料』1957-3.
- 天津市歷史博物館考古隊·寶坻縣文化館, 1991, 「天津寶坻縣牛道口遺址調查發掘簡報」, 『考古』1991-7.
- 淄博市博物館, 1977, 「山東臨淄商王村一號戰國墓發掘簡報」, 『文物』1977-6.
- 彭華, 2019, 『燕國八百年』, 中華書局.
-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外, 2004, 『淅川和尚嶺與徐家嶺楚墓』, 大象出版社.
- 湖南省博物館·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長沙市博物館·長沙市文物考古研究所, 2000, 『長沙楚墓(上)』, 文物出版社.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2003, 「湖北棗陽市九連墩楚墓」, 『考古』 2003-7.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棗陽市文物考古研究所·棗陽市文物考古隊, 2018, 「湖北棗陽九連墩M2發掘簡報」, 『江漢考古』 2018-6.
湖北省文物研究所·荊門市博物館·襄荊高速公路考古隊 編著, 2006, 『荊門左塚楚墓』, 文物出版社.
湖北省荊沙鐵路考古隊, 1991, 『包山楚墓(上)』, 文物出版社.
湖北省荊州地區博物館, 1985, 『江陵馬山一號楚墓』, 文物出版社.

• 일본어

石川岳彦, 2017, 『春秋戰國時代燕國の考古學』, 雄山閣.

요서지역 전국 연문화의 전개와 그 배경

—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

배현준

요서지역 연문화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요서 남부, 중부, 북부 지역은 연문화의 출현 시점과 전개양상에 차이가 있다. 토제예기의 경우 기형, 문양, 부장조합에서 지역 간에 연문화 계통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차이점이 더 컸으며 이러한 현상은 연문화가 요서지역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전국후기까지도 이어진다. 이는 각 지역별로 연산이남 연문화 집단과 개별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때로는 토착세력이 연문화의 물질문화를 모방하여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국중기부터 요서 남부와 북부로 이원화되어 집중 출토되는 청동예기는 당시 토제예기를 소유한 계층보다 상위 계층이 소유한 것으로 연산이남 연문화 세력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전국중기는 연산이남 연문화 지역의 경우 무덤에 청동예기가 부장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토제예기를 부장하는 양상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서지역에 풍부한 청동예기를 부장한 무덤의 출현은 이 두 지역에 연나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정치체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중심지(동대장자, 철영자)의 존재 배경에는 지리적·역사적 요인이 있다. 이 중 일부 문헌 기록을 고려하면, 요서 북부지역은 동호와의 관련성을, 요서 남부지역은 고조선과의 관련성을 상정할 수 있다. 당시 중원 제후국들과 경쟁하던 연나라에게 연산이북지역의 안정화는 중요한 화두였고, 이들과 일정한 정치관계를 맺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이 두 지역에 풍부한 청동예기를 소유한 집단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요서지역, 전국시대, 연문화, 동대장자, 철영자, 청동예기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Background of Yan-Culture in the Warring States Period in Liaoxi through the Excavated Artifacts

Bae Hyunjoon

This study found that there are different cultural conditions of Yan-Culture(燕文化) in the southern, central and northern areas of Liaoxi(遼西). The appearance time and development of Yan-Culture are different in each region. In terms of pottery ritual vessel, in the shape, decoration and burial combin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regions are greater than the commonality of belonging to the Yan-Culture system. This situation continued from the early Warring States period to the late Warring States period. The reason is that different regions separately communicate with the people of Yan-Culture of the south of Yanshan(燕山) mountain, and at the same time, it cannot be excluded the possibility that the aboriginal people can imitate the Yan-Culture and make pottery ritual vessel.

On the other hand, from the middl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bronze ritual vessels unearthed in the South and north of Liaoxi respectively indicated that there is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local top class and the Yan-Culture group of the south of Yanshan mountain. Howev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few tombs with bronze ritual vessels in the south of Yanshan mountain, and most of the tombs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tombs with pottery ritual vessels. In this situation, the appearance of tombs with a large number of bronze ritual vessels in Liaoxi means that there are a very important strategic political systems for Yan state(燕國).

The appearance background of the two archaeological centers (Dongdazhangzi東大杖子, Tieyingzi鐵營子) found in the South and north of Liaoxi has historical and geographical reasons. Considering some literature records, it can be inferred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northern part of Liaoxi and the Donghu(東胡) group, and the southern part of Liaoxi is related to Gojoseon(古朝鮮) group. And because Yan state had been competing with the vassal states in the Central Plains at the time, the stability of the north of Yanshan mountain was very important to Yan state. Therefore, Yan needed to establish a brief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m. So in order to maintain this relationship, Yan state provided rich bronze ritual vessels and other precious things to them.

Keywords: Liaoxi, the Warring States Period, Yan-Culture, Dongdazhangzi, Tieyingzi, bronze ritual vessels

발해 마구 연구

김영길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유산융합학과 고고학전공 박사과정

- I. 머리말
- II. 발해 마구의 현황과 재검토
- III. 발해 마구의 비교 분석과 지역별 특징
- IV. 맺음말



I. 머리말

인류는 기원전 4000년부터 야생 동물이었던 말을 가축화하기 시작했고, 이에 말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구를 만들고 발전시켜왔다. 마구의 가장 원초적인 목적은 ‘제어’로 이에 따라, 굴레, 재갈, 고삐 등 제어구 종류가 가장 먼저 등장하였다. 이후 말 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말을 다루기 위해 안장과 등자 등 안정구 종류가 등장하였고, 부가적으로 외관을 꾸미기 위한 장신구 종류인 행엽과 운주 등도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이처럼 마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각종 부품들의 결합체로 당시 산업 기술과 예술 성향들이 응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고고학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마구 부장품습이 성행했던 삼국시대의 고분 출토 마구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삼국시대 이후 발해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 국내외 많은 학자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것에 비해, 유물 개체 수 부족 및 실물 관찰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등의 이유로 마구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또한 기존 연구 사례 역시 확인된 발해 마구의 소개와 형식을 관찰한 기초적인 연구로,¹ 일부 유물자료들이 누락되고 구체적인 분석이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는 복잡한 부속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마구를 이해하기에 앞서, 세부 요소들의 명칭과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 투고: 2020년 6월 27일, 심사 완료: 2020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25일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김영길, 2018, 「발해 마구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대폭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년 12월 고구려발해학회와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인적·물질 네트워크와 고구려·발해”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것임을 밝혀둔다.

1 박진욱, 1998, 「발해의 마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7, 사회과학출판사.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진행되어, 고구려 외 타 지역 국가 혹은 타 민족 마구와의 비교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발해 마구의 특징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또한 발해시대의 주변 지역과 발해 이전·이후 시대 마구 자료들과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발해 마구로 보고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마구의 세부 명칭과 기종의 경우 삼국시대 마구 연구를 참고하겠다. 다만, 도면이 생략되거나 재질 특성상 부식이 심해 도면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와 마구로서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너무 작은 편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I. 발해 마구의 현황과 재검토

1. 발해 마구의 현황

정식으로 보고된 발해 마구는 총 36점이며 7개소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출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경지역 고분 1개소, 중경지역 고분 1개소, 요하(遼河) 동쪽의 고분 1개소, 함경북도 지역 고분 1개소, 제2 송화강 중류역 고분 1개소 및 유적 1개소, 연해주 남부지역 성곽 1개소에서 출토되었다²(〈그림 1〉·〈표 1〉 참고).

2 발해 5경의 권역에 편입시키기 어려운 지역은 지리적인 위치로 명시하여 구분하였다.

〈표 1〉 발해 마구 출토 현황

연번	지역	유적(유구 수)	출토 마구	
			수량	종류
1	상경	홍준어장 고분군 (虹鱒魚場古墳群)(1)	1	재갈쇠(1)
2	중경	동청 고분군 (東淸古墳群)(1)	4	재갈(1), 등자(3)
3	요하 동쪽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石台子山城周邊古墳群) (1)	1	등자(1)
4	함경북도	연차골 고분군(4)	24	재갈(1), 재갈쇠·고삐이음쇠(1), 고삐이음쇠·노는고리(1), 등자(7), 운주(1), 행엽(4), 안장테두리장식 ³ 띠고정 교차금구(9)
5	제2 송화강 중류역	사리파 고분군 (查里巴古墳群)(2)	2	재갈쇠(1), 등자(1)
6		대해맹 유적 (大海猛遺蹟)(2) ⁴	3	재갈쇠·재갈멈추개(2), 등자(1)
7	연해주 남부	니콜라예프카-2 평지성 (Николаевское-2. Городище)(1)	1	재갈멈추개(1)
합계	-	-	36	-

3 안장테두리 장식은 다수의 잔편이 발견되어 정확한 수량 확인이 불가능하다.

4 대해맹 유적 출토 재갈쇠·재갈멈추개 결합체의 경우 출토 위치상 교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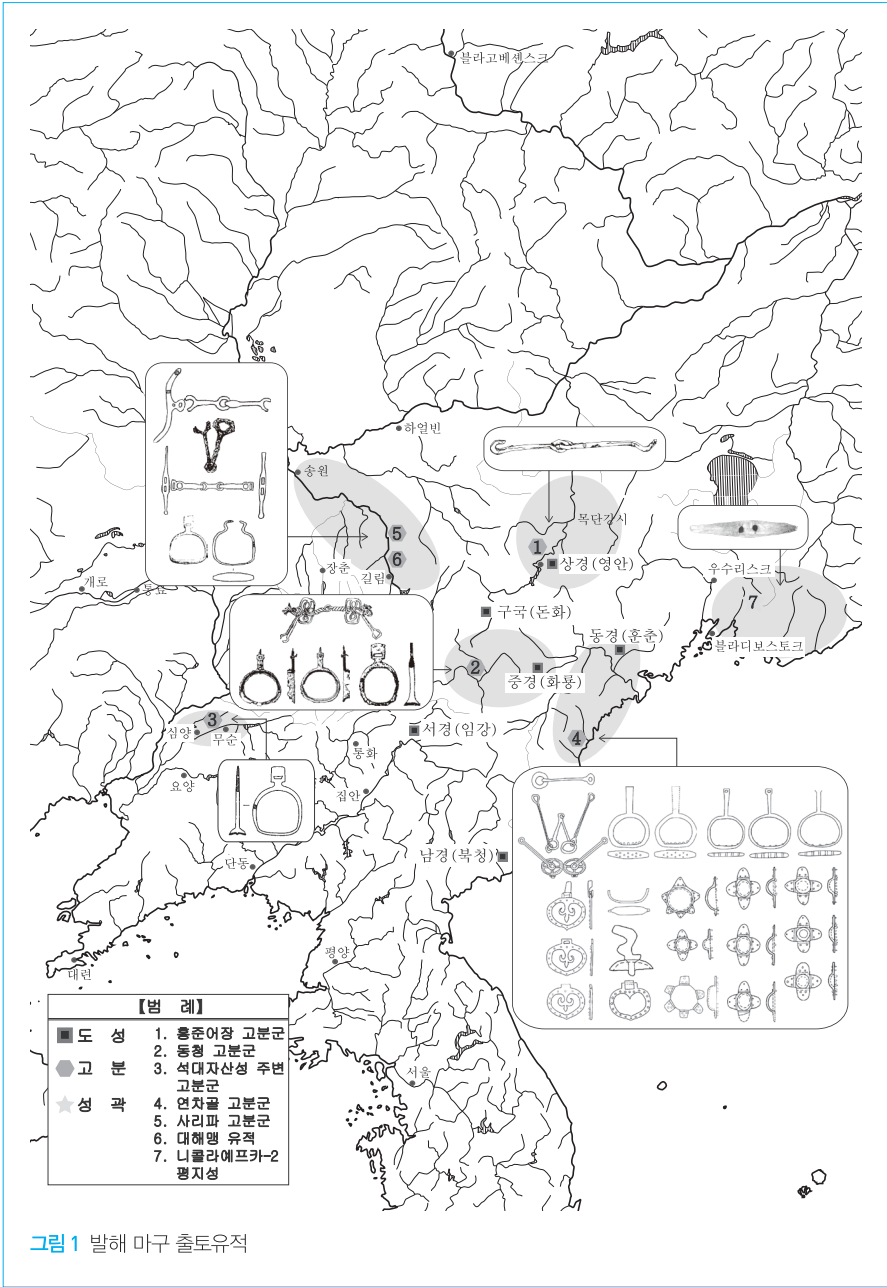


그림 1 발해 마구 출토유적

2. 재검토 대상⁵

1) 마반촌산성(磨盤村山城) 출토 등자

본래 명칭은 성자산산성 혹은 성자산성이었으나, 마반촌산성으로 개명되었다. 길림성(吉林省) 도문시(圖門市) 장안진(長安鎮) 마반촌에 위치한다. 산세를 따라 성벽이 석축되었으며, 성의 평면형태는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잔존 성벽 높이는 1~3m이며, 전체 둘레는 약 4.5km로 문지는 동쪽, 동북쪽, 서쪽, 동남쪽 총 4곳에서 확인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동하국 시기의 궁전으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성은 고구려 때 축조되어 발해, 요·금대, 동하국 시기까지 연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토기, 술, 철축, 수레바퀴 부속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중 마구는 등자 1점이 보고되었다.

그런데 이 등자의 연대를 중국 측에서는 금대(金代)로,⁶ 북한 측에서는 발해로⁷ 보고하였기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무병식(無柄式) 철제등자는 전체적인 형태가 육각형을 띠고 있으며, 상단부에 있는 제형의 구멍에 끈을 연결해 안장에 고정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이 닿는 답수부는 확장하지 않았고,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기 또한 만들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무병식 등자들의 예시는 연해주의 샤이가성(Шайгинское городище)과 흑룡강성 의란현의 오국두성(五國頭城) 등 금대의 유적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지역에서는 고려시대의 것으로 전해지는 사례가 확인된다. 다만 답수부를 넓게 확장하였다는 점과 역혁공(力革孔)이 좁은 것이 마반촌산성 출토 등자와의 차이점이다(〈표 2〉 참고).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으나, 여기서 잠시 연대가 발해시대임이 명확한 유적에서 출토된 등자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5 재검토 대상 등자들이 보고된 『龍井縣 文物志』, 『조선유적유물도감』, 『동해안 일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에서는 등자의 제작 시기를 발해 또는 금대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바로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였음을 밝혀둔다.

6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龍井縣 文物志』.

7 조선유적유물도감편집부,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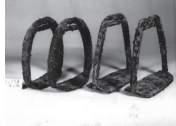
으로 발해에서는 유병식(有柄式) 등자와 고리형 등자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발해 이전의 고구려에서도 무병식 등자의 사용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며, 더 나아가 삼국시대의 한반도 지역에서는 유병식 등자가 흔히 사용되었다. 따라서 마반촌산성에서 출토된 등자는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해토성(靑海土城) 출토 등자

함경남도 북청군 하호리의 남대천 좌측에 위치한 청해토성은 발해 남경 남해부의 소재지로 추정되는 평지성이다. 북쪽, 동쪽은 낮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서쪽에는 남대천, 남쪽에는 동해가 있다. 규모는 서벽과 동벽 342m, 남벽과 북벽 724m이며, 평면은 긴 장방형이다. 잔존 높이 2~3m의 성벽은 토축을 하였으며, 성벽 밑에 돌이 깔린 구간도 일부 존재한다. 문지는 성벽의 중심부에서 확인되며, 각루와 치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성의 내부는 ‘田’ 형태로 구획되어 있으며, 관청과 주거지, 우물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생산도구, 무기, 장신구 등이 발견되었으며, 마구는 등자 1점이 발해의 것으로 보고되었다.⁸

그러나 이 청해토성 출토 등자도 마반촌산성의 경우와

〈표 2〉 무병식 철제 등자의 예

유적	도면	출처
마반촌산성		조선유적 유물도감 편찬위원회, 1989
청해토성		김종혁, 2002
샤이가 성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고고학연구소 (필자 촬영)
오국두성		중국 의란현 박물관 (필자 촬영)
傳경기도 용인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마찬가지로 발해시대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청해토성에서 발견된 이 무병식 등자는 금대 및 고려의 것들과 형태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표 2) 참고). 따라서 마반촌산성과 청해토성에서 발해의 등자로 보고된 무병식 철제 등자들은 발해 이후 시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Ⅲ. 발해 마구의 비교 분석과 지역별 특징

마구가 출토된 발해 유적을 살펴보면 마구 부장이 풍부했던 삼국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각 유적별 출토 수량도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발해 마구에 대해 시간적 변화보다는 형태적 특징에 주목하여 분석하겠다. 선행 연구(박진욱, 1998)를 살펴보면, 최초의 고고학적 발해 마구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마구의 명칭과 기능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는 등의 한계가 확인된다(표 3) 참고).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유의하여, 발해 마구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마구가 발견된 발해 유적은 모두 7개소로 도성 권역으로는 상경과 중경지역, 그리고 도성의 권역과는 비교적 거리가 먼 함경북도 지역, 제2 송화강 중류역, 요하 동쪽지역, 연해주 남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고분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비교적 적은 출토 현황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식의 마구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지역성과 시간성을 잘 드러내는 재갈과 등자가 함께 출토된 중경지역, 제2 송화강 중류역,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이 주목되어 이 세 지역의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상기한 세 지역에서 발견된 재갈과 등자의 속성을 파악하고, 다른 시대 및 지역의 마구와 간략한 비교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8 김중혁, 2002, 『동해안 일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표 3〉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박진욱(1998)	김영길(2018)
발해의 재갈쇠는 모두 2연식	양둔 대해맹 유적에서 3연식 재갈쇠 출토
발해의 재갈 종류는 원환비, 환판비, 판비로 구분	삼국시대 및 통일신라 유적 출토 원환비의 계측치와 비교해볼 때, 재갈멈추개가 그 기능을 다하기에는 너무 작음
고구려의 재갈은 초기에 표비만 사용되다가, 중기에 원환비와 판비가 도입되면서 후기에 이르렀을 때 표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됨	표비의 재갈멈추개의 경우 금속 재질 외에 유기질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갈쇠만 발견되어 원환비로 오판되는 경우가 있음
발해의 재갈에서 원환비와 판비만 확인되는 것은 고구려 후기의 양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표비는 6세기 이후 고구려 후기단계뿐만 아니라, 이후 발해시기 주변국인 통일신라와 당에서도 사용

1. 비교 분석

1) 재갈





재갈은 재갈쇠, 재갈멈추개, 고삐이음쇠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발해 유적에서 출토된 재갈의 재갈쇠에서는 각 속성들이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2〉·〈표 8〉 참고). 일단 재갈쇠의 속성 중 마디수와 가짓수 그리고 꼬인 형태로 볼 때 발해 건국 시기 혹은 그 이전으로 추정되는 사리파고분군, 대해맹 유적과 발해 중기로 추정되는 연차골 고분군에서 모두 2연식에 1조선의 꼬지 않은 것이 우세하다. 이러한 현상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며 3연식 이거나(〈그림 2〉-3), 가짓수와 그 형태가 2조선에 꼬인 경우(〈그림 2〉-4)도 있는데, 이는 단편적으로 등장한 이례적인 경우로 보아야 한다.⁹ 다만 외환의 형

9 3연식의 재갈은 한(漢)문화에서 기원하여 낙랑을 통해 한반도 남부로 확대되었다고 밝혀진 한(漢)계 표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장은정, 2012, 「흉노계 표비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중앙아시아연구』 17, 중앙아시아학회, 190쪽). 그러나 발해 대해맹 유적에서 출토된 3연식 재갈은 청동제인 한(漢)계와 달리 철제이며, 중원적인 요소인 재갈멈추개 끝부분의 구름장식이 없다.

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형 외에 장방형, 이중외환의 다양성이 보이는데, 이는 시간적인 변화에 따르기보다는 재갈땀추개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재갈쇠 외환이 이중외환 형식인 경우 원형+장방형 조합과 원형+원형의 조합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중외환 형식은 스키타이식 문화의 표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여 흔히 확인되는 것으로, 춘추전국 및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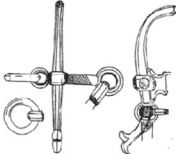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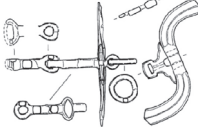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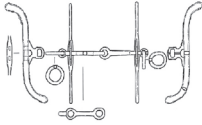



〈표 4〉 발해 이전 시기 지역별 재갈쇠 이중외환 형식 비교

지역	도면		출처
스키타이	 키에프(키예프)	 쿠반(쿠반)	장윤정, 2010
	 투바 아르잔 쿠르간 (Аржаан Курган)	 미누신스크(Минусинск)	
중국 동북 (춘추전국 및 위진남북조)	 심양 정가와자 (瀋陽 鄭家窪子) 6502	 북경 옥황묘 (北京 玉皇廟) YYM 151	손로, 2012; 東京國立博物館, 1997; 中國人民大學博物館, 2009
	 도쿄국립박물관 (東京國立博物館) 소장	 내몽골 포두시 (內蒙古 包頭市)	
한반도 (삼국)	 공주 송산리고분	 고령 지산동32호분	成正鋪, 2001

이 영향을 받아 제작된 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도 일부 확인된다(〈표 4〉 참고).

발해시기 때도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재갈쇠 형식임을 알 수 있다(〈표 5〉 참고). 형태적 유사성을 본다면 두 개체 모두 스키타이에 기원을 두고 있는 형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청 고분군 출토 이중외환 재갈쇠의 경우 철봉을 S자 형태로 구부려 이중외환의 형태로 만든 것이기 때

〈표 5〉 발해시기 지역별 재갈쇠 이중외환 형식 비교

지역	도면		출처
발해	 <p>대해맹 TG4구역</p>	 <p>동청 고분군</p>	吉林市博物館, 1987; 필자 제작
통일신라	 <p>경주 탐리</p>	 <p>계명대 소장품</p>	成正鋪·權度希· 諫早直人, 2007
	 <p>광양 마로산성</p>	 <p>傳 한반도 남부</p>	
남시베리아	 <p>길레보(Гилево)</p>	 <p>그리시킨 로그 (Гришкин Лог)</p>	В. А. Могильников, 1981a; Л. Р. Кызласов, 1981

문에 제작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이는 동청 고분군의 것은 환판형 재갈뿔추개와 연결을 더 용이하게 변형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해맹 유적 출토 이중외환 재갈쇠의 경우 3연식이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원의 한(漢)계 표비의 영향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 1점을 대상으로 선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으나 각기 다른 문화의 특성이 융합된 결과로 보려 한다.

이어서 재갈뿔추개를 보기로 한다. 재갈뿔추개의 형태를 기준으로 속성을 나열해보았을 때, 발해 건국 전 및 이른 시기에는 표비가 주를 이루고 중기를 향해 가면서 환판비와 판비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8〉 참고). 그러나 발해 중기로 추정되는 연차골 고분군에서 재갈쇠 외환의 크기로 짐작해볼 때 표비로 추정되는 재갈(그림 2)-7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동청 고분군과 연차골 고분군에서 발견된 환판비와 판비는 삼국시대 때 이미 크게 유행한 형식이고, 이후 정착 발해가 있었던 때에는 사용 사례가 드물다. 즉, 시간적 범위를 발해로 한정하지 않고 고대부터 중세까지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마구 변화 흐름에서 보았을 때, 모순이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상 발해의 재갈뿔추개는 시간에 따른 변화보다는 형식의 다양성에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제작 집단의 성격에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비는 기원전 7~3세기 대에 주로 활동했던 스키타이를 비롯한 유목 민족들이 사용한 재갈 형식으로, 스키타이가 장악하기 이전의 킴메르인들의 유적에서도 청동제 표비가 다량 발견되어 그 사용 연대는 더욱 소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⁰ 또한 표비는 중국지역에 전해져 전국시대부터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한반도에는 한(漢)대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유행했던 판비와는 달리 표비는 중근세를 거쳐 현대에도 종종 쓰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광범위하게 그리고 가장 오래 사용되었던 재갈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재갈뿔추개가 함께 출토된 발해의 표비는 모두 대해맹 유적의 것으로, 동일

10 김두철, 2001, 「韓國 古代 馬具의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6쪽.

한 막대형 재갈멈추개에도 굴레연결부의 위치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33호본 출토품(〈그림 2〉-2)의 경우 굴레연결부가 재갈멈추개의 측면에 별도로 제작되어 있다. 반면 TG4구역 출토품의 경우 재갈멈추개의 중앙에 뚫린 장방형의 구멍들이 굴레연결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반적으로 별도의 구멍을 이 구멍에 끼워 굴레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해맹 유적에서는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2〉-3). 시기 차이가 나지 않는 동일한 유적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두 재갈멈추개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굴레연결부의 위치는 굴레와의 연결방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비를 살펴보면, 연차골 고분군 출토품의 재갈멈추개(〈그림 2〉-5)는 십자형 가름대와 환형 테두리를 남기고 투공하여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환판형과 매우 유사하여 오판되기 쉽다. 그러나 재갈쇠와 재갈멈추개의 결합 방식을 살펴보면 판비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비는 4세기 대 중국 동북지역에서 활동하던 선비에 의해 제작된 재갈 형식으로, 고구려를 비롯하여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빠르게 전해졌으며 더 나아가 일본 열도에까지 영향을 주어 결국 유라시아 유목민족들의 재갈과 비교되는 동북아시아의 재갈의 특징이 되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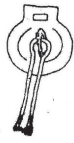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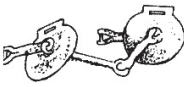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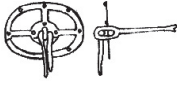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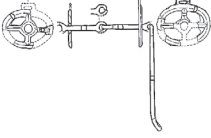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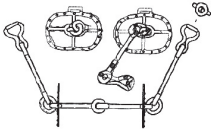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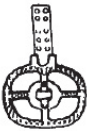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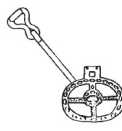

선비의 판비 형식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투공형 판비¹²라는 고구려에서 재지화된 형식을 사용하였고, 연차골 고분군에서 발견된 판비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표 6〉 참고).

다음으로 동청고분군에서 발견된 환판비(〈그림 2〉-4)를 살펴보면, 쇠줄을 구부려 장방형의 테두리를 형성하고 동시에 내부를 구름문양으로 장식한 형태의 재갈멈추개는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이다. 환판비라는 재갈 형식은 북표 방신촌 8호본 출토품을 근거로 최초 제작 집단을 선비로 보고

11 김두철, 2001, 위의 글, 12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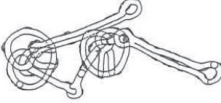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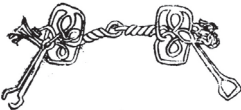
12 ‘투공형 판비’라는 용어가 마구 연구들에서 통용되지는 않으나, 기존의 선비식 판비의 재갈멈추개와 구별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6〉 지역 및 시기별 판비 비교

지역	도면		출처
중국 동북 (선비·전연)	 안양 효민둔(安阳孝民屯) 154호묘	 조양 원대자 벽화묘 (朝陽袁臺子壁畫墓)	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安陽工作隊, 1983; 遼寧省博物館文物隊 외, 1984
중국 동북 (고구려)	 집안 칠성산 고분군 (集安七星山古墳群)	 집안 만보정 고분군 (集安萬寶汀古墳群)	張雪岩, 1979;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한반도 남부 (삼국)	 여수 고락산성	 합천 옥전 고분군	최인선 외 2인, 2003; 趙榮濟 외 4인, 1992
일본 (고분)	 미에현 이다가 차우스산 고분 (三重縣井田川茶白山古墳)	 시가현 이나리산 고분 (滋賀縣鴨稻荷山古墳)	王巍, 1997
함경북도 (발해)	 연차골 고분군		동북아역사재단, 2011

있으나 중국 동북지역에서 환판비의 출토 사례는 극소수이며, 오히려 한반도 남부지역의 신라와 가야에서 그 발전 양상이 확인되었다. 한편 발해와 통일신라의 환판비를 보면 재갈멈추개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쇠줄을 그대로 안쪽으로 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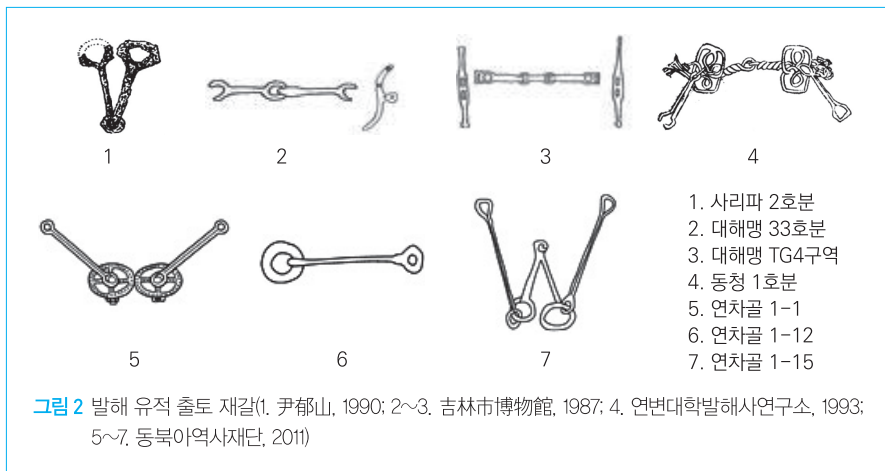
〈표 7〉 지역 및 시기별 환판비 비교

지역	도면	출처
중국 동북 (선비· 전연)	 북표 방신촌(北票房身村) 8호분	董高, 1995
중국 동북 (고구려)	 집안 광개토왕비(集安 廣開土王碑) 부근	국립청주박물관, 1990
한반도 남부 (삼국)	 경주 월성로 다-6호분	류창환, 2018; 전옥년 외 2인, 1989; 윤용진 외 1인, 1979
	 남원 두락리 1호분	
한반도 남부 (통일신라)	 동래 복천동 고분군	국립경주박물관, 1995
	 고령 지산동 고분군	
중국 동북 (발해)	 동청 고분군	연변대학발해사연구소, 1993

리뜨려 내부를 장식한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고).

이러한 제작방식상의 특징은 더 세분해서 보면 환판비 중에서도 복환판비에 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¹³ 삼국시대 5세기 말~6세기 초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이때 등장한 복환판비가 발해와 통일신라에 서도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두 개체는 고삐이음쇠와 재갈쇠의 형태, 그리고 재갈쇠와 재갈멈추개와의 결합방식에서 유사함이 확인되며, 공반 출토 된 등자에서도 형태상 유사점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고삐이음쇠를 살펴보도록 한다. 발해 재갈의 고삐이음쇠는 연 차골 1지구 12호분의 것은 1조선(〈그림 2〉-6), 그 외 나머지는 모두 2조선으로 제작되었으며, 재갈멈추개의 형식과 상관없이 길이가 긴 편에 속한다. 고삐이 음쇠의 철봉 가짓수는 일반적으로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한 고구려 유적에서는 모두 2조선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1조선이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렇다 고 해서 남부지역에서 2조선의 고삐이음쇠의 발견 예가 결코 소량은 아니기에 가짓수만으로 지역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¹⁴ 다만 연차골 1지구 12호분에서



13 김두철, 1991, 「三國時代 轡의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쪽.

고삐이음쇠에 연결된 노는고리의 존재가 특이점인데, 이 노는고리는 재갈쇠와 고삐이음쇠의 연결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부품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선비와 고구려 재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¹⁵ 하지만 완전한 재갈 조합을 갖춘 상태로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판별은 불가능하고, 추후에 고분구조 및 공반 출토품들까지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표 8〉 발해유적 출토 재갈의 속성분석

지역 (유적)		재갈쇠						재갈멈추개 (굴레연결부)			고삐이음쇠		도면 번호	
		마디 수		가짓수/ 꼬임 여부		외환		막대형 (표비)		관형 (판비)	환판형 (환판비)	가짓수/ 노는고리		
		2 연 식	3 연 식	1 조 선 /×	2 조 선 /○	원 형	장 방 형	이 중	복 공	별 도	별 도	별 도		1 조 선 / 有
제 2 송 화 강 중 류 역	사리파 고분군	●		●		●			?	?				1
	대해명 유적	●		●		●				●				2
			●	●				●	●					3
중 경	동청 고분군	●			●			●			●		●	4
함 경 북 도	연차골 고분군	●		●			●				●		●	5
													●	6
		●		●		●			?	?				●

14 김두철, 2001, 앞의 글, 117쪽.

15 김두철, 2001, 위의 글, 125쪽.

2) 등자

다음으로 등자를 살펴보도록 한다. 발해의 등자는 동청 고분군에서 목심의 흔적이 확인된 한 쌍을 제외하고 모두 철제이며, 기본적으로 병부의 길이 및 형태에 따라 크게 장병, 단병 고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보면 발해의 건국 전 및 이른 시기에서부터 비타원형 윤부의 단병형과 고리형 등자가 사용되다가 타원형 윤부의 단병형이, 그리고 중기에 이르러 타원형 윤부의 장병형이 사용된다. 답수부의 형태는 발을 닫기 용이하게 확장하였으나 미끄러움 방지 돌기가 없는 것이 가장 먼저 사용되고, 뒤이어 확장을 하지 않고 돌기 또한 만들지 않은 형태의 것이 등장하였다. 이후 중기에 이르러서는 동일한 고분군 내에서 발견되었음에도 답수부 확장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돌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등 확연한 차이들이 확인되었다(〈그림 5〉·〈표 11〉 참고). 속성 나열 결과 상대적으로 재갈보다 등자에서 일정한 흐름상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기별 특징을 확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개체수가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토 유적간의 상대적인 시기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제작 집단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 지역성에 더 주목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장병형 등자는 모두 함경북도의 연차골 고분군에서 발견되었는데, 동일한 장병형이어도 각 개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단 병부에서 나타나는 차이



점이다. 한 쌍으로 출토된 1지구 1호분 출토품(〈그림 5〉-6)의 경우 병부의 상단이 턱이 지지 않고 곧게 뻗은 일자형이다. 이 등자의 도면을 살펴보면 다른 발해 등자와 달리 병부의 역혁공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측면에 역혁공이 존재하나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혁공 형태는 〈그림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세기 말~6세기의 오녀산성(五女山城) 교장갱(窖藏坑),¹⁶ 6세기 초~6세기 중반의 아차산 4보루,¹⁷ 10세기 중엽의 광양 마로산성 출토품¹⁸에서 확인되나, 등자의 시간적인 변화 흐름의 한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기능상의 차이인 것인지는 충분한 자료 확보와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일 출토된 1지구 2호분 등자(〈그림 5〉-7)의 경우 1호분과 마찬가지로 병부가 곧게 뻗은 일자형이지만 역혁공이 전면에 나 있다. 1지구 15호분 등자(〈그림 5〉-9)는 한 쌍이 발견되었는데, 병부의 상단에 턱이 쳐 있으며, 역혁공은 전면에 나 있다. 필자는 이 장병형 등자의 병부 상단에 턱이 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보았다. 삼국시대의 전반적인 장병형 등자들을 살펴보면 병부 상단에 턱이 없이 곧게 뻗었고, 6세기 대의 철제 등자 확산 단계에서 턱이 있는 병부가 등장해 이전단계의 등자와 공존하였

-
- 16 등자가 출토된 오녀산성 4기 문화층의 경우 4세기 말~5세기 초에 해당된다는 중국 측 발굴 조사단(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 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查發掘報告』, 文物出版社)의 주장이 통용되어왔고, 강인욱(2006)은 이를 수용하여 고구려 등자의 발생을 논한 바 있다(강인욱, 2006, 「고구려 鏡子の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東北亞歷史論叢』 12, 동북아역사재단). 그러나 최근 남한 지역의 고구려 토기와 의 비교 검토를 통해 중국 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4기 문화층의 연대를 5~6세기로 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양시은,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한국고고학회), 이에 4기 문화층에서 출토된 등자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차산 4보루 출토품과 더불어 6세기 초~6세기 중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338쪽)도 제시되어 후후 고구려 등자의 시간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 17 양시은, 2012,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구조 및 성격」, 『고문화』 7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18 成正鏞·權度希·諫直人, 2007, 「鼓樂山城과 馬老山城 出土 馬具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다. 이 시기의 현상과 연차골 고분군 자료 사이의 시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삼국시대 말기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장병형 등자의 답수부도 각기 다른 형태들이 공존하고 있다. 답수부가 확장된 형태에 3열의 원형 돌기가 있는 것(〈그림 5〉-6)과 확장하지 않고 1열의 방형 돌기가 있는 것(〈그림 5〉-7, 9)이 확인된다. 삼국시대 말기에 등장한 철제 등자의 경우 장병형 목심함유 등자의 형태를 모방함과 동시에 답수부를 확장하지 않은 경우와 확장한 경우가 모두 사용되었다. 답수부의 돌기 역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공존하고, 특히 돌기가 없는 경우에는 답수부가 두 줄 혹은 세 줄로 갈라진 형태로도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병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답수부에서도 삼국시대 말기의 일률적이지 않은 제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해보면 발해의 철제 장병형 등자들은 선행 연구(박진욱, 1998)에서 언급되었다시피 고구려 초기, 중기의 목심함유 장병형 등자를 모방하였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고구려 자료에만 한정하여 보기에는 삼국시대 말기의 보편적인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발해의 단병형 등자는 사리파 고분군, 동청 고분군,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청 고분군의 한 쌍의 목심 함유품을 제외하고 모두 철제이다. 이 목심함유 등자(〈그림 4〉-2)는 목심을 넣고 그 주변으로 철판을 둘러 제작하였다. 답수부는 확장하지 않았고 돌기 또한 만들지 않았으며, 병부의 상단에는 턱이 저 있고 병두 부분에는 송곳 형상이 약 3.4cm가량 솟아 있다. 목심함유 등자들이 다량 제작되어 활발히 사용되었던 삼국시대의 한반도 남부 출토품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보이며, 전반적으로 오녀산성 철기 교장갱에서 발견된 목심함유 철제 등자와 유사하다. 한편 병두 부분에서 확인되는 송곳 형상은 통일신라의 철제 등자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발견되었는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다(〈그림 4〉 참고).

철제 단병형 등자들은 모두 폭이 넓은 방형의 병부를 가지고 있으며, 답수부



는 확장하였으나 돌기는 없다. 미약하게 보이는 차이점은 동청고분군 출토품 (<그림 5>-3)은 타원형 윤부를, 사리파 고분군과 석대자산성 주변고분군 출토품 (<그림 5>-1, 5)은 하단부가 비교적 평평한 윤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형식의 등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방형의 병부이다. 이는 주로 폭이 좁고 긴 장방형의 병부를 가진 등자가 유행했던 삼국시대 한반도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낮은 유형이며, 주로 통일신라시대의 호등에 간간이 등장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반면 유라시아의 초원지역에서는 늦어도 6세기부터는 이 형식의 등자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방형의 병부를 가진 철제 단병형 등자의 기원을 오녀산성 F42 출토 철제 등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표 9> 참고). 목심 함유가 아닌 단조한 철제품이라는 재질상의 공통점과 확장된 답수부의 형태, 짧은 병부, 그리고 역혁공을 중심으로 턱이 진 병부 형태가 점차 방형에 가깝게 변화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¹⁹ 이 주장을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약소하게 덧붙이자면 유라시아 초원지역에 전해진 이 고구려의 등자는 초원의 유목민족들에게 빠르게 흡수되어 방형에 가까운 병부를 가진 단병형 등자가 개발되었고, 이것이 다

19 강인옥, 2006, 「고구려 鎧子の 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東北亞歷史論叢』 12, 동북아역사재단, 179쪽.

〈표 9〉 국가 및 지역별 철제 단병형 등자 비교

지역	도면	출처		
고구려	 <p>오녀산성 F42</p>	강인욱, 2006		
유라시아 (서기 5세기 중후반~ 7세기)	 <p>투바 울룩호룸(Улук-Хорум)</p>	강인욱, 2006		
	 <p>쿠드르이게(Кудыргэ) 7호분</p>			
	 <p>알레이(Алей) 스템</p>		 <p>크로할료프카 (Крохалёвка) 23-1호분</p>	
	 <p>쿠라이(Курай)Ⅳ 1호분</p>	 <p>쿠드르이게 3호분</p>	В. А. Могильников, 1981с; Л. Р. Кызласов 1981	
고구려 (후기)	 <p>무순 고이산성 (撫順高爾山城)</p>	 <p>아차산 4보루</p>	강현숙, 2009; 국립 문화재연구소, 2017	
발해	 <p>사리파 7호분</p>	 <p>동청 1호분</p>	 <p>석대자 04SSM4</p>	吉林省文物 考古研究所, 1995;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 1993; 李龍彬, 2006

시 중국 동북지역으로 재유입되어 고구려 후기와 발해의 유적에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리형 등자를 보도록 한다. 발해의 고리형 등자는 제2 송화강



그림 5 발해 유적 출토 등자(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2. 吉林市博物館, 1987; 3~4. 연변 대학발해사연구소, 1993; 5.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6~9. 동북아역사재단, 2011)

〈표 10〉 지역별 철제 고리형 등자 비교

지역	도면			출처
유라시아 (서기 6세기 ~10세기)				V. A. Могильников, 1981
발해				吉林市博物館, 1987

중류역의 대해맹 유적(〈그림 5〉-2)에서 발견되었다. 이 형식의 등자는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6세기 대에 처음 발명되어 활발히 사용되었으나(강인욱, 2006: 178, 재인용),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 그리고 발해와 통일신라 때에 이르러서도 발견되지 않는 낮은 형식이다. 따라서 등자들 가운데서도 유라시아 초원지역의 색채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등자 형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참고).

〈표 11〉 발해유적 출토 등자의 속성분석

지역 (유적)	재질		병부				윤부		답수부				도 면 번호
	철 제	목심 함유	장병		단병	고리 형	타 원 형	비 타 원 형	미확장		확장		
			상 단 턱 有	상 단 턱 無	상 단 턱 有	-			돌 기 有	돌 기 無	돌 기 有	돌 기 無	
제 2 송 화 강 중 류 역	사리파 고분군	●				●		●				●	1
	대해맹 유적	●					●	●				●	2
중 경	동청 고분군	●			●		●					●	3
			●			●		●		●			4
요 하 동 쪽	석대자 산성 주변 고분군	●			●			●				●	5
함 경 북 도	연차골 고분군	●		●			●				●		6
		●		●			●		●				7
		●										●	8
		●		●				●		●			9

2. 지역별 특징

앞서 진행한 재갈과 등자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재갈과 등자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중경지역

먼저 중경지역에서는 해당 유적이 동청 고분군 1개소에 불과하나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흔히 발견되지 않는 환판비가 확인되었고, 서로 다른 형식의 등자가 함께 출토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 환판비를 구성하는 이중외환 형식의 재갈쇠는 스키타이 문화권, 춘추전국 및 위진남북조 시기 중국 동북지역, 남시베리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 발견된 이중외환 재갈쇠와 비교하였을 때 제작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환판형 재갈뿔추개와의 연결을 더 용이하게 변형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안압지에서 출토된 통일신라의 환판비와 비교하였을 때 재갈뿔추개의 테두리를 형성하는 쇠줄을 안쪽으로 구부러뜨려 내부를 장식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고삐이음쇠와 재갈쇠의 형태, 그리고 재갈쇠와 재갈뿔추개의 결합방식에서도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목심함유 단병형 등자의 전반적인 형태는 오녀산성 철기 교장갱에서 발견된 목심함유 철제 등자와 유사하며, 병두 부분의 송곳 형상은 오녀산성 출토품뿐만 아니라 안압지 출토 철제 등자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동청 고분군과 경주 안압지 사이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출토된 마구에서 확인되는 공통점들이 특징적이다(〈표 12〉 참고).

철제 단병형 등자는 한반도의 삼국시대 때에도 흔히 찾아보기 힘든 방향의 병두가 특징적인데 이는 고구려 등자를 모티브로 하여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족들이 개발한 형식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중국 동북지역에 재 유입되어 발해 유적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해보면 중경지역에서 발견된 발해 마구의 지역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2〉 동청 고분군과 안압지 출토 마구 비교

지역	도면	출처
통일신라	  <p>경주 안압지</p>	국립경주박물관, 1995
발해	  <p>동청 고분군</p>	연변대학발해사 연구소, 1993

내구성이 더 강해진 철제 등자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된 시기임에도 고구려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목심함유 등자가 방형의 병부를 가진 단병형 철제 등자와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이 목심함유 등자의 병두 부분의 특이성은 통일신라의 등자에서도 나타나며, 두 지역에서 각기 출토된 환관비에서도 형식 및 제작방식에서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중경지역의 재갈에서는 신라·가야-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제작방식과의 연관성이, 등자에서는 고구려와 통일신라 그리고 유라시아 초원지역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2) 제2 송화강 중류역

다음으로 제2 송화강 중류역에서는 사리파 고분군과 대해맹 유적에서 막대형 재갈멈추개를 갖춘 2연식, 3연식 표비와 철제 단병형, 고리형 등자가 발견되었다.

2연식과 3연식 표비의 재갈멈추개들은 굴레연결부의 위치가 상이한데, 이는 굴레와의 연결방식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연식 표비는 재갈쇠 외환이 원형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나, 3연식 표비는 원형+장방형으로 이중 외환의 재갈쇠가 조합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외환 형태는 발해 이전의 스키타이

식 문화권과 춘추전국 및 위진남북조 시기의 중국지역에서도 종종 발견되나, 주로 2연식 재갈쇠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연식 재갈쇠는 한 점만 발견되어 지역적 특징을 논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3연식 재갈쇠는 한계 표비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기가 늦은 발해의 것은 각기 다른 문화적 특징들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철제 단병형 등자는 중경지역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등자의 영향을 받아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 재개발된 등자 형식이다. 철제 고리형 등자는 유라시아 초원지역에서 처음 제작된 형식이며, 그러므로 유라시아의 초원지역 요소가 가장 강하게 남아 있는 등자로 인식된다. 따라서 제2 송화강 중류역의 재갈에서는 유라시아의 고대 유목문화와 중원문화의 연관성을 등자에서는 유라시아 초원지역의 유목민족들과의 연관성을 추정해보았다.

3) 함경북도 지역

마지막으로 함경북도 지역의 경우 연차골 고분군 1개소만 해당되며, 판비와 표비로 추정되는 재갈 결합체와 철제 장병형 등자가 발견되었다.

판비는 중국 동북지역의 선비가 최초 제작 집단이지만, 고구려를 비롯해 한반도 고대국가에서는 대부분 투공형 판비라는 고구려에서 재지화된 형식을 사용하였고, 연차골 고분군 출토 판비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표비로 추정되는 재갈 결합체 역시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특징 파악은 어려우나, 길이가 긴 고삐이음쇠로 보았을 때 유라시아 초원지역 유목민족들의 표비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한반도의 삼국시대 표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고삐이음쇠와 노는고리만 발견된 재갈 결합체의 경우 역시 더 이상의 판별은 불가능하나, 노는고리는 중국 동북지역의 선비와 고구려의 재갈에서 발견된 사례가 없는 재갈 부품인 것을 고려했을 때 추후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제 장병형 등자는 전반적으로 고구려 초, 중기의 목심함유 장병형 등자를 모방하였다는 기존 의견에 큰 이견은 없으나, 고구려 자료에만 한정하여 보기에는 삼국시대 말기의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함경북도 지역의 재갈과 등자에서는 전체적으로 삼국시대 마구 제작의 특징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덧붙여 연차골 고분군에서는 재갈과 등자뿐만 아니라 소량이긴 하나 띠고정 교차금구, 안장 테두리 장식 편, 운주, 행엽 등 마구 일식이 같이 발견되어 주목된다. 특히 삼엽문 장식의 심엽형 행엽은 고구려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황남대총 남분, 인왕19-K호분, 황오동 34호분 등 신라 적석목곽분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²⁰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 고지(故址)에 위치한 발해 고분이라 하여 고구려 계승성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입장에서 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발해 마구는 중경지역, 제2 송화강 중류역, 함경북도 지역에서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앞서 언급했듯이 절대적인 마구 개체 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 또는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현 상황에서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마구가 출토된 유구의 양상과 공반 출토 유물에 대한 심화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보완하겠다.

IV. 맺음말

이 글의 맺음말은 각 장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I 장에서는 발해 마구 연구에 주목하게 된 이유와 연구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발해 마구에 대한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된 삼국시대 마구에 비해 기초적인 연구밖에 진행되지 못한 것에 주목

20 강현숙, 2012, 「高句麗古墳과 新羅 積石木槨墳 交叉編年에서의 몇 가지 論議」, 『韓國上古史學報』 78, 한국상고사학회, 97쪽.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하고, 마구의 형식 분석을 위해 삼국시대 마구 연구를 참고하였다. 다만 국외자료 특성상 도면이 누락되거나 필자의 판단으로 마구로서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Ⅱ장에서는 지금까지 출토된 발해 마구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약 36점이 확인되었으며, 출토 유적은 총 7개소로 발해의 행정구역과 수계, 현대 지리명 등을 기준으로 상경, 중경, 함경북도, 요하 동쪽, 제2 송화강 중류역, 연해주 남부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준에 북한 학자들에 의해 발해의 것으로 분류되었던 마반촌산성과 청해토성 출토 등자를 재검토하여 사용연대를 발해 이후 시기로 보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Ⅲ장에서는 기존 연구 내용을 간략히 검토한 후 발해 이전 및 동시기의 마구 자료들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파악해보았다. 분석 대상으로는 비교적 지역적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재갈과 등자가 함께 발견된 중경지역과 제2 송화강 중류역, 그리고 함경북도 지역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발해 마구의 경우 적은 출토 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형식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중경지역에서는 재갈에서 신라·가야-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제작방식과의 연관성이, 등자에서 고구려와 통일신라 그리고 유라시아 초원지역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 송화강 중류역에서는 재갈에서 유라시아의 고대 유목문화와 중원 문화와의 연관성을, 등자에서 유라시아 초원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재갈과 등자에서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나, 특히 등자에서는 비교 자료로 고구려만 한정 지어 검토하기에는 삼국시대 말기 등자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발해 마구의 수량 부족으로 유적 간의 상대적 편년이 어려워 마구의 시간적 변화 양상을 밝히는 데 미진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분석 결과에서 보이는 발해 마구에 대한 다양성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비교 분석자료에서 발해 이전 및 동시기 말갈

자료가 누락되었다는 한계가 있다.²¹ 이 점들을 유의해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21 발해 고고학 연구 쟁점 중 대표적인 것은 말갈 유적의 발해귀속 여부이다. 따라서 발해 마구의 심화 분석에 앞서 말갈 자료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발해가 말갈7부 외의 소규모 말갈 부락들도 모두 복속시켰다는 문헌연구를 근거로, 고구려적 요소가 보이지 않는 말갈 유적이어도 발해 시기에 해당된다면 모두 발해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정석배, 2016)가 진행된 바 있다. 정석배, 2016, 「발해의 북방경계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54, 고구려발해학회.

참고문헌

단행본

- 구난희·이병건·정석배·백종오·김진광·전현실·김진한, 2015, 『발해 유적 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 국립경주박물관, 1995,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고구려의 철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 국립문화재연구소·러시아과학원 극동지소 역사학고고학민족학연구소, 2007, 『연해주 의 문화유적』 I.
- 국립청주박물관, 1990, 『삼국시대 마구특별전』, 거성문화사.
- 김종혁, 2002, 『동해안 일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9, 『고구려유물』, 진인진.
- 송기호, 2011, 『발해 사회문화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윤용진·김종철, 1979, 『大伽耶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집부,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 8,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 趙榮濟·朴升圭·金貞禮·柳昌煥·李瓊子, 1992, 『陝川玉田古墳群』 Ⅲ, 慶尙大學校博物館.
- 중앙문화재연구원,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 최인선·조근우·이순엽, 2003, 『麗水 鼓樂山城』 1, 順天大學校博物館.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3, 『청주신봉동백제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 1982년도 조사-』.
- 한성백제박물관·부산박물관, 2014, 『러시아연해주문물전 프리모리예』.
-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外,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集安高句麗王陵 調査報告』.
- 吉林省文物志編委會, 1984, 『龍井縣 文物志』.
- 遼寧省文物考古究所, 2004, 『五女山城-1996~1999, 2003年桓仁五女山城調査發掘 報告』, 文物出版社.
- 中國人民大學博物館, 2009, 『北國春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 2009, 『寧安虹鱒魚場』, 文物出版社.

東京國立博物館, 1997, 『大草原の騎馬民族-中國北方の青銅器』.

Кызласов, Л. Р., 1981, Древнехакасская культура чаатас VI-IX вв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гильников, В. А., 1981a, Кимаки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_____, 1981b, Сроткинская культура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_____, 1981c, Тюрки // Степи Евразии в эпоху средневековья,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논문

강인옥, 2006, 「고구려 鏡子の 發生과 유라시아 초원지대로의 전파에 대하여」, 『東北亞歷史論叢』 12, 동북아역사재단.

강현숙, 2009, 「고구려 고지의 발해고분」,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_____, 2012, 「高句麗古墳과 新羅 積石木槨墳 交叉編年에서의 몇 가지 論議」, 『韓國上古史學報』 78, 한국상고사학회.

김두철, 1991, 「三國時代 轡의 研究」,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_____, 2001, 「韓國 古代 馬具의 研究」,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길, 2018, 「발해 마구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영남, 2017, 「고려와 동·서 여진의 관계」, 『역사학연구』 67, 호남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2011,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류창환, 2007, 「가야마구의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8, 「영산강유역 출토 마구의 성격과 의미」, 『중앙고고연구』 25, 중앙문화재연구원.

박진옥, 1998, 「발해의 마구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7, 사회과학출판사.

서나영, 2013, 「고구려 입주부운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成正鏞, 2001, 「傳 扶餘 扶蘇山麓 出土 青銅鑣轡에 대하여」, 『湖西考古學』 5, 湖西

考古學會.

成正鏞·權度希·諫早直人, 2007, 「鼓樂山城과 馬老山城 出土 馬具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27, 호남고고학회.

손로, 2012, 『고대 동북아시아 차마구와 기마구의 변천』,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양시은, 2012, 「아차산 고구려 보루의 구조 및 성격」, 『고문화』 79, 한국대학박물관협회.

_____, 2020, 「오녀산성의 성격과 활용 연대 연구」, 『한국고고학보』 115, 한국고고학회.

연변대학발해사연구소, 1993, 「동청발해무덤발굴보고」, 『발해사연구』 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장운정, 2010, 「동아시아 표비의 구조적 분석과 전개」, 『문물연구』 18, (재)동아시아문물연구학회재단 동아시아문물연구소.

장은정, 2012, 「흥노계 표비의 확산과 고대 동아시아의 기마 문화 수용」, 『중앙아시아연구』 17, 중앙아시아학회.

전옥년·이상률·이현수, 1989, 「동래북천동고분군 제2차 조사보고」, 『영남고고학보』 6, 영남고고학회.

정동민, 2017, 「고구려 騎乘用 馬具의 출토 양상과 계통」, 『역사문화연구』 64, 한국의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정석배, 2000, 「先 흥노-스키타이 世界' 小考」, 『한국상고사학보』 32, 한국상고사학회.

_____, 2009, 「아무르-연해주 지역의 말갈-연구현황과 과제」, 『고구려발해연구』 35, 고구려발해학회.

_____, 2016, 「발해의 북방경계에 대한 일고찰」, 『고구려발해연구』 54, 고구려발해학회.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1995, 「吉林永吉查里巴殊崧墓地」, 『文物』 1995-9.

吉林省文物工作隊·吉林市博物館·永吉縣文化局, 1991, 「吉林永吉楊屯遺址第三次發掘」, 『考古學集刊』 1991-7.

吉林市博物館, 1987, 「吉林永吉楊屯大海猛渤海遺址」, 『考古學集刊』 1987-5.

吉林省博物館文物工作隊, 1977, 「吉林集安的兩座高句麗墓」, 『考古』 1977-2.

董高, 1995, 「公元2至6世紀慕容鮮卑, 高句麗, 朝鮮, 日本馬具之比較研究」, 『文物』 1995-10.

沈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2004年度沈陽石台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

- 『北方文物』 2006-2.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朝陽市博物館, 1997, 「朝陽十二台鄉磚廠88M1 發掘簡報」,
『文物』 1997-11.
- 遼寧省博物館文物隊 외, 1984, 「朝陽袁台子東晉墓」, 『文物』 1984-6.
- 王巍, 1997, 「從出土馬具看三至六世紀東亞諸國的交流」, 『考古』 1997-12.
- 王振江, 1983, 「安陽晉墓馬具复原」, 『考古』 1983-6.
- 尹郁山, 1990, 「吉林永吉縣查里巴村發現二座渤海墓」, 『考古』 1990-6.
- 李龍彬, 2006, 「2004年度沈陽石台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 『北方文物』
2006-2.
- 張雪岩,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理」, 『考古』 1979-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學研究所安陽工作隊, 1983, 「安陽孝民屯晉墓發掘報告」, 『考
古』 1983-6.

기타 자료

전국 박물관 소장품 검색, <http://www.emuseum.go.kr>.

발해 마구 연구

김영길

마구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각종 부품들의 결합체로 당시 산업 기술과 예술 성향들이 응집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발해에 대해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것에 비해, 발해 마구는 부품 소개와 형식을 관찰한 기초적인 연구만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 자료에 신자료들을 추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발해 마구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발해의 마구는 적은 출토 수량에 비해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 및 종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은 발해 이전 시기의 문화와 동시기 근접 문화 마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찾아보았다. 먼저 중경지역의 재갈에서는 신라·가야-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제작방식과의 연관성을, 등자에서는 고구려와 통일신라 그리고 유라시아 초원지역의 유목민족들과의 연관성을 추정해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제2 송화강 중류역의 재갈에서는 유라시아의 고대 유목문화와 중원 문화와의 연관성을, 등자에서는 유라시아 초원지역의 유목민족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함경북도 지역의 재갈과 등자에서는 모두 고구려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나, 다만 등자에서는 비교 자료로 고구려에만 한정 지어

검토하기에는 삼국시대 말기 등자의 전반적인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발해, 삼국시대, 유라시아, 마구, 재갈, 등자

ABSTRACT

A Study on the Horse Trappings of Balhae

Kim Younggil

Horse trappings are a combination of various functional parts, so the industrial techniques and artistic tendencies of the time are combined. So it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archaeologists. However, while many scholars in Korea and abroad have been interested in Balhae, Horse trappings of Balhae have only conducted basic research. Therefore, in this article, I added new materials to the existing research materials and examined them in detail. And I figured out the shape of the Horse trappings of Balhae. As a result, Horse trappings of Balhae were found to have various forms and types depending on the region compared to the small quantity excavated. The cause of this was found by comparing the culture of the pre-Balhae period with other cultural herds of the same period. First, the bit in the Jung-gyeong area confirmed the connection between Silla, Gaya and Unified Silla. And in the stirrups, the association between Goguryeo, Unified Silla, and nomadic peoples in the Eurasian grasslands could be estimated. Next,

the bit at the middle basin of the Second Songhwa River confirmed the link between Eurasian Ancient Nomadic Culture and Chinese Medieval Culture. And, in the stirrups, the association with nomadic peoples in the Eurasian grasslands could be identified. Finally, both bits and stirrups in Hamgyeongbuk-do were all related to Goguryeo. However, I think that Goguryeo should not be the only thing that should be looked at in the study of the stirrups. This is because the general phenomena of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are being confirmed. Therefore, a closer review is needed.

Keywords: Balhae, Three kingdoms in the Korean Peninsula, Eurasia, Horse trappings, bits, stirrups.

1920~1930년대 초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과정

최은진 | 국가보훈처 연구사, 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 I. 머리말
- II. 일본정부의 소작법 입안과정
- III. 소작법안의 의회 상정과 그 내용
- IV. 맺음말



I. 머리말

1924년 일본에서 제정된 ‘소작조정법’을 모범으로 하여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2년 ‘조선소작조정령’이 제정되었다. 또한 1931년 일본에서 ‘소작법’이 중의원에서 가결되었으나 귀족원을 통과하지 못해 입법 실패한 후, 이 소작법안을 선택적으로 적용·변질시켜 1934년 ‘조선농지령’이 먼저 “일본 최초의 소작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식민당국은 조선농지령을 농업 개발, 식민지주제 유지, 생산력 증진의 목적으로 입안했다. 일본은 만주 침략 후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력 증진의 기초를 이어나가며 혁명적 농민운동을 안정시키고자 지주와 자본가의 요구를 참작하여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소작법을 제정한 것이다.¹

이렇게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소작입법의 배경이 되는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과정과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기존에 정연태와 이윤갑이 조선농지령 제정과정에서 일본의 소작법안이 참고가 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소작법안이 개혁 성향의 관료들의 주도로 일찍이 고안되어 지주제 개혁을 목표로 한 데 반해, 조선농지령은 기존의 지주 권익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입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² 그

* 투고: 2020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25일

** 이 글은 필자의 2020, 「1930년대 조선농지령의 제정과정과 시행결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중 제3장 ‘조선농지령 제정의 배경(2): 일본의 소작입법’을 축약·수정하여 게재함.

1 최은진, 2019,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조선농지령 입안과 일본정부의 심의·의결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88, 113쪽; 최은진, 2020, 「1930년대 중반 조선농지령 시행 이후의 소작쟁의」, 『한국사연구』 189, 265쪽.

2 이윤갑, 2013,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소작정책 연구』, 지식산업사, 148~150쪽; 정연태, 2014, 『식민권력과 한국 농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31~332쪽, 347~351쪽.

런데 그 연구에서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소작법 비교는 주로 각 규정 조항의 대조에 그쳤다. 일본은 본국의 소작법안을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왜 그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조선농지령을 제정했을까. 일본정부가 어떠한 절차와 내용으로 소작법안을 만들어 갔는지 소작입법 추진 상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취지가 조선농지령과 어떻게 달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1920~1930년대 초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일본 근대 정책사의 범주이자, 아울러 그 소작 관련 법안의 내용이 식민지 조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는 각각 ‘기생(寄生)지주제’와 ‘식민지주제’라는 유사한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모두 지주소작관계가 사회경제적으로 주요한 모순이 되었으므로,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를 환류하며 상호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시기 독점자본주의 체제를 확립하면서 지주적 토지소유가 동요기에 들어가 독점자본 대 지주 대 농민의 역관계가 작동하는 상황이었고, 식민지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하위 파트너로 1930년대 중반까지도 식민지주제를 강화·유지하는 국면이던 차이가 있다.³

일본에서는 이 소작입법에 대한 연구 흐름이 두 가지 있는데, 한편은 오구라 다케카즈(小倉武一) 등 ‘강좌파(講座派)’의 계보를 잇는 연구이고, 다른 한편은 오우치 쓰토무(大内力) 등 우노(宇野)경제학 이론에 따른 연구이다.⁴

먼저 오구라 다케카즈는 민법의 성립은 지주적 토지소유권의 확립을 의미하고, 제1차 세계대전 후 소작입법의 노력은 지주적 토지소유를 개혁하려는 것이

3 菅野正, 1966, 「小作爭議の研究(上)」, 『福島大學教育學部論集』 18-1, 63~65쪽, 74~75쪽; 田中學, 1968a, 「1920年代の小作爭議と土地政策(I)」, 『經濟學季報』 18-1, 136~141쪽; 장시원, 1989,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쪽; 倉内宗一, 1999, 『地主·小作制の展開過程』, 農林統計協會, 90~91쪽; 데루오카 슈조 편, 전운성 역, 2004, 『일본농업 150년사(1850~2000)』, 한울아카데미, 79~80쪽, 105~107쪽; 木村茂光 編, 2010, 『日本農業史』, 吉川弘文館, 273~274쪽.

4 坂根嘉弘, 1990, 『戰間期農地政策史研究』, 九州大學出版會, 16~29쪽.

었다고 위치 지었다. 즉 소작입법이라는 소작관계 특별법을 통한 민법의 수정과정을 지주적 토지소유권에서 근대적 토지소유권으로의 발전과정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소작입법을 ‘소유권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입법으로 보고, 소작입법을 추진한 관료와 학자를 ‘민주주의적’으로, 소작입법 정책을 채택한 헌정회(憲政會)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어서 아다치 미키오(安達三季生)는 소작조정법이라는 새로운 법체계 창출이 지주를 억제하는 기능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사카네 요시히로(坂根嘉弘)는 소작조정법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이를 통해 1920년대 농민투쟁의 귀결로 형성된 농촌 촌락의 ‘협조체제’가 경제적 근대화, 곧 지주적 토지소유의 제한과 경작권의 상대적 강화로 소작지 경영의 안정을 가져오고, 정치적 민주화, 곧 중농층의 정치적 지위의 향상과 정치 참여를 가져왔다고 했다. ‘소작조정법체제’는 국가권력의 제도적 개입이었고, 이 협조체제를 매개로 하여 사실상 소작법 질서를 실현하고 사회법적 기능을 발휘하여 체제 통합을 이루었다는 것이다.⁵

한편 다른 관점에서 우노 이론에 따라 오우치 쓰토무는 근대 일본 농지정책에서는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한 자작농 창설·유지사업이 주가 되었고, 소작입법 사업은 차선책으로 여겨졌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자작농 창설·유지사업이 비록 재정 부담 문제에 부딪혀 제약을 받았으나, 소규모 농가경제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에 소작법안은 민법의 부르주아적인 계약 자유의 원칙을 대폭 수정하고 사유재산권을 현저히 제한하는 내용이 되면서, 보수세력의 반대가 거세어 진전될 수 없었다며 그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히토시(齋藤仁)는 오우치의 소작입법 파악의 분석틀에 동조하면서도, 소작조정법 운용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평가했다. 사이

5 小倉武一, 1951, 『土地立法の史的考察』, 農業評論社; 安達三季生, 1959, 「小作調停法」, 『講座日本近代法發達史』 7, 勁草書房; 坂根嘉弘, 1981, 「協調體制の歴史的意義」, 『日本史研究』 224; 坂根嘉弘, 1982, 「小作調停法體制の歴史的意義」, 『日本史研究』 233; 坂根嘉弘, 1984, 「小作調停法運用過程の分析」, 『農業經濟研究』 55-4; 坂根嘉弘, 1990, 위의 책.

토는 소작조정제도를 제국주의 단계의 사회정책적 농업정책으로 보았다.⁶

이러한 선행연구처럼 1920~1930년대 초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추진에 대해 사회입법으로서 지주적 토지소유를 개혁하여 경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일본정부의 소작법 입안과 의회 상정 과정 및 법안의 특성에 대해 더 면밀히 검토한다. 일본정부의 소작법 제정 시도와 좌절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일본 내 정치시스템(관료와 정당, 의회)의 타협과 갈등의 논의내용과 소작법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의 이해관계를 주목하며 소작입법의 의결구조를 파악한다.⁷ 한편 결국 1938년에 가서 일본에서 소작법으로서 ‘농지조정법(農地調整法)’이 제정·시행되나, 이 시기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농지조정법은 전시하에서 일본정부가 농업생산력의 유지·증진, 농지에 관련한 분쟁 방지를 통한 농촌의 평화 확보를 2대 주안점으로 하여 입안했다. 농지조정법은 전시 식량문제로 인해 농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와 지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는 정책으로서 실시되었다. 그리하여 소작법안의 당초 의향에 반해 소작관계 조정에 대한 조항은 거의 없었고 전쟁에 편승하여 소작입법의 정신을 왜곡한 것이었다.⁸

이 글에서 일본정부의 소작 관련 법안의 입법과정과 과정에 대한 자료는 주로 일본정부 기록인 『농지제도자료집성 3: 지주 및 소작인단체·소작조정법에 관한

6 大内力, 1950, 『日本農業の財政學』, 東京大學出版會; 大内力, 1959, 「資本主義的商品經濟と農業」, 東畑精一·宇野弘藏 編, 『日本資本主義と農業』, 岩波書店; 齋藤仁, 1965, 「日本農政の史的構造」, 『思想』 497; 齋藤仁, 1976, 『アジア土地政策論序說』, アジア經濟研究所.

7 단,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추진에 대한 지주와 농민 측의 저항과 타협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 글의 분량상 소략하게 다루었으며, 그 자세한 분석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제3장 제1절 4항「소작입법에 대한 지주와 소작농 측의 반응」을 참고하기 바란다.

8 日本評論社, 1938, 「農地調整法案要綱成る」, 『法律時報』 10-1, 70쪽; 小林巳智次, 1938, 「農地調整法案要綱を讀みて」, 『法律時報』 10-2, 24~26쪽; 田邊勝正, 1938, 「農地問題の本質と農地調整法」, 『法律時報』 10-5, 29쪽; 小野木常, 1942, 『調停法概說』, 有斐閣, 55쪽; 데루오카 슈조 편, 전운성 역, 2004, 앞의 책, 139쪽.

자료』와 『농지제도자료집성 4·5: 소작입법에 관한 자료(상·하)』 등을 활용했다. 또한 일본제국의회 기록을 ‘제국의회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제국의회의사록: 제59회』 등을 함께 검토했다. 그리고 소작입법에 대한 여론과 보도를 읽기 위해 관련 단체 보고서와 당시 민간에서 발간된 단행본을 살펴보고, 일본 신문기사와 아울러 식민지 조선 내 신문이 전한 일본의 소작입법 소식도 주목해 보았다.

II. 일본정부의 소작법 입안과정

1.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소작법 입안 논의

일본에서는 1920년 공황 후에 소작쟁의가 광범하게 전개되었다.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점자본주의의 확립에 따라 만성 불황을 겪게 되고, 농민들이 자본주의적 유통경제의 본격적 침투로 압박을 받아 일반적으로 궁핍해지면서 지주와 소작인의 경제적 대항관계가 격화된 것이었다.⁹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 공황 후 1920년대에 소작쟁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증가하면서, 일본의 농정에서는 소작문제, 토지문제 등이 현안이 되었다. 소작쟁의의 확대를 계기로 소작 관련 법제의 결함이 폭로되었고 식자들은 그 대책을 강구했다. 민법 및 민사소송법은 자본주의적 입법으로서 토지소유권

9 「小作爭議の頻發」, 『東京朝日新聞』, 1921년 11월 26일; 「小作問題の成行(1~7)」, 『時事新報』, 1923년 6월 24일~7월 7일; 法律新聞社 編, 1924, 『小作調停法原義』, 法律新聞社, 3~6쪽; 水谷長三郎, 1926, 『法廷に於ける小作爭議』, 同人社書店, 99쪽; 菅野正, 1966, 앞의 글, 65~66쪽, 80쪽; 田中學, 1968a, 앞의 글, 127쪽, 142쪽; 田中學, 1968b, 「1920年代の小作爭議と土地政策(Ⅱ)」, 『經濟學季報』 18-2, 105쪽; 庄司俊作, 1982, 「昭和恐慌期の小作爭議狀況」, 『社會科學』 30, 270쪽, 277쪽; 마리우스 B. 젠슨 저, 김우영 외 역, 2006, 『현대일본을 찾아서』 2, 이산, 855~856쪽.

에 중점을 둔 지주 본위의 법률이었다. 현행법 아래 불리한 지위에 놓여 있던 소작농 측은 소작법규를 요망했다. 아울러 이 시기 또 하나의 중요 과제는 ‘쌀소동(米騒動)’으로 가시화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농업생산력의 직접 담당자인 소농의 지위 안정이 소작법 구상에서 핵심 과제가 되었다.

소작법 제정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 등을 배경으로, 소작쟁의 확대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작관계 특별법으로서 소작입법이 현실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지주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주소작관계를 조정하여 지주에게 일정한 양보를 요구하고 소작인을 보호하며, 중농층을 농촌 지배에 참가시켜 계급적 모순을 완화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농상무성의 신진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쌀소동 후 들어선 하라 다카시(原敬) 정당내각(1918. 9. ~ 1921. 11.)¹⁰의 재계 출신 농상무대신 야마모토 다쓰오(山本達雄), 농상무성 농정과장 이시구로 다다아쓰(石黒忠篤)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들 농상무성 내 개혁 성향의 관료들은 지주적 토지소유의 폐해를 인식하고,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지주소작관계를 대폭 재편해서 소작권을 강화하여 농업생산의 확대를 도모하려 했다. 이처럼 1920년대 자본주의와 지주제의 모순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의 구조 변화를 도모하고자 실시된 일련의 농업 개혁 정책은 ‘이시구로 농정’이라고 칭해졌다.¹¹

10 중의원 제1당이던 立憲政友會 총재 하라 다카시의 내각은 총리 자신을 포함해 6명의 각료가 정당원으로서 입각한 최초의 본격적 정당내각이었다. 하라 내각은 보통선거의 즉시 실행은 반대하면서, 입헌정우회 지지자가 많은 농촌의 유권자를 중대시키는 동시에 다수당인 입헌정우회에 유리한 소선거구를 채용해서 중의원 의석을 확대하려 했다. 이에 하라 내각은 농촌의 위상 강화에 신경을 썼다. 아사오 나오히로 외 편, 이계항 외 역, 2003, 『새로 쓴 일본사』, 창비, 484~492쪽; 앤드루 고든 저, 김우영 역, 2005, 『현대일본의 역사』, 이산, 316~317쪽.

11 那須皓, 1929, 「小作法制定の是非」, 農林省 農務局, 『著書雜誌ニ表ハレタル小作法ニ對スル意見』, 1~2쪽; 野間海造, 1941, 『現代農政論考』, 東晃社, 1~2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98쪽; 川口由彦, 1992, 「小作調停法の法イデオロギ-」, 『法社會學』 44, 231쪽; 平賀明彦, 2002, 「1920年代農政官僚の政策構想」, 『白梅學園短期大學紀要』 38, 11~13쪽; 平賀明彦, 2003, 『戰前日本農業政策史の研究(1920-1945)』, 日本經濟評論社, 11~14쪽, 37~38쪽; 데루오카

일본 농상무성 관료들은 1920년 11월 27일 소작관계법을 심의하고 소작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작제도조사위원회’를 농상무성 내에 설치했다. 이에 앞서 1920년 11월 12, 13일에 소작조사위원이 임명되었다. 소작제도조사위원회는 소작법을 비롯하여 일본의 농가 경제상태, 지주 대 소작농의 관계, 지주와 자본가 및 노동자의 관계 및 기타 소작조직 전반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¹²

소작제도조사위원회는 관민 합동의 조사기관을 지향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농상무성 차관 다나카 류조(田中隆三)와 위원으로 농상무성을 비롯하여 내무성·사법성·대장성 등 관리, 중의원·귀족원 의원, 교수, 농촌문제 전문 학자 등 총 29명이 참여했다. 그런데 중의원과 귀족원 의원의 상당수는 대지주였다. 그리하여 당시 위원으로 소작인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인물을 더 추가하기 바라는 여론도 있었다. 위원회의 설립과 동시에 농무국에서는 소작제도의 기초적 연구를 위하여 농정과 내에 분실(分室)을 만들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농정과장 서기관 이시구로 다다아쓰와 분실장 농상무성 참사관 고다이아 곤이치(小平權一)가 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다.¹³

소작제도조사위원회는 농상무성으로부터 연구자료를 받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의 심의, 정책 입안은 ① 소작제도 개선을 위한 소작입법, ② 자작농의 창설·유지, ③ 소작분쟁의 중재·조정 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위원회는 소작제도의 개선 건부터 심의하기로 했다.¹⁴

슈조 편, 전운성 역, 2004, 앞의 책, 114쪽, 134쪽; 大石嘉一郎, 2005, 『日本資本主義百年の歩み』, 東京大學出版會, 139쪽; 김석연, 2010, 「Japan's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of 1924」, 『일본연구논총』 32, 63쪽.

12 「小作調査委員任命」, 『大阪朝日新聞』, 1920년 11월 14일; 「山本農相演說」, 『大阪朝日新聞』, 1920년 11월 28일; 「小作制度調査會」, 『大阪毎日新聞』, 1920년 11월 28일;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農地制度資料集成』 4, 御茶の水書房, 177~180쪽.

13 「小作制度調査會に望む」, 『大阪朝日新聞』, 1920년 11월 22일; 「小作制度の改善」, 『東京朝日新聞』, 1920년 12월 21일.

14 田中學, 1968b, 앞의 글, 98~99쪽, 104쪽.

1921년 6월 17일 소작제도조사위원회 제4회 특별위원회에서 이시구로, 고다이카 간사 측은 「소작법안 연구자료」를 제출했다. 특별위원회에서 일본 전국 의 소작관행 및 지주·소작 간의 분쟁에 대해 실지 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수십 회에 걸쳐 조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드디어 제1차 소작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 이후의 이른바 소작법안 ‘간사 사안(私案)’의 원형이 되는데, 소작권 보호와 소작분쟁에 대한 관의 중재로서 소작조정에 대해 일괄하여 전문 71조로 구성되었다. 이는 소작권을 현저하게 강화하려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¹⁵

제1차 소작법안 연구자료에서 소작권은 민법의 영소작권(永小作權, 물권)과 토지 임차권(채권) 개념을 통일하여, 영소작뿐 아니라 보통소작도 물권에 상당하는 효력이 있는 소작권으로서 인정했다(제1조). 소작권 보호 기간은 보통소작은 15년 이상, 영년작물(永年作物) 재배의 경우 20년 이상 50년 이하로 정했다(제4~5조). 이 기간 중에 소작권을 자유롭게 양도 가능[전대(轉貸)는 불허]하도록 했으며(제10~11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제9조). 소작기간이 만료된 후 지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소작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제7~8조). 소작지 반환 시에 잔존하는 토지개량 공작물, 기타 설비는 소작인이 부담하여 만든 것으로 판단하여 지주가 배상해야 했다(제39조). 소작지를 직접 지주가 경작하게 되거나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에도 적절한 가격으로 소작권을 평가하여 소작인에게 지불하도록 했다(제17, 21조).

소작료는 소작인이 해당 소작지의 보통 생산물로 현물 소작료를 수확 후 3개월 이내에 지불하나,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수확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무이자 분할 지불이 가능했다(제25~26, 28~29조). 지주는 소작인이 소작료를 3년

15 「小作法案」, 『大阪朝日新聞』, 1921년 10월 21일; 小倉武一, 1951, 앞의 책, 330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34~35쪽, 183~213쪽; 田中學, 1968b, 위의 글, 101~103쪽.

분 체납하는 경우 등에 한해 소작권을 소멸시킬 수 있었다(제16조). 소작지의 수익이 불가항력으로 소작료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소작인이 그 다음 해의 생계와 소작 계속에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소작료 감면을 청구할 수 있었다(제34조). 이 조항에서는 민법에서처럼 수익 액수에 이르기까지라는 소작료 감액의 한도를 두지 않았다.

한편 소작분쟁을 중재할 소작심판소를 설치[구재판소(區裁判所)]가 담당하며(제47조), 지주와 소작농 측 및 기타로부터 각각 동일한 수의 참여원을 뽑아 사실 판단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고, 소작심판소의 결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갖도록 했다(제51~52조). 소작심판소는 상당한 소작료의 판정 및 기타 소작쟁의를 판정하기 위한 재판권을 가지며(제49조), 상당한 소작료로 판정되면 5년간 이를 바꿀 수 없었다(제32조). 이처럼 소작제도조사위원회 간사 측이 제출한 제1차 소작법안은 소유권 절대 보장의 민법 체계가 소작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¹⁶

이후 1921년 7월에 열린 소작제도조사위원회 제5회 특별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제2차 소작법안 연구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소작권 기간(제1차 최소 15년 → 제2차 7년), 소작권 양도 절차(제1차 소작인의 통지만 필요 → 제2차 지주의 승낙 필요), 소작료 지불 의무(제1차 지불하지 않은 소작료 액수가 3년분 이상일 경우 소작권 소멸 → 제2차 계속해서 3년간 소작료를 체납하거나, 그 체납액이 2년분 이상일 경우 소작권 소멸) 등의 점에서 지주의 의향을 배려한 것이었으나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에 지주적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으로부터의 반격은 더 강력해졌다.

이후 수정되어 각 위원에게 배포된 「제3차 소작법안 연구자료」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인지 예상치 못하게 1921년 10월 21일자 도쿄(東京)·오사카(大阪)

16 「小作法案說明」, 『東京朝日新聞』, 1921년 10월 23일; 河田嗣郎, 1922, 「小作制と小作法(5)」, 『經濟論叢』 14-6, 997~1010쪽; 小倉武一, 1951, 위의 책, 325~329쪽; 김용덕, 1986, 「大正期 소작조정법의 제정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76, 138~139쪽.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법안으로서 게재·발표되었다. 그러자 위원회 측은 즉시 이 법안이 단순한 ‘간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정정하고, 동시에 각 위원 및 지방장관에게도 이 뜻을 통첩하였다. 그러나 각지의 지주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소작법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소작법 연구는 일시 중지되었다.¹⁷

일본정부는 소작법안을 소작제도조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여론 조사도 했다. 그러나 소작법안에 대한 위원회 내부의 대립된 견해와 지주·소작농 양측의 찬반 여론으로 심의는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이 소작법안이 소작인의 권리를 상당히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주 측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1921년부터 소작쟁의가 급증하고, 1922년 일본농민조합(1922년 4월 9일 설립) 결성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해 2월 6~10일 소작제도조사위원회 제6회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우선 소작조정법을 결정하고 그 후 소작법 및 소작조합법을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었다.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嚴太郎) 위원(도쿄제국대학 법학부 교수, 아마다 겐(山田劍) 위원(귀족원 의원)은 유럽과 같이 소작심판소에 대한 규정을 실체법인 소작법 규정과 분리·입안하여 먼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시구로 간사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소송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종 조정법의 도입을 주장하던 사법성 관료의 제안으로 위원회의 대세는 형식법인 소작조정법을 우선 입법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후 위원회에서는 우선 소

17 「小作法案」, 『大阪朝日新聞』, 1921년 10월 21일; 「脱稿したる小作法案」, 『大阪朝日新聞』, 1921년 10월 23일; 「小作爭議防止策」, 『大阪新報』, 1921년 11월 29일; 末弘嚴太郎, 1924, 『小作調停法大意』, 科學思想普及會, 11쪽; 小野武夫, 1925, 『農民運動の現在及將來』, 日本學術普及會, 157쪽, 216쪽; 松村勝治郎, 1931, 『小作權に關する研究』, 勞働公論社, 102~103쪽; 野間海造, 1941, 앞의 책, 6쪽; 小倉武一, 1951, 위의 책, 334~335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35~36쪽, 156~174쪽, 213~262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103~105쪽.

작조정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 갔다. 소작법 제정이 지주적 입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소작관계를 조정·통제하는 소작조정법의 입법을 먼저 추진한 것이다.

그리하여 1922년 6월 28~30일 제8회 특별위원회에 ‘간사 사안’으로 「소작조정법안 연구자료」가 제출되어 심의가 개시되었다. 이후 그해 9월 18일 제9회 특별위원회, 9월 19~21일 제2회 총회를 거쳐 3개월간 위원회에서 소작조정법안을 심의·수정하여 농상무대신에게 제출해서 답신을 받았다.

일본정부는 이 소작조정법안을 약간 수정하여 1923년 3월 8일 제46회 제국의회(1922. 12.~1923. 3.)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에서는 이를 반대했으나, 당내 농정과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론자가 늘어나고 정무조사회에서도 의논이 비등하여 결국 특별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중의원이 회기 만료에 가까웠고, 정과 간 대립이 계속되어 심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소작조정법안은 1923년 5월 7일 소작제도조사위원회를 계승하여 칙령 제 218호 관제에 따라 내각 직속으로 설치된 ‘소작제도조사회’에서 수차례 심의하여 수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으로 11월 15일 조사회 안이 총회에서 가결되어 제출되었다. 1924년 4월 2일 칙령 제70호로 설치된 ‘제국경제회의 농업부’에서 계속해서 ‘소작제도 개선에 관한 방책 여하’에 대해 논의했으나, 소작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그해 6월 11일 여기서 소작조정법안 및 자작농 유지·창정에 대한 소작제도조사회의 답신 취지가 속히 실행되기 바란다고 결의하고 내각총리대신에게 답신했을 뿐이다. 마침내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 내각(1924. 6.~1926. 1.)¹⁸하에서 소작조정법안이 이해

18 자유주의적 개혁 노선의 헌정회를 비롯하여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의 호헌 3파 내각인 가토 다카아키 내각에서 조정법 등의 사회복지정책은 대세를 이루었다. 조정 제도는 借地借家調停法, 소작조정법 시행 이래 점차 확대되었다. 水本信夫, 1929, 『(實例手續)借地借家商事小作勞動調停法總覽』, 大同書院, 1쪽, 12~13쪽; 小野木常, 1942, 앞의 책, 1쪽.

7월 4일 제49회 제국의회(1924. 6.~7.) 중의원에 상정되어 7월 9일 다수결로 가결되고, 7월 11일 귀족원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소작조정법은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는데, 소작조정법이 성립되는 데 최초의 법안 답신에서 2년여가 소요된 것이다.¹⁹

이렇게 의회를 통과한 소작조정법의 성격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당시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발표된 「각 위원의 희망에 대한 정부의 성명」이 주목된다. 여기서 농촌의 현재 상황으로 소작쟁의는 끊이지 않을 것이니, 근본문제로서 농촌의 개선과 생산력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일본정부는 소작조정법을 통해 소작문제를 조정하여 소작쟁의를 진정시켜서 농촌 생산력을 증진하는 것을 우선시했다.²⁰

-
- 19 「小作調停法を先にするに決定」, 『大阪朝日新聞』, 1922년 5월 16일; 「小作法の制定困難」, 『國民新聞』, 1922년 6월 17일; 「小作法制定は至難」, 『神戸又新日報』, 1922년 6월 20일; 「小作爭議調停法案事情」, 『大阪時事新報』, 1922년 7월 21일; 「小作調停法案の制定」, 『中外商業新報』, 1922년 9월 23일; 「제46차 제국의회」, 『매일신보』, 1923년 2월 2일; 「제46차 제국의회」, 『매일신보』, 1923년 3월 10일; 「제46차 제국의회」, 『매일신보』, 1923년 3월 11일; 「소작조정법안과 정우회」, 『매일신보』, 1923년 3월 18일; 「소작조정법, 來 의회 제안」, 『매일신보』, 1923년 11월 7일; 農商務省 農務局, 1923, 『小作制度調査委員會第二回總會議事録』; 「小作制度調査總會で自作農創定決定」, 『東京朝日新聞』, 1924년 4월 7일; 「帝國經濟會議諮問事項説明書(1~4)」, 『中外商業新報』, 1924년 4월 17~20일; 「小作調停法案」, 『大阪毎日新聞』, 1924년 7월 8일; 「小作調停案」, 『大阪朝日新聞』, 1924년 7월 10일; 「兩院各委員會」, 『大阪朝日新聞』, 1924년 7월 12일; 「小作調停案可決」, 『時事新報』, 1924년 7월 12일; 「小作法案は握潰か」, 『朝鮮新聞』, 1924년 7월 12일; 「제49회 제국의회」, 『매일신보』, 1924년 7월 16일; 土井權大·水本信夫, 1924, 『小作調停法原理』, 良書普及會, 7~8쪽; 松村勝治郎, 1931, 앞의 책, 103쪽; 小倉武一, 1951, 앞의 책, 400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36~39쪽, 262~269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98쪽, 105~112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9, 『農地制度資料集成』 3, 御茶の水書房, 76~106쪽, 706~760쪽; 김용덕, 1986, 앞의 글, 141~143쪽; 데루오카 슈조 편, 전운성 역, 2004, 앞의 책, 114~115쪽; 大石嘉一郎, 2005, 앞의 책, 139쪽.
- 20 「第49回帝國議會衆議院 小作調停法案(政府提出)委員會議錄 第1~3回」, 1924년 7월 7~9일, 帝國議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http://teikokugikai-i.ndl>).

2. 소작조정법의 제정과 시행

일본의 소작조정법은 1924년 7월 22일 법률 제18호로 제정·공포되어, 그해 9월 26일 칙령 제228호 ‘소작조정법의 시행 기일 및 시행 외 지구 지정의 건’에 따라 12월 1일부터 1도(道) 3부(府) 34현(縣)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다. 처음에 소작조정법 시행 지역은 소작분쟁이 빈발하는 지역에만 국한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오히려 소작쟁의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까지 분쟁을 확대·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이와 동시에 농림성(농상무성이 1925년 농림성·상공성으로 분할) 및 사법성에 관계 직원을 두고, 각 지방청에 소작관(小作官), 소작관보(補), 각 지방재판소에는 판사, 재판소서기를 두어 소작조정 사무를 관장하게 했다.²¹

소작조정법은 소작제도에 대한 최초의 특별법으로,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첫 번째 수확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 소작조정법은 당시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지차가조정법(借地借家調停法)’을 모방하여, 실체법인 소작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적으로 입법된 것이었다. 그런데 소작쟁의가 단체쟁의로서 전개되고 있고 단체협약을 통해 소작규범이 설정되는 이른바 ‘입법쟁의’의 경향을 가지는 데에도 불구하고, 소작조정법은 전적으로 ‘당사자주의’로 개인 간 계약의 해석 및 이행에 관련한 분쟁, 이른바 ‘개인쟁의’ 및 ‘해석쟁의’에 대한 대책에 그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었다.²²

소작조정법은 소작법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법을 판결의 내용적 근거로 삼았다. 소작조정법은 전문 49조로 구성되었다. 소작조정법은 먼저 소작료

go.jp); 興農會, 1924, 『小作調停法註解』, 周文書院, 13~15쪽, 37~38쪽; 林增之丞, 1924, 『小作爭議調停法註釋及理由』, 深谷中央社, 1~37쪽.

21 農林省 農務局, 1927, 『小作調停年報: 第2次』, 19쪽; 小野木常, 1942, 앞의 책, 54쪽.

22 増田福太郎, 1938, 『農業法律講義』, 養賢堂, 172쪽; 野間海造, 1941, 앞의 책, 2~3쪽.

및 기타 소작관계에 대한 쟁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쟁의의 목적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다(제1조)고 하여 소작조정제도의 범위를 규정했다. 재판소가 소작조정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쟁의의 실정에 비추어 즉시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제10조)고 하여 해당 기관으로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재판소의 사정에 따라 적당한 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권해(勸解, 화해권유)를 하게 할 수 있었다(제11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주임 1인 및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조직되었다(제28조). 조정위원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자 또는 쟁의의 조정에 적당한 자 중에서 조정주임이 지정하도록 했다. 조정주임은 판사 중에서 매년 지방재판소장이 지정했다(제29조). 또한 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위원회는 소작관, 시(市)·정(町)·촌장(村長) 또는 군장(郡長),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었다(제18조). 소작조정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제27조). 그리고 기일 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정 조항을 정하여 조서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했다. 당사자가 이를 받은 후 1개월 내에 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제36조). 그러나 그 결정에 아무런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아 이에 복종할지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 선택에 달려 있었다. 즉 이는 당사자에게 도덕적인 효력은 있어도 법률적인 강제력은 없었다.²³

소작조정법은 어디까지나 절차법(手續法)이었다. 소작권의 범위와 소작료의 수준 및 단체교섭의 방식을 규정하는 실체법인 소작법과 소작조합법의 제정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 운용에 한계가 있어 소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이에 대체로 지주 측은 소작조정법을 환영했으나, 농민조합을 비롯한 소작

23 「小作問題の成行(1~7)」, 『時事新報』, 1923년 6월 24일~7월 7일; 이윤갑, 2013, 앞의 책, 145쪽.

농 측은 여기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존에 소작쟁의 소송에서 원고는 대부분 지주였는데, 지주 측은 재판소의 소송 절차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간이한 쟁의 해결 방법이 마련되기 바랐다. 그리하여 소작조정법 제정에 찬성한 것이다. 그러나 소작농 측은 입장은 달랐다. 대표적으로 일본농민조합은 소작조정법 제정은 소작인운동의 본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이며 농민조합운동을 저해한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작조정법은 단기간 내에 소작쟁의를 조정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로서 자리 잡아 갔다. 소작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소작쟁의의 과반수는 소작조정제도 내로 흡수되어 통제되었다. 소작조정법이 실시된 1925~1929년까지 5년간 소작조정을 신청하여 수리된 소작쟁의 건수는 이 기간 중 발생한 소작쟁의 총수의 약 57%에 해당했다. 소작조정 신청인을 보면, 소작조정법 시행 첫해부터 소작인이 지주보다 소작조정제도를 많이 이용했고, 1920년대 말에 이르면 소작인의 신청이 지주의 2배 가까이 되었다. 소작조정 성립 내용에서도 소작농 측에 유리한 조정 결과가 절반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²⁵

이처럼 일본의 소작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둔 것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농민이 다수 참여한 데 기인했다.²⁶ 조정위원회는 쟁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신청 당사자 이외에도 촌내 다른 지주와 소작인의 참여를 구했다. 또한 구장(區長), 부락 총대(總代) 및 지방유지자(地方有志者)에 의한 조정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소작관이 법외(法外) 조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즉 소작관이

24 末弘嚴太郎, 1924, 앞의 책, 15~16쪽; 水谷長三郎, 1926, 앞의 책, 164~165쪽; 奈良正路, 1928, 『小作法案の嚴正批判』, 叢文閣, 194쪽; 田中博隆, 1928, 『小作問題と法律の實際』, 二松堂書店, 504쪽; 데루오카 슈조 편, 전운성 역, 2004, 앞의 책, 115쪽, 134쪽; 木村茂光 編, 2010, 앞의 책, 310쪽.

25 김용덕, 1986, 앞의 글, 150~152쪽.

26 1925~1933년 소작조정위원의 계층별 구성을 보면, 지주 37%, 지주 겸 자작 5%, 지주 겸 소작 1%, 자작 23%, 자작 겸 소작 8%, 소작 13%, 기타(町·村長, 소학교원, 대학 교수, 농회 技師 등) 13%였다. 小林巳智次, 1937, 『農業法研究』, 有斐閣, 367~368쪽.

소작조정법에 의하지 않고 조정한 사건이 다수 있었다. 이처럼 소작관의 역할이 커진 것은 소작관이 소작조정법상 본래 조정위원회에 기대되었던 일을 실제 수행하면서 당사자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단적인 소작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에서는 협조주의적인 소작 질서가 광범위하게 형성 되어 갔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일본에서는 ‘이에(家)’와 ‘촌(村)’이 소작문제의 계급 모순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사적 토지소유를 자치 촌락이 자치적·공동체적으로 규율하여 경작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었고, 이를 전제로 하여 촌락 내 소작조정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었다.²⁷

3. 소작조사회의 소작법안 심의 및 공포

그런데 1920년대 중후반에 들어 소작쟁의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쟁의 내용도 악화되면서, 실체법으로서 소작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소작조정법의 운용이나 자작농창설유지사업으로는 소작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²⁸

이에 일본정부는 제국경제회의 농업부(1924년 11월 폐지)의 전신인 소작제도 조사회를 부활한다는 방침을 취했다. 1926년 5월 24일 헌정회의 제1차 와카쓰

27 農林省 農務局, 1928, 『小作年報: 第3次』, 73쪽; 農林省 農務局, 1938, 『小作爭議・調停及地主小作人組合の概要』, 15쪽, 23~24쪽; 田中學, 1968a, 앞의 글, 143~144쪽; 川口由彦, 1990, 『近代日本の土地法觀念』, 東京大學出版會, 319~320쪽; 裴民植, 1994,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農業政策の展開過程」,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論文, 182쪽; 平賀明彦, 2003, 「1920年代後半の農業政策」, 『白梅學園短期大學紀要』 39, 140쪽; 테루오카 슈조 편, 진운성 역, 2004, 앞의 책, 81쪽, 109쪽, 132~133쪽; 大石嘉一郎, 2005, 앞의 책, 133~134쪽; 앤드루 고든 저, 김우영 역, 2005, 앞의 책, 337쪽; 木村茂光 編, 2010, 앞의 책, 266~273쪽, 304~321쪽; 정연태, 2014, 앞의 책, 359쪽.

28 「小作立法根本方針」, 『神戶又新日報』, 1925년 11월 2일; 田中學, 1968b, 앞의 글, 123~124쪽; 平賀明彦, 2003, 위의 글, 147쪽; 大石嘉一郎, 2005, 위의 책, 141쪽.

키 레지로(若槻禮次郎) 내각(1926. 1.~1927. 4.)은 사회입법으로서 소작법 제정의 급무를 인정하여 칙령 제135호 관제로 ‘소작조사회’를 설립했다. 그리하여 ‘소작문제에 대한 대책 여하’를 자문하고 그 기본 방향의 확립을 구하여 소작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사회는 소작법안과 소작조합 법안 두 법안을 차기 의회에 제안하기 위해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기초 자료 수집과 부의할 초안의 탈고를 서둘렀다.²⁹

소작조사회는 회장 농림대신 하야미 세지(早速整爾) 이하, 양 내무차관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 가와사키 다쿠키치(川崎卓吉), 사회국장 나가오카 류이치로(長岡隆一郎), 대장성 주세국장 구로다 히데오(黒田英雄), 사법성 민사국장 이케다 도라지로(池田寅二郎), 양 농림차관 고야마 쇼주(小山松壽), 아베 히사노리(阿部壽準), 농림참여관 다카다 고헤(高田耕平), 농림성 농무국장 이시구로 다다아쓰 및 기타 학계·정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³⁰

1926년 6월 30일 소작조사회 제1회 총회가 개최되어, 소작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심의회 방향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때 소작조합법 제정 문제를 조사·심의회할 것이 의제로 떠올랐으나, 결국 소작법 제정을 중심 의제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³¹

이처럼 농림성이 소작조사회를 통해 소작법안을 입안하려는 것에 대해 지주

29 「調査機關新設か」, 『國民新聞』, 1925년 9월 23일; 「小作法の制定」, 『大阪毎日新聞』, 1925년 10월 31일; 「小作立法根本方針」, 『神戸又新日報』, 1925년 11월 2일; 「小作立法調査會委員の顔觸れ大體決定す」, 『國民新聞』, 1926년 3월 23일; 「인구·이민 二問題 現關은 善處를 考究中」, 『매일신보』, 1926년 4월 6일.

30 「小作制度委員調査會 設置乎」, 『매일신보』, 1926년 3월 23일.

31 「小作問題に對する根本策樹立の急務」, 『時事新報』, 1926년 7월 1일; 「小作立法の範圍をどの程度に決めるか」, 『大阪毎日新聞』, 1926년 7월 2일; 「小作法規制定に關する調査要項」, 『大阪時事新報』, 1926년 7월 2일; 澤村康, 1927, 『小作法と自作農創定法』, 弘造社, 659쪽; 松村勝治郎, 1931, 앞의 책, 103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62~70쪽, 423~426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9, 앞의 책, 82~83쪽; 平賀明彦, 2003, 앞의 글, 147쪽.

측의 반응이 염려되었다. 이해 7월 27일에는 대일본지주협회(1925년 10월 6일 설립)의 대표 등이 농림대신 관저에 출두하여 소작법 제정에 항의하는 진정을 하며 지주 측이 요망하는 소작법안 요강을 제출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소작입법을 지주에게도 공평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³²

소작조사회는 소작법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앞서 ‘간사 사안’을 둘러싼 논의를 계승하는 형태로 심의를 계속했다. 1926년 9월 8일 소작조사회 특별위원회는 지주와 소작인 측 대표 인물 11명을 농림대신 관저에 초청하여 소작사정에 대해 청취했다. 대체로 지주 측의 의견은 농촌의 중견계급인 중소지주가 몰락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중소지주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일본 농민조합 등 소작인 측에서는 소작법 제정을 서두르자며 소작인의 권리를 강화할 것, 자작농 창설을 장려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전일본농민조합동맹(1926년 4월 11일 설립)의 대표진이 와카쓰키 총리를 방문하여, 소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및 소작법 요강을 제시하고 총리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총리는 소작법 제정은 농촌 현장을 감안할 때 급무 중의 급무이므로 시비가 있더라도 이를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농촌 개발을 위해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편중되지 않고 엄정한 태도로 그 해결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작법 입안을 서두르기 위해 그해 9월 10일 소작조사회 소위원회가 개최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위탁한 조항을 심의했다. 즉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① 소작권의 효력은 상당히 강하게 하고, 소유주가 바뀌어도 소작권은 바로 소멸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소작지의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것, ③ 소작지의 매각 시에는 소작인에게 선매권을 부여할 것의 세 항목에 대해 세목을 정하여 임시 의결했다. 또한 추가로 소작권을 소멸시킬 경우 그 집행 방법, 배상 규정 등에 대한 세목도 임시 의결했다. 하지만 소작료에

32 「소작법 제정, 지주 진정」, 『시대일보』, 1926년 7월 25일; 「地主側の希望する小作法案要綱」, 『大阪朝日新聞』, 1926년 7월 28일.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많아 임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농림성 간사에게 그 입안을 일임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우선 '간사 사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 부분을 임시 의결하고, 소작 관련 특별기관에 대해 심의하여 소작법안의 골자를 입안했다. 그중 소작료와 관련해서는 소작쟁의가 있을 경우 특별기관에 그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³³

소작입법 과정에서 소작조사회는 소작권 강화의 방향을 전제로 했으나, 문제는 이를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까지 강화하는가 하는 점에 있었다. 결국 과거 임차권의 물권화를 지향한 소작권의 포괄적 개념은 방기(放棄)되고, 문제는 임차권을 어디까지 보호하는가 하는 것으로 전화(轉化)했다. 예를 들어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은 소작권의 계속 및 소멸과 이때의 배상문제,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 등에 대해서였다. 조사회 간사의 소작권 강화 구상은 '소작권 강화 → 지가(地價)의 하락 → 기생지주제의 후퇴 → 자작농의 증대'를 통해 자작농주의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지주의 몰락과 자작화 경향이었다. 중소지주가 자작농으로서 직접 경작을 시작한다면 굳이 이를 저해하면서까지 소작농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소위원회는 중소지주의 구제를 중시한다며 '간사 사안'을 수정하여 12개 항목의 결의사항을 1926년 9월 30일 제4회 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경작권의 확립과 고액 소작료의 실질적 인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소작법안은 미온적인 것이었다. 특히 소작료와 관련해서는 소작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제3자 기관으로서 소작심판소의 규정도 삭제된 상태였다. 소작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그 감면액을 공평하게 결정할 길을 마련하지 않았고, 현실적인 고액 소작료 인하의 길이 봉쇄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농정과 농림사무관 다나카 나가시게(田中長茂) 등의 입장은 지방 사정에 따라 다른

33 「小作料に關する農林側幹事私案」, 『大阪毎日新聞』, 1926년 9월 7일; 「如何なる場合に小作權が消滅するか」, 『中外商業新報』, 1926년 9월 8일; 「減び行く小地主を救え」, 「小作人を自作農に」, 『大阪朝日新聞』, 1926년 9월 9일; 農林省農務局, 1929, 앞의 책, 87~88쪽.

소작료를 일정한 기준으로 통일하기 어렵고, 생산력 등의 측면에서 조사가 완비되지 않는 한 사실상 그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농림성 내부에서도 종래의 소작법 노선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들의 주장은 소작법이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① 지방별 소작료를 공정하게 한다. ② 작황에 따라 소작료를 사정(査定)하는 절대적 기관을 두고, 그 사정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청의 부담으로 한다. ③ 소작료를 납부할 때 미곡의 가격 변동에 따라 소작료를 사정하는 것이 물납을 주로 하는 일본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④ 지주와 소작인의 교섭은 한 명의 소작인이 소작하는 토지가 한 사람의 지주 소유가 아니라 여러 명의 지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소작법 일부로 그 교섭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실상에 맞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작조사회 특별위원회에서는 대지주옹호론이 일부 전개되었다. 우선 소작인의 소작권과 소작지의 선매권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또한 이미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단축시킨 소작권의 소멸 근거가 되는 소작료 체납기간과 체납량에 대해서도 이를 ‘체납공인론(滯納公認論)’이라며, 조금이라도 소작료를 체납하면 즉시 소작계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특별위원회가 결정한 요강에서 소작권은 소위원회에서보다 약화되었다. 총회는 특별위원회의 요강을 약간 수정한 후 이를 「소작법 요강」으로서 정부에 답신했다. 소작조사회는 1926년 10월 28일 제2회 총회를 개최하여 소작법 요항 안건을 부의해서 자문하고 농림대신에게 답신했다.³⁴

34 「小作法の骨子案成る」, 『東京朝日新聞』, 1926년 9월 16일; 「小作審判所は設けぬ」, 『大阪朝日新聞』, 1926년 9월 22일; 「小作法骨子と各方面の意見」, 『大阪毎日新聞』, 1926년 9월 23일; 「小作調査特別委員會で決った小作法案内容」, 『大阪毎日新聞』, 1926년 10월 24일; 「소작법 요항 農林大臣에 답신」, 『동아일보』, 1926년 10월 26일; 水谷長三郎, 1926, 앞의 책, 132~133쪽; 澤村康, 1927, 앞의 책, 659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365~394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124~127쪽; 平賀明彦, 2003, 앞의 글, 148~149쪽.

그리고 소작조사회는 1926년 10월 30일 「소작법 제정상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요강」, 1927년 1월 13일 「구관(舊慣) 영대(永代)소작 정리 요강 및 소작법 중 영소작 관계에 관하여 규정해야 하는 사항 요강」을 농림대신에게 답신했다. 소작법안의 골자가 비로소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중에서 「소작법 제정상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요강」은 전문 12항으로 이루어졌다. 즉 ① 소작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② 소작지 임차권의 양도, ③ 소작지의 전대차, ④ 소작지 매각의 통지, ⑤ 소작계약의 계속 및 소멸, ⑥ 소작계약 소멸 시의 배상, ⑦ 소작료의 일시적 감액·면제, ⑧ 소작료의 공탁(供託) 및 일부 변제, ⑨ 소작 조정의 효력, ⑩ 조정이 곤란한 경우의 임시 처분, ⑪ 소작위원회, ⑫ 소송 및 조정의 촉진 등이다. 이 답신에 기초하여 농림성 농무국은 이른바 「소작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법성과 심의했다. 소작조사회는 소작법안 요강을 결정한 것으로 1차 임무를 다하고, 다시 2·3차 임무인 영소작 해제, 소작조합법안 등의 심의에 들어갔다.³⁵

농림성은 마침내 1926년 11월 17일 소작법안을 완성하여 농림성 내 법령심사위원회에 부의했다. 그리고 이해 12월 28일 소작법안에 대한 농림성 회의를 농림대신 관점에서 개최하여, 소작조사회의 답신 요강을 골자로 소작법안을 심의했다. 그런데 소작지의 선매권, 소작권의 배상, 소작료의 일부 공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론(異論)이 많아 결정하지 못하고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³⁶

이윽고 1927년 3월 농림대신·사법대신의 이름으로 소작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법제국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여, 결국 일본정부는 소작법안

35 「小作法要項大多數で可決」, 『大阪朝日新聞』, 1926년 10월 31일~11월 5일; 「永小作權處理の方法」, 『中外商業新報』, 1927년 1월 15일; 澤村康, 1927, 위의 책, 659쪽; 農林省 農務局, 1929, 앞의 책, 1~17쪽; 増田福太郎, 1938, 앞의 책, 172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위의 책, 395~403쪽; 田中學, 1968b, 위의 글, 124쪽; 平賀明彦, 2003, 위의 글, 147쪽.

36 「소작법안 입안」, 『동아일보』, 1926년 11월 20일; 「小作法案は根本的改造か」, 『大阪毎日新聞』, 1926년 12월 29일; 「소작법안은 근본적 개조?」, 『동아일보』, 1927년 1월 1일.

을 제52회 제국의회(1926. 12.~1927. 3.)에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소작법안을 농림성으로부터 사법성에 보내 심의 중이었는데, 단속 규정에 대해서 이론(異論)이 있고 의회 회기도 종료 시에 달해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마치기가 곤란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3월 29일 소작법안의 법제국 심사가 종료되어, 농림성 농무국은 「소작법 제정상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요강」을 기초로 하고 그중 소작조정의 효력, 조정이 곤란한 경우의 임시 처리 등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소작법 초안」으로서 공표했다. 이 초안은 8장 및 부칙(전문 76조)으로 구성되었는데, 훗날 제59회 제국의회에 제출되는 소작법안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³⁷

이는 제1차 소작법안 연구자료에 비하면 경작권의 강화를 통한 소작인 보호라는 의도가 후퇴해 있었다. 그리고 중소지주와 소작인 간 쟁의에서는 중소지주에 우위를 두는, 소농보호정책의 부르주아적 한계를 보였다.

더욱이 입헌정우회의 ‘자작주의’, 입헌민주당(立憲民政黨)의 ‘소작주의’의 대립으로 소작법 입법은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1927년 4월 20일 들어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1927. 4.~1929. 7.)과 여당인 입헌정우회는 자작농창정안을 앞세웠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은 소작입법을 하지 않고서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³⁸ 이에 입헌정우회의 다나카 내각도

37 「소작법안 不提出」, 『동아일보』, 1927년 3월 4일; 「小作法案內容(1~4·終)」, 『大阪毎日新聞』, 1927년 3월 30일~4월 4일;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務課, 1927, 『内地に於ける小作法草案と其の解説』, 1쪽; 農林省 農務局, 1929, 앞의 책, 17~29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72쪽, 897~905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127~128쪽; 平賀明彦, 2003, 앞의 글, 147~148쪽.

38 입헌정우회는 농촌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며 공공사업 유치를 통해 유권자를 관리했는데, 농촌에서는 지주계급의 이익을 대표하고 도시에서는 공업자본과 금융자본을 지지 기반으로 했다. 이에 비해 헌정회(이후 입헌민주당)는 주로 상업이 발달한 도시지역의 지지를 받으며 정책도 도시에 역점을 두었다. 입헌민주당은 도시에서는 경공업과 중소상공계급 편에 서고, 농촌에서는 영세 소농층에 중점을 두었다. 中澤辨次郎, 1930, 『濱口内閣の小作立法批判』, 帝日通信社出版部, 1~11쪽, 20쪽; 마리오스 B. 잰슨 저, 김우영 외 역, 2006, 앞의 책, 850~851쪽.

소작입법에 완전히 무관심할 수만은 없었다. 1928년 4월 26일 중의원 본회의 중 소작입법에 대한 다나카 내각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야마모토 농림대신은 소작입법에 대해 연구 중이며 가급적 속히 의회에 제안하겠다고 답했다.³⁹

III. 소작법안의 의회 상정과 그 내용

1. 소작법안의 사회정책심의회 심의와 각의 결정

대일본지주협회 등 지주 측의 강경한 소작법 반대 운동과, 일본농민조합·전일본농민조합동맹 등 소작농 측의 소작입법 주장 및 소작법안 수정 요구의 영향으로, 소작법 초안은 법제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52회 제국의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더욱이 당시 금융공황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1927년 4월 헌정회의 제1차 와카쓰키 내각이 총사직하여 소작법안이 이후 바로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그 후 헌정회가 재편된 입헌민주당은 그해 6월 20일 열린 정책기초(起草)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총재 이하가 심의한 의안 중에서 중요 조항을 선정했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 항목 중에 소작입법과 자작농 유지·창정이 포함되었다.⁴⁰

39 「農地案問題重大化す」, 『大阪朝日新聞』, 1927년 11월 7일; 「各政黨の經濟政策比較」, 『國民新聞』, 1928년 1월 30일; 「田中 反動 內閣의 대중 탄압은 何故냐고」, 『중외일보』, 1928년 4월 28일; 「白熱的 연설」, 『동아일보』, 1929년 1월 28일; 松村勝治郎, 1931, 앞의 책, 103~104쪽; 野間海造, 1941, 앞의 책, 11쪽.

40 「農村の平和と振興を叫ぶ地主大會」, 『大阪朝日新聞』, 1926년 4월 23~24일; 「如何なる場合に小作權が消滅するか」, 『中外商業新報』, 1926년 9월 8일; 「小委員會發表の小作法案骨子の修正要綱を決定」, 『大阪朝日新聞』, 1926년 10월 7일; 「小作法案の骨子に修正地主側の一大事と小作法案の骨子に修正」, 『東京朝日新聞』, 1926년 10월 8일; 「地主は變っても小作權は變らぬ」, 『東京朝日新聞』, 1926년 10월 19일; 「小作法案の成立を極力阻止する」, 『大阪朝日新聞』, 1926년 11월 6일; 水谷長三郎, 1926, 앞의 책, 101~106쪽; 「民政黨が掲げ

그런데 이후 들어선 입헌정우회의 다나카 내각은 자작농 창설에 주력했기 때문에 소작법 제정 노력은 각의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이것이 1929년 7월 바뀐 입헌민주당의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1929. 7.~1931. 4.)에 의해 계승되었다. 하마구치 내각은 제1차 와카쓰키 내각 시절보다 소작법 제정에 더 적극적이었다. 하마구치 내각은 대공황이 사회 전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사회정책의 확충’을 10대 정강(政綱)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러한 시정(施政) 방침에 따라 이른바 3대 심의회를 설치했는데, 그중 하나로 1929년 7월 19일 칙령 제238호로 ‘사회정책심의회’라는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소작권의 보장과 소작료 감면 청구권의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소작법 심의를 계속했다.

이해 8월 9일 사회정책심의회 제1회 총회에서는 ‘소작문제의 대책으로서 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하’에 대해 자문했다. 이후 마치다 주지(町田忠治) 농림대신 외 6명의 특별위원은 수회에 걸쳐 소작 관련 제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주안점은 소작법제의 정리에 대해서였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소작입법에 관련해 ① 소작인의 경작 관련 권리 확립, ② 소작계약 종료 시 처치, ③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 및 소작조건의 개정, ④ 소작쟁의의 완화 방법의 네 항목을 심의했다. 여기서 청부경작(請負耕作) 및 토지회사에 대한 취급 이외에 새로운 논점은 거의 토의되지 않았다. 그해 10월 1일 사회정책심의회는 소작법 요강에 따라 속히 소작법을 제정·실시하기 바란다는 답신안을 가결했다. 이날 제 5회 특별위원회에서는 “1926년 와카쓰키 내각 시절에 소작조사회가 작성한 소작법을 제정하여 속히 실시하기 바란다”는 안을 하마구치 총리에게 답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소작법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1926년 소작

る新看板の題目, 『大阪朝日新聞』, 1927년 6월 19일; 「民政黨の政策」, 『大阪朝日新聞』, 1927년 6월 21일; 小倉武一, 1951, 앞의 책, 485~495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56~59쪽, 85쪽, 343~348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9, 앞의 책, 38쪽.

조사회의 작성안 그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 소작인들은 항의했다. 대체로 소작 농민들은 다음과 같은 소작법을 요구했다. ① 경작권의 물건화를 요구했다. 즉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소작권을 잃지 않고, 소작권이 소유권에 대하여 대립적 지위를 가지며, 제3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작권을 주장할 수 있고, 소작인의 이익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경작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② 소작인과 그의 가족들이 1년간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확 분량에 대해서는 가차압을 금지하는 것이다. ③ 어떠한 이유로 인한 토지 반환인지 불문하고 지주에게 그 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④ 천재(天災) 또는 불가항력으로 경작물의 수확이 감소한 경우, 그 수확이 소작인과 그의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소작료를 완전 면제하고 그 부족액은 국가에서 보전(補填)하는 것이다. ⑤ 지주에 대항하여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단체협약권과 쟁의권을 요청했다.⁴¹

그러나 1929년 11월 25일 사회정책심의회는 내각총리대신 관저에서 제3회 총회를 열고 하마구치 총리 이하 각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소작법제의 준비에 대한 특별위원회의 답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답신을 하마구치 총리에게 제출하고 산회했는데, 답신의 요지는 소작조사회가 1926년 답신한 소작법안의 요항은 대체로 타당하므로 정부는 그 취지에 따라 소작법을 제정·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²

오히려 이해 12월 15일 일본정부는 대일본지주협회에 소작법 제정 시 외가 쓰키 내각 때 공표한 소작법 초안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답신을 구했다. 이때 대일본지주협회에서는 농림성 회의와 소작조사회 개최 시기에 맞춰 12월 15~17일간 각 부·현에 통첩하여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다. 전국 부·현 간부회에서

41 「소작법 제정 문제」, 『동아일보』, 1929년 10월 7일; 中澤辨次郎, 1930, 앞의 책, 1~20쪽; 松村勝治郎, 1931, 앞의 책, 104~118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農地制度資料集成』 5, 御茶の水書房, 3~7쪽, 21~24쪽; 平賀明彦, 2003, 앞의 글, 153쪽; 데루오카 슈조 편, 전운성 역, 2004, 앞의 책, 134쪽; 大石嘉一郎, 2005, 앞의 책, 142쪽.

42 「조사회에서 답신한 소작법안 요항 타당」, 『중외일보』, 1929년 11월 27일;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위의 책, 21~27쪽.

소작법안 수정 의견을 발표하여 이를 소작조사회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회원들이 내각총리대신 관저, 농림성·내무성·사법성, 입헌민주당 본부 등에 출두하여 소작법안 수정 의견을 진정했다. 대일본지주협회는 소작법 초안이 대지주만 겨냥하고 중소지주와 자작농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중소지주를 고려하면 이러한 소작농 보호에 편중된 법안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작법 제정 시 중소지주와 자작 겸 지주의 입장을 더 깊이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⁴³

하지만 1930년 1월 하마구치 총리는 시정 연설을 통해 일본정부는 소작조사회에서 답신한 소작법 요강에 기초하여 소작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사회정책심의회는 이 요강에 따라 소작법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소작법안을 완성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마구치 총리가 농림성 시정으로 역설한 소작법 제정을 비롯하여 미곡법 개정, 비료 개선책 시행의 3안은 의회 해산으로 인해 실현할 수 없었다. 이에 농림성은 소작법 등을 다음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⁴⁴

다만 일본정부는 소작법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그 제정 방침과 계획을 지방장관회의 등을 통해 일반에게 주지시켰다. 그해 5월 24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마치다 농림대신은 ‘농촌 시설(施設)에 만전을 기하자’는 훈시(訓示) 연설을 하면서, 먼저 “농촌문제의 핵심인 소작문제의 대책으로 소작조정법의 운용, 자작농 창설·유지 사업의 실행, 기타 각종 시설을 통해 그 해결·완화에 힘써 순조롭게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소작에 관련한 제도의 정비가 긴요한 것을 고려하여 소작법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열심히 조사·연구 중으로, 오는 통상의회까지는 그 안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43 伊藤太郎兵衛, 1930, 『大日本地主協會小作法運動報告書』, 新潟縣農政協會, 9~13쪽, 17~22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위의 책, 31~90쪽, 799~808쪽. 대일본지주협회는 이후 1930년 11월에 중심이 되어 농정단체연합회를 조직해서 소작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발표하고 소작조정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구했다.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9, 앞의 책, 38쪽.

44 「內政 외교 전후 10項에 亶한 濱口 首相의 施政 연설」, 『중외일보』, 1930년 1월 22일; 「농업정책 歸於水泡」, 『중외일보』, 1930년 1월 26일.

소작법안은 이해 12월 법제국에서 심사되었고, 1931년 1월 말 각의에서 결정되었다.⁴⁵

2. 소작법안의 내용

1931년 일본의 소작법안(전문 74조)은 영소작에까지 적용되었고 소작기간(최단 기간 5년) 보장을 비롯하여 소작권 해제 제한, 소작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보장, 소작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 민법상 지주의 권익을 제한하고 소작농의 안정을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농업생산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소작 중농층을 사회적 지주(支柱)로 만들어 농촌 지배 체제의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했다. 일본에서 소작입법은 지주제를 위로부터 부르주아적으로 개혁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⁴⁶

이 소작법안의 내용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소작권의 실체에 관련한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소작쟁의의 완화를 위한 절차 규정이다.

소작권의 실체에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작권을 어느 정도 물건화하여, 등기하지 않고도 소작지의 인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했다(제5조). 또한 지주가 소작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에는 소작인에게 선매권을 부여하는 등 미약하나마 소작권의 계속 효력을 확보했다(제7조). 하지만 지주가 승낙하더라도 소작권의 전대는 금지했다(제32조).

둘째, 소작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정기소작의 경우 최단기간을 5년으로

45 「地方長官會議(第5日)」, 『時事新報』, 1930년 5월 25일; 「小作法案の起草を急げ」, 『大阪毎日新聞』, 1930년 5월 31일; 「소작법안 成案 今 의회에 제출」, 『매일신보』, 1931년 1월 29일.

46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앞의 책, 91~100쪽; 林有一, 2000, 『近代日本農民運動史論』, 日本經濟評論社, 42쪽; 이윤갑, 2013, 앞의 책, 91쪽, 148~150쪽.

했다(제12조). 또한 지주는 소작인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당하게 악의적으로 소작계약을 해약하거나 그 갱신을 거부할 수 없었다(제16조). 지주가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키려고 하면, 미리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지 1년 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해야 했다. 그러지 않는 한 묵인하에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간주했다(제13조). 부정기소작은 고지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해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고지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었다(제9조). 그리고 정기·부정기소작 모두 지주가 권력을 남용하여 해약 신청을 하거나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었다. 단, 소작인이 소작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지주는 해약권을 가졌다(제17조).

셋째, 계약 해제의 결과 소작지를 반환할 때 소작인은 지주에 대해 모상(毛上)의 매입청구권을 가졌다(제19조). 아울러 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행한 토지개발공사 등의 유익비(有益費)의 상환청구권도 가졌다(제20조). 이 밖에 지주 측에서 소작을 해약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때에는 소작인에게 1년분의 소작료액 내지 그 12분의 1 액수의 범위 내에서 작리료(作離料)를 지급해야 했다(제24조).

넷째, 소작료에 대한 것으로, 불가항력으로 수확이 감소한 경우 소작료를 감면받으려고 할 때에는 수확 착수 전 적어도 15일 전에 그 신청을 해야 했다(제43~44조). 또한 소작료 등의 소작조건을 개정하려고 하면 소재지의 소작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었다(제47조). 그리고 실납(實納) 소작료액을 정하지 않은 동안에 소작인이 소작료를 일부 변제(辨濟)하면 지주는 이를 수령할 의무가 있었다(제18조).

다섯째, 지주의 승낙 없는 소작권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 소작권 매매의 관행이 있는 지방에서는 이 제한이 없었다. 이러한 소작권에 대해서는 소작지를 반환할 경우에 상당한 대상(代償)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제74조).

여섯째, 영소작권에 대한 명문도 일부 포함했다(제1, 3, 7, 8, 38~42, 63조

등). 하지만 수십 년간 계속된 무기한적 소작관행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작쟁의의 완화를 위한 절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주의 해약 신청에 대해 소작인이 2개월 내에 소작권 계속을 위해 조정을 신청하여 이것이 수리되면, 조정 종료 시까지 소작권은 존속되는 것으로 간주했다(제14조). 둘째, 모상의 매입가액, 유익비의 상환액, 작리료 액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소는 감정위원회에 의견을 구하여 이를 결정하거나 또는 조정에 부칠 수 있었다(제21조). 셋째, 소작료 감면 신청에 대해서는 소작관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검견을 하거나 또는 감수(減收) 조사원으로 하여금 작황 조사를 하게 했다(제44~46조). 넷째, 소작조건의 개정에 대해 소작위원회 또는 감정위원회로 하여금 판정하게 할 수 있었다(제47조). 다섯째, 소작료 청구 또는 소작지 반환 청구 소송에 따라 강제집행 보전을 위해 행해진 입모(立毛) 및 기타 동산(動産)의 가차압 또는 경지 출입 금지 가처분에 대해, 재판소는 소작인에게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혹은 소작지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수확하게 할 수 있었다(제53~63조). 여섯째, 소작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주와 소작인 각 당사자의 이해(利害)에 부응하는 구성원을 공동으로 선정해 소작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제48조). 소작위원회는 종래의 협조단체 성격의 위원회 제도에서 이제 소작법을 통해 자치적 위원회 제도로 공인(公認)되는 것이었다.⁴⁷

기존에 대체로 소작농 측에서는 소작법을 통해 생활권 확보를 위한 소작권의 확립·강화, 최고 소작료의 제한, 기타 소작조건의 개선과 소작계약의 내실화의 세 가지 점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위 소작법안을 보면 소작입법의 최대 주안점이라 할 수 있는 경작권 옹호가 충분히 드러나지는

47 中澤辨次郎, 1930, 앞의 책, 27~36쪽, 44~48쪽, 55~59쪽, 79~83쪽; 協調會農村課 編, 1931, 『小作立法に關する重要問題』, 協調會, 1쪽, 138~139쪽; 野間海造, 1941, 앞의 책, 6~8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위의 책, 125쪽.

않았다.⁴⁸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작료를 중심으로 한 소작쟁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작법상 먼저 소작료의 합리적 결정 방법을 규정해야 했다. 이 기준을 결정하지 않고서 아무리 소작료 감면 신청 제도나 검견제를 확립해도 소작료 문제로 인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에 소작농들은 소작료의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설정할 것, 재해 연도의 감면율을 특정할 것 등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다.⁴⁹

1931년의 소작법안을 앞서 1921년 소작제도조사위원회에서 고안한 제1차 소작법안 연구자료와 비교해 봐도 내용상 후퇴되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1차 소작법안 연구자료는 전체적으로 소작권, 소작료, 소작심판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① 먼저 소작인에게 물권에 상당하는 소작권을 인정하여, 보통소작은 15년, 영소작은 50년 이하의 소작기간을 보장하고, 이 기간 중에 소작인의 통지만으로 소작권 양도가 가능하며, 소작권의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었다. ② 소작료는 소작지의 수익이 불가항력으로 소작료 액수에 미치지 못할 때, 소작인이 그 다음 해의 생계와 소작의 계속에 필요한 만큼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그 감면을 청구할 수 있었다. ③ 그리고 만약 소작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소작심판소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여기서 한번 정해진 소작료는 5년간 바꿀 수 없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1931년의 소작법안에서는 그 내용이 후퇴하였다. 예컨대 보통소작의 최단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줄였다. 또한 소작권은 지주의 승낙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게 바꾸었다. 그리고 소작료 감면은 불가항력에 따른 수확량 감소의 경우에 검견하여 그 감면 액수를 정한다고만 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소작료를 감면할지는 정하지 않았다.⁵⁰

48 松村勝治郎, 1931, 앞의 책, 5~7쪽.

49 中澤辨次郎, 1930, 앞의 책, 72~73쪽, 91~95쪽.

50 小野武夫, 1925, 앞의 책, 216~217쪽.

3. 소작법안의 의회 상정과 귀족원 통과 실패

마침내 1931년 2월 일본정부는 소작법안을 제59회 제국의회(1930. 12.~1931. 3.)에 제출했다. 소작법안은 이해 2월 9일 중의원에 제출되었다. 1920년 소작제도조사위원회 설치 후 10여 년 만에 드디어 소작법이 의회에 상정된 것이다.

그러나 입헌정우회는 1931년 1월 당시 입원 치료 중이던 하마구치 총리의 대리 문제와 관련하여, 의회 벽두부터 정부의 소신이 무엇인지 질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다하여 소작법 제정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서 큰 파란이 예상되었다.⁵¹

한편 농민조합 측에서는 ‘완전한 소작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안적인 소작법안을 제시했다. 전국농민조합(1928년 5월 27일 설립)은 앞서 1929년 대회에서 ‘완전한 소작법 제정 요구에 관한 건’을 결의하고 소작법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전일본농민조합(1927년 3월 1일 설립)과 일본농민조합총동맹(1927년 3월 6일 설립)도 ‘완전한 소작법 제정’을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기타 각 농민조합에서도 소작법안 요강을 작성·발표했다. 심지어 입헌민정당 내각의 소작법안은 ‘자유주의적 급진개량주의 정책’으로 소작의 이름만 빌린 지주법안이라는 농민조합 측의 비판도 있었다. 예컨대 전일본농민조합 회장을 역임한 나카자와 벤지로(中澤辨次郎)는 입헌민정당이 토지소유자와 자본가의 협력을 구해 ‘사회정책’이라는 미명(美名)으로 포장한 소작법안을 입안했다고 비판했다.⁵²

그럼에도 1931년 2월 14일 중의원 제59회 제국의회 본회의가 개최될 때 일본정부는 소작법안을 상정했다. 그런데 하마구치 총리가 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51 二松堂編輯所 編, 1931a, 『帝國議會議事錄: 第59回』 1, 二松堂, 215쪽; 布施辰治, 1931, 『小作爭議にたいする法律戰術』, 淺野書店, 2~4쪽; 横尾惣三郎, 1931, 『小作法案に就て』, 農村研究會, 1~2쪽, 12쪽; 「재계 의회는 벽두부터 대파란」, 『매일신보』, 1931년 1월 18일; 「소작법안 下院에 제출」, 『동아일보』, 1931년 2월 11일; 田中學, 1968b, 앞의 글, 129~131쪽.

52 中澤辨次郎, 1930, 앞의 책, 1쪽; 「地主と小作人の團結的對立現狀」, 『中外商業新報』, 1930년 5월 8~18일.

것을 빌미로, 입헌정우회의 아키타 기요시(秋田清) 의원 등은 총리가 예산 각 분과의 심사도 종료되었는데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회정치상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탄하며 기선제압을 하려 했다.

먼저 마치다 농림대신의 소작법 제안 이유 설명이 있었다. 농림성과 사법성이 소작조사회의 요강에 의거하여 소작법 초안을 입안했고 제52회 제국의회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으며, 대신에 여론을 묻기 위해 1927년 이를 공표하여 비평을 구하면서 조사·연구를 속행했다고 했다. 이후 1929년 7월 내각에 설치된 사회정책심의회에서 소작문제의 대책으로 소작법을 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인정했고, 앞서 소작조사회에서 답신한 법안이 타당하여 이에 기초해서 소작법을 제정·실시해야 한다고 답신했다고 했다. 이에 소작조사회를 다시 열어 종래의 경과 및 소작사정의 변천 등에 대해 협의를 거듭하고, 소작법 초안이 공표된 이래 나온 의견 등을 참작하여 본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설명 뒤에 입헌정우회의 도이 곤다이(土井權大) 중의원 의원과 농림대신 간에 질의응답이 있었다. 도이 의원은 ① 토지제도에 대한 정부의 근본 관념은 ‘토지국유주의’인가 또는 ‘자작주의’인가 힐문하며, ② 토지국유에 대한 정부의 소견, ③ 자작농 창설·유지에 대한 방침, ④ 쇠퇴하고 있는 중소지주에 대한 보호책, ⑤ 소작법의 실시 시기, ⑥ 소작법을 통한 지주의 이익과 소작농의 이익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마치다 농림대신은 소작법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농촌 전체의 근본 문제로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소작인·자작농 양자의 이익과 조화를 도모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번에 소작법안이 통과되면 그 준비를 1931년도 추가 예산으로 하고, 1932년부터 소작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작농 창정·유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조장(助長)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소지주 보호를 위해서는 부채 정리 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고, 의회 후 조사회를 설치하여 다시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다음으로 입헌정우회의 가타노 시게나가(片野重脩) 의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다. ① 소작법안이 ‘쟁의빈발법’이 되지 않겠는지, 조문이 애매하여 해석상 논

쟁을 발생시키지 않겠는지, ② 공정한 소작료액 결정 기준을 법정할 의사는 없는지, 소작쟁의 해결상 이를 법정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은지, ③ 소작쟁의가 단체쟁의화하는 추세인데 정부 당국의 해석은 어떠한지, ④ 소작법을 실시할 때 쟁의 해결 촉진을 위해 판사 등을 증원하고 또 장래 소작심판소 등을 개설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였다. 이에 마치다 농림대신은 소작법이 소작쟁의를 빈발시킬 우려는 없으며, 여러 사정에 기초하여 입법한 것이므로 조문이 다소 복잡해졌다고 답했다. 또한 소작료는 경제사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일임하여 법정하지 않았고, 수확이 크게 감소했을 경우 소작료를 감면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소작료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타협하는 방도를 정했다고 했다. 소작쟁의가 단체쟁의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작법 자체에는 관계가 없고, 별도로 소작조정법을 통해 소작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쟁의를 조정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와타나베 지후유(渡邊千冬) 사법대신은 소작법을 제정하면 당사자 쌍방의 권익이 명확해지므로 소작쟁의에 관련한 민사 소송 해결이 더욱 신속해질 것이라고 했다. 판사의 증원 또한 바라는 바이며, 현재는 특별히 소작쟁의를 심판하는 재판소로서 소작심판소와 같은 특별기관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입헌정우회의 다케다 도쿠사부로(武田德三郎) 의원은 소작법안이 소작권 확립, 소작료 감면 규정 등에 불비한 점이 많아 “농촌을 파괴로 인도할 뿐이니”, 이를 철회하고 연구를 다시 할 의사는 없는지 질문했다. 또한 소작법 제정은 소작권에 일종의 교환가치가 생기도록 하는 일인데, 이에 따라 소유권의 가치가 저하하여 농지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는지 우려했다. 이에 마치다 농림대신은 소작조정법이 절차법인 데 비해 소작법은 소작쟁의 방지를 위한 권리·의무에 관련한 실체법, 곧 근본 법률로서 입법한 것이므로 “농촌을 파괴로 인도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니 철회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소작법은 대체로 종래의 지주·소작인 간의 관습을 기초로 하며, 오히려 관습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했다. 소작인의 권리가 증가함에 따라 소작지의 교환가치가 증가하고 오히려 자작지의 가격이 내려가 장래 자작농의 쇠퇴를 야기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도 있지만, 소작법안을 보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상으로 지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점도 상당히 많아 소작인의 소작지 전대 금지, 1년 이상 소작료 체납 시 소작계약 해제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⁵³

그러자 일본노동당(전일본농민조합 지지 정당)의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 의원은 지금까지 질문자는 모두 지주 측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질문했다며 이제 소작인의 입장에서 질문하겠다고 선언했다. 오야마 의원은 소작법안은 오히려 지주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소작인에게 큰 불이익을 줄 것이며 농민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작법에서 소작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배신행위’를 하지 않으면 부당한 이유로 약의로 소작 해약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작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으나, ‘배신행위’ 등의 애매한 문구가 소작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소작지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약 신청을 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작료의 1년분에 상당하는 작리료만 지불하면 마음대로 소작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작농민은 조상 대대로 농작하던 토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오야마 의원은 소작료의 공탁 문제와 관련하여 농민조합이 종래 지주의 입모 차압 신청, 출입 금지 가치분에 대해 반대투쟁을 해 왔는데, 소작법안은 이를 허용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편한 절차와 벌칙을 마련하고 있어 지주의 지위를 강화하고 농민운동을 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작지 전대를 금지한 규정도 소작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조합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임차한 소작지를 다시 그 단체원에게 경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작지 전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조항에서, 산업조합에 토지 관리의 임무를

53 「大雪로 遅刻 續出, 14일의 衆院」, 『매일신보』, 1931년 2월 15일; 「14일 衆議院 본회의 소작법안을 상정」, 『매일신보』, 1931년 2월 16일; 帝國議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 「第59回帝國議會衆議院 小作法案委員會議錄 第1~17回」, 1931년 2월 16, 18, 21, 24~27일, 3월 2, 4, 6, 9~10, 13~14, 16~18일; 二松堂編輯所 編, 1931a, 앞의 책, 261~278쪽; 二松堂編輯所 編, 1931b, 『帝國議會議事錄: 第59回』 2, 二松堂, 105쪽, 233쪽, 301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앞의 책, 179~208쪽.

부여하고 있는 점 등에 반대하며 그렇다면 농민조합은 과연 어디에 포함되는지 농립대신의 소견을 물었다. 이에 농립대신은 오야마 의원은 ‘소작법’과 ‘농촌 구제’를 혼동하고 있다며, 소작법에서 소작인의 권익을 충분히 옹호했으니 잘 보아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에 오야마 의원과 일본대중당의 아사하라 겐조(淺原健三) 의원이 재차 질문하기를 요구했으나 의장은 듣지 않고 질의를 끝냈다. 이어서 의장이 입헌민정당의 사쿠타 다카타로(作田高太郎) 의원의 의견에 따라 위원부탁으로 결정하겠다고 선고하자, 아사하라 의원이 격노하여 의장의 조치를 비난했다. 그러나 의장과 여당인 입헌민정당은 이를 묵살하고 의사를 진행하였다.⁵⁴

이 무렵 귀족원에서는 1931년 2월 17일부터 실업 관계 의원으로 조직된 쇼와간담회 예회(例會)가 공업구락부에서 개최되었는데, 총 51명이 출석해 정부의 소작법안에 대해 일치된 행동으로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 소작법, 노동조합법 등의 법안이 귀족원에 제출될 경우 반대하겠다고 결의한 것이다. 제59회 제국회의의 회기는 겨우 1개월 남은 상황이었고, 입헌정우회는 소작법안 등의 심의 지체를 도모하여 이를 귀족원에서 심의 미료(未了)로 사장시키려 했다. 귀족원의 중요 법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소작법은 통과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었다.⁵⁵

54 「소작법안 상정코 大山氏 又復熱論」, 『동아일보』, 1931년 2월 16일; 二松堂編輯所 編, 1931a, 위의 책, 278~284쪽; 東洋拓殖株式會社, 「小作法ニ關スル第59議會本會議經過議事錄拔萃」, 『昭和9年度朝鮮農地令米穀統制法關係』[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 조사3팀, 2010, 『朝鮮農地令·米穀統制法關係 2(1934)』,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5~31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100~101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위의 책, 208~221쪽.

55 「勞組·小作 兩案 일치 반대」, 『동아일보』, 1931년 2월 19일; 「重要案이 山積하여 首相 登院을 요망」, 『매일신보』, 1931년 2월 24일; 「旋風을 胚胎한 귀족원 공기」, 『매일신보』, 1931년 2월 25일; 「소작법안의 貴院 통과 絶望」, 『동아일보』, 1931년 2월 26일; 「減稅案을 중심으로 정부 倒壞의 운동」, 『일호도 가차 없이 적극적 규탄』, 『매일신보』, 1931년 3월 17일; 「노동·소작법안 필경 流産은 확실」, 『매일신보』, 1931년 3월 25일.

이러한 가운데 이해 3월 14일 중의원에서 제14회 소작법안위원회가 열렸다. 이날에는 ① 소작법안에 소작료의 전국적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② 1921년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입안에 비해 본안은 퇴보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와타나베 사법대신과 이시구로 농림차관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① 상당한 소작료를 법률로 규정한 사례는 외국에도 없고 또 그 표준을 규정한 경우도 없다. 정부는 각지의 소작사정, 소작관행에 따르는 것을 타당하다고 보고 각지 소작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했다. 쟁의가 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재판소의 재판에 따르는 것으로 했다. ② 소작권에 대해서 해석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용어를 법에 게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작의 임차권 및 영소작권에 대해서만 조문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1921년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입안은 사실상 ‘간사 사안’으로, 예컨대 소작료에 관련한 조항을 넣은 것은 소작법 입안 시 조사해야 할 사항으로 거론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 ‘간사 사안’은 이번 입안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⁵⁶

이리하여 일단 소작법안은 1931년 3월 2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소작법안은 약간의 수정(청부경작 규제 조항 추가 등)을 거쳐 중의원을 통과(찬성 166, 반대 60)했다.⁵⁷

이후 3월 24일 귀족원에서 소작법안, 노동조합법안 등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귀족원 제1회 소작법안 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끝으로, 회기가 끝나가던 시점에서 결국 소작법안은 심의 미로 상태로 유산(流産)되고 말았다. 귀족원은 소작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으로 ① 소작법규의 강행법규성 부정, ② 소작권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부여 문제, ③ 소작지의 임차권 양도 반

56 「小作料の基準を規定してはどうか」, 『大阪朝日新聞』, 1931년 3월 3일; 「明日の兩院」, 『매일신보』, 1931년 3월 16일;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앞의 책, 588~603쪽.

57 「今期 의회 연장 不要」, 『매일신보』, 1931년 3월 22일; 小倉武一, 1951, 앞의 책, 587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129~131쪽.

대, ④ 소작지 매각의 통지 기한 및 대상 축소, ⑤ 소작계약의 법정 갱신 부정, ⑥ 조정 신청의 경우 임대차의 계속 기한 축소, ⑦ 소작료 감면 신청 제한, ⑧ 출입 금지 가처분, 입모 가차압의 경우 소작인의 소작지 사용 시 상당한 담보 제공 필요, ⑨ 전대차의 효력 기한 축소, ⑩ 작주(作株) 배상 시 유익비 및 작리료 미지불 등을 제시했다. 이를 보면 귀족원에 얼마나 지주적 이해가 반영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대일본지주협회의 소작법 요강이나 소작법 초안에 대한 의견과 유사했다.⁵⁸

결국 소작법안은 귀족원에서 묵살되었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귀족원에서는 소작법이 소작쟁의의 방지나 사상 단속의 관점에서 효과가 없다는 명목상의 이유를 들어, 특별위원회에서 소작법안을 한 차례 심의한 것으로 심의의 미료로 끝냈다. 지주의 입장에서 소작법안은 여전히 양해·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진보적·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작법 제정이 귀족원에서 무산된 이유는 여당인 입헌민정당과 야당인 입헌정우회의 당파적 대립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입헌정우회는 정책상 소작입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농촌 대책의 중심을 자작농 창설·유지 정책에 두고 있었고 긴급하게 소작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적 입장 외에 당파적 대립이 근거에 깔려 있었으므로, 입헌정우회 의원들은 소작법안의 제출 상황이나 대신의 태도를 문제 삼아 입헌민정당을 당략적으로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입헌민정당도 소작법 제정에 대한 열의를 점차 상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헌민정당 내에서도 소작법안이 잘 정리되지 않아 그 제출 시기가 회기 말에 다다르게 된 측면이 있었다.⁵⁹

58 帝國議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 「第59回帝國議會貴族院 小作法案特別委員會 議事速記録 第1號」, 1931년 3월 24일; 「금일의 兩院」, 『매일신보』, 1931년 3월 25일; 小倉武一, 1951, 위의 책, 576쪽, 587~589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앞의 책, 101쪽;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b, 앞의 책, 772~790쪽.

59 衆議院事務局, 1932, 『衆議院議案件名錄』, 168쪽; 野間海造, 1941, 앞의 책, 13쪽; 田中學, 1968b, 앞의 글, 129~131쪽; 川口由彦, 1990, 앞의 글,

그러나 비록 일본정부의 소작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중단되었으나, 소작법안의 본래 목적이던 ‘경작권 강화’의 방침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작조정법의 시행 이후 일정 부분 구현되고, 1930년대 초중반에도 사회적으로 이어져 나갔다. 소작쟁의가 고양하면서 소작료는 전반적으로 인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소작조정법체제’가 성립되고 각 촌락에서 지주·자작농·소작농 3자가 소작료를 결정하는 이른바 ‘협조체제’가 구축되면서 농촌은 변화해 갔다. 실제로는 소작법안의 내용이 소작조정법 시행 과정에서 지도적으로 작용하여, 현실적으로 소작법안의 취지가 소작쟁의 조정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⁶⁰

IV. 맺음말

이상으로 1920~1930년대 초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과정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과 1920년 공황 후 1920년대에 소작쟁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소작쟁의 확대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작관계 특별법으로서 소작입법이 현실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일본 농상무성 관료들은 1920년 11월 소작관계법을 심의하고 소작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작제도조사위원회’를 농상무성 내에 설치했다. 간사 등 소작제도조사위원회를 주도한 세력은 개혁 성향의 농림관료들로서 지주적 토지소유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소작제도조사위원회는 관민 합동의 조사기관을 지향했으며, 농상무성으로부터 연구자료를 받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1921년 6월 제4회 특별위원회에서 간사 측은 「소작법안 연구자료」를 제출했는데, 소작권을 현저하게 강화하려 한 점이 특징이었다. 이는 소유권 절대 보장의 민법 체제

372~373쪽.

60 田中學, 1968b, 위의 글, 130쪽; 平賀明彦, 2003, 앞의 글, 154쪽; 大石嘉一郎, 2005, 앞의 책, 151쪽; 島袋善弘, 2013, 『近代日本の農村社會と農地問題』, 御茶の水書房, 82~83쪽, 110쪽.

가 소작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이후 1921년 7월 제5회 특별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제2차 소작법안 연구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소작권 기간과 양도 절차, 소작료 지불 의무 등의 점에서 지주의 의향을 배려한 것이었으나 기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일본정부는 소작법안을 소작제도조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여론 조사도 했다. 그런데 소작법안은 지주 측의 거센 반발을 낳았다. 그러면서 1922년 2월 제6회 특별위원회를 통해 우선 소작조정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갔다.

그리하여 1922년 6월 제8회 특별위원회에 ‘간사 사안’으로 「소작조정법안 연구자료」가 제출되어 심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정부는 이 소작조정법안을 수정하여 1924년 7월 제49회 제국의회 중의원에 상정하여 가결했고 귀족원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이해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소작조정법은 소작문제를 조정하여 소작쟁의를 진정시켜 농촌 생산력을 증진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소작조정법에 따라 조정 신청이 있는 쟁의에 대해 행정 및 지주·자작·소작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곧 사실상 화해에 부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지방에 소작권을 특설하여 조정상 협력하게 했다. 하지만 소작조정법은 어디까지나 절차법으로서 소작법의 제정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 운용에 한계가 있어 소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소작조정법이 시행되면서 소작쟁의의 과반수는 소작조정제도 내로 흡수되어 통제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소작조정제도가 성과를 거둔 것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농민이 다수 참여한 데 기인했다. 또한 구장, 부락 총대 및 지방유지자에 의한 조정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소작권이 법외 조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집단적인 소작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본에서는 협조주의적인 소작 질서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갔다.

그런데 1920년대 중후반에 들어 소작쟁의가 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쟁의 내용도 악화되면서, 실체법으로서 소작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이에 일본정부는 1926년 5월 ‘소작조사회’를 설립하여 이해 6월 제1회 총회

에서 소작법 제정 방침을 결정하고, 앞서 ‘간사 사안’을 둘러싼 논의를 계승하는 형태로 심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소작조사회는 소작권이 보다 약화된 내용으로 소작법 요항을 결정하여 그해 10월 「소작법 제정상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요강」 등을 농림대신에게 답신했다. 이 답신에 기초하여 농림성 농무국은 소작법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법성과 협의했다. 1927년 3월 농림대신·사법대신의 이름으로 소작법안이 내각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농림성 농무국은 이를 「소작법 초안」으로서 공표했다. 이는 제1차 소작법안 연구자료에 비하면 경작권의 강화를 통한 소작인 보호라는 의도가 후퇴해 있었다. 더욱이 입헌정우회의 ‘자작주의’, 입헌민정당의 ‘소작주의’의 대립으로 소작법 입법은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지주 측의 소작법 반대 운동 및 소작농 측의 소작법안 수정 요구의 영향으로, 소작법 초안은 법제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52회 제국의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소작법안은 이후 1929년 7월 입헌민정당의 하마구치 내각에 의해 계승되어, 같은 해 10월 ‘사회정책심의회’에서 소작법 요강에 따라 속히 소작법을 제정·실시하기 바란다는 답신안을 가결했다. 사회정책심의회 내 소작법위원회는 헌정회(입헌민정당 전신)의 제1차 와카쓰키 내각 시절 작성한 소작법안대로 이해 11월 답신안을 결정하여 소작법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소작법안은 1930년 12월 법제국에서 심사되어, 1931년 1월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이 소작법안은 영소작에까지 적용되었고 소작기간(최단기간 5년) 보장을 비롯하여 소작권 해제 제한, 소작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보장, 소작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 민법상 지주의 권익을 제한하고 소작농의 안정을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농업생산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소작 중농층을 사회적 지주(支柱)로 만들어 농촌 지배 체제의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했다. 일본에서 소작입법은 지주제를 위로부터 부르주아적으로 개혁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마침내 1931년 2월 일본정부는 소작법안을 제59회 제국의회 중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귀족원에서는 정부의 소작법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입헌정우회는 소작법, 노동조합법 등 중요 법안에 대해 모두 철저히 규탄하기로 했다. 소작법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치고 그해 3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결국 지주적인 이해가 반영된 보수적인 귀족원에서는 소작법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의하고 심의 미료로 묵살했다. 비록 일본정부의 소작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중단되었으나, 소작법안의 ‘경작권 강화’ 방침은 1930년대 초중반에도 소작쟁의 조정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참고문헌

자료

『東京朝日新聞』, 『大阪朝日新聞』, 『大阪毎日新聞』, 『時事新報』, 『大阪時事新報』, 『國民新聞』, 『中外商業新報』, 『大阪新報』, 『神戸又新日報』, 『매일신보』, 『동아일보』, 『중외일보』, 『朝鮮新聞』, 『法律時報』, 『經濟論叢』.

農商務省 農務局, 1923, 『小作制度調査委員會第二回總會議事錄』.

農林省 農務局, 1929, 『著書雜誌ニ表ハレタル小作法ニ對スル意見』.

_____, 1938, 『小作爭議・調停及地主小作人組合の概要』.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8a, 『農地制度資料集成 4: 小作立法に關する資料(上)』, 御茶の水書房.

_____, 1968b, 『農地制度資料集成 5: 小作立法に關する資料(下)』, 御茶の水書房.

_____, 1969, 『農地制度資料集成 3: 地主及び小作人團體・小作調停法に關する資料』, 御茶の水書房.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務課, 1927, 『内地に於ける小作法草案と其の解説』.

二松堂編輯所 編, 1931a, 『帝國議會議事錄: 第59回』 1, 二松堂.

_____, 1931b, 『帝國議會議事錄: 第59回』 2, 二松堂.

衆議院事務局, 1932, 『衆議院議案件名錄: 自第1回議會至第60回議會』.

末弘嚴太郎, 1924, 『小作調停法大意』, 科學思想普及會.

法律新聞社 編, 1924, 『小作調停法原義』, 法律新聞社.

興農會, 1924, 『小作調停法註解』, 周文書院.

水谷長三郎, 1926, 『法廷に於ける小作爭議』, 同人社書店.

澤村康, 1927, 『小作法と自作農創定法』, 弘造社.

奈良正路, 1928, 『小作法案の嚴正批判』, 叢文閣.

伊藤太郎兵衛, 1930, 『大日本地主協會小作法運動報告書』, 新潟縣農政協會.

中澤辨次郎, 1930, 『濱口內閣の小作立法批判』, 帝日通信社出版部.

松村勝治郎, 1931, 『小作權に關する研究』, 勞働公論社.
 布施辰治, 1931, 『小作爭議にたいする法律戰術』, 淺野書店.
 協調會 農村課 編, 1931, 『小作立法に關する重要問題』, 協調會.
 横尾惣三郎, 1931, 『小作法案に就て』, 農村研究會.
 増田福太郎, 1938, 『農業法律講義』, 養賢堂.
 野間海造, 1941, 『現代農政論考』, 東晃社.
 小野木常, 1942, 『調停法概説』, 有斐閣.

帝國議會會議錄檢索システム, <http://teikokugikai-i.ndl.go.jp>.

단행본

島袋善弘, 2013, 『近代日本の農村社會と農地問題』, 御茶の水書房.
 木村茂光 編, 2010, 『日本農業史』, 吉川弘文館.
 小倉武一, 1951, 『土地立法の史的考察』, 農業評論社.
 川口由彦, 1990, 『近代日本の土地法觀念』, 東京大學出版會.
 平賀明彦, 2003, 『戦前日本農業政策史の研究(1920-1945)』, 日本經濟評論社.
 暉峻衆三 編, 2003, 『日本の農業150年(1850~2000年)』, 有斐閣[데루오카 슈조 편,
 진운성 역, 2004, 『일본농업 150년사(1850~2000)』, 한울아카데미].

논문

김석연, 2010, 「Japan's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of 1924」, 『일본연구논총』 32.
 김용덕, 1986, 「大正期 소작조정법의 제정과 그 성격」, 『아세아연구』 76.
 庄司俊作, 1982, 「昭和恐慌期の小作爭議狀況」, 『社會科學』 30.
 田中學, 1968a, 「1920年代の小作爭議と土地政策(I)」, 『經濟學季報』 18-1.
 _____, 1968b, 「1920年代の小作爭議と土地政策(II)」, 『經濟學季報』 18-2.
 川口由彦, 1992, 「小作調停法の法イデオロギー」, 『法社會學』 44.
 平賀明彦, 2002, 「1920年代農政官僚の政策構想」, 『白梅學園短期大學紀要』 38.
 _____, 2003, 「1920年代後半の農業政策: 地方小作官制度と小作法草案」, 『白
 梅學園短期大學紀要』 39.

1920~1930년대 초 일본정부의 소작입법 과정

최은진

1920~1930년대 초 소작쟁의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지주적 토지소유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소작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소작입법을 추진했다. 소작법안은 관민 합동의 조사기관을 지향하는 소작제도조사위원회, 소작조사회, 사회정책심의회 등 정부 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되었으며, 이를 주도한 세력은 개혁 성향의 농림관료들이었다. 소작법안은 농림성에서 작성되어 사법성의 심의 후 1930년 12월 법제국에서 심사되고, 1931년 1월 각의에서 결정된 후 이해 2월 제국의회에 상정되었다.

일본의 소작법안은 영소작에까지 적용되었고 소작기간(최단기간 5년) 보장을 비롯하여 소작권 해제 제한, 소작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보장, 소작료 감면 등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 민법상 지주의 권익을 제한하고 소작농의 안정을 돕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농업생산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소작 중농층을 사회적 지주(支柱)로 만들어 농촌 지배 체제의 근대화를 달성하려고 했다. 일본에서 소작입법은 지주제를 위로부터 부르주아적으로 개혁하고자 기획된 것이었다.

소작법안은 1931년 3월 중의원을 통과했으나, 보수적인 귀족원의 심의 중단으로 입법이 무산되고 말았다. 비록 일본정부의 소작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은

중단되었으나, 소작법안의 ‘경작권 강화’ 방침은 1930년대 초중반 소작쟁의 조정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

주제어: 소작법, 소작조정법, 소작입법, 소작쟁의, 일본제국의회

ABSTRACT

A Process of Tenant Farming Legislation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1920s~Early 1930s

Choi Eunjin

Under the situation when the tenant disputes were expanding in the 1920s~early 1930s, the Japanese government pushed the tenant farming legislation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tenant right by applying certain restrictions to the land ownership. The bill for tenant law was drafted through the deliberations of committees within the government that strived for a joint government-civil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forces initiated such movement were reform-minded government officers in agriculture and forestry. The bill for tenant law was draft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to have the delibera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llowed by a review by the Cabinet Legislation Bureau in December 1930, and determined by the cabinet in January 1931 to eventually presented to the Imperial Diet of Japan in February of this year.

The bill for the Tenant Law in Japan was consisted with the contents

to restri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landlords that was guaranteed by the civil law as well as contents to help stabilizing tenant farms. Therefore, by making the independent farmer and farm tenant that practically undertook the agriculture production to the social pillar in a way of accomplishing the modernization of the farm village control system.

This bill for tenant law passe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March 1931, but with the suspension of deliberation by the conservative of the House of Peers, it was failed for legislation. Although the movement of the Japanese government for legislating the tenant law was suspended, the policy to strengthen the right of cultivation of the bill for tenant law was materialized to a certain degree in the tenant dispute reconciliation in early and mid-1930s.

Keywords: Tenant Law in Japan, Farm Tenancy Conciliation Law in Japan, tenant farming legislation, tenant dispute, Imperial Diet of Japan

호주군의 재판자료로 본 조선인 BC급 전범

김민철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 I. 머리말
- II. 호주정부의 전범정책과 BC급 전범재판
- III. 호주의 전범재판을 받은 조선인
- IV. 호주의 조선인 BC급 전범재판 사례
- V. 법률상의 쟁점-상관의 명령과 복종범죄
- VI. 맺음말



I. 머리말

호주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¹에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동원되었다가 호주군에 전쟁포로가 된 조선인 군인·군속 명부와 B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재판기록이 있다.²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호주군에 억류되거나 전쟁포로로 체포된 조선인은 260여 명이며, B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은 사람은 15명이다. 이 글에서는 BC급 전범에 대한 호주정부의 정책과 ‘조선인 BC급 전범’³의 재판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가해

* 투고: 2020년 6월 27일, 심사 완료: 2020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25일

1 NAA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기록 중 한국 관련 자료는 대략 6,000여 건에 이른다. 한국전쟁 참전 자료와 외교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태평양전쟁 당시 직접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생성한 조선인 관계 자료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기록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NAA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은 각 주제별로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인도 쉽게 검색 및 열람이 가능한 체계로 되어 있다. NAA에서 공개한 조선인 군인·군속 포로 명부와 전범재판 자료도 이 기준에 따라 공개됨으로써 열람이 가능하다.

호주군에 전쟁포로가 된 조선인 군인·군속 명부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민철, 2016, 「호주군에 수용된 조선인 전쟁포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호가 있다. 또한 일본군 포로의 카우라수용소 탈출사건과 이와 관련한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보고로 강제원·이회정, 2017, 「호주 카우라 일본군(日軍)포로 대탈출사건 한국인 전몰자 추모사업 실태조사와 시사점」, 『디아스포라연구』 11(1),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있다. 호주정부는 카우라 사건 때 당시의 소문과 일부의 증언과는 달리 조선인 희생자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2 1945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전까지의 명칭을 조선 또는 조선인으로 표기한다. 우쓰미 아이코에 따르면, BC급 재판에서 전범이 된 조선인은 148명이며, 이 중 129명이 포로감시원, 병사가 2명, 육군중장이 1명(홍사익), 중국에서 통역을 맡았던 군속이 16명이었다고 한다. 內海愛子, 1982, 「大東亞共榮圈と朝鮮人軍人·軍屬」, 『三千里』 31, 三千里社, 89~90쪽.

3 ‘조선인 BC급 전범’이란 태평양전쟁 때 주로 군속으로 포로수용소에서 근무했던 포로감시원 중 전후 연합국에 의해 포로학대 등의 혐의로 전쟁범죄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일제의 지배하에서는 일본인 국적이었으나, 1945년 일

와 피해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호주군에 의해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949명이다.⁴ 이들의 재판 기록을 모은 자료군이 「일본 포로 및 전쟁범죄 관련 서류」(A471 series)이다. 이 기록들은 원래 국립전쟁기념관(Australian War Memorial/AWM, <http://www.awm.gov.au>)에서 소장한 것으로 이후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등지의 내셔널아카이브로 이송되어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내셔널 아카이브(<http://www.naa.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전쟁기념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같은 자료이다.

「일본 포로 및 전쟁범죄 관련 서류」에는 호주군이 직접 관할하는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은 사람들의 기록과 연합국이 관할하는 군사법정에서 호주군 포로들과 관계된 사건을 수집한 기록, 두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우선 전쟁범죄의 실태와 쟁점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재판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재판자료는 판결문과 공소장, 변론서, 심문조서, 그리고 증거물로 제출된 연합군 전쟁포로의 진술조서(FORM Q)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여 BC급 전범 출신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판정하기까지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었다. 언론에서 기사 발굴 차원에서 몇 차례 언급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긴 했으나 학술 차원에서 본격적인 분석은 없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책임 문제와 관련해

본이 패전한 이후에는 한국인 국적을 갖거나 또는 무국적 상태의 조선인으로 남은 경우가 있어 여기서는 ‘조선인 BC급 전범’으로 표기한다.

4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編, 1973, 『戦争犯罪裁判概要史』, 38쪽. 이 책에서는 연합군이 기소한 BC급 전범의 총건수 2,244건, 총인원 5,700명으로 되어 있으나 1992년 법무성이 발표한 자료에는 5,730명으로 되어 있다. 内海愛子, 2005, 『日本軍の捕虜政策』, 青木書店, 587쪽에서 재인용.

서 매우 민감한 주제라 할 수 있는 BC급 전범에 대해 국내의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우선 이들이 가해자, 즉 전쟁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다. 물론 해방 공간이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일시 언급된 적도 있으나 한국사회가 BC급 전범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친일파·대일협력자로서 비판받았기 때문에 공공연한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웠다. 그리고 대부분이 감옥에서 나온 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눈앞의 현안으로 다가오지 못한 면도 있었다. 따라서 해방 후 70년간 한국사에서 잊혀진 존재였다. 조선인 BC급 전범은, 일본의 전쟁책임이 강제동원된 식민지 출신의 청년들에게 전가된 데다가 전후 일본의 원호정책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은 존재이며, 한국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전후에도 피해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거나 추방당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연구는 잊혀진 존재의 역사를 복원한다는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실천적인 과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하야시 히로부미는 일본인 BC급 전범에 대한 연구에 대해 “냉전 속에서 봉인된 이 문제가 냉전체제의 해체,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 진전 등과 함께 일본인 앞에 다시 부상했다. 그것은 일본이 자신의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했기 때문에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일본의 미래 방식과 불가분하다는 매우 급일적인 과제”⁵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다른 관점에서 의미를 찾는다. A급 전범과 달리 대부분의 BC급 전범은 국가의 명령에 충실한 장병이자 국민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승자의 보복’, ‘부당한 재판’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BC급 전범재판에 대한 연구 의미도 “전쟁의 본질적인 공포감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일본의 조직이란 무엇인가, 일본인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⁶는 데

5 林博史, 2014, 『裁かれた戦争犯罪-イギリスの対日戦犯裁判』, 岩波書店, 2쪽.

6 半藤一利·秦郁彦·保阪正康·井上亮, 2010, 『‘BC級裁判’を読む』, 日本經濟新

서 찾는다. 북중문화에 익숙한 일본사회의 특질에서 전쟁범죄의 원인을 찾으려는 것 같으나 실상은 재판의 부당함에 더 초점을 두어 전쟁책임을 애매하게 만들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BC급 전범의 경우는 더 중층적인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이면서도 연합군 포로를 학대했던 가해자라는 이중성이 갖는 역사성, 전범재판 자료에서 확인되는 가해 사실과 당사자들의 변호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괴리감과 진실의 문제, 가해자로서 저야 할 책임 이상으로 일본 정부가 저야 할 책임까지 떠안은 문제, 국제형법상 북중범죄 또는 무지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하급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 논쟁, 식민지배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전후에도 지속된 식민주의 피해의 연속성과 책임문제, 나아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 속에서 불합리한 구조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선택행위 문제 등 역사와 법, 윤리 차원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인 BC급 문제가 식민지 지배책임 문제에서부터 윤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 첨예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의 관심과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취재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한 문창재의 『나는 전범이 아니다』(2005, 일진사)를 비롯하여 채영국,⁷ 김용희,⁸ 유하영,⁹의 글은 전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학래의 회고록이 발간되었다.¹⁰ 구누

聞出版社, 7쪽.

- 7 채영국, 2004,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9집. 이 글은 「소장, 한국·조선인ABC급 전범자의 국가보상 등 청구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 8 김용희, 2007, 「BC급 전범재판과 조선인」, 『법학연구』 27. 김용희는 각국 전범재판의 일반 현황을 소개한 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조선인 전범의 국적 지위문제를 중심으로 다뤘다.
- 9 유하영, 2019, 「전후 극동지역에서 전시범죄의 처벌」, 『인도법논총』 39.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중국 내 전범재판 중심으로 8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했다.
- 10 이학래 지음, 김종익 옮김, 2017, 『전범이 된 조선청년』, 민족문제연구소.

기 예나는 기록학 분야에서 국립공문서관을 비롯해서 각 기관별 문서공개에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국내에 소개했다.¹¹

조선인 BC급 문제와 관련한 독보적인 연구서로는 우쓰미 아이코의 『朝鮮人BC級戰犯の記録』(1982)을 들 수 있다.¹² 이 책은 ‘조선인이 왜 전범이 되었는가’라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식민지 출신의 BC급 전범자에 대한 일본의 전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썼다. 그러나 포로감시원에서 BC급 전범이 되기까지, 그리고 석방과 이후 보상운동 등 전체 상황을 다루고 있어 연합군의 BC급 전범정책과 실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연합군 가운데 호주군의 군사법정에서 다루진 조선인 BC급 재판기록을 토대로 일본군의 포로 감시 체계와 포로감시원의 지위·역할, 그리고 가해행위의 실태와 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 한다. 이를 통해 미개척 분야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는 한편, 법정에서 다뤘던 쟁점들이 현재도 유효한 해결과제임을 확인할 것이다.

이 글은 먼저 호주정부의 전범정책과 BC급 전범재판을 정리하고, Ⅲ~Ⅳ장에서는 BC급 전범으로 재판받은 조선인들의 전체 현황과 인물별 쟁점을 소개한 뒤, V장에서는 법률적 쟁점 중 특히 상관의 명령과 복종범죄에 대해 다룰 것이다.

II. 호주정부의 전범정책과 BC급 전범재판

1943년 10월 23일 영국, 미국, 프랑스 등 17개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War Crime Commission)가 런던에 설치되어 전쟁범죄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한

11 구누기 예나(功刀惠那)·이영학, 2017,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우쓰미 아이코 지음, 이호경 옮김, 2007, 『조선인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아.

편 기준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다. 1945년 8월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 “범죄와 잔학행위는 단지 개인적인 불법행위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극동과 태평양 지역에서 신중하게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저지른 죄이자 야만행위들”이라고 결론 내렸다. 전쟁범죄위원회의 눈에 비친 일본군의 전쟁범죄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그들의 사악한 계획의 완성 속에서, 일본인들은 최후통첩이나 선언 없이 침략전쟁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정부가 조약이나 관습에 따라 지켰던 엄숙한 의무를 공공연하고 악랄하게 어겼다. 그들은 침략한 나라의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적용하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가족의 명에,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과 실천들을 존중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주민들은 무자비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되고 차가운 피로 학살당했다. 그들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강간, 고문, 약탈 기타 만행들이 일어났다. 도시들은 단지 파괴되기만 원했으며, 시골은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유린되었다. 전쟁 법규와 관습, 그리고 자신들의 보증에도 불구하고 전쟁포로와 연합국 국민들은 체계적으로 야만적인 대우와 끔찍한 모욕을 받아왔으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야만적인 행위들은 학살, 살인, 고문, 기아와 무자비한 억압을 포함하고 있다.¹³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호주의 관심은 연합국보다 훨씬 앞섰다. 1942년부터 일본군의 잔학행위들에 관한 정보가 축적됨에 따라 호주는 1943년에 본격적으로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주의 전범재판은 극동위원회(the Far Eastern Commission, FEC)가 1948년 9월 3일 재판을 종료한 것보다 1년 반 후인 1951년 중반까지 진행될 정도로 철저했으며, 전황을 전쟁범죄의 최

13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1 and Volume2”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Series A7711).

고책임자로 재판에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할 만큼 강경했다.¹⁴

호주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취한 데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하나는 1942년 8월 25일 일본군 육전대가 뉴기니 동쪽 끝 미른만에 상륙해서 9월 6일 퇴각할 때까지 호주군과 주민들을 상대로 야만적인 살상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다.¹⁵ 다른 하나는 일본군에 잡힌 포로들이 중노동과 질병, 학대, 고문, 구타, 처형 등으로 대규모 사망한 사실이었다. 전자인 미른만 사건은, 무차별 학살과 강간, 심지어 인육식까지 저지른 일본군의 잔인함과 야만성에 놀란 호주정부가 그 궁극적인 책임을 친황에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 후자는 포로수용소의 책임자와 가해의 당사자들, 즉 BC급 전범을 주요 지역에서 설치된 호주군사법정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범죄 중 호주군이 중대범죄로 조사해서 재판에 부친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¹⁶

- ① 영국령 북보르네오 산다칸(Sandakan)-라나우(Ranau) 행진
- ② 라바울에서 일본 고참 장교의 재판
- ③ 암보인스(Amboins) 탄토에이(Tantoei) 캠프에서의 전쟁범죄
- ④ 미얀마/시암(태국) 철도의 잔학행위
- ⑤ 나우루(Nauru)에서 다수의 민간인 관리 학살
- ⑥ 카비엥(Kavieng)에서 민간인 학살
- ⑦ 공군 중위 뉴턴과 병장 쉬프리트 살해

14 Emmi Okada, 2009, "The Australian Trials of Class B and C Japanese War Crime Suspects, 1945-51,"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6, pp. 48~49.

15 林博士, 2010, 『戦犯裁判の研究』, 勉誠出版, 「제4장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일전 범정책의 전개」 참조.

16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2", p. 434.

- ⑧ 하이난섬에서의 잔학행위
- ⑨ 일본 나오에쓰 포로수용소에서의 전쟁범죄

이 중 ④번 태면철도에서의 연합군 포로학대 건에 대해 호주군사법정이 일본군 BC급 전범에게 가혹하다고 할 만큼 과중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일본군에 잡힌 포로의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에 따른 분노에서 비롯되었다. 나치에 붙잡힌 영미 포로의 사망률이 4%에 미치지 못한 데 비해 일본군에 잡힌 연합군의 포로 사망률은 27%에 이르렀다.¹⁷ <표 1>에서 보듯이 철로건설에 동원되어 사망한 포로도 29%였다.

호주 육군사령부는 태면철도 건설 과정에서 일어난 참상에 대해 “미얀마에서 일본군의 목적은 전쟁포로와 쿨리(노동자)를 동원해 최대한 빨리 철도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을 얻기 위해 일본군은 전쟁포로의 삶과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냉정하고 믿기 힘들 정도의 잔혹성을 드러냈다. 철도에서 많은 포로에게 영향을 미친 유일한 요소는 작업에 관한 정해진 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포로

<표 1> 철로건설에 동원된 전쟁포로와 사망자 수¹⁸

국적	전쟁포로 수	사망자 수
영국인	27,412	7,934
호주인	12,121	3,949
네덜란드인	17,399	4616
미국인	569	127
총계	57,501	16,626

17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0,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진상조사』, 30쪽.

18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2”, p. 444.

의 사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일본인(그리고 특히 조선인) 군속과 기술자(철도대)들은 잔혹하고 야만적이었다. 파귀와 구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다”고 강조하였다.¹⁹

전쟁포로가 되어 철로건설에 동원된 윌리엄스 중령이 호주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정황은 확인된다.

질문: 당신 부하 884명 중에 200명 이상이 그 시기에 철로공사 때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주를 떠날 때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고, 포로로 잡히기 전까지 완벽한 건강을 즐겼습니다. 그 손실은 적당한 음식과 의료서비스, 그리고 동물이 아닌 인간다운 대접으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 당신과 당신의 군의관들은 손실을 막고자 노력했습니까?

답변: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음식과 보급품을 요구하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우리 부대는 공병부대로 그들은 자바에 오기 전에 시리아에서 도로작업을 실제로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근무했고 그 작업은 고된 육체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로공사 때 그들은 파리 목숨처럼 죽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힘든 일을 했지만, 그보다도 일본군에게 당한 소름끼치는 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²⁰

19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2”, p. 316.

20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4, 1046285, Canberra). 재판자료에 쪽수가 없어 이하 인용 쪽수는 생략한다. 이하 호주 국가기록원 자료의 출처는 “Title”(Series no., Control symbol, Item barcode, Location)의 형식으로 한다.

〈표 2〉 FORM Q-전 전쟁포로에 의해 제출된 전쟁범죄정보²¹

군번: MX 54831 이름: Levy 이니셜: P. R. 부대: -2/18 Bn AIF
 본적: NSW, 시드니 26x O, LConnell, St.
 체포 일시와 장소: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일시, 캠프와 장소	범죄행위나 폭력 양상	적군의 이름, 계급, 지위, 부대, 묘사	다른 증인 이름
1943. 1.~2. 제3 태국 전 쟁포로수용소 H, Q. 미얀마 탄부자얏	<p>처형이라는 방식에 의한 불법 총살: Sapper Bell (AIF), Spr Dickinson(AIF)</p> <p>나는 1943년 1월 어느 날 오전 11시, 디킨슨이 캠프로 이송되어 일본군 가드룸에서 머문 것을 보았다. 나는 그날 오후 A. L. 발레이 준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참석한 회의에서 나카모토 히구치 중위가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디킨슨은 총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준장은 또 통역 C. D. 폰트를 통해 (일본 측에)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고 했다.</p> <p>다음 날 오전 8시쯤 나는 디킨슨이 눈가리개가 씌어진 채 감시원 숙소에서 끌려나와 조선인 감시원과 함께 트럭에 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묘지로 이송되었고 얼마 후 라이플 총소리를 들었다. 그로부터 3주 후 벨이 잡혀왔다. 그의 팔은 피투성이인 채로 팔걸이 봉대를 하고 있었다. 법정이 열려, 히구치 중위와 내가 모르는 다른 일본인, 발레이 준장과 폰트가 출석했다. 나는 공판이 진행되는 것을 봤으나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다. 오후에 벨을 방문하여 10분간 이야기를 했다. 그는 나에게 모울메인(Moulmein)의 남동쪽 살윈(Salween)에서 체포되었다고 말했다. 벨의 구명을 위한 청원이 구두와 문서로 제출되었으나 나카모토는 이런 경우 포로는 총살될 것이고, 자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결정은 뒷선에서 내려진다고 했다.</p> <p>다음 날 아침 8시경 나는 벨이 한국인 감시원에 의해 그의 숙소에서 끌려나와, 눈도 안 가린 채 묘지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총소리를 들었다.</p>	<p>나카모토 중령-태국 사령부 3분소 나이토 대위 나카모토 히구치 중위-군의원</p>	<p>P. J. 캠벨 소령 AASC J. A. 발레이 중위 2/19 Bn 사제 F. 바쉬포드 AIF C. D. 폰트 기수 네덜란드 T. 해밀턴 중령 AAMC</p>

21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5, 1046286, Canberra)

포로학대의 심각성을 확인한 호주정부는 모든 전쟁포로에게 <표 2>에 제시한 ‘FORM Q-전 전쟁포로에 의해 제출된 전쟁범죄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포로들로부터 제출받은 이 진술서를 토대로 전쟁범죄자를 조사했고, 혐의에 오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진을 보고 용의자를 확인하거나 찾는 과정에서 이른바 ‘구비지켄(首實驗, 일명 손가락재판)’이 일어났다. FORM Q를 기초로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용의자를 기소했으며, 이 자료는 군사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불확실한 기억에 근거한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변호인의 반론이 있었지만, 모두 증거물로 채택되는 효력을 갖고 있었다.

호주정부가 BC급 전범을 어떻게 다루었나는 재판 현황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표 3>은 호주 정부가 동아시아 각지에서 실시한 군사법정과 이 법정에서 다룬 전범재판의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호주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BC급 전범재판의 총건수는 296건,

<표 3> 호주 군사법정과 전범재판 현황²²

장소	재판 수	피고인 수	무죄	유죄	사형
싱가포르	23	62	11	51	18(교수형)
헤로타이 (할마헤라섬)	25	148	67	81	25(총살형)
라부안 (북보르네오)	16	145	17	128	2(교수형) 5(총살형)
웨악(뉴기니)	2	2	1	1	
라바울 (파푸아뉴기니)	188	390	124	266	87(교수형) 3(총살형)
다윈(호주)	3	22	12	10	1(총살형)
홍콩	13	42	4	38	5(교수형)
마누스 (파푸아뉴기니) ²³	26	113	4	69	5(교수형)
합계	296	924	280	644	148

924명이 기소되었으며, 280명이 무죄 석방되고 644명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644명 가운데 교수형 114명, 총살형 34명, 총 148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형집행되었다. 그리고 중신징역형 39명, 25년형 2명, 11~24년형 152명, 10년형 82명, 10년 이하형 221명, 총 49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선고를 받은 전범 중 23%가 사형당해 비교적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변호인들이 전범재판을 ‘보복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²⁴

호주정부는 일본의 전쟁범죄를 다루기 위해 육군사령부에 전쟁범죄행정실, 전쟁범죄기록소, 전쟁범죄조사과를 설치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제1 호주전쟁범죄

〈표 4〉 호주 군사법정 개최 장소와 일자²⁵

장소	일자
Wewak, New Guinea	1945년 11월 30일 ~ 1945년 12월 11일
Herotai, Halmahera	1945년 11월 29일 ~ 1946년 2월 28일
Labuan, North Borneo	1945년 12월 3일 ~ 1946년 1월 31일
Singapore	1946년 6월 26일 ~ 1947년 6월 11일
Dawin, Australia	1946년 3월 1일 ~ 1946년 4월 29일
Rabaul, New Britain	1945년 12월 12일 ~ 1947년 8월 6일
Hong Kong	1947년 11월 24일 ~ 1948년 11월 25일

22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2” pp. 426~427.

23 영국군 군사법정이지만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한 재판이다.

24 BC급 전쟁범죄 재판에 관한 재판국별 판결 전체 현황은 林博史, 2014, 앞의 책, 5쪽을 참조하길 바란다. 호주 재판과 관련해서는 통계 차이가 있다. 앞서 소개한 法務大臣官房司法法制調査部가 편찬한 『戰爭犯罪裁判概要史』에서는 총 294건, 949명, 사형 153명, 무기 38명, 유기 455명, 무죄 267명, 기타 36명이다. 조사기관과 시점마다 통계 차이가 있다.

25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2”, p. 413.

과(뒤에 홍콩으로 이전), 도쿄에 제2 호주전쟁범죄과와 호주 연락장교, 육군본부에 조사팀과 군사법정, 그리고 호주총사령관 예하부대에 조사관을 두었다.²⁶

1945년 11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다음 각지의 호주군사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

Ⅲ. 호주의 전범재판을 받은 조선인

호주군 관할하의 군사법정에서 형을 선고받은 조선인 군속 중 현재까지 확인된 명단은 <표 5>와 같다.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했다. 이름과 날짜, 심지어 인원수에서 차이가 있는데, 전후의 혼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²⁷

호주 군사법정에서 BC급 전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선인들의 재판기록 전체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공개된 재판 기록과 당사자 구술 등을 통해 당시의 재판 상황을 유추해보면, 조선인 BC급 전범재판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우선 피고인들은 대부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정 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는 못했다. 이는 재판에 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가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언어상의 장벽이 크게 작용했다. 김창식의 증언처럼 변호사는 물론 통역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자기 변론을 펼치기는 힘들었다.

26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2”, p. 421.

27 <표 5>는 일본 공문서의 공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가네타 도시마사(金田敏昌) 씨가 일본정부가 소장한 BC급 전범자료를 토대로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에서 호주 부분만 뽑아서 작성했다. 우쓰미 아이코의 연구와 강제동원위원회의 조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를 제공한 가네타 도시마사 씨에게 감사드린다.

〈표 5〉 호주군사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선인 군속

연번	이름	창씨명	출생 연도	본적	소속	직책	선고일	형량	최종
1	金容判	金山義雄			태국 제5분소	용인	1946. 11. 14.	10년	10년
2	金長錄	金子長錄				용인		교수	교수
3	金鐘淵	金宮鐘淵	1918	경기 개성	태국	용인	1948. 8. 9.	12년	
4	金昌植	金城昌雄	1916	충북 진천	태국 제2분소	용인	1947. 4. 2.	중신	중신
5	金澤振	武本幸治				용인		교수	교수
6	朴洵教	正木文雄	1915	전북 전주	태국	용인	1947. 1. 11.	15년	15년
7	朴貞根	新井英夫	1919	경북 영일	태국 제5분소	용인	1946. 9. 16.	20년	20년
8	朴鐘介	新井鐘介	1913	경남 의령	태국	용인	1946. 6. 7.	15년	15년
9	李鶴來	廣村鶴來	1927	전남 보성	태국	용인	1947. 3. 20.	사형	20년
10	林永俊	林永俊 ²⁸			태국 제5분소	용인	1946. 6. 25.	교수	교수
11	林榮組	新井廣榮				용인	1946. 9. 16.	교수	교수
12	趙文相	平原守矩			태국 제5분소	용인	1946. 9. 16.	교수	교수
13	崔成教	大山成教	1913	전남 나주	태국	용인	1946. 9. 26.	6년	6년
14	韓甲順 (允哲)	清原正重 ²⁹	1922	충북 충주	태국 제4분소	용인	1946. 7. 26.	15년	15년
15	千光麟	千葉光麟			태국 제10분소		1946. 7. 23.	교수	교수

28 이 정보는 강제동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가네다 도시마사 자료에는 태국 제2분소, 1947. 3. 12. 교수형 판결, 1947. 7. 18. 교수형 집행으로 나와 있다.

29 이 정보는 강제동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른 것이다. 가네다 도시마사 자료에는 清原正茂, 韓印哲, 태국 제3분소로 나와 있다.

구술자: 당시는 당시 드디어 일본에 저 뭐야, 뭐 대작(大作)이라는 것이, 일이 없
다고, 변호사 같은 거 해봤자 안 돼요. 응. 일이 없다고 돈 받고 일한다고
온 거고, 변호라는 건 전혀 안 돼.

면담자: 변론은?

구술자: 변론은 전혀. 말도 모르고. 영어 모르니까.

면담자: 영어를 모르면.

구술자: 통역, 해도 통역 같은 것 없어. 사실대로 말을 안 하겠지 하고.³⁰

사실 언어상의 장벽은 감시원과 포로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태
를 심각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기도 했다. 이른바 ‘쪼모사건’이 거기에 해당
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1943년 여름, 미얀마 80킬로수용소에 포로로 있던 미
육군 V. P. 쪼모(Zummo)가 조선인 포로감시원으로부터 미국산 모직양말과
설탕을 교환하는 문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언어상의 오해가 집단폭행
으로 발전했다. 쪼모는 조선인 포로감시원에게 호의적인 감정으로 “당신은 굉장
히 괜찮은 사람이며, 만약 내가 포로가 아니고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로웠다
면 당신이 내게 보여줬던 것을 내가 당신을 위해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이를 ‘내가 자유의 몸이 되면 당신은 포로가
될 것이고, 당신이 내게 해준 일을 내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식
으로 이해했다. 호의적인 말이 ‘당신이 포로가 되면’이라는 말로 해석되어 수
용소가 발각 뒤집어졌다. 쪼모는 곧 사무실로 불러갔고, 군조와 한 명의 장교,
여섯 명의 조선인 감시원들로부터 몽둥이와 총검으로 심하게 맞았다.³¹ 뒤에
다소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양금은 남아 훗날 전쟁포로들의 증언 때 불리하게

30 김창식 구술·김은식 면담, 2007. 8. 6.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31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6, 1046287, Canberra).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는 수용소에서 통역을 했으며, 포로학대로 미군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상의 차이, 특히 일본식 군사문화와 서구식 군사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도 상호 이해의 가능성을 매우 협소하게 만들어놓았다. 앞서 보았듯이 포로를 명예롭지 못한 존재로 보는 인식 자체가 달랐고, 이것은 일본군이 연합군 포로를 대하는 데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1945년 12월 4일 조문상이 태국 방콕교도소에서 미국 인도-미얀마 주둔군 본부 전쟁범죄분과의 심문을 받으면서 진술한 다음 내용은 이 점을 잘 보여준다.

부산에 있는 훈련소에 있던 교관 중 한 명은 우리들에게 포로들은 동물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들이 우리를 무시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잔인해졌으며, 그들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로들보다 우월하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력, 협박, 구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포로들을 때리고 잔인하게 다루어야 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잘못되었고, 우리에게 처벌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³²

일본의 군사문화는 포로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것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포로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용소 관리자에게 경례를 해야 했으며, 심지어 장군에게 밥을 나르도록 명령하여 모욕을 가했다. 그리고 포로들에게 벌칙을 가할 때도 서로 마주 보며 뺨을 때리게 해 수치심과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도 강요했다. 조문상의 말처럼 일본군은 포로를 동물과 같이 대우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포로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격조차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32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7, 1046288, Canberra).

이러한 문제 외에 포로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던 열악한 조건과 한계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에 구애치 않고 무조건 명령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 결정권자, 포로에게는 군림자이지만 일본군으로부터는 차별받는 조선인 군속의 이중적 지위 등을 재판자료는 잘 보여주고 있다. 주요 피고인들의 재판자료를 통해 각 재판의 특징과 연합군 포로학대의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자.

IV. 호주의 조선인 BC급 전범재판 사례

1. 김종연³³

김종연은 1918년 7월 2일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났다. 1942년 6월, 2년 기한으로 포로감시원이 되어, 2개월간 부산의 61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8월에 자바로 파견되었다. 1943년 1~11월까지 태국 포로수용소 캠프에 배속되었으며, 12월 중반부터 1945년 8월 체포되기까지 나콘파톤(Nakon Pathon)에 있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는 두 지역에서 일어난 포로학대로 기소되었다. 하나는 “194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얀마의 태국-미얀마철로 근처에서 호주군과 연합군의 전쟁포로들을 감시·감독하면서 전쟁범죄조약과 전쟁 관례를 위반하여, 수많은 전쟁포로를 구타하고 발로 차서 그로 인해 전쟁포로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킨 혐의였다. 다른 하나는 “1944년 10월 1일부터 1945년 4월 31일까지 기간에 나콘파톤에서 호주군과 연합군의 전쟁포로들을 감시·감독하면서 전쟁범죄조약과 전쟁 관례를 위반하여, 수많은 전쟁포

33 “War Crimes-Military Tribunal-KANEMIYA Shoen (Private): Unit-Imperial Japanese Army: Date and Place of Tribunal-Hong Kong, 4 to 9 August 1948”(A471, 81660, 727111, Canberra).

로를 구타하고 발로 차서 그로 인해 전쟁포로들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시킨” 혐의였다.

포로들 사이에서 ‘뱀눈(snake eyes)’으로 불린 김종연은 포로들에게 몇 차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은 인정하나 개머리판이나 몽둥이 같은 것으로 구타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전자는 청원이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났고, 후자는 무죄로 판결되어 1948년 8월 9일 12년형을 선고받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김종연의 진술에서 포로수용소의 명령체계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즉 “캠프 본소 지휘관 → 캠프 본소 지휘관 → 캠프 분견소 지휘관 → 정규 명단 안의 관리자 → 군속”의 순서로 명령이 하달되고 집행되었다. 캠프 본소와 분소의 지휘관은 물론 정규 명단 안의 관리자들은 대개 일본인으로 구성되었고, 최말단에 해당하는 군속은 조선인들이 맡고 있었다. 포로 감시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된 민족 차별 구조에 따라 조선인 군속들이 포로에 대해 갖는 권한(식량 배급, 노동 부과 등)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김종연은 피의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피의자들과는 달리 포로들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했다고 적극 자신을 변호하는 진술을 했다. 포로들을 위해 물건을 싸게 사주거나 환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원주민에게 얻은 음식은 포로들과 일본군 몰래 나눠먹었다고 한다. “만일 내가 어떤 식으로든 포로들을 돕는다는 것이 발각되었다면, 나는 내 상관에게 중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5분소 캠프의 지휘관인 미즈타니(Mizutani) 대위가 조선인들을 모아 놓고 “너희가 이런 식으로 포로들을 돕는다면 그건 일본군 규정 위반이다. 너희 조선인들은 군대에서 군인이 될 수 있을 만큼 교육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단지 노동자(Coolies)나 마찬가지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적극 변호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가 몸이 약해 포로들이 그를 모욕적인 태도로 대했고, 이것이 때때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변호했다. 특히 피고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행동도 둔하고 어눌해져 전쟁포로들에게서 경멸을 당했으며, 이 때문에 전쟁포로들을 학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했

다. 그러나 이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 이학래³⁴

이학래는 1947년 3월 18~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호주 군사법정에서 “피고인이 태국의 힌톡(Hintok)에서 1943년 3~8월까지 일본제국군에 복무하면서 전쟁포로의 감시와 관리를 관여했을 때 비인간적으로 포로를 대우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

공소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기간 동안 포로들은 지독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숙소와 편의시설은 전반적으로 불충분하고 심지어 원시적이기까지 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 의약품, 의복, 신발이나 양말 등을 제공받지 못한 채 힘든 육체노동을 강요받았고, 캠프의 간부와 감시원들에게 빈번히 얻어맞으며 학대받았다. 심지어 허약하고 병든 포로들을 작업반으로 내몰았다. 그 결과 포로들 사이에 허약과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고, 4월 말경에는 그 캠프 정원의 43.25%가 병원 신세를 졌다. 검찰 측은 캠프에 입소한 800여 명의 호주 포로 중에 100명이 그곳에서 죽었으며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수용소의 책임자인 이학래에게 있다고 단언했다. 이학래는 변호사에게 항변자료를 주었고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정했다. 특히 피고가 수용소의 책임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며, 이시이 대좌가 이를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학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 해 10월 24일 W. M. 앤더슨 법무총감(소장)이 사형을 20년 징역형으로 변경하고, 11월 7일 징역형을 확정했다. 사형에서 징역형으로 감형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학래의 변호사가 제출한 청원 중 아홉 번째 내용이 법무총감에게 받아들여졌

34 “War Crimes-Military Tribunal-HIROMURA Kakurai: Place and date of Tribunal-Singapore, 18 and 20 March 1947”(A471, 81640, 721743, Canberra).

기 때문이다. 법무총감의 청원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이학래가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OCI 호주법률분과에서 무죄석방한 사실³⁵이 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다른 사건에 비교해볼 때, 이 사건은 특별히 나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이학래가 단지 군속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수용소 캠프를 지휘·감독하고 있었다고 믿은 재판부의 판단이 뒤늦게나마 잘못되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학래의 재판기록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피고인이 한국인이므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변호사의 주장이다. 1947년 3월 18일 싱가포르 군사법정에 제출된 변론서에서 변호사는 “피고인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이 공소에 불복합니다. 변호인은 한국인은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용 범죄자 명부에 있는 대로 피고인은 일본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 법원에 다음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법원은 한국 국민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의 지위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 침략의 희생국이라면 전쟁범죄 법원에서 한국 국민을 재판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침략을 용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 특별한 침략의 용인은 결국 군법하에서 정당화”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치에 의해 침략당한 유럽 국가들에서 그랬듯이, 한국의 애국지사들은 주변의 연합국들, 특히 중국, 미국, 러시아 등지로 망명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 망명지에서 귀국하고 있습니다. ... 1910년 일본의 독단적인 한국 합병 이래 러시아와 만주에 걸쳐진 일본-한국 경선에서 (한국인에 의한) 유격전이 펼쳐져 그곳이 줄곧 안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한국 국민은 항상 연합국 편에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한국인이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들은 우리 다른 연합국들의 국민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의 국가 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일본제국군에 복

35 우쓰미 아이코, 2007, 앞의 책, 89~193쪽 참조.

무한 것과 그가 일본 천황에 충성을 바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재판관할권’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 재판에서 중요 쟁점 중의 하나가 이학래의 지위와 역할이었다. 검찰은 이학래가 작업의 세부항목을 책임지는 행정관리로서 캠프 지휘관의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공식적으로 캠프 지휘관의 자리에 있었는지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그의 강한 개성 탓에 그가 그 지위를 강탈하고 실제로 캠프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그는 단지 군속일 뿐 캠프를 지휘할 권한이 없었으며, “약품 공급, 식량 배급, 포로의 숙영 및 포로의 복지와 직접 관련된 다른 직무들은 본질적으로 그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변호사는 이학래가 ‘희생양’이라 생각하며 “캠프의 다른 멤버들을 체포할 수 없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주장까지 했다.

태면철도에 관한 재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리한 조건 속에서도 철도 건설 강행을 명령하여 포로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최고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전혀 없었고, 현장에만 그 책임이 고스란히 전가되었다는 점이다. 가장 오지에서 건설을 맡은 F 코스는 약 7,000명 포로 가운데 3,000명 정도가 죽은 곳이다. 이와 관련해서 포로수용소와 철도대에서 7명이 기소되어 4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검토한 데이비드는 기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사형판결이 나온 4명에 대해 그들이 “실제로 포로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도, 사형에 상당하는 잔학행위에 가담했다는 것도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F 코스의 높은 사망률을 초래한 주요 요인은 이들 피고들의 권한 밖의 요인에 있다는 많은 증거가-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조차-나타나고 있다”고 하여 2명에게만 종신형과 15년형으로 감형하는 조언을 했다. 동시에 “검찰은 정의가 요구하는 엄격하고 공평한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4명도 사형에서 종신형 또는 15년으로 감형되었다. 다만 영국군에게 재판받은 조선인 군속의 경우 총 49명 중 사형 판결 11명(태면철도 7명), 10년 이상 형이 31명으

로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호주군에 비해 그나마 포로감시원의 낮은 지위가 고려되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³⁶

3. 김창식³⁷

1916년 8월 8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신청리에서 태어난 김창식은 포로감시원 모집 시험에 합격하여, 1942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부산에서 2개월간 군사훈련을 받았다. 군사훈련을 마친 뒤 양곤(Yangon)을 거쳐 태국으로 가는 도중 땡기열로 한 달간 입원하고, 11월 말경에 포로수용소의 본부가 있는 탄자비아에 도착하여 포로감시 근무를 했다.

일본이 패망한 후 김창식은 1945년 9월경 ‘목실함’으로 태국 방콕교도소에 투옥되었다가, 1946년 4월 30일 싱가포르 창기교도소로 이송되어 1947년 3월 31과 4월 2일 싱가포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43년 3월부터 1944년 1월 사이에 미얀마 옹가누앙에 있는 105킬로미터 수용소에서 전쟁법과 관례를 위반하여 전쟁포로 감독과 관리에 관여했을 때 전쟁포로를 비인도적으로 대우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인 학대 증거로 일본군이 태면철도를 건설하며 세운 105킬로미터 수용소의 취사장에서 김창식이 일하는 동안, 호주인 전쟁포로 아이즐를 기둥에 묶고 3일 동안 음식과 마실 물을 주지 않고 여러 번 잔인하게 구타해, 당시 이질로 고통받고 있던 그를 며칠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였다. 이 밖에 쿡 상등병에 대한 공격과 보우 상등병에 대한 구타와 발차기 등의 학대도 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김창식의 경우 법정 공방의 핵심은 피해자들이 말한 인물, 즉 ‘황소(The

36 林博史, 2014, 앞의 책, 6~8쪽.

37 “War Crimes-Military Tribunal-KANESHIRO Masao: Place and date of Tribunal-Singapore, 31 March and 2 April 1947”(A471, 81641, 727010, Canberra).

Bull'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김창식과 같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다. 변호인은 “증거는 모두 문서이고, 따라서 증인의 반대신문을 할 수 없고, 사진에 의한 신원확인도 항소라는 별명으로 피고인을 언급한 것이 불충분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사법 매뉴얼 5장 67절에 따라 “피고인의 죄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확립되지 않는 한, 검찰이 그의 죄를 증명할 부담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증인들의 진술서에서 피고에 대한 묘사가 다르고, 피고인과 유사한 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공방에서 알 수 있듯이 증인의 진술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진술서에만 의존한 재판이 진행되어, 정작 당사자에 대한 기억의 착오를 입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김창식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BC급 전범재판에서 확인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1947년 5월 16일 최종 형을 확정했다. 1951년 일본의 스가모교도소로 이송하여 1957년 4월에 석방될 때까지 12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다.³⁸

4. 박종개³⁹

박종개는 1946년 6월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호주 군사법정에서 “삼(태국) 나콘파톤에서 1943년 1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일본 제국군에 복무 중 전쟁 포로를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전쟁법과 관례를 위반하여 호주인, 미국인, 영국인과 네덜란드인 전쟁 포로를 육체적으로 고문하고, 구타함으로써 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콘파톤수용소

38 김창식 구술·김은식 면담, 2007. 8. 6.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39 “War Crimes-Military Tribunal-ARAI Shokai (Guard): Unit-Korean Guard, Imperial Japanese Army: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26 and 27 June 1946”(A471, 81250, 739042, Canberra).

에서는 정글의 나무를 베고, 땅을 다진 뒤 야전병원을 만드는 일에 포로들을 동원했다. 박종개는 포로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그는 2미터 길이의 대나무로 된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녔으며, 포로들은 그를 “정글 집”이라고 불렀다. 포로들이 “정글, 정글, 좋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말했듯이 정글은 포로들에게는 강제노동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박종개는 다수의 전쟁포로가 그를 전범으로 지목하여 기소된 것이다. 그는 포로들을 구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머리판이나 막대기, 돌로 때린 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많은 전쟁포로가 자신들을 학대한 사람으로 그를 지목한 이유를 묻자, 그는 “내가 건강한 몸과 매우 부지런한 근무태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감시원이 건장한 데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감시와 구속을 받는 포로들에게는 결코 우호적일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는 적을 때는 85명, 많을 때는 250명의 포로를 감시하며 병원을 세우는 일을 했다.

노동을 하러 나갈 인원이 부족하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손찌검이나 구타가 있었다. 그러나 박종개는 결코 포로들이 주장하듯이 돌이나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린 일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의 증인으로 나온 히라노 요히시사라는 일본인 군속은 박종개가 근무하는 중대의 노동국 서기 보조로 일했다. 그는 박종개가 매우 순종적이며 평화로운 사람으로 포로를 때린 일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통역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재판관에게 “통역의 빈약함을 감안할 때 서류가 번역되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1946년 6월 19일 재판관은 “변호인이 제시한 청원을 법정이 충분하게 고려했습니다. 최소한 18개월 동안 당신의 감독 아래 있는 전쟁포로에 대해 당신은 반복적인 공격으로 팔 골절 또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만든 부상 또는 영구적인 장애나 다소 덜한 신체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당신이 이야기한 부상으로 피해자들 중 누구도 죽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는 다행입니다. 피해자들은 병원 환자들이거나 요양 중입니다”라고 설명하고 박종개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박종개는 다시 감형 청원을 하지 않아 15년형이 확정되었다.

5. 천광린과 한갑순⁴⁰

천광린은 1943년 6월 톤찬(Tonchan)수용소에서 비인도적으로 포로를 대우한 결과 한 명을 죽게 만든 혐의와 1945년 4~7월 사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리엔 칸(Lieng Khan) 포로수용소에서 포로학대와 배급품 도난사건 때 물고문에 가담한 혐의로 동료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1943년 6월 천광린은 미얀마의 샴 톤찬 부근에 철로를 놓기 위한 다리 건설을 맡은 작은 수용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작업장에 가지 못한 아픈 포로들을 ‘진료소집’해 PT 훈련을 시켰고 차렷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게 하거나 달리도록 강요했다. 쉬기 위해 작업장에서 일찍 돌아온 포로를 때리고, 이를 항의한 장교에게도 욕과 구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소집’에 가지 못할 정도로 아픈 리도크 이등병을 강제로 일하게 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죽었다. 천광린의 학대로 리도크가 죽었다는 것이 기소의 주요 내용이었다.

또한 천광린은 리엔 칸 포로수용소에서 보급품 도난사건에 연루된 전쟁포로를 집단 폭행하고 물고문한 일에 가담했으며, 이를 계기로 잡역에 동원된 전쟁포로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6명이나 죽은 일에 책임을 지고 수용소 소장을 비롯하여 다른 혐의자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적십자사가 제공한 보급품이 없어진 데서 시작되었다. 적십자사가 공급한 식량과 의류, 의약품이 제대로 자신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은 4명의 호주 병사가 저장고에 침입해서 보급품의 일부를 훔친 것이다. 보급품이 없어진 것을 안 포로수용소장 스키 대위가 포로들에게 자수하지 않으면 집단처벌하겠다고 협박하자, 4명이 결국 고백했다. 스키 대위는 칼로 그들의 얼굴과 몸을 때렸고, 밤새 나무에 묶어두었다. 다음 날 보급품의 행방을 물으면서 폭행은 계속되었다. 포로 중 특

40 “War Crimes-Military Tribunal - SUZUKI Sohei (Captain)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16, 17, 18, 19, 20 and 23 July 1946”(A471, 81242, 739438, Canberra).

히 D. M. 킹(King) 포병을 심하게 구타한 뒤 손과 발을 묶고 물고문을 했다. 천광린이 이 물고문에 가담한 것이다. 그는 킹의 가슴에 앉아 깔때기로 뜨거운 물을 그의 입에 부었고, 킹의 배 위에서 뛰어 킹의 목에서 피와 물을 토하게 했다. 이 고문은 킹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를 동안 이어졌다. 다른 포로들도 고문을 당했다. 고문 끝에 보급품이 있는 곳은 밝혀졌으나, 킹이 도망함으로써 전체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는 계속되었다. 스키 대위는 킹이 잡힐 때까지 전쟁포로 환자들이 행군과 잡역을 하도록 강요했고, 약품과 의료 공급량을 줄였다. 그리고 야마모토 의무 병장이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거절하여 결국 6명이 죽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는 수용소 관계자 전원-스키 소헤이 대위, 야마모토 데쓰오 의무병장, 이치가와 고이치 준위, 조선인 포로감시원 천광린과 한갑순(한운철, 기요하라 마사게), 하야시가와 류소쿠, 나가야마 다쿠로-을 기소했다. 그리고 천광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별도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이들 중 하야시가와 류소쿠와 나가야마 다쿠로(둘 다 본명 불명)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천광린은 물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트럭 운전수였고, 야채를 얻기 위해 나갔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포로들을 구타한 사실도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래 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했다. 래 대위가 수용소 밖으로 나갈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일이 문제가 되어 수용소의 히라마쓰 대위로부터 “너는 개보다 더 못하다. 경찰견은 인간을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세 명은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이 사람을 혼자 가게 했다. 너희들은 경찰견보다 못하다”는 말과 함께 뺨을 맞아 화가 나 그를 때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리도크 이등병 건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사들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6년 7월 23일, 재판부는 스키와 야마모토, 그리고 천광린에게 교수형을 선고했으며, 이치가와에게 12년형, 한갑순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청원은 모두 기각되었고, 1947년 1월 21일 세 사람은 모두 창기교도소에서 처형되었다.

V. 법률상의 쟁점—상관의 명령과 복종범죄

일본 보수주의자들은 연합군에 의한 일본군 BC급 전범재판을 ‘승자의 정의’ ‘보복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 외에도 BC급 전범재판을 “사람을 착각해서 유죄가 된 사례가 있는 점, 통역의 부적절함, 검찰 측의 증인이 일방적으로 채택되어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가 된 점, 충분한 변호가 주어지지 않은 점,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 사람이 재판받은 점, 말단의 실행자가 엄하게 재판받은 것에 비해 상층부가 면죄되었다는 점 등”⁴¹의 일반적인 비판도 있었으며, 이는 앞에서 본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쟁점들이다.

에미 오카다는 호주재판을 ‘절차상의 쟁점’과 좀 더 본질적인 쟁점이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쟁점’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바 있다. 절차상의 쟁점으로는 언어 장벽과 일본인들의 익숙하지 못한 호주 재판절차, 법정 중립성, 증거의 용인과 사용, 공동행동과 집단재판, 선고의 쟁점, 이중 유죄 등을 들었다. 법률상의 쟁점으로는 지위와 관할권 문제, 재판의 본질적인 요소들, 군사적인 필요성, 상관의 명령, 지휘 책임 등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 전범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고 또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것은 ‘상관의 명령’이었다. 상관의 명령이라는 변론은 호주 재판에서도 변호인들도 가장 심하게 다툰 쟁점이었다. 이 논쟁의 특징은 전쟁범죄의 변호로서 ‘상관의 명령’이라는 면책 사유가 1944년 영국과 호주, 미국에서는 군사 규범의 수정을 통해 거부되었고, 1945년 유엔전쟁범죄위원회에서도 거부된 반면, 일본군법은 이런 변호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으며 불복종은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있다.⁴²

사실 이 주제는 매우 논쟁적인 것으로 국제법 학자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한 규범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상관의 명령이 변호를 구성하지 못한다는 규칙이 소

41 林博史, 2014, 앞의 책, 6~8쪽.

42 Emmi Okada, 2009, 앞의 글, p. 72.

급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1944년 영국의 권위 있는 국제법 학자 베리데일 케이스(A. Berriedale Keith)는 정부의 명령으로 범한 전쟁범죄에 대해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전쟁포로를 보호하는 1929년의 제네바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또한 호주 군법(Manual of Military Law) 제443항도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 군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군대 구성원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합군전쟁범죄위원회(UNWCC)는 일본과 독일의 병사들을 기소하기 위해 두 가지 도약을 시도해야 했다. 하나는 소급해서 죄를 추궁할 수 있도록 정의에 기초한 자연법 사상을 도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과 독일군의 비정상적인 잔학성을 강조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었다.⁴³ 그 결과, 연합군전쟁범죄위원회는 전범재판에 하나의 새롭고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냈다. 군에서의 지위나 정부와 상관의 명령에 따라 실행했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저야 할 범죄로부터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없으며, 단지 그런 환경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감면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운 것이다.⁴⁴ 이 기준을 조문화한 것이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정헌장(1945. 8. 8.) 제8조이며, “피고인이 자기 정부의 지시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사실은 책임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장 직권에 의한 법정의 결정으로 형을 감할 수 있다”⁴⁵는 내용이다. 이로써 상관의 명령에 따라 죄를 지은 부하들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떤 논리로 대응했을까. 1934년 12월 1일

43 Sandra Wilson, Robert Cribb, Beatrice Trefalt, and Dean Aszkielowicz, 2017, *Japanese War Criminals*, Columbia University Press, pp.25~26.

44 Sandra Wilson, Robert Cribb, Beatrice Trefalt, and Dean Aszkielowicz, 2017, 위의 책, pp. 29~30.

45 이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상의 논쟁은 크게 상관 책임론, 절대적 책임론, 절충론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이진국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2013년 한·터키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를 참조하기 바란다. 상관의 명령과 관련한 글로는 최관호, 2017,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도 있다.

부터 적용된 ‘군속독법(軍屬讀法)’에 따르면 육군 군속된 자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상관의 명령은 그 일의 여하를 불문하고 곧바로 복종할 것”을 선서하고 실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⁴⁶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1945년 9월 17일 육군대장 시모무라는 동남아시아 각 포로수용소장에게 보낸 ‘포로취급 연합군 측 심문에 관한 응답요령 등에 관한 건’에서 심문받을 때 마음 자세와 모범해답을 지시했다. 통달(通達)은 책임 소재에 대해 “명령복종에 따라 일체의 행동을 규율로 하는 국군의 절대성과 이에 따른 군의 형법 징벌 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임무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부하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일체가 그 지휘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단 지휘관이 이미 처벌된 부하의 범 죄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고 하여 지휘관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포로수용소의 편제 소질(특히 대만인과 조선인), 교육 등의 실체를 일반부대 등과 관련 비교해서 거기에 원인이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⁴⁷ 상부의 정당한 포로관리 정책이 ‘편제 소질’이 떨어진 대만인과 조선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함에 따라 포로학대의 책임을 포로감시원인 말단에게 전가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즉 이것은 포로학대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는 명령이었다.

태면철도의 경우 대규모의 죽음과 고통을 초래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해 두 가지 정반대의 해석이 있다. 하나는 희생은 작의적이며 포로와 아시아인 노동자를 고의로 굶게 하고 죽도록 일하게 한 방침이라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일본인의 융통성 부족, 태만, 무능, 게다가 날씨와 예측할 수 없었던 요소가 겹친 결과라는 해석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자보다는 후자 쪽의 해석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⁴⁸ 그러나 전자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상관이 아

46 『陸軍成規類聚』, 軍屬讀法(1934, 9. 28, 陸普5785), 同進會 資料, 『日本の植民地支配下での戰時動員-俘虜收容所と軍屬-』에 수록

47 厚生省 引揚援護局 法務調査室 編, 1954, 『戰爭裁判と諸對策並びに海外における戰犯受刑者の引揚』(BC級戰犯關係資料集 제1권, 祿蔭書房 復刻板, 2011), 14쪽; 茶園義男 編, 1983, 『BC級戰犯關係資料集成』 제6권, 不二出版, 214쪽.

48 内海愛子, G·マコーマツク, H·ネルソン 編著, 1994, 『泰緬鐵道と日本の戰爭

니라 말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포로학대로 인해 최고 지휘관이 책임을 진 경우는 홍사의 정도일 것이다. 포로들을 학대로 몰아가도록 강요한 도쿄의 전쟁 책임자들과 현지 수용소의 상관들은 그에 합당한 죄를 추궁받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특히 포로학대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주거나 교육하지 않은 상태, 즉 무지 상황에서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책임은 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든 지휘관들과 일본정부에게도 물어야만 할 것이다. 일본 군사주의의 도덕적 소용돌이가 하급군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모두 흡수하여 상층부로 집중시키게 했으며, 이런 지휘체계의 특징 때문에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이 상관에게 더 부과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고스란히 말단의 포로감시원들에게만 집중되었다. 전후 국제법에서 개인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하급 군인들에게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전개되면서 그 피해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조선인 BC급 전범의 경우 자립한 개인의 도덕윤리와 책임감이라는 서양의 개념을 절대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일본의 군대조직 최하급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번 맥코맥의 해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⁴⁹

VI. 맺음말

호주군사법정에서 BC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기소 내용이 담긴 재판자료는 역사의 진실을 어디까지 말해주고 있는가. 굶주림과 질병, 살인적인 노동과 폭력의 일상화 외에 언어장벽으로 인한 오해, 군사문화의 차이 등이 조선인 포로감시원을 전범으로 만든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재판자료는 여전히 실체의 한 부분만 확인해주고 있다. 가해의 실

責任』, 明石書店, 99~100쪽.

49 内海愛子, G·マコーマツク, H·ネルソン 編著, 1994, 위의 책, 103쪽.

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엇갈리는 기억들이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많은 경우 피고의 변호를 증명해줄 만큼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피해 사실은 분명한데, 가해의 실태가 애매한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는 그것에 책임을 져야 했고, 일차적 당사자는 바로 포로감시원들이었다. 재판자료는 피해와 가해의 실태를 밝히는 데 단서만 제공하고 있을 뿐, 사건을 재구성해 진실을 확인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우쓰미 아이코는 조선인 BC급 전범을 다루면서 “한국정부의 피해자 인정 결정이 전쟁 재판의 핵심부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다. 전쟁 재판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 단죄된 조선인 군속이 일제의 피해자라면, 고발한 포로들 역시 일본군에게 학대를 받은 피해자다. 포로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취급을 받았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 일했던 포로 출신자들은 일본군의 포로정책을 현장에 담당했던 일본인 장병이나 조선인 감시원에게 지금도 여전히 증오를 품고 있다. … 한국의 유족회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단죄된 전쟁범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⁵⁰라고 말하고 있다. BC급 전범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판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였던 한을 풀 수 있는 중요한 계기는 만들어졌다. 그러나 피해자로 판정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을까. 사안의 본질까지 접근하지 않은 채 현상의 일부만 가지고 쉽게 가해자가 되었다면,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 또한 너무 쉽게 되었다. 수십 년간에 걸쳐 부정되고 잊혀졌던 삶이 단지 ‘강제동원피해자’라는 증명서 한 장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리고 그 사태에 대해 누가 어떤 책임을, 얼마만큼 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말하지 않고서 가해와 피해의 판정만으로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교훈 또한 얻지 못할 것이다.

가해와 피해의 책임을 따질 때 우리는 그 중층성을 고민해야 한다. 1942년 7월 7일과 8일 도쿄에서 포로정보국과 포로관리부 대표자들이 회의를 열어 전

50 우쓰미 아이코, 2007, 앞의 책, 328~329쪽.

쟁포로가 도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토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에무라 중장은 포로가 도망 중일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다시 체포된 경우 군사재판 여부를 떠나 총살하라고 지시했다.⁵¹ 가이쿄쿠 데이모토(본명 불명)라는 조선인 포로감시원은 노역을 나간 전쟁포로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는 우에무라 중장이 정한 수용소 규칙과 수용소 현장의 일본군 장교의 명령에 따라 작업장에서 도망가는 호준군 상등병 R. J. 오도넬(O'donnell)을 사살했다.⁵² 이 때문에 그는 전범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다.

가이쿄쿠 데이모토가 지은 죄가 과연 사형판결을 받을 만한 것이었는가. 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우리는 구조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관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모든 포로감시원이 BC급 전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듯이, 모든 문제를 구조의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 반대로 모든 책임을 죄를 저지른 포로감시원들에게만 돌려서도 안 된다. 재판자료는 사태의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실마리이자 책임의 소재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서들이다. 이 글은 연합군 포로학대의 진실과 그에 따른 책임이라는 미로의 입구에 이제 막 다가선 것이다.

51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5, 1046286, Canberra).

52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6, 1046287, Canberra).

참고문헌

자료

김창식 구술·김은식 면담, 2007. 8. 6.(민족문제연구소 소장)

茶園義男 編, 1983, 『BC級戰犯關係資料集成』 第6券, 不二出版.

厚生省 引揚援護局 法務調査室 編, 1954, 『戦争裁判と諸対策並びに海外における
戦犯受刑者の引揚』.

“History: Report on the Directorate of Prisoners of War and Internees at Army Headquarters, Melbourne, 1939~1951: Volume1 and Volume2”(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Series A7711).

“War Crimes-Military Tribunal-ARAI Shokai (Guard): Unit-Korean Guard, Imperial Japanese Army: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26 and 27 June 1946”(A471, 81250, 739042, Canberra).

“War Crimes-Military Tribunal-HIROMURA Kakurai: Place and date of Tribunal-Singapore, 18 and 20 March 1947”(A471, 81640, 721743, Canberra)

“War Crimes-Military Tribunal-KANESHIRO Masao: Place and date of Tribunal-Singapore, 31 March and 2 April 1947”(A471, 81641, 727010, Canberra).

“War Crimes-Military Tribunal-NAGATOMO Yoshitada (Lieutenant Colonel)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8 August-16 September 1946”(A471, 81655 PART4~7, 1046285~1046288, Canberra).

“War Crimes-Military Tribunal-KANEMIYA Shoen (Private): Unit-Imperial Japanese Army: Date and Place of Tribunal-Hong Kong, 4 to 9 August 1948”(A471, 81660, 727111, Canberra).

“War Crimes-Military Tribunal-SUZUKI Sohei (Captain) … Date and Place of Tribunal-Singapore, 16, 17, 18, 19, 20 and 23 July 1946”(A471, 81242,

739438, Canberra).

단행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0, 『조선인 BC급 전범에 대한 진상조사』.

문창재, 2005, 『나는 전범이 아니다』, 일진사.

우쓰미 아이코 지음, 이호경 옮김, 2007, 『조선인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 동아시아.

이학래 지음, 김종익 옮김, 2017, 『전범이 된 조선청년』, 민족문제연구소.

内海愛子, 2005, 『日本軍の捕虜政策』, 青木書店.

内海愛子, G·マコマツク, H·ネルソン 編著, 1994, 『泰緬鐵道と日本の戦争責任』, 明石書店.

半藤一利·秦郁彦·保阪正康·井上亮, 2010, 『“BC級裁判”を読む』, 日本經濟新聞出版社.

林博史, 2014, 『裁かれた戦争犯罪-イギリスの対日戦犯裁判』, 岩波書店.

林博士, 2010, 『戦犯裁判の研究』, 勉誠出版.

Wilson Sandra, Cribb Robert, Trefalt Beatrice, and Aszkielowicz Dean, 2017, *Japanese War Criminals*, Columbia University Press.

논문

강제원·이회정, 2017, 「호주 카우라 일본군(日軍)포로 대탈출사건 한국인 전몰자 추모 사업 실태조사와 시사점」, 『디아스포라연구』 11(1),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

구누기 에나(功刀惠那), 2017, 「일본의 한국인 BC급 전범관련 자료 현황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철, 2016, 「호주군에 수용된 조선인 전쟁포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9호.

김용희, 2007, 「BC급 전범재판과 조선인」, 『법학연구』 27.

유하영, 2019, 「전후 극동지역에서 전시범죄의 처벌」, 『인도법논총』 39,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이진국, 201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2013년 한·터키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채영국, 2004, 「해방 후 BC급 전범이 된 한국인 포로감시원」, 『한국근현대사연구』 제 29집.

최관호, 2017,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内海愛子, 1982, 「大東亞共榮圈と朝鮮人軍人・軍屬」, 『三千里』 31, 三千里社.

Okada, Emmi, 2009, “The Australian Trials of Class B and C Japanese War Crime Suspects, 1945-51” *Australia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6.

호주군의 재판자료로 본 조선인 BC급 전범

김민철

조선인 BC급 전범문제에 대한 연구는 잊혀진 역사를 복원한다는 의미 외에도 일본의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 상관의 명령과 복종범죄 등 역사와 법, 윤리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호주군의 BC급 전범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었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호주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은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기록을 통해 연합군 포로학대의 실체와 원인을 해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해 호주정부는 다른 연합군보다 강경한 처벌정책을 취했다. 연합군은 전범재판을 준비하면서 ‘상관의 명령에 따른 면책사유’를 정의에 기초한 자연법 도입과 일본군의 비정상적인 잔학성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했다.

재판 기록과 증언 등은 조선인 BC급 전범재판이 피고의 착각으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었거나 범죄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언어상의 장벽으로 변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군사문화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포로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열악한 조건과 한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이 지휘관보다도 현장의 말단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조

선인 BC급 전범재판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주제어: 조선인 BC급 전범, 전쟁범죄, 복종범죄, 상관의 명령, 전쟁포로, 전범재판, 강제동원

ABSTRACT

Korean BC-class War Criminals Viewed from the Court Data of the Australian Army

Kim Minchul

While analyzing how the Australian military recognized and dealt with the issue of BC-class war criminals, the research aims to explain the true nature and cause of the Allied POW abuse through the records of Korean guards tried in the Australian Military Court and to clear up the issues raised during the trial. For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taken a tougher punishment policy than other allied forces. In preparing for the war crimes trial, the Allies resolved the “reasons for immunity under orders from superiors” by introducing justice-based natural laws and emphasizing the abnormal brutality of the Japanese military.

According to trial records and testimonies, the Korean BC-class war crimes trial ha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illusion of unspecified defendants, insufficient evidence, insufficient defense due to language barriers, and a lack of understanding of differences in military culture.

In addition, the Korean BC-war crimes trial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oor conditions and limitations that led to the death of many prisoners was lower than that of the commander.

Keywords: Korean BC-class war criminals, war crimes, obedience crimes, orders from superiors, prisoners of war, war crimes trials, compulsory mobilization

6·25전쟁 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재검토

박종상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 I. 머리말
- II. 장사상륙작전의 전개 및 철수과정
- III. 장사상륙작전의 전개 및 철수과정에 대한 재검토
- IV. 장사상륙작전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
- V. 맺음말



I. 머리말

장사상륙작전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에 동해안의 경북 영덕 일대에서 실시된 상륙작전이다. 서해안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고 있던 때에 동해안의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의 작은 어촌마을인 ‘장사동(長沙洞)’¹에서는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에 의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 서해안에서의 상륙작전과 달리 동해안에서의 상륙작전은 기상불량으로 인해 상륙작전 초기부터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또한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이어진 북한군의 사격으로 인해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여 상륙한 이후 1주일도 되지 않아 해상으로 철수한 상륙작전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장사상륙작전이 일반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을 무렵인 1980년 7월 14일에 장사상륙작전 참전자들에 의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1997년 3월 6일에 장사리 앞 해안을 수색하던 해병대 제1사단 해병대원이 바닷속에 묻혀 있는 LST 667 문산호를 발견하면서 장사상륙작전은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장사상륙작전을 역사적 기록으로 재조명하기 위하여 서울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사상륙작전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2014년에는 경북 영덕의 장사동에 전승기념공원이 준공되었다.

그동안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연구는 국방부와 육군에서 학도병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연구되었으며,² ‘상륙작전’이라는 명칭상의 특성 때문에 해군에서

* 투고: 2020년 6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25일

1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는 1988년 5월 1일에 군조례 제972호에 의해 장사동(洞)에서 장사리(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홈페이지(<http://www.yd.go.kr/?p=2660>, 검색일: 2020. 3. 7.). 하지만 이 글에서는 6·25전쟁 당시의 지명인 ‘장사동’으로 기술하였다.

도 일부 연구되었다.³ 이들 연구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발간물에 일부 내용이 인용되었으며,⁴ 일반 연구자들도 이러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⁵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당시 부대장이었던 이명흠⁶을 비롯한 참전자들의 증언자료나 회고록⁷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1차 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시의 정황을 구체화하는 데 일부 도움이

- 2 이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조성훈,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육군본부, 1994,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육군본부; 육군본부, 1994, 『한국전쟁과 유격전』, 육군본부 등이 있다.
- 3 이와 관련해서는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54, 『대한민국 해군사-작전편』 제1집, 해군본부;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공저, 2012,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국방부에서 발간한 공간사에도 해군 작전에 기술되어 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전쟁사』 제3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6·25전쟁사』 제3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등 참조.
- 4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상북도 영덕군, 2002, 『영덕군지』, 영덕군청; 영덕문화원, 2007, 『남정면지』, 영덕문화원; 경상북도 영덕군, 2011, 『장사상륙작전백서』, 영덕군 등이 있다.
- 5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최용삼, 2010, 「장사상륙작전의 재고찰-전략 및 전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3사교 논문집』 제71집, 육군 3사관학교; 양영조, 2011, 「6·25전쟁 초기 장사상륙작전의 전개과정과 성격」, 『군사』 제7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배종호, 2013, 「장사상륙작전과 학도의용군의 역사적 의미 분석」, 공주대학교 안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 6 이명흠은 1958년 7월 18일에 육군본부 보도실 군검필(軍檢畢)된 장사상륙작전 회고록인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를 이종훈(李宗勳)이라는 개명된 이름으로 작성하였으나, 그의 「자력기록표」에는 1958년 10월 25일 예편될 때까지 이명흠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의 본문에서는 이명흠으로 기술하되, 각주의 회고록 작성자는 이종훈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 7 회고록이나 증언록은 이종훈, 1958,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중앙일보사 편, 1983, 『민족의 증언 2』, 중앙일보사; 최재명, 1993, 『버림받은 충혼』, 사회단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 최재명, 1995, 『모래톱에 묻힌 충혼』, 사회단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 최재명, 2001, 『영령들을 위한 20년 외길인생』, 사회단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 윤경호, 2008, 『16세 소년의 절규』, 만인사 등이 있다.

되기도 하지만 객관성은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연구자들의 군사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은 장사상륙작전의 기본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공간사와 기존의 연구물들을 검토하여 장사상륙작전의 준비과정과 전개 및 철수과정에 대해 정리하고, 그동안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장사상륙작전과 관련된 기록문서와 이미 국내에 소개된 국외자료 중 장사상륙작전을 언급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연구의 전개를 위해 이 글에서는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상륙작전 실시과정에서 상륙작전의 준비과정, 전개과정, 그리고 철수과정에 대해 정리한 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소개된 사항을 비롯하여, 상륙작전 종료 이후 상륙작전의 성패 여부와 인천상륙작전과의 연관성 및 그동안 장사상륙작전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온 군사용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이다.

II. 장사상륙작전의 전개 및 철수과정

1. 상륙작전을 위한 준비과정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6일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군대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의용군으로 모집하거나 유격대원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무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경험이 있는 유격대원들을 북한군의 후방에 침투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이전에 인천이나 대구 북방에 상륙작전이 필요하며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싸울 의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육군본부는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후퇴하는 국군 병력을 정비 및 재편하고 유격대를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육본

직할 유격대와 육본 독립 유격대가 편성되었다. 육본 직할 유격대로는 육본 작전국에서 추진하였던 유격사령부, 을지병단, 제9172부대가 있었으며, 육본 정보국에서 추진하였던 결사유격대가 있었다. 육본 독립 유격대로는 정훈감실의 협조로 조직된 학도병들 중에 일부를 북한군 후방에 침투시킬 목적으로 편성한 독립 제1유격대대와 독립 제2유격대대가 있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공세에 밀려 대구·부산지구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유격대를 편성하여 북한군 후방으로 침투시켜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1950년 8월 초순 육본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은 작전계장 방원철 소령에게 예비 병력으로 유격대를 편성하라고 지시하였다.⁸

국군은 제1군단이 수도사단과 제3사단으로 낙동강 남안의 상아동-구수동-진보-영덕을 연하는 주저항선의 편성을 계획하였지만 철수작전 실패로 낙동강 남안의 방어선 대신 도로가 남북으로 양호하게 이어진 안동-의성 축선과 전략적 요충지인 포항 방어에 주안점을 두었다.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부산교두보를 돌파하기 위하여 포항 북방인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의 장사동 지역에 상륙작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사동(長沙洞)은 경상북도 영덕군 남부에 위치한 남정면의 좁은 해안에 위치한 작은 어촌으로, 북한군의 8월 대공세로 국군 제3사단이 해상철수를 단행하였던 포항시 송라면 독석리 해안과 인접한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포항에서 북쪽으로 약 26km, 영덕에서는 남쪽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서쪽은 태백산맥의 여맥에 해당하여 바데산(646m), 내연산(630m), 동대산(791m) 등이 솟아 있고, 동쪽으로는 갈수록 점차 완경사면을 이루어 해안 주변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200m 정도의 작은 야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장사상륙작전을 위해 미 제8군은 예하에 새로이 조직된 미 제8213유격중대(Ranger Company)에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부대는 경상남

8 이종훈, 1958,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243~244쪽.

도 기장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미 제8군은 국군 제3사단에 장사 상륙작전의 임무를 부여하려고 하였으나 제3사단도 상륙작전 부대를 편성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밀양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던 독립 제1유격대대가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부대로 선정되었다.⁹ 육군본부는 독립 제1유격대대에 동해안의 장사동 해안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북한군 제2군단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국군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전명령(육본 작명 제174호, 1950. 9. 10. 16:00)을 하달하였다. 즉,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가 국군 제3사단이 포함 남쪽에서 공격할 때 북한군 제5사단의 후방지역을 교란시키기 위한 임무¹⁰를 부여받은 것이다.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독립 제1유격대대에게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동대산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작전에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2일에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은 독립 제1유격대대장인 이명흡 대위에게 작전의 취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하였다. 그리고 출전준비를 위하여 대원들에게 1인당 3일분의 피복과 식량, 그리고 토치카 파괴용 폭약 및 각종 탄약을 대원들에게 분배하였다.¹¹

9월 13일 오전에는 장사상륙작전 출전을 위한 부대편성을 하였다. 독립 제1유격대대는 4개 중대로 편성된 대대규모의 부대였으나 북한군의 후방으로 침투하여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하여 대대를 사단으로, 중대를 연대로 각각 위장하여 편성하였으며, 계급도 위장하여 부여하였다. 독립 제1유격대대 대원들은 정식 군번과 계급이 부여되지 않은 민간인 상태에서 작전수행을 위한 부대편성을

9 Ed. Evanhoe, 1955, *Dark Moon: 8th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p. 27.

10 Roy E. Appleman, 196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p. 568.

11 9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부대상황은 육군본부, 1994a, 『한국전쟁과 유격전』과 육군본부, 1994b,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완료하였다.

9월 14일, 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은 출정식을 마치고 부산항 제4부두로 이동하여 육군본부 작전국 장교들의 통제하에 승선준비를 하였다. 1950년 9월 14일 16:00, 독립 제1유격대대는 부산항 제4부두에서 LST 문산호(2,700톤급)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 LST 문산호(선장 황재중)는 부산항을 출항하여 미 해군 구축함 엔디코트(Endicott)의 호위를 받으며 경북 영덕군 남정면의 장사동으로 향하였다.¹²

2. 상륙작전의 전개과정

9월 15일 02:30분경, 독립 제1유격대대는 장사동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태풍 케지아(Kejia)의 내습에 따른 높은 파도와 짙은 안개로 인해 해안에 완전히 접안하지 못한 채로 상륙작전을 개시하였다. 이때 장사동 북쪽의 부흥동 고지와 남쪽의 지경동 고지에 잠복하고 있던 북한군으로부터 맹렬한 사격을 받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LST 문산호는 북한군의 사격권에서 이탈할 수도 없고, 해안에 상륙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결국 LST 문산호는 05:30분경에 선미가 파괴되어 선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06:00시경에 이르러서는 압초(북위 36도 16분 30초, 동경 129도 22분 36초)에 얽혀 바닥에 구멍이 뚫린 채 썰기처럼 단단히 박혀 횡으로 좌초되었다.¹³

독립 제1유격대대는 특공조를 편성하여 LST 문산호에 밧줄을 걸고 백사장 에 있는 소나무에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군의 사격과 태풍으로 인해 밧줄을 연결하던 일부 대원들이 강한 파도에 휩쓸려 희생되었다. 결국 미 구축함 엔디코트함의 함포지원사격하에 다시 밧줄 연결을 시도하여 해안에 도달하는 데 성

12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1952,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Rinehart and Company, INC, p. 244.

13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54, 앞의 책, 124~125쪽.

공하였다. 제1차로 상륙을 완료한 대원들은 LST 문산호를 향하여 사격하고 있는 북한군의 토치카로 육박하였다. 상륙부대는 09:00시경 전원이 상륙을 완료하였다.¹⁴

해안에 상륙을 완료한 독립 제1유격대대는 9월 15일 15:00시경에 장사동 해안지역의 주요 거점인 200고지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유격대는 39명의 적을 사살하고 3명의 포로를 생포하였으며, 9개소의 토치카를 파괴하고 직사포 2문, 포탄 450발, 쏘총 1대, 기관총 45정, 로켓포 1문, 다발총 5정, M1총 9정, 소련제 장총 12정, 박격포 1문, 그리고 다량의 각종 실탄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¹⁵

9월 16일 07:00시경, 독립 제1유격대대는 제28연대가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의 125고지 좌측능선에, 제32연대는 대전리의 219고지 우측능선으로 이동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제29연대는 1개 대대 병력인 약 40명으로 도천리의 봉황산 일대를 방어하고 나머지 3개 대대 병력은 철수하여 21:00시까지 사령부에 도착할 것을 지시하였다. 21:30분경, 제29연대의 3개 대대가 본부에 도착하여 220고지 중북부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다음 날 03:00시경 독립 제1유격대대는 방어준비를 완료하였다.

9월 17일 05:00시경, 북한군은 독립 제1유격대대의 방어진지 주변으로 박격포와 전차포 사격을 하였다. 06:00시경 북한군은 제32연대가 방어하고 있는 219고지 정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격퇴되었다. 북한군에게 포위된 독립 제1유격대대는 이 상황을 미 구축함에 알리기 위하여 전마선 1척에 부상병 20명과 경계병을 편승시켜 출발하였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전마선은 전복되었으며 9명이 익사하였다. 미 구축함과 연락이 두절되자 LST 문산호의 선원들도 장사동 해안에 상륙하여 유격대와 함께 전투에 참가하였으나 선장 이하 7명

14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1952, 앞의 책, p. 244.

15 이종훈, 1958, 앞의 책, 100~101쪽.

이 전사하였다.¹⁶ 이후 부대장은 제28연대와 제29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의 병력을 차출하여 125고지와 219고지의 좌우능선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병력을 200고지로 집결하도록 명령하였다. 부대이동은 18일 02:30분경 완료되었다.

9월 18일 05:00시경, 이명흠 부대장은 지휘소를 200고지에서 LST 문산호로 이동하였다. 09:00시경 북한군의 선두부대가 200고지 동남쪽에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독립 제1유격대대는 최초 출항 시 3일간의 작전을 계획하고 탄약과 식량을 준비하였는데 이마저도 상륙 간에 유실되어 실제로 보유한 탄약은 소총탄 8만 발, 수류탄 900발, 82밀리 박격포탄 130발, 다발총탄 약 1,000발 등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¹⁷ 이에 따라 독립 제1유격대대는 14:50분경 200고지를 내려와 도로에 집결한 후 해안도로를 따라 포항 방면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북한군 제2군단은 독립 제1유격대대가 후방에 상륙하여 주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압박하자 2개 연대와 전차 4대를 동원하여 반격을 하였다.

3. 상륙부대의 철수과정

장사동 해안에 상륙한 독립 제1유격대대의 위급한 상황을 접수한 해군본부에서는 LT-1(인왕호)을 장사동 해역 일대로 급파하였다. 9월 15일 22:00시 부산을 출항한 LT-1(인왕호)은 16일 07:00시 현지에 도착하여 LST 문산호 구출에 착수하였으나 LST 문산호가 깊이 좌초되어 구출하지 못하고 일몰경에 부산으로 철수하였으며, JMS-304정(태백산)도 LST 문산호를 구출하고자 출동하였으나 시계불량으로 LST 문산호가 좌초된 위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풍량이 심하여 구룡포로 복귀하였다.

해군본부에서는 LT-1(인왕호)로부터 LST 문산호 구출이 불가능하다는 보

16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54, 앞의 책, 125쪽.

17 이종훈, 1958, 앞의 책, 135쪽.

고를 받고 대구에 있는 육군본부에 상륙부대를 구출하기 위한 지원부대를 증파하거나 상륙부대를 철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하였다.¹⁸ 그리고 상륙부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LST 조치원호를 현지에 급파하였다.

9월 18일, 독립 제1유격대대가 포항 방향으로 남진하던 중 헬기가 나타나 이명흠 부대장을 태우고 유엔 해군의 봉쇄 및 화력지원을 담당하는 제95기동부대(TF-95)의 기함인 헬레나함(USS Helena)으로 이동하였다. 헬기를 타고 헬레나함에 도착한 이명흠 부대장은 헬레나함에 통역장교로 파견되어 있던 한국 해군 연락장교 조종의 소령의 통역으로 하트만(Charles C. Hartman) 제독과 면담하였다. 이명흠 부대장은 하트만 제독에게 독립 제1유격대대의 상륙작전 경과와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고, 부족한 식량 및 탄약에 대한 지원과 함포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트만 제독은 9월 19일 06:30분에 독립 제1유격대대 구조를 위한 LST 1척의 파견과 식량 및 철수 시 엄호사격을 약속하고 이명흠 대위를 부대로 복귀시켰다. 부대는 200고지에서 약 3km 남쪽의 포항시 지경리 125고지를 지나 이동 중이었다.

이명흠 부대장은 부대 복귀 후 해상철수에 관한 내용을 전파하고 포항 방면으로 이동 중이던 부대를 LST 문산호로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유격대의 상황 변화를 알아챈 북한군은 해안에 연한 고지를 점령하고 16:00시경 북상하고 있던 독립 제1유격대대를 공격하였다. 약 10여 분간 교전이 벌어졌으나 유엔군 함정 8척의 함포지원 사격과 제트기 1개 편대가 200고지 일대에 폭격을 가하자 북한군의 공격은 둔화되었다. 유엔군의 함포지원 사격으로 인해 부대는 다시 이동하여 19:00시경 장사동 해안에 집결하였다. 한편 9월 18일 15:00시 구조비행기를 현지에 보내어 전단을 살포하여 LST 2척이 곧 현지에 급파될 것이니 상륙부대는 선박 인근지역을 확보하고 있으라는 뜻을 알렸고, 헬레나함에서는 헬기를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비상전투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주었다.¹⁹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사』 제6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79쪽.

독립 제1유격대대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LST 조치원호가 현지에 도착하자 LT-1호에 승조하고 있던 스피어 소령의 지시로 LST 문산호 구조작전이 시작되었다. 스피어 소령은 LST 조치원호를 LST 문산호가 좌초한 북방 400야드, 육지로부터는 약 30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민간인 선장은 좌초를 염려하여 지시를 거절하였다. 조치원호 선장이 이동을 거부하자 스피어 소령은 조치원호에 승선해서 직접 조합하여 북방 400야드, 육지로부터 약 30m 떨어진 지점으로 조치원호를 이동시켰다. 그는 직접 밧줄을 타고 해안에 상륙하여 구조작전을 지시하였다. 유엔군은 북한군의 화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함포사격과 항공기 폭격지원을 실시하고 육지와 조치원호를 밧줄로 연결하여 철수를 시작하였다.

결국 유격대원과 LST 문산호 선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25명을 구출하고 다음 날 9월 20일 20:00 부산항으로 복귀하였다.²⁰ 그리고 장사동 해안에는 32명이 잔류하였다. 해안에 남아 있던 32명의 유격대원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거나 일부는 탈출하여 국군에 합류하였다.²¹ 이로써 9월 13일부터 8일간 실시된 독립 제1유격대대의 장사상륙작전은 종료되었다.

Ⅲ. 장사상륙작전의 전개 및 철수과정에 대한 재검토

1. 편성에 대한 재검토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의 편성에 대한 사항들은 신뢰할 만한 당시의 기록이 미흡하여 참전자의 회고록이나 증언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27쪽.

20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54, 앞의 책, 127~128쪽.

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앞의 책, 580쪽.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의 창설인원이 772명이 맞는가이다. 이 인원수는 장사상륙작전을 수행한 부대를 일명 “제772부대”라고도 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72명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명흡의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의 증언이나 회고록도 대부분 이를 근거로 증언 또는 회고되고 있다. 당시 독립 제1유격대대 부관이었던 백운봉(白雲鵬, 당시 독립 제1유격대 부관중위·예비역 소령)²²은 8월 20일경부터 밀양에서 1,000명의 학생 명단을 놓고 부대를 편성하여, 9월 2일에는 최종적으로 736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육군본부로 보냈으며, 9월 13일 새벽 부산 제4부두에서 대원 697명, 장교 35명, 선원 40명 등 772명이 LST 문산호에 탑승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³ 그러나 이 증언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즉 이명흡이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에서 9월 13일에 부산 제4부두에서 문산호에 탑승했다고 회고하였듯이 백운봉도 9월 14일이 아니라 13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흡과 같이 772명으로 증언하고 있다.

한편, 당시 부대장이었던 이명흡이 작성한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에는 대구에서의 강연회 때 찾아온 수백여 명과 계속해서 지원하는 인원 중 선발된 인원 200명, 최운동의 대원을 560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²⁴ 즉, 이명흡은 760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흡 대위는 760명의 인원으로 정치세포중대(政治細胞中隊), 선전선동중대(宣傳煽動中隊), 대적공격중대(大敵攻擊中隊), 지원중포중대(支援重砲中隊) 등 4개 중대를 편성하였다고 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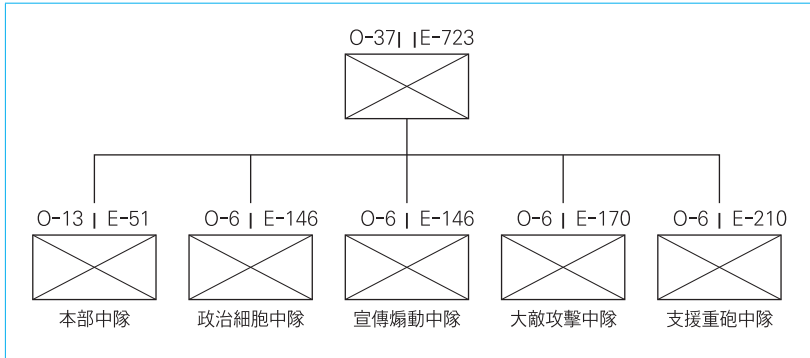
그리고 LST 문산호 탑승 당시 육본 통신감실에서 파견된 무선통신병 12명

22 백운봉(白雲鵬)이라는 이름은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와 『민족의 증언』 2에 한문 白雲鵬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논문에서 한글 ‘백운봉’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한문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23 백운봉(白雲鵬, 당시 독립 제1유격대 부관 중위·예비역 소령) 증언, 중앙일보사 편, 1983, 앞의 책, 326쪽.

24 이종훈, 1958, 앞의 책, 57쪽.

〈표 1〉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편성표(1950. 9. 1. 현재)



출처: 이종훈, 1958,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239쪽.

에 대하여 이명흠은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에서 명부대원을 부대장과 육본 통신감실 파견 무선통신병 12명을 포함하여 772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즉, LST 문산호에는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760명, 육본 통신감실 파견 무선통신병 12명, LST 문산호 선장 및 선원 42명, 해군 헌병 및 기타 인원 5명, 선박 안내자(미군 중위) 1명, 통역요원 1명, 전성호 대령과 연락병 3명, 민간인 박영선 등 3명을 포함하여 828명이 탑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하지만 당시 대원이었던 최재명은 최운동 의원이 모집할 때 응모자 1,000명 중에 560명만 대원증을 받았다고 기록하였고,²⁶ 1950년 8월 27일에 대구에서 모집한 대원 560명 외에 밀양에서 청년 및 학생 중에서 160명이 충원되어 대원 총수는 772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최재명이 증언한 560명과 160명을 합하면 720명임에도 인위적으로 772명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본 통신병 12명, 문산호 선원 42명을 합하면 774명이 되지만, 독립 제1유

25 이종훈, 1958, 위의 책, 80쪽.
 26 최재명, 1993, 앞의 책, 6쪽.
 27 최재명, 1993, 위의 책, 7쪽.

격대대 편성표에는 문산호 선원이 포함되지 않은 760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문서와 캐리그(Walter Karig) 등의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에는 독립 제1유격대대가 장사동 해안에서 철수 시 유격대원과 승무원을 포함한 부상자 110명을 포함한 725명이 탑승하였으며, 유격대원 사상자 60명, LST에 탑승을 거부하고 해안에 남은 인원 32명, LST 선원 중 사망자가 10명, 실종자가 5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⁸ 이명흠은 최초에 LST 문산호에 탑승하였던 인원을 828명으로 기록했지만 832명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독립 제1유격대 인원은 LST 문산호에 탑승한 832명 중 LST 문산호 선원 42명, 육본 통신감실 파견 무선통신병 12명을 포함한 파견 및 배속자 26명을 제외한 764명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772명이라는 인원은 후에 제772부대라는 명칭을 위한 인위적인 인원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한 부대의 정확한 부대명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독립 제1유격대대, 명부대, 그리고 제772부대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확한 부대명칭은 국본 일반명령(육) 제72호(1950. 9. 17.)에 의한 “육본직할 독립 제1유격대대”이다. 부대장 이명흠 대위의 이름 중에서 가운데 글자인 명(明)자를 따서 불렀다는 ‘명부대’라는 명칭은 부대창설 이전에 비공식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대명칭은 통상적으로 부대장의 성(姓)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즉, 6·25전쟁 시 마산 서북방의 진동리전투에 참가한 민부대(민기식 부대), 김부대(김성은 부대)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명부대는 부대장인 이명흠의 성이 아닌 이름 첫글자인 ‘명’을 사용하여 ‘명부대’라고 하였다. 아마도 이명흠의 영어식 표기인 명흠리(Myong

28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24 September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23, p. 5; “Incoming Message, From COMNAVFE To CINCCFE”(20 Sep 1950), N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DAILY JOURNALS, Sept. 19, 1950-Sept. 22, 1950. Box 18; Roy E. Appleman, 앞의 책, p. 568;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앞의 책, p. 254.

Houm Ree)를 한국식의 성(姓)과 이름으로 착각하여 명부대라고 호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772부대’라는 명칭은 1950년 11월 24일 0시 국본 일반명령(육) 제 109호에 의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창설된 정훈 제1대대²⁹에 1951년 2월 1일에 제772부대라는 통상명칭을 부여하면서 생긴 명칭이다.³⁰ 이것은 이명흠의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1958)와 최재명의 『버림받은 충혼』(1993)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한 독립 제1유격대대의 인원이 772명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부대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50년 11월 24일 0시 국본 일반명령(육) 제109호에 의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정훈 1대대(772부대), 제2대대(773부대)가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준장에 의하여 창설되었기 때문이다.³¹ 이것은 장사상륙작전이 있었던 시기보다 2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부여되었다. 부대원의 수가 772명이나 773명이기 때문에 부대명칭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명흠 부대장은 “독립 제1유격대대가 1951년 2월 육군 정훈 제1대대로 전환되자 제1유격대대의 772명을 기념하여 제772부대로 제정했다”고 진술³²하고 있으나, 『정훈오십년사』(1991)에는 정훈대대의 인원이 50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³³ 또한 『육군역사일지』의 1951년

29 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정훈오십년사』, 육군본부 정훈감실, 137쪽.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준장은 군요리에 보고하여 1950년 11월 24일 0시 국본 일반명령(육) 제109호에 의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정훈 제1대대(772부대), 제2대대(773부대)를 창설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0 『육군역사일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에는 1950년 2월 1일 “육본 고부 정발 제3호에 의거 육군 정훈 제1대대는 제772부대로 통상명칭을 제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1 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앞의 책, 137~138쪽. 그러나 『육군역사일지』에는 1951년 2월 1일 “육본 고부 정발 제3호에 의거 육군 정훈 제1대대를 제772부대로 통상명칭을 제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1950년 11월 24일에 정훈 제1대대를 창설하고, 1951년 2월 1일에 부대명칭을 제772부대로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최재명, 1993, 앞의 책, 6쪽.

33 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앞의 책, 138쪽.

5월 15일 기록에 “육특 제376호에 의거 육군 정훈 제1대대 제2대 대대장 중령 이명흠 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⁴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한 772명의 부대원과 관련된 명칭이라면 당연히 이명흠이 초대 대대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흠은 초대 대대장이 아닌 제2대 대대장으로 제772부대라는 명칭은 장사상륙작전과 관련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가 ‘명부대’일 수는 있겠지만 제772부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772부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2. 준비과정에 대한 재검토

첫째, 누가 장사상륙작전을 지시하였는가이다. 최근 들어 일부에서 장사상륙작전을 육군의 단독 상륙작전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미 제8군이 장사상륙작전을 기획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인지는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자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육군의 단독 상륙작전도 아니고 미 제8군이 인지하고 있었던 작전도 아니다. 장사상륙작전은 미 제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의 지시에 의해 준비되고 실시된 상륙작전이었으며, 상륙부대가 한국 육군의 독립 제1유격대대였던 것이다. 장사상륙작전 종료 후에 미 극동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이 미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에게 보내는 2급 비밀(SECRET) 문서에는 미 제8군사령관이 주한 미 해군의 대표인 부산의 함대작전사령관 지시 없이 이 작전을 명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⁵ 즉, 이것은 국군 단독 작전이 아닌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에 의해 지시되고 국군이 미군의 함정을 이용하여 상륙작전을 수행한 연합작전이었다.

둘째, 장사상륙작전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캐리그 등(Karig,

34 『육군역사일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35 “ROK LST BM 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 (NOV 10,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7.

et al.)이 저술한 책과 국방부 및 각 군의 공간사에서는 9월 14일 16:00시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15일 새벽 05:00시경 장사동에 도착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³⁶ 그러나 당시 부대장인 이명흠의 회고록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에는 참전자들의 증언을 통해 9월 13일 출항하여 9월 14일 새벽 04:00~05:00시 사이에 장사동에 도착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³⁷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들에서는 발행자가 이러한 시간들을 일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문서에 의하면 “한국군 유격대가 계획대로 9월 15일 이른 아침에 포항의 북쪽에 상륙하였다(The ROK guerrilla battalion landed north of Pohang-dong in the early morning of 15 September, as scheduled.)”고 기록되어 있다.³⁸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장사동 해안에 상륙한 시간은 1950년 9월 14일 새벽이 아닌 9월 15일 새벽 05:00시경이며, 이명흠의 회고록과는 전반적으로 1일씩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하겠다. 또한 이명흠의 회고록 이후 백운봉의 증언이나 『장사상륙작전백서』의 증언들은 모두가 이명흠의 기억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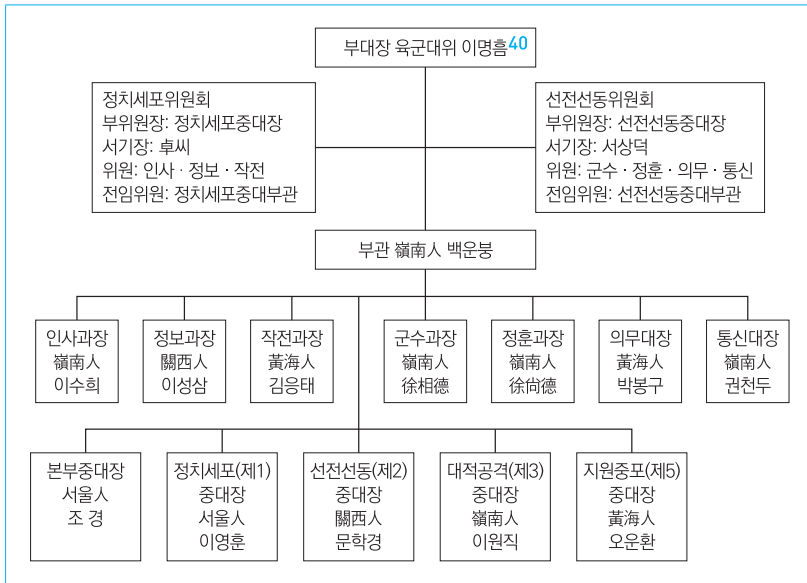
36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1952, 앞의 책; James A. Field, Jr., 1962,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육군본부, 1994, 『한국전쟁과 유격전』, 육군본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6·25전쟁사』 제6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공저, 2012, 앞의 책 등.

37 이종훈, 1958, 앞의 책; 중앙일보사 편, 1983, 앞의 책; 경상북도 영덕군, 2002, 앞의 책; 영덕문화원, 2007, 앞의 책; 김영덕·김용순·김재한·김현식·박중수·배수용·송원갑·송원춘·오창순·유병추·이도명·이동순·이영식·이치성(문산호 선원)·임차문·정수민·채종만 등의 증언, 경상북도 영덕군, 2011, 앞의 책; 윤경호·이재근의 증언, 경상북도, 2012, 『나라를 구한 영웅 학도병』, 경상북도 등.

38 “War Diary, G-3 Section 150001-152400 Sep 1950”, NA,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8th U. S. Army, Korea (EUSAK) War Diary, 9 September 1950 to 8th U. S. Army, Korea (EUSAK) War Diary, 19 September 1950, Box 57.

셋째, 유격대원들의 계급 부여에 관한 부분이다. 당시 독립 제1유격대대는 북한군 후방으로 침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따라서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를 대대는 사단으로, 중대는 연대로 각각 위장하여 편성되었고, 지휘관의 계급도 위장하여 부여되었다. 부대장은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관(東海岸地區掃共總司令官), 부관은 참모장, 제1중대장은 제28연대장, 제2중대장은 제29연대장, 제3중대장은 제32연대장, 제5중대장은 제37연대장으로 각각 호칭되었고, 계급도 임시 대령으로 부여되었다.³⁹ 그리고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한 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은 북한군복을 착용하였고 보유한 무기도 소련제 소총,

〈표 2〉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직위표(1950. 9. 10. 현재)



출처: 이종훈, 1958,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2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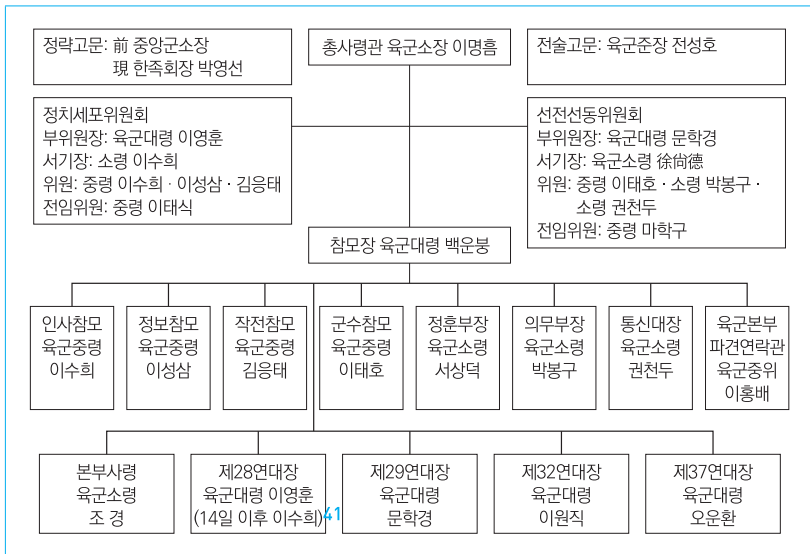
* 이 책에는 “明部隊位表”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 직위표”로 수정하였음.

39 이종훈, 1958, 앞의 책, 79쪽.

40 그의 회고록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에는 이종훈으로 기록되어 있다.

체코제 기관총, 맥심기관총, 박격포 등 주로 북한군의 무기들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군의 계급장을 부착할 리 없다. 1950년 9월 당시의 국군에서 소장의 계급은 육군총참모장을 비롯한 일부 지휘관뿐이었다. 사단장들은 대부분 준장 또는 대령이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계급은 그렇지 않았다. 각 군단장의 계급은 중장이었고, 각 사단장의 계급은 소장이었던 것이다. 연대장의 계급도 대부분 대좌였다. 즉, 독립 제1유격대대의 간부들에게 부여하였던 계급은 당시 국군의 계급이 아니라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하여 북한군의 계급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동해안지구소공총사령부직위표(1950. 9. 13. 현재)



출처: 이종훈, 1958,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237쪽.

41 이종훈의 책에서는 전반적인 기록들이 1일씩 늦게 기록되어 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장사동 해안에 상륙하다가 전사한 이영훈의 뒤를 이어 이수희가 제 28연대장 임무를 수행한 것은 14일 이후가 아닌 15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사병들에게는 임시계급이라는 것이 없었다. 대통령령 제384호로 발령된 “국군임시계급에 관한 건”(1950. 9. 16.)의 제1조에는 “전시사변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장교를 그의 계급보다 상위의 계급을 요하는 직위에 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로 그 상위의 계급에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⁴² 즉, 임시계급의 부여는 장교에게만 해당되었다. 더구나 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의 대다수는 학도병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계급이 없었으며, 1950년 9월 18일에 정식으로 군적에 편입되었다.

한편 이명흠 부대장은 장사상륙작전이 종료된 이후 1951년 4월경 부하들의 계급사칭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⁴³ 그러나 『육군역사일지』의 1951년 5월 15일 기록에 “육특 제376호에 의거 육군 정훈 제1대대 제2대 대대장 중령 이명흠 해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그의 자력기록표에는 1950년 10월 20일 소령으로 진급하였다가 1951년 5월 23일 대위로 강등되었으며, 1952년 3월 1일에 소령 진급, 1955년 3월 1일 부로 중령 진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⁴

3. 전개 및 철수과정에 대한 재검토

첫째, 장사동 해안에서 LST 조치원호가 몇 시에 철수하였는가이다. LST 조치원호의 철수작전은 기록에 따라 그 시간이 상이하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인천상륙작전』(19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6·25전쟁사』 제6권(2009), 해군역사기록관리단의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2012)에는 “13:30분경 구조를 중단하고 철수를 완료”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육군본부의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1994b)과 『한국전쟁과 유격전』(1994a), 사회단

42 대한민국국방부정훈국전사편찬위, 1951, 『한국전란1년지』, 국방부, C60쪽.

43 이종훈, 1958, 앞의 책, 78~79쪽.

44 이명흠, 「자력기록표」(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에서 발간한 『모래톱에 묻힌 충혼』(1995),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발간한 『영덕군지』(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2003)에서는 철수시간을 15:30분경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기록문서에는 TG 95.2 기동부대 사령관이 미 극동해군사령관에게 “13:30분에 탑승완료하였다”고 보고한 기록(1950. 9. 20.)⁴⁵과 헬레나함의 항해일지(1950. 9. 19.)에 “13:33분에 탑승완료하였다”⁴⁶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브러시함의 항해일지(1950. 9. 19.)에는 “13:45분에 출항했다”⁴⁷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면 13:30분 또는 13:33분에 탑승완료하고 13:45분에 철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30분에 철수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사동 해안에 철수시 LST 조치원호에 탑승하여 구조 및 철수한 인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LST 조치원호에 탑승한 인원과 장사동 해안에 잔류한 인원으로 구분된다.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에서 발간한 『대한민국 해군사-작전편』 제1집(1954)에서는 “유격대원과 LST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25명을 구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인천상륙작전』(1983)에는 “유격대원과 LST 문산호 승조원 등 110명의 부상자를 포함하여 700여 명을 구조하였으나, 129명이 전사하였으며, 39명이 잔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⁸ 그리고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한국전쟁과 유

45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24 September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7, p. 3.

46 “LOG BOOK of the USS Helena(CA-75)”(19 September 1950), NA, RG 24, Records of the Bureau of Naval Personnel, Deck Logs 1941-1950, Helena(CA-75) July 1950 to December 1950, Entry P 118-A1, Box 4478;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1952, 앞의 책, p. 254.

47 “LOG BOOK of the USS BRUSH(DD-745)”(19 September 1950), NA, RG 24, Records of the Bureau of Naval Personnel, Deck Logs 1941-1950, Brush(DD-745) September 1950 to December 1950 AND Bryant(DD-665) December 4, 1943 to April 1944, Entry P 118-A1, Box 1398, p. 681.

격전』(1994)과 해군본부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에서 발간한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2001)에서는 “대원 640명을 승선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2003)에서는 “640명 구조, 30명 잔류”로 기록하고 있으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한 『6·25전쟁사』 제6권(2009)과 해군역사기록관리단에서 발간한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2012)에서는 “670명을 구조하고 잔류인원은 30여 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의 자료들이나 연구물에서는 30여 명 또는 39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캐리그 등(Karig et al.)이 1952년에 발간한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에는 “LST 조치원호에 110명의 부상자 및 선원을 포함하여 총 725명이 탑승 구조되었으며 39명이 죽었고 32명이 잔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⁹ 또한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헬레나함의 1950년 9월 19일 항해일지⁵⁰와 브러시함의 1950년 9월 19일 항해일지,⁵¹ 1950년 9월 20일에 극동해군사령관(COMNAVFE)이 극동군사령관(CINCCFE)에게 보고한 전문⁵²에도 “32명이 잔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철수 시 LST 조치원호에 탑승한 인원은 110명의 부상자와 선원을 포함하여 725명⁵³이며 32명이 잔

48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3, 앞의 책, 128쪽.

49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1952, 앞의 책, p. 254.

50 “LOG BOOK of the USS Helena(CA-75)”(19 September 1950), NA, RG 24, Records of the Bureau of Naval Personnel, Deck Logs 1941-1950, Helena(CA-75) July 1950 to December 1950, Entry P 118-A1, Box 4478.

51 “LOG BOOK of the USS BRUSH(DD-745)”(19 September 1950), NA, RG 24, Records of the Bureau of Naval Personnel, Deck Logs 1941-1950, Brush(DD-745) September 1950 to December 1950 AND Bryant(DD-665) December 4, 1943 to April 1944, Entry P 118-A1, Box 1398, p. 681.

52 “Incoming Message, From COMNAVFE To CINCCFE”(20 Sep 1950), N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DAILY JOURNALS, Sept. 19, 1950-Sept. 22, 1950. Box 18.

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문서에는 잔류한 32명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잔류임을 기록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LST 조치원호에 의해 725명이 구조되고 32명이 잔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국내의 연구기록들이 기록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1차 자료의 제한으로 대부분 증언록이나 회고록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며 한글로 번역된 자료의 오류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헬레나함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얼마나 어떻게 지원해주었나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자료들은 막연하게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해주었다고만 기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료에는 탄약까지도 지원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한 것은 식량과 의약품뿐이었다. 유격대원들은 북한지역으로 침투하기 위하여 복장과 장비를 북한군의 것으로 위장하였기 때문에 탄약은 국군 및 유엔군의 무기와 구경이 달라 지원이 불가하였다. 장사동 해안에 상륙한 독립 제1유격대대는 17일 오후부터 식량 부족에 시달렸으며, 부상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아침 06:40에 헬레나함의 헬리콥터가 좌초된 상륙부대에 3회에 걸쳐 1,100개의 K-ration⁵⁵을

53 철수 시 탑승자 현황은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24 September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23, p. 3에 “The LST 665 retracted without tug assistance being necessary and headed out with a total of 725 on board.”로 기록되어 있다.

54 헬레나함의 항해일지에는 “32 of the Korean personnel, these choosing to remain ashore,”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브리시함의 항해일지에는 “Approximately 32 troops selected to remain on beach.”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24 September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7, p. 3에는 “32 men refused to risk the raft trip preferring to take their chances on shore.”로 기록되어 있고, 극동해군사령관(COMNAVFE)이 극동군사령관(CINCCFE)에게 보고한 전문에는 “32 troops who refused risk of short trip on raft to LST”로 기록되어 있어 강제적인 잔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5 K-Ration에 K자가 붙었으므로 한국인을 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보냈다.⁵⁶ 또한 18일 오후 한국 해군소령 조종익이 헬리콥터에서 언급한 좌초된 LST에 100명의 부상자보다 충분한 의료용품도 지급하였다.⁵⁷

IV. 장사상륙작전의 결과에 대한 재검토

장사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에 경북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에서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에 의해 실시된 작전이다. 이 작전에 대한 많은 연구물이 대부분 참전자들의 증언을 주로 참고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체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들에서는 증언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륙작전의 날짜나 인원과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조정하거나 수정하여 발간한 흔적까지도 나타난다. 이러한 오류들은 독립 제1유격대대가 체계적인 준비나 과정 없이 부대가 편성되고 상륙작전에 투입되면서 1차 사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기존의 연구물들을 재인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입수한 문서들과 국가기록원에서 확인되는 각종 기록을 비교 검토해보거나, 6·25전쟁 직후 발간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보면 기존의 연구물들이 상당 부분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편적인 문제들은 이미 앞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러한 오류들을 종합해볼

C-Ration과 같은 일종의 미군 전투식량이다. 그중에서 K-Ration은 비상식량이었다. 즉, 공수부대원, 기갑부대원, 오토바이 부대원 등을 위해 C-Ration보다 더욱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전투식량을 목표로 개발된 식량이 K-Ration이다.

56 “Incoming Message, From CTG 95.2 To CTF 95”(18 Sep 1950), NA,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DAILY JOURNALS, Sept. 16, 1950–Sept. 19, 1950, Box 17.

57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24 September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23, p. 4.

때 가장 커다란 오류는 장사상륙작전의 성공 여부와 인천상륙작전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1. 성공한 작전인가, 실패한 작전인가?

독립 제1유격대대는 LST 문산호의 좌초와 태풍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장사상륙작전 시 독립 제1유격대대가 육군총참모장 정일권 소장과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작전명령 제174호에 명시된 임무는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임무에 명시된 동대산은 장사동 해안에서 서북쪽으로 10여 km 이격되어 있는 산이다. 그러나 독립 제1유격대대는 해안에 인접한 부흥동 고지와 지경동 고지에서만 전투를 수행하였다. 비록 독립 제1유격대대가 장사동 일대의 교량을 폭파하고 북한군의 주요 병참선인 포항,



그림 1 장사동 주변 지형

영천 방면으로 통하는 국도를 차단하여 북한군의 보급선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고, 아군의 후방지역인 장사동으로 북한군 제2군단의 제5사단 일부 부대를 전환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국군 제1군단의 작전을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작전명령에 명시된 동대산까지는 접근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6·25전쟁에 대한 북한의 공간사인 『조선전사』는 “동해안의 포항계선에서 방어로 넘어간 인민군연합부대는 적들의 배후기습작전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놈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 이 전투에서 괴뢰군의 대부분은 소멸되고 나머지 일부 령량이 18일 미제침략군 해군함선들의 함포사격의 엄호 밑에 겨우 빠져나갔다. 미제침략자들의 기습작전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⁸ 또한 미 해군 군사연구실장인 해군소장 엘러(E. M. Eller)와 부실장인 루미스(F. K. Loomis) 대령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필드(James A. Field, Jr.)에 의해 작성된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에서도 실패한 작전으로 기록하고 있다.⁵⁹ 미국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관된 문서에서도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한 작전(Tactically it was a total and complete failure.)”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⁶⁰

장사상륙작전이 종료된 이후 미 극동해군사령관(Commander Naval Forces, Far East)이 미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에게 보내는 2급 비밀(SECRET) 문서인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1950. 11. 10.)에서 “이 작전은 미 제8군사령관의 단독으로 지시된 작전이며, 이후에는 비록 소규모의 상륙작전일지라도 해군의 지

5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2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2쪽.

59 James A. Field, Jr., 1962,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212.

60 “ROK LST BM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24 September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23, p. 6.

휘를 받도록 건의”하고 있다.⁶¹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장사상륙작전이 성공한 작전으로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2. 인천상륙작전과의 연관성

일반적으로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의 상륙작전지역을 기만하기 위해 시행된 작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은 장사상륙작전의 시기와 관련이 있다. 미군은 상륙지점을 기만하기 위하여 진남포, 인천, 군산 지역에 항공폭격을 실시하였다. 9월 14일과 15일에는 동해안의 주문진과 삼척 지역에 대대적인 함포사격도 실시하였다. 군산, 목포 지역에는 소규모 특수부대를 상륙시켜 북한군의 주위를 분산시키기도 하였다. 장사상륙작전이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을 기만하였다는 것이다.

작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작전명령으로 지시된다. 기만작전이나 우발계획도 모두 작전명령에 포함되어 지시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위한 맥아더의 크로마이트(Chromite) 작전계획인 100-A, 100-B, 100-C, 100-D 중 어떤 계획에도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크로마이트 작전계획 100-A는 미 제10군단이 군산에 상륙하여 대전을 확보하고 부산으로부터 반격하여 대구-김천-대전을 축으로 반격하는 미 제8군과 대전에서 연결하여 금강 이남의 북한군을 격퇴시키는 계획이다.⁶² 100-B는 미 10군단을 인천으로 상륙시키는 계획이다. 100-C는 미 제10군단을 인천에 계획대로 상륙시키고 미 제8군의 김천-대전지역으로의 진출이 실패할 경우 미 제8군의 1개 사단을 군산지역으로 상륙시켜 미 제8군을 지원하는 계획

61 “ROK LST BM 667; covering and evacuation of stranded personnel in” (NOV 10, 1950), NA,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7.

62 “Operation Plan, CINCFE No. 100A”(1950. 8. 30.),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2, p. 2.

그러나 인천상륙작전과 관련하여 이명흠 부대장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신에 대하여 1960년 10월 31일에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수신한 답장이 인천상륙작전과 관련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⁶⁵ 특히 맥아더 장군의 답장 내용 중, “The operation they performed in support of the Inchon Landing was a brilliant one and worthy of the highest commendation.(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귀하의 동지들이 수행한 전투는 혁혁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맥아더 장군도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을 기만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만하기 위한 상륙작전이라도 상륙작전 실시 이전에 군산, 삼척, 진남포에 가했던 함포사격이나 항공공격처럼 막강한 화력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사상륙작전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화력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원된 함포지원은 인천상륙작전의 작전지역 기만을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단지 독립 제1유격대대의 상륙을 지원하기 위한 화력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항공지원은 상륙작전 초기보다는 작전 후반에 철수하는 병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것이 전부이다. 또한 장사동의 경우 아군이 장사동을 공격한다고 해도 북한군이 이곳을 상륙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점에서도 의문사항은 있다. 장사동 자체가 대규모 부대의 상륙이 가능할 만한 여건을 지니지 않았고, 상륙한다고 해도 기동공간이나 교통로 등이 주전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군본부의 작전명령 제174호(1950. 9. 10.)와 부대장 이명흠 대위의 증언, 독립 제1유격대대원들의 증언과 관련 기록에도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보장하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Folder 3, pp. 2~3.

65 경상북도 영덕군, 2011, 앞의 책, 60~61쪽. 이 서신에는 이명흠의 개명된 이름인 이종훈이 작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 위한 기만 또는 양동·양공작전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즉, 인천상륙작전의 시행 동안 장사동 지역은 북한군을 기만하기 위한 상륙지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 제1유격대대가 부여받은 임무도 “D일 H시 P장소에 상륙을 감행시켜 동대산(1225-1493)을 거점으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1군단 작전을 유리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즉, 장사상륙작전의 주목적은 인천상륙작전의 작전지역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 북한군의 후방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당시 북한군 제5사단의 대대적인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군 제3사단에 대한 북한군의 압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장사상륙작전은 대부분의 병력이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되어 병력을 전환할 여유가 없었던 국군이 학도병을 활용하여 북한군 제2군단의 병참선 차단과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시행된 작전이었다.

이명흠은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에서 1950년 9월 14일⁶⁶ 장사동 해변에서 거행된 이영훈의 장례식 조사에서 “이렇게 우리 부대로 하여금 적의 보급로를 차단케 하고 아 국군 1군단의 반격작전을 용이케 할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유엔군 총반격작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음에…”라고 하였다.⁶⁷ 이것은 인천상륙작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의 총반격작전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명흠의 서신에 대한 맥아더 장군의 답신에서 언급한 “인천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라는 것은, 인천상륙작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만작전이라기보다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총반격작전을 수행하는 시기에 실시된 장사상륙작전으로 포항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3사단에 대하여 북한군의 압력을 약화시켜 낙동강 방어선에 배치된 국군 및 유엔군이 총반격전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66 이명흠은 14일로 기록하고 있지만, 15일로 추정된다. 이명흠은 장사상륙작전을 위하여 13일 출항해서 14일 새벽에 상륙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15일에 장사동에 상륙하였기 때문이다.

67 이종훈, 1958, 앞의 책, 105쪽.

3. 군사용어 이해부족에 대한 문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09년에 발간한 『6·25전쟁사』 제6권(2009)의 해군작전에서는 장사상륙작전에 대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시기를 같이하여 북한군을 교란하기 위한 상륙양동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서해안에 대한 기만작전은 군산에서 실시되었으며, 동해안에서는 장사동에 해운공사 소속 LST(문산호) 1척과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에 의해 실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⁶⁸ 그리고 “정일권 총사령관은 북한군이 공세에 밀려 대구 부산지구 방어전을 치르고 있을 때, 동부전선의 포항지구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하여 상륙기습작전을 지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⁶⁹

이것은 장사상륙작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장사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륙양공작전을 상륙양동작전이라고 표현하고 장사상륙작전을 기만작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상적인 상륙작전을 상륙기습작전으로 표현함으로써 많은 연구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기 때문이다.

‘기만작전’은 아군의 작전의도, 능력, 배치 등을 적에게 오판하도록 유도하여 적을 아군의 의도대로 유인하거나, 적의 기도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계획적인 작전활동이다.⁷⁰ 그러나 장사상륙작전은 적을 기만하기 위해 실시된 작전이 아니라 적을 공격하기 위해 실시된 작전이다.

또한 ‘양동작전’은 적을 기만할 목적으로 아군이 결정적인 작전을 기도하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실시하는 무력시위로서 양공작전과 비슷하나 적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⁷¹ 장사상륙작전은 실제로 상륙해서 적과 접촉하여 작전을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앞의 책, 577쪽.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위의 책, 573쪽.

70 합동참모본부, 2014,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97쪽.

71 합동참모본부, 2014, 위의 책, 97쪽.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양동작전이 아니라 ‘양공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만작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공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그리고 ‘상륙기습작전’은 해상 또는 육상발전기지에서부터 적 해안에 상륙하여 목표지역을 신속하게 습격 또는 일시점령 후 해상 또는 지상으로 계획된 철수를 실시하는 작전이다.⁷² 그러나 장사상륙작전은 계획된 철수가 아닌 정상적인 상륙작전임에도 상륙기습작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기만작전이나 상륙양동작전도 아니고, 상륙기습작전도 아님에도 인천상륙작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작성되다 보니 장사상륙작전의 본질과 다른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료의 제한이 아니라 군사용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장사상륙작전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에서 국군 및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지연작전을 펼치던 중 서해안에서의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총반격작전을 준비하던 1950년 9월 15일에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동 해안에서 실시된 상륙작전이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장사상륙작전은 1997년에 문산호가 발견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사상륙작전에 대해서는 이명흠 부대장을 비롯한 당시의 참전자들의 증언에 의해 주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반적인 상륙작전의 과정에서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상륙작전 종료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육군의 단독 상륙작전이라고도 하고, 인천상륙작전에 기여한 성공적인 양동작전이며, 상륙기습작전이라고 한다.

72 합동참모본부, 2014, 위의 책, 243쪽.

그러나 이 글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사상륙작전은 한국 육군의 단독 상륙작전이 아니라 미 제8군사령관인 워커 장군에 의해 지시되었으며,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한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는 772명이 아니라 육본 파견 통신병 12명을 포함하여 764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9월 18일에 정식으로 군번이 주어졌다. 또한 제772부대는 장사상륙작전에 참가한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가 아니라 1950년 11월 24일 0시에 창설된 정훈 제1대대이다. 상륙작전 개시일자도 당시 부대장이었던 이명흠의 회고록에 기록된 9월 14일이 아니라 9월 15일이다. 장사동 해안에서 LST 초치원호에 의해 구조 및 철수한 인원은 110명의 부상자와 LST 문산호 선원을 포함하여 총 725명이며, 해안에 잔류한 인원은 39명이 아니라 32명이다.

상륙작전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당시 미 해군의 주요 직위자들이나 주요 전사연구자들은 실패한 작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당시 육군 독립 제1유격대대에 하달된 명령에서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장사상륙작전을 인천상륙작전의 상륙지역을 기만하기 위한 기만작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군사교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양동작전 또는 양공작전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상륙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륙기습작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처럼 장사상륙작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정확한 기록에 의한 연구보다는 참전자의 회고록이나 증언 위주의 자료가 연구의 중심이 되고, 군사용어에 대한 이해부족과 연구자의 성향이 반영되어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문서나 이미 1950~1960년대에 해외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살펴보고 정확한 사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장사상륙작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보다 심층 깊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6, 『6·25전쟁사』 제3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8, 『6·25전쟁사』 제5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09, 『6·25전쟁사』 제6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_____, 2012, 『6·25전쟁 학도의용군 연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전쟁사』 제3권,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_____, 1983, 『인천상륙작전』,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_____, 1986, 『안강·포항전투』,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국방부장정훈국전사편찬위, 1951, 『한국전란1년지』, 국방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81, 『조선전사』 2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육군본부 정훈감실, 1991, 『정훈오십년사』, 육군본부 정훈감실.
임성채·김용진·김희철·박기연 공저, 2012, 『6·25전쟁과 한국해군작전』, 해군역사기록관리단.
합동참모본부, 2014,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해군본부, 1985, 『미해군 한국전 참전사』, 해군본부.
해군본부 전사편찬관실, 1954, 『대한민국 해군사-작전편』 제1집, 해군본부.
해군본부 정작참모부 군사연구실, 2001, 『작전경과보고서』 제1권, 해군본부.

MA, RG 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FECOM), 1947-1951, Box 103.

NARA, RG 24, Records of the Bureau of Naval Personnel, Deck Logs 1941-1950, Brush(DD-745) September 1950 to December 1950 AND Bryant(DD-665) December 4, 1943 to April 1944, Entry P 118-A1, Box 1398.

_____, RG 24, Records of the Bureau of Naval Personnel, Deck Logs 1941-1950, Helena(CA-75) July 1950 to December 1950, Entry P118-A1, Box 4478.

- _____.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7.
- _____. RG 127, Entry General Subject Files 1940-53, Box 23.
- _____. RG 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8th U. S. Army, Korea (EUSAK) War Diary, 9 September 1950 to 8th U. S. Army, Korea (EUSAK) War Diary, 19 September 1950, Box 57.
- _____.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DAILY JOURNALS, Sept. 16, 1950-Sept. 19, 1950. Box 17.
- _____. RG 554, RECORDS OF GENERAL HQ, FEC, SCAP, and UNC, DAILY JOURNALS, Sept. 19, 1950-Sept. 22, 1950. Box 18.

단행본

- 경상북도, 2012, 『나라를 구한 영웅 학도병』, 경상북도
- 경상북도 영덕군, 2002, 『영덕군지』, 영덕군청.
- _____, 2011, 『장사상륙작전백서』, 영덕군청.
- 영덕문화원, 2007, 『남정면지』, 영덕문화원.
- 육군본부, 1994a, 『한국전쟁과 유격전』, 육군본부.
- _____, 1994b, 『한국전쟁시 학도의용군』, 육군본부.
- 윤경호, 2008, 『16세 소년의 절규』, 만인사.
- 이중훈, 1958, 『무명용사의 열혈전투실기』.
- 조성훈, 2003,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중앙일보사 편, 1983, 『민족의 증언』 2, 중앙일보사.
- 최재명, 1993, 『버림받은 충혼』, 사회단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
- _____, 1995, 『모래톱에 묻힌 충혼』, 사회단체 장사상륙참전유격동지회.

Appleman, Roy E., 1961,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Evanhoe, Ed., 1955, *Dark Moon: 8th Army Special Operations in the Korean War*, Naval Institute Press.

Field, James A., Jr., 1962,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KOREA*,

Washington D.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Karig, Walter,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1952,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Rinehart and Company, INC.

기타 자료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홈페이지. <http://www.yd.go.kr/?p=2660>(검색일: 2020.
3. 7.).

6·25전쟁 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재검토

박종상

장사상륙작전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9월에 동해안의 경북 영덕 일대에서 실시되었다.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시기에 동해안에서 실시되었다. 장사상륙작전은 기상불량으로 인해 상륙작전 초기부터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또한 해안에 상륙하자마자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추가적인 희생자가 발생하여, 상륙한 이후 1주일도 되지 않아 해상으로 철수한 상륙작전이었다.

그동안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연구는 증언록이나 회고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륙작전의 준비과정에서부터 전개과정 및 철수과정 등에 대한 객관성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인해 장사상륙작전은 서해안에서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되던 같은 시기에 실시되어 인천상륙작전의 작전지역 기만에 커다란 영향을 준 양동작전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전개 및 철수과정까지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을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 인천상륙작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군사용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공간사와 기존의 연구물들을 검토하여 장사상륙작전의 준비과정과 전개 및 철수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기록문서를 중심으로 장사상륙작전에 대하여 재검토하였다.

주제어: 장사상륙작전, 6·25전쟁, 이명흙, 인천상륙작전, 문산호(LST 667)

ABSTRACT

Review of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during the Korean War

Park Jongsang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was conducted in September 1950 during the Korean War in Yeongdeok, Gyeongbuk, on the East Coast.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was conducted on the East Coast around the same time as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Due to poor weather conditions,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has cost a lot from the beginning of the landing operation. In addition, as soon as they landed, additional victims were incurred due to the North Korean attack, and it was an amphibious operation that withdrew to the sea within less than a week after landing on the coast.

In the meantime, research on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can be said to have somewhat lacked objectivity from the preparation process of the landing operation to the development process and withdrawal process due to the research centering on testimony and memoirs. Due to these research results,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was conducted at the same time when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was unfolding on the west coast, and it has been recognized as a part of demonstraion operation, which greatly influenced the deception of the operation area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misrecognized parts from preparation to deployment and withdrawal. In addition,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was successful or failed, misconception about the relevance of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and misrecognition of military terminology were organized and reviewed.

To this end, the space history of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and the existing research materials were reviewed, and the preparation, development, and withdrawal process of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were summarized.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documented documents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NARA), which were not introduced in Korea.

Keywords: the Changsa Landing Operation, the Korean War, Myung Heum Lee,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LST Munsan(LST 667)

문화정책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

양시은 |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변화 양상
- III. 중국의 박물관 관련 법규
- IV. 중국 동북지역 성급박물관의 운영 현황
- V. 중국의 문화정책과 박물관
- VI.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여가시간이 증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인 소비 외에도 정신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문화소비의 지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중국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48%인 4조 1,117억 위안(약 5,808억 달러)이다. 2010년도 중국의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2,230억 위안(GDP의 2.75%)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문화산업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

중국 국가통계국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을 ‘사회 공공에 문화 제품과 문화 관련 제품을 제공하는 생산활동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① ‘문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사람들의 정신적인 수요를 직접 만족시키는 창작, 제조, 전파, 전시 등의 문화 제품(상품과 서비스 포함)의 생산활동으로, 구체적으로는 뉴스정보 서비스, 콘텐츠 창작 생산,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서비스, 문화 전파 채널, 문화 투자 운영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레저 서비스 등의 활동을 포함하며’, ② ‘문화제품의 생산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 보조 생산과 증개 서비스, 문화장비 생산과 문화소비 단말(終端) 생산(제조와 판매 포함)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 투고: 2020년 7월 15일, 심사 완료: 2020년 8월 14일, 게재 확정: 2020년 8월 25일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research yea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

1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통제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이므로 관련 논의에서 제외했다.

있다. 박물관은 콘텐츠 창작 생산(대분류)-콘텐츠 저장 서비스(중분류) 아래에 도서관, 기록보관소(檔案館), 문화유산보호, 열시능원 및 기념관과 함께 분류되어 있다.²

중국 문화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홍보 및 강화하는 수단으로의 문화사업과 소비 중심의 문화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 문화산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계획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문화산업을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문화유산 활용과 박물관 활성화 등을 비롯한 여러 문화정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랴오닝성박물관(遼寧省博物館), 지린성박물관(吉林省博物院), 헤이룽장성박물관(黑龍江省博物館)의 사례를 통해 문화정책에 따른 중국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³

II.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변화 양상

현대 사회에서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 이미지 홍보에 문화가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한 중국 정부는 근래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 역시 정책 목표의 설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산당과 정부의 관련 부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⁴ 따라서 중국 박물관의 정책 방향을 이

2 國家統計局, 「文化及相關產業分類(2018)」, http://www.stats.gov.cn/tjgz/tzgb/201804/t20180423_1595390.html

3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박물관의 정책과 사례는 필자가 다년간 중국 동북지역의 박물관을 답사하며 수집한 내용과 중국 정부기관 및 개별 박물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들을 수합하여 분석한 것이다.

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최고 권력 기관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기본으로 문화관광부나 국가박물관 등의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에서 문화산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의 건의」⁵에서였다. 향후 5년간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거시적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⁶에서 문화산업을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다. 해당 건의에서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시장 건설과 관리의 강화, 문화 관련 산업발전의 추진과 함께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12월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관세 인하 및 수입물량 제한 완화 등 무역상대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받음과 동시에 개발도상국 지위로 인한 여러 특혜를 동시에 누리게 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개혁 정책과 맞물려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으로 문화산업 분야 역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됨에 따라 중국 내 문화산업의 구조 또한 변화를 맞이했다.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의 대외개방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 계획」⁷ 기간(2001~2005)에는

4 양시은, 2017, 「중국의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활용-집안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9, 51쪽.

5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0/content_60538.htm

6 중국은 1953년부터 제1차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매 5년 단위로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일련의 국가주도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부터는 계획(計劃)에서 규칙(規劃)으로 명칭을 수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

7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綱要」,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6/20010318/419582.html>

자국 내 문화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화산업 정책의 개선과 함께 문화시장의 건설 및 관리 강화, 공공 문화시설의 건설 강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의 기초 인프라 조성 및 애국 교육기지의 건설과 보호처럼 이상적인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이념적이고 도덕적인 관념 구조를 강화하는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2004년 중국통계국은 「문화 및 관련 산업분류」라는 통계분류 기준안을 처음으로 제정했는데, 이때부터 중국 문화산업 관련 경제 지표의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⁸

이후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⁹(2006~2010)에서는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문화정책 방향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문화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 문화건설 강화를 목표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대중들의 정신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주요 문화시설의 건설을 비롯한 문화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의 완비, 문화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문화산업 정책의 개선, 우량 문화기업 육성을 통한 전반적인 문화산업의 발전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내용은 2006년 10월에 발표된 「국가 “11.5” 시기 문화발전 계획의 개요」¹⁰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제11차 5개년 계획 시기 중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산업의 구조 개편과 법제화와 같이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는데,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발전 속도나 국제적인 영향력에 비해 문화산업의 성취는 부진했다. 그래서 중국

8 「문화 및 관련 산업분류(文化及相關產業分類)」의 기준과 규정은 2012년과 2018년에 일부 수정됨.

9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268766.htm

10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http://www.gov.cn/jrzq/2006-09/13/content_388046.htm

정부는 2009년에 「문화산업 진흥 계획」¹¹을 제정하고 국가 차원의 문화산업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시작했다.¹² 해당 계획은 중국 최초의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강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중국 문화산업의 목표와 원칙, 중점 임무 및 관련 정책 등이 제시되었는데,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문화산업으로 전시나 디지털 콘텐츠 등을 포함한 미디어산업을 지목했다. 문화산업 발전의 공익성과 시의성을 강조한 해당 계획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의 개요」¹³(2011~2015)에서는 국가경제와 국위 선양에 미치는 문화산업의 영향력을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사회주의 가치관 확립과 애국심 함양, 대중에게 정신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양성 및 공공문화 서비스 강화, 문화산업을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것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는데, 특히 신성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촉진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목표 설정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중국 공산당은 같은 해 10월 중앙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체제 개혁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논의했다. 논의의 결과물인 「문화체제 개혁 추진 심화가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¹⁴에서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문화강국

11 「文化產業振興規劃」, http://www.gov.cn/test/2009-09/28/content_1428549.htm

해당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선정규, 2011,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한국학연구』 37을 참고하기 바람.

12 오혜정, 2012, 「개혁개방이후 중국문화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CHINA 연구』 13.

13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http://www.gov.cn/2011lh/content_1825838.htm

해당 계획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평수, 2012, 「12.5구획으로 본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정책」, 『글로벌문화콘텐츠』 9를 참고하기 바람.

14 「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 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

건설을 목표로 문화체제의 개혁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실천 과제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과학관, 애국교육 시범기지 등 공공문화 서비스 시설 건설 강화 및 무료 서비스 제공 등의 공공 문화 사업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대중에게 기본적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언론 및 여론 관련 사업과 인터넷 등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¹⁵ 그리고 문화산업이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조정과 함께 현대적인 문화산업 시스템의 구축, 국영 및 국유 문화기업의 지원 및 강화, 문화 기술의 혁신, 국내 문화소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중의 문화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상품 개발과 소비시장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화바우처 제도와 문화관광 장려 정책의 시행 등이 제시되었다.

중국 문화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행을 총괄하는 문화부 역시 2012년에 발표한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문화산업 중대 계획」¹⁶을 통해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 및 경제사회 발전을 목표로,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했다. 주요 과제로는 핵심 경쟁력이 강한 국영(또는 국유) 문화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문화산업의 지역별 특색 강화, 문화 콘텐츠 혁신과 국가의 지도 및 규제 강화, 국내 문화소비의 확대, 문화의 과학기술 혁신 추진, 투자 및 금융 시스템 개선,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의 국제화 등을, 중점지원 사업으로는 공연예술, 엔터테인먼트,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관광, 미술, 예술 및 공예, 문화전시, 디자인, 네트워크, 디지털 등의 문화산업을 꼽았다.

問題的決定」, <http://news.sina.com.cn/c/2011-10-26/001923361344.shtml>

15 이와 관련하여 근래 코로나19 비상시국 상황에서 중국 내 언론 및 SNS 통제에 관한 보도가 국내에도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16 「文化部“十二五”时期文化產業倍增計劃」, http://zwgk.mct.gov.cn/auto255/201203/t20120301_472833.html?keywords= 해당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중국 12·5구획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을 참고하기 바람.

일찍이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샤오강(小康)사회’¹⁷를 건설하고,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인 ‘다통(大同)사회’를 실현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2개의 100년’ 목표를 설정했다. 제13차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2020년은 샤오강사회 건설의 마감 시한으로 시진핑(習近平) 또한 중국 공산당이 인민들의 행복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노력해야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16년에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의 개요」¹⁸(2016~2020)와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17년 문화부가 발표한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 문화산업 발전 계획」¹⁹에는 샤오강사회 건설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표방했다. 특히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상호 증진과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증대와 문화 보급의 증진,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수익성 증대와 문화상품의 질적 향상 추구하고 같은 문화산업의 구조 개혁, 건전한 문화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관리 시스템 강화,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의 표준화와 균등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의 감소, 문화소비의 확대를 위한 노력, 우수한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문화유산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비롯한 다양한 현대 문화산업의 통합 개발 및 발전의 가속화,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국 문화의 세계화 추진 등의 목표가 제시되었다.

17 샤오강 사회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뜻한다.

18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http://www.gov.cn/xinwen/2016-03/17/content_5054992.htm
해당 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양평섭·박민숙, 2015,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30을 참고하기 바람.

19 「文化部“十三五”時期文化產業發展規劃」, http://zwgk.mct.gov.cn/auto255/201704/t20170420_493300.html?keywords=

그간의 국가 계획(또는 계획)이 문화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제13차 5개년 계획은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을 과학기술이나 사회경제의 여러 요소와 어우러진 융합 형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사회주의 문화강국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계획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기본적인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은 이제 구축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전국의 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미술관 등 공익성 문화시설의 건설과 무료 개방 등을 비롯한 기존의 문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반면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에서 네트워크 문화 콘텐츠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 출현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문제의 발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심의와 규제는 강화하려는 정책이 포함되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2018년 3월 기존의 문화부와 국가관광국을 통합하여 문화관광부(文化和旅游部)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는 최근 떠오르는 문화관광 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문화산업에 여행 및 관광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판단된다.

Ⅲ. 중국의 박물관 관련 법규

중국의 ‘헌법(憲法)’²⁰ 제22조는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한 문학, 예술사업, 신문방송사업, 출판발행사업,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과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문화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물, 기타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박물관의 발전

20 「中華人民共和國憲法」, http://www.gov.cn/guoqing/2014-03/06/content_2630691.htm

과 문화유산의 보호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선언했다.

1. ‘문물보호법(文物保護法)’²¹

1982년에 공포된 ‘문물보호법’ 제1조에는 “문물(문화재)의 보호를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며 과학연구를 추진하고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진행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그리고 제4장 관장 문물(館藏文物)에는 박물관을 유물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유물을 활용하여 전시와 연구, 교육 등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조항으로는 제36조 “박물관, 도서관과 기타 문물수장기관은 소장한 문물에 대해 문물등급을 구분해 수장 대장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제도를 수립해 주관 문물행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문물수장기관은 전시, 과학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소장 문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혁명전통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47조 “박물관, 도서관과 기타 문물수장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화재, 도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소장 문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등이 있다.

2. ‘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칙(博物館藏品管理辦法)’²³

1985년에 공포된 ‘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칙’은 제1장 총칙에 “소장품의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소장품의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며, 소장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장품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문물보호

21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http://www.npc.gov.cn/wxzl/gongbao/2015-08/10/content_1942927.htm

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명시되어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물보호법'의 제4장에서는 유물의 수집과 관리 및 활용 등의 권한을 박물관에 부여했다. 이에 박물관 소장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칙'이 제정된 것이다. 시행령 성격의 법규로, 제1장 총칙, 제2장 접수, 감정, 등록, 목록 및 서류 작성, 제3장 수장고 관리, 제4장 소장품의 인출, 말소와 통계, 제5장 소장품의 유지관리, 수복, 복제, 제6장 보상 및 처벌, 제7장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3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3. '박물관 관리 규칙(博物館管理辦法)'²³

2005년에 문화부령으로 공포된 '박물관 관리 규칙'은 '문물보호법'을 기초로 박물관의 관리 업무를 규범화한 시행령이다.²⁴ 제1조에 “‘문물보호법’, ‘문물보호법 실시조례’, ‘공공문화체육시설 조례’, ‘사업장 등록관리 집행 조례’, ‘민간비기업단위 등록관리 집행 조례’ 등 관련 법률 규칙에 의거하여 과학적 발전관을 관찰하고, 박물관의 관리사업을 표준화하여 박물관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였다”고 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박물관의 설립, 연례 점검과 폐관, 제3장 소장품 관리, 제4장 전시와 복무(서비스), 제5장 부칙에 총 3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의 설립, 소장품 관리, 전시와 복무 등을 다루고 있어 기존의 '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칙'에 비해 좀더 포괄적이다.

22 「博物館藏品管理辦法」. <https://baike.baidu.com>에서 博物館藏品管理辦法 검색

23 「博物館管理辦法」.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6/content_457933.htm

24 이동기, 2011, 「중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체계 연구」, 『법학논총』 23-2.

4. ‘박물관 조례(博物館條例)’²⁵

‘박물관 조례’는 2015년 2월에 공포하여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는데, 200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유사한 성격의 법령이다. 앞서 살펴본 중국 문화부령인 ‘박물관 관리 규칙’과는 달리 국가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공포한 ‘행정 법규’로, 박물관의 여러 행위를 규범화하여 중국 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²⁶

대표적인 공공문화 서비스 기관인 박물관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국민의 정신적·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비국유 박물관(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설립과 변경, 폐관 과정 및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해결하고, 교육과 연구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박물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²⁷

‘박물관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박물관의 설립, 변경, 폐관, 제3장 박물관 관리, 제4장 박물관 사회 서비스,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칙의 순서이며, 전체 4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 따르면 조례는 박물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박물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의 정신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시민의 이념적·도덕적·과학적·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 박물관은 교육, 연구, 감상을 목적으로 인류활동과 자연환경의 증거물을 수집, 보호, 전시하는 등록관리기관에서 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제2조).

25 「博物館條例」,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5-03/02/content_9508.htm

26 杜鵬, 2015, 「談談《博物館條例》與《博物館管理辦法》的不同」, 『博物館研究』 2015-3.

27 「李克強簽署國務院令 公佈‘博物館條例」, http://www.gov.cn/guowuyuan/2015-03/02/content_2823829.htm

제2장에는 박물관 설립의 조건과 변경, 폐관 절차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는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유물의 보존과 관리 등 박물관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정하였는데, 기부를 받을 시 법령을 준수하고, 불법적인 유물 수집이나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장은 박물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개관 시간이나 일자, 무료 개방, 전시 및 콘텐츠의 표준화, 연령별 서비스를 위한 인원 확충, 사회교육 및 학생교육 강화 등의 내용과 함께 문화상품의 개발과 관광산업과의 연계 등 박물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리고 제5장에는 박물관이 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본래의 목적을 다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IV. 중국 동북지역 성급박물관의 운영 현황

중국 국가문물국(國家文物局)의 발표²⁸에 따르면, 2018년도 말까지 중국에 등록된 박물관 수는 5,354개로, 전년 대비 218개가 증가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중국 박물관에서는 약 2만 6,000건의 전시회와 26만 건의 교육활동이 개최되었다.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1억 명 이상 증가한 11억 2,600만 명이였다. 류위주(劉玉珠) 국가문물국 국장은 제43회 국제박물관의 날(5월 18일) 행사에서 ‘박물관 열풍(博物館熱)’은 중국 사회문화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어, 박물관이 국가의 문명 교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근래 중국 박물관의 양적·질적 성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

28 「國家文物局：全國博物館達5354家，4743家免費開放」. http://www.ncha.gov.cn/art/2019/5/18/art_1027_155130.html

장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랴오닝성박물관, 지린성박물관, 헤이룽장성박물관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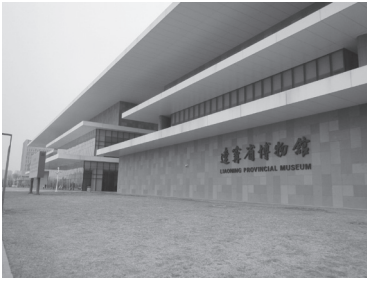
1. 랴오닝성박물관²⁹

랴오닝성 선양(瀋陽)시에 위치한 랴오닝성박물관은 신중국 수립 이후 건립된 최초의 박물관으로, 1949년에 개관한 동북박물관(東北博物館)에서 시작했다. 1959년에 랴오닝성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2004년에는 신축 건물로 이전 개관했다. 제8회 ‘전국 10대 전시회(全國十大陳列展覽精品評選)’에 선정된 바 있는 <요하문명전(遼河文明展)>³⁰을 2007년부터 상설전시로 전환하여 박물관의 대표 전시로 삼았다. 2015년에 신축 개관한 현 박물관에서는 기존의 요하문명전을 바탕으로 한 <고대 랴오닝(古代遼寧)> 상설전을 운영하고 있다. <고대 랴오닝> 전시는 ① 선사시대(史前時期), ② 하상주시대(夏商周時期), ③ 전국~수당시대(戰國至隋唐時期), ④ 요금시대(遼金時期), ⑤ 원명청시대(元明清時期)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여나 고구려를 비롯한 랴오닝 일대의 여러 다민족 문화가 중원문화의 영향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의 사업은 전시, 관람객 서비스, 수장고, 보존과학, 종합 업무 등 크게 5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박물관에는 총 22개의 전시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1층은 특별전시실과 <중국 고대 비석전(中國古代碑志展)>, <명청 옥기전(明清玉器展)>, <명청 도자기전(明清瓷器展)>이, 2층은 <요대 도자기전(遼代陶瓷

29 遼寧省博物館 홈페이지. <http://www.lnmuseum.com.cn>

30 <요하문명전>은 요하유역이 중화문명의 중요한 발상지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전시로,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전시는 ‘문명서광(文明瑞光)’, ‘상주북토(商周北土)’, ‘화하일통(華夏一統)’, ‘거란왕조(契丹王朝)’, ‘만족굴기(滿足屈起)’로 구성되어 있다. 요하문명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신석기시대 홍산문화(紅山文化)의 우하량(牛河梁)유적과 관련 유물(옥기, 채도)이 중심 테마이다.



① 박물관 외관(2016)



② <고대 료오닝> 전시실 내부(2018)

사진 1 라오닝성박물관

展), <중국 고대 화폐전(中國古代貨幣展)>, <중국 고대 불교조각전(中國古代佛教造像展)>, <중국 고대 동경전(中國古代銅鏡展)>, <중국 역대 도장전(中國歷代璽印展)>, <만주족 민속전(滿族民俗展)>이, 3층은 <고대 요녕전>이 중심이며, 그 외에도 <중국 고대 회화전(中國古代繪畫展)>, <중국 고대 서예전(中國古代書法展)>, <중국 고대 비단자수전(中國古代縹絲刺繡展)> 등이 있다. 관람객 서비스 공간으로는 다목적 강당, 귀빈실, 관객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 청소년 활동센터, 자원봉사 활동센터, 회원 활동센터, 시청각실, 기념품점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장고는 1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18개 수장고실과 소독실, 유물 촬영실, 유물 관찰실, 유물 정리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박물관의 보존과학실로는 유물 복원실, 유물 복제실, 유물 보존과학 실험실, 전문스튜디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종합 업무 분야에 전시센터, 정보센터, 과학연구센터, 문화교류센터, 교육센터, 도서관 및 기타 사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랴오닝성박물관은 중국 정부가 문화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계획 시기인 2008년부터 입장을 무료로 전환했다. 이후 관람객의 숫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숫자는 228만 명이나 된다. 라오닝성박물관은 지리적 위치상 한반도와 관계가 깊은 고고 유물을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람객도 많은 편이다.



① <우견대당> 특별전
(2019, ©랴오닝성박물관)



② <차마고도> 특별전
(2017, ©랴오닝성박물관)

사진2 랴오닝성박물관의 특별전

매년 여러 차례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는데, 자체 기획 전시는 물론이고 중국 내 다른 기관과의 연합전이나 교류전(〈복견영춘(福犬迎春-戊戌狗年新春生肖文物圖片聯展)〉, 〈차마고도(茶馬古道-西部八省區文物聯展)〉 등),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전(〈나일강의 보물(尼羅河的饋贈-古埃及文物特展)〉, 〈천년의 마요리카(千年馬約裏卡-意大利法恩扎國際陶瓷博物館典藏)〉 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합전이나 해외 교류전은 박물관 자체 소장품 전시 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색다른 전시물을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수준 높은 전시 구성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그 해에 해당하는 12지 동물에 대한 전시회(〈금계보효(金雞報曉-丁酉新春雞文物聯展)〉 등)를 다른 지역의 박물관들과 공동 개최하여 시의적절한 관심을 끌거나, 지역 예술가들의 소규모 전시회 등도 수차례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밖에도 서울대학교박물관의 〈2000년전 우리 이웃: 중국 요령지역의 벽화와 문물 특별전〉(2001), 경기도박물관의 〈요령고대문물전〉(2010), 국립대구박물관의 〈중국 요령성박물관 소장, 요나라 삼채〉(2014) 등 우리나라의 여러 박물관과도 공동 전시 및 학술활동 교류를 맺은 바 있다.

또한 랴오닝성박물관은 2008년에 중국에서 첫 번째로 ‘국가1급박물관(國家一級博物館)’으로 선정된 박물관 중 하나이다. 국가1급박물관이 갖추어야 할 기



① 특별전 연계 디지털 부스(2018)



② 특별전 연계 체험학습(2018)

사진 3 이집트 특별전(《尼羅河的饋贈-古埃及文物特展》)의 연계 활동

준 중에는 소장 유물의 수준이나 수량 외에도 무료 개방 일수, 사회 교육 부서와 인력, 일정 규모 이상의 자원봉사팀 운영, 무료 청소년 단체 관람객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정부가 공공문화 서비스와 청소년 교육 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랴오닝성의 〈12.5’ 중점 문화공연장 건설 항목(“十二五”重点文化场馆建设项目)〉에 박물관이 포함되면서 2015년에는 도서관, 과학기술관, 박물관이 한곳에 모여 있는 현재의 장소에서 새롭게 개관하게 되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박물관 건물이 새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이전한 것은 도서관, 과학관 등과 함께 문화벨트를 조성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청소년 교육이나 평생 교육 등의 사회교육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구 랴오닝성 박물관 건물은 선양시박물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러 공공문화 서비스 기관을 한 구역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을 형성하는 경향은 근래 중국의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주목된다.

랴오닝성박물관은 ‘전국청소년교육기지(全國青少年教育基地)’와 랴오닝성과 선양시의 ‘애국주의교육기지(愛國主義教育基地)’로 지정되어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며 중국 정부의 애국주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골학교나 마을, 군부대와 같이 박물관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에는 이동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팀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동박물관 서비스는 요녕성 내 여러 대학에서도 소규모 테마전을 개최하는 방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공공문화 서비스 및 사회교육을 위한 랴오닝성박물관의 적극적인 노력은 ‘정신문명 서비스 시연 창구(精神文明服務示范窗口)’, ‘청년문명호(青年文明號)’ 등의 타이틀 획득과 함께 2018년에는 ‘전국 첫 번째 레이핑 자원봉사 시범단위(全國首批學雷鋒志願服務示范單位)’로 선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중국 박물관 10대 자원봉사자의 별(中國博物館十佳志願者之星)’에도 여러 해 선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문화강국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와 애국주의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랴오닝성박물관 역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랴오닝성박물관은 ‘국가AAAA급여행지(國家AAAA級旅游景區)’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관광국(현 문화관광부)은 중국의 관광명소를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4A급 여행지는 국제적인 수준의 5A급 여행지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국가 표준에 해당하는 곳으로, 국내 명소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이처럼 박물관을 관광명소로 선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품질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은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켜 문화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2. 지린성박물관³¹⁾

1951년에 설립된 지린성박물관(吉林省博物館)은 1952년 지린시(吉林市)에서 정식 개관하였으나, 지린성 정부의 이전에 따라 1954년 창춘시(長春市)에 소재

한 위만황궁(偽滿皇宮) 경내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에는 지린성박물관과 지린성근현대역사박물관(吉林省近現代史博物館)이 현재의 지린성박물관으로 통합되었다. 이로 인해 박물관은 고대 유물이나 중세 미술품 외에 항일 및 혁명 자료와 같은 근현대 유물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여타의 성급박물관과는 달리 근현대 혁명 자료를 전시에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부터는 지린성 창춘 과학기술문화센터(吉林省長春科技文化中心)에서 새롭게 개관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린성 창춘 과학기술문화센터에는 지린성박물관 외에도 지린성디지털과학기술관(吉林省數字科技館)과 지린성과학기술관(吉林省數字科技館)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공공문화 서비스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일종의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현상은 앞에서 살펴본 랴오닝성박물관뿐만 아니라 근래 개관한 지린성 관할의 통화시박물관(通化市博物館)에서도 확인된다.

지린성박물관은 전시 공간, 수장고, 보존과학 공간, 공공 서비스 공간,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 전시라고 할 수 있는 <백산송수의 기억-지린성 역사 문화 전시(白山松水的記憶-吉林省歷史文化陳列)>는 2층 전체와 3층 일부를



① 박물관 외관(2016)



② <백산송수의 기억> 발해 전시실(2018)

사진 4 지린성박물관

31 吉林省博物院 홈페이지, <http://www.jilmuseum.org>

차지하고 있으며, <지린 이야기-지린성 비물질문화유산전(吉林故事-吉林省非物质文化遗产文化遺產展)>과 <발자취·회고·전승-지린성 고고 성취전(足迹·回望·傳承-吉林省考古成就展(1997-2016))>은 3층과 4층에 위치한다. 그 외 전시는 2016년 재개관 이후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다.

지린성박물관은 랴오닝성박물관과 달리 한동안 고고학 전시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번 개관으로 지린성 일대의 주요 유물이 공개되었다. <백산송수의 기억>은 ① 문명서광(文明曙光), ② 한당고운(漢唐古韻), ③ 송막웅풍(松漠雄風), ④ 명청화장(明清華章), ⑤ 근대지린(近代吉林)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고구려와 발해의 도성 유적과 주요 고분군 외에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여의 모아산(帽儿山), 동단산(東團山), 노하심(老河深) 유적 등의 출토 유물이 대거 전시되어 눈길을 끈다. 전시는 중국 변방지역의 여러 민족이 끊임없는 교류와 융합을 통해 중화문명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지린성박물관 역시 국민의 기본 문화권과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려는 제11차 5개년 계획에 맞춰 2008년부터 무료 관람을 시작했다. 2019년에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61만 3,000명이며, 그중 1/3가량인 24만 명은 청소년이었다.

2010년 이후 150회가 넘는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 특히 2013년에 열린



① <여명> 특별전
(2019, ©지린성박물관)



② <홍색의 흔적> 특별전
(2016, ©지린성박물관)

사진 5 지린성박물관의 특별전

〈흑토의 군혼-동북 항일 연합군 군사 전시(黑土軍魂-東北抗日聯軍軍史陳列)〉 특별전은 ‘전국박물관 10대 전시(全國博物館陳列展覽十大精品獎)’를 수상했다. 이 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시국을 맞이하여 디지털 전시로 재단장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근현대 역사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나 혁명 전시(〈홍색의 흔적(紅色的印記-慶祝中國共產黨成立95周年吉林省博物院藏文物特展)〉, 〈열화(烈火-東北抗聯英雄人物專題展)〉 등)가 다른 성급 박물관에 비해 많이 열리는 편으로, 최근에도 〈여명-지린성 인민혁명 투쟁역사전(破曉-吉林人民革命斗爭史陳列)〉이 개최되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일련의 전시 기획은 중국의 특징적인 홍색관광(紅色旅遊)의 유행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실제로도 많은 관람객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린성박물관은 랴오닝성박물관에 비해 한 등급 낮은 ‘국가AAA급여행지(國家AAA級旅遊景區)’로 지정되어 있다. 그간의 고고학 조사 및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는 〈발자취·회고·전승〉 특별전 끝부분에는 지린성의 문화재 정책³²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내용이 담겨



① 박물관의 각종 활동 명패(2018)



② 〈조국엄마를 사랑해요(祖國媽媽我愛您)〉 청소년 교육 활동 (2019, ©지린성박물관)

사진 6 지린성박물관의 각종 활동

32 지린성 문화재 정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시은, 2017, 앞의 글, 54~60쪽을 참고하기 바람.

있다. 지린성에서는 2019년에도 ‘고고 지린(考古吉林)’ 사업과 함께 혁명 문화 유산(紅色文物)의 체계적 관리와 홍색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박물관을 활용하고자 했다.³³

지린성박물관은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각종 ‘애국주의교육기지’, ‘교학실천기지(教學實踐基地)’, ‘군민공건단위(軍民共建單位)’ 등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박물관 내에서의 교육과 낙후된 시골지역에서의 여러 사회교육 활동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활발한 전시 개최와 적극적인 사회교육 활동으로 인해 지린성박물관은 2012년에는 국가1급박물관에, 2018년에는 ‘전국 초·중·고 연구 및 실습 교육기지(全國中小學生研學實踐教育基地)’에 선정되었다.

3. 헤이룽장성박물관³⁴

헤이룽장성박물관은 1923년에 설립된 동성문물연구회 진열소(東省文物研究會陳列所)에서 시작하여, 동성특별구문물연구회 박물관(東省特別區文物研究會博物館), 위북만특별구문물연구소(僞北滿特別區文物研究所), 위대륙과학원 하얼빈분원박물관(僞大陸科學院哈爾濱分院博物館), 하얼빈공업대학 상설교통경제진열관(哈爾濱工業大學常設運輸經濟陳列館), 쑹장성과학박물관(松江省科學博物館), 쑹장성박물관(松江省博物館) 등 여러 단계를 거쳤으며, 1954년에 쑹장성과 헤이룽장성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헤이룽장성박물관이 공식 출범했다.

박물관의 본관은 하얼빈시(哈爾濱市)에 소재한 옛 러시아 쇼핑몰(1906년 완공)에 있는데, 이 건물은 현재 국가1급보호건축(國家1級保護建築)으로 지정되어

33 『데일리연합』, 2019년 3월 14일. <http://dailyan.com/detail.php?number=45548&thread=22r06>

34 黑龍江省博物館 홈페이지. <http://www.hljmuseum.com>



① 박물관 건물(©헤이룽장성박물관)



② 박물관 정문(2012)

사진 7 헤이룽장성박물관 본관

있다.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쉽지 않아 1998~2017년까지는 본관(黑龍江省博物館群力分館)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06년에 2016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신축이 결정되었으나, 2020년 현재까지도 신관은 개관하지 않았다. 「헤이룽장성박물관 신관 건설프로젝트 선정보고(黑龍江省博物館新館建設工程館址選擇報告)」에 따르면 과학기술관(省科技館) 북측에 새 박물관이 건립될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문화시설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 시설과 전시 내용 등은 앞서 살펴본 랴오닝성박물관이나 지린성박물관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편이다. 상설전시로는 <헤이룽장성의 역사유물전시-숙신족 계열 유산을 중심으로(黑龍江歷史文物陳列-以肅慎族系遺存爲中心)>, <자연사 전시(自然陳列展廳)>, <러시아 교포 문화유물전(俄僑文化文物展)>, <위즈웨빙설화(于志學冰雪畫)>가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연사 전시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러시아 교포 문화유물전>은 2017년도 '전국박물관 10대 전시(全國博物館十大陳列展覽精品推介)'에서 2등상인 우수상(優勝獎)을 수상했다. 박물관의 역사유물전은 ① 북토선민(北土先民), ② 해동성국(海東盛國), ③ 금원패업(金源霸業), ④ 화하일통(華夏一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는 기본적으로 숙신족-음루족-물길족-말갈족-여진족-만주족으로 이어지는 민족

집단의 발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동성국 전시 부분에서도 발해를 속말말같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 당 왕조가 책봉한 지방의 민족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당 문화의 영향으로 마침내 ‘해동성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중국 학계의 편협한 인식이 전시 내용과 관련 패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 밖에도 박물관에서는 <매월1성진(每月一星展)>과 <매월1현진(每月一縣展)>이라는 특징적인 소규모 특별전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1성진>은 특정 유물이나 작품 등을 1개월간 독립장에 전시하고 관련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매월1현진>은 헤이룽장성 내 특정 현의 역사문화와 인물 등을 2개월가량 전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매월1성진>은 거의 매달 유물이 교체되고 있으며, <매월1현진>은 1년에 두 차례 정도 개최된다.

박물관에서 그간 개최된 여러 특별전 중에서는 <진시황 병마용 대형유물 명품전(秦始皇兵馬俑大型文物精品展)>(2003)이나 <박물관 소장 나비전(館藏蝴蝶展)>(2009) 등이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경자 역병과 헤이룽장성에 대한 큰 사랑(庚子之疫和大愛龍江—黑龍江省人民抗擊新冠肺炎疫情風采展)>과 헤이룽장성 내 최근의 고고학 조사 성과를 소개하는 <흑토문명 탐방(探尋黑土文明—黑龍江考古新成果專題展)>이 특별전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① 박물관 소장 나비전
(2009, ©헤이룽장성박물관)



② 역사분야 상설전시-해동성국(발해)
(©헤이룽장성박물관)

사진8 헤이룽장성박물관 전시

헤이룽장성박물관 역시 2010년부터 시작된 자원봉사자 활동(黑龍江省文博志願者基地)을 비롯하여 청소년 해설사(小小講解員) 활동, 다양한 주제의 청소년 박물관 교육(相約龍博), 찾아가는 (이동)박물관 교육(流動博物館) 등 여러 사회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박물관은 ‘국가1급박물관’(2012년 지정) 외에도 ‘국가중점문화보호단위(全國重點文物保護單位)’, ‘국가과학보급교육기지(國家科普教育基地)’, ‘성급애국주의교육기지(省級愛國主義教育基地)’, ‘국가AAA급여행지(國家AAA級旅遊景區)’, ‘하얼빈시 도덕교육기지(哈爾濱市德育教育基地)’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1년에는 ‘헤이룽장성 언어문자공작 선진단위(黑龍江省語言文字工作先進單位)’, 2003년에는 ‘헤이룽장성 3·8홍기 모범집단(黑龍江省三八紅旗先進集體)’,³⁵ 2005년에는 ‘성급 애국주의교육기지 모범집단(省愛國主義教育基地先進集體)’으로 선정되었다.

V. 중국의 문화정책과 박물관

중국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 이데올로기 목적 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대중의 사상적인 측면을 다루는 문화사업과 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중 문화사업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문화기관(박물관, 기념관, 도서관, 문화관, 과학기술관 등)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각종 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화사상을 계승 발전하고 건전한 정신문화를 향유하는 등의 정부가 목표하는 안정된 국가 체제의 유지와 긍정적 발전을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을 의미한다. 근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가 크게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 시행에 박물관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5 국제 여성의 날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여성 집단에게 수여되는 명예 타이틀

1. 박물관을 통한 국가 문화정책의 시행

중국의 ‘문물보호법’ 제40조에는 문화재의 수집과 보존 활동을 하는 박물관은 소장 유물을 활용한 전시와 과학연구 등을 통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혁명전통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박물관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지정하여 각종 문화사업에 적극 이용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인 2008년부터는 국가박물관에서 전국의 공공 박물관, 기념관, 그리고 전국 애국교육 시범기지를 모두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³⁶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무료 개방으로 늘어난 관람객을 효과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전반적인 시설 개선과 함께 전시 수준 향상, 해설사 인력 증원, 자원봉사팀의 지원, 디지털 박물관의 활용 등을 강조하고, 전시와 교육 그리고 공개 서비스를 중심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³⁷ 이처럼 중국 정부가 박물관의 무료 개방 정책과 함께 전시와 홍보, 교육 기능또한 강화하도록 하여 자국민에는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창구로 박물관을 활용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공공문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국가박물관은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이라는 중국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박물관 사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개요(2011~2020년)」³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문화체제 개혁 추

36 「關於全國博物館、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 http://www.gov.cn/gzdt/2008-02/01/content_877540.htm

37 무료 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 박물관의 서비스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박물관은 관람 환경, 전시 수준, 직원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대중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王莉, 2020, 「博物館免費開放後的公共服務分析」, 『品位經典』 2020-04.

38 「博物館事業中長期發展規劃綱要(2011~2020年)」, http://www.ncha.gov.cn/art/2012/2/2/art_2237_42262.html

진 심화가 사회주의 문화 대발전과 대번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 문제에 대한 결정(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 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에 따라 공공 문화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문화 서비스 시설과 애국교육 시범기지 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 심각한 개인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균형 발전이라는 포용적 성장이 강조되었고, 정치 이데올로기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정책에서도 사회주의 문화의 발전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국가문물국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박물관은 유물의 수집 및 보호, 전시, 서비스의 수준이 여전히 높지 않고, 사회 교육 또한 아직까지 체계화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박물관 사업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연구 능력, 과학 및 기술 지원, 전문 인력 구성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계획에는 박물관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소장 유물 관리 및 보호 강화, 전시 수준의 향상, 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박물관 평가를 통해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전체적인 역량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디지털 박물관을 비롯한 새로운 주제의 다양한 박물관과 전문화된 사립박물관의 비율을 늘리며, 지방의 중소 박물관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원이 박물관을 찾도록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즉,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박물관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산당과 국무원은 2015년에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촉진에 관한 의견」³⁹⁾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에는 초등 및 중등 학교의 학생들이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및 과학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공공문화 시설의 수준 업그레이드 및 공공문화 서비스 제도의 구축을 통한 문화소비의 육성과 장려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공공문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

39 「關於加快构建現代公共文化服務體系的意見」. http://www.gov.cn/xinwen/2015-01/14/content_2804250.htm

이기 위한 공공문화 시설(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기념관, 미술관)의 무료 개관 및 국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지속하기로 했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을 한곳에 조성하는 방식 역시 해당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박물관 조례’의 제정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2015년에 박물관의 설립과 폐관,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회 서비스 등의 규정을 정함으로써 박물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박물관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제30조 1항에는 박물관의 전시의 ‘주제와 내용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안보와 민족 단결을 보호하며 애국심을 장려하고 과학정신을 옹호하며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우수문화를 전파하며 좋은 관습을 배양하고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며 사회문명을 진흥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 전시에서도 애국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제33조에는 ‘국가는 박물관의 무료 개방을 권장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무료로 개방되는 박물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무료개방하지 않는 박물관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성년학생, 교사, 노인, 장애인과 군인 등에는 무료 또는 다른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박물관의 무료 개방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박물관의 무료 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 정부는 ① 무료 개방에 따른 관련 경비를 재정 예산에 포함하여 입장료 수입의 감소분을 확실히 보장하고, ② 박물관 및 기념관 관련 문화상품에 대한 조세 혜택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운영 경비의 출처를 넓히도록 장려하며, ③ 박물관 등급제를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정부가 더 많은 경비를 투입한다는 원칙을 세워 재정 지출을 보장하고 있다. 무료 개방하는 박물관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정부의 지원금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박물관 개방 정책이 시행된 2008년의 특별 자금은 1억 7,000만 달러였지만, 2011년에는 4억

3,000만 달러의 보조금이 집행되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두어 현지 박물관의 무료 개방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⁴⁰

또한 제34조에는 ‘국가는 박물관이 소장품을 연구하고, 문화 콘텐츠와 관광 등의 산업과 결합하여 파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박물관의 발전 능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박물관을 미래 산업인 문화 및 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박물관 등급제의 시행

중국 국가문물국에서는 박물관의 운영 관리 강화 및 사회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 평가 시행 기준’⁴¹을 마련하여 국가가 인준하는 3단계의 박물관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중국박물관협회에서 전국박물관평가 위원회를 조직하여 평가 작업을 진행한다.⁴² 박물관 등급제는 문화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된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처음 시행되었다. 2008년 5월 18일 국제박물관의 날에 베이징의 고궁박물관(北京故宮博物院)과 랴오닝성박물관 등이 포함된 83개의 박물관이 국가1급박물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에 이루어진 2차 평가에서는 지린성박물관과 헤이룽장성박물관은 국가 1급박물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3차 평가는 2017년에 시행되었다.

‘박물관 평가 시행 기준’은 공공 문화상품의 제공 및 공공 문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의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고, 박물관의 유물 수집과

40 XIONG ZHIMING, 2020, 「중국박물관의 대외교류 발전 연구-랴오닝성박물관, 베이징 고궁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쪽.

41 「博物館評估暫行標準」. <http://www.chinamuseum.org.cn/plus/view.php?aid=79>

42 중국 박물관 평가 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방, 2018,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한·중 박물관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중국 박물관 등급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67쪽을 참고하기 바람.

보호, 과학 연구, 특히 전시와 서비스 품질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박물관의 자체 활성화 및 사회 공헌 비율 향상, 사회적 관심과 감독이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평가의 배점은 박물관의 통합 관리와 인프라 분야 200점, 소장품 관리와 과학연구 분야 300점, 전시 및 사회 서비스 분야 500점으로, 도합 1,000점이 만점이다. 종합점수 800점 이상이 되어야 국가1급박물관이 될 수 있으며, 2급과 3급 박물관의 기준 점수는 600점과 400점이다.

2018년 말까지 중국의 전체 박물관 수는 5,354개인데, 이 중에서 국가1급 박물관은 130개, 국가2급박물관은 286개, 국가3급박물관은 439개이다. 나머지 4,500여 개에 달하는 박물관은 아직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등급이 부여된 박물관에는 재정 지원의 혜택에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박물관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가 지워진다.

4.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서의 박물관

중국에서 박물관은 문화유산을 수집, 보호, 전시하는 중요한 장소이면서, 사회 교육의 중요한 기관으로써 중국의 교육체제를 보완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국민 교육의 기획에도 책임이 있다.⁴³ 앞선 사례 검토에서 확인된 것처럼 중국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회교육 중 특히 청소년 대상 교육에는 애국주의가 중심에 있다.

198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1조는 ‘문화재(문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적 연구의 전개에 유리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애국주의와 혁명전통교육을 추진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특별히 본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중국 정부가 중화민족주의를 핵심 요소로 하는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애국주의 교육에 문화유산을

43 刑成朋, 2014, 「論博物館在國民教育建設中的作用」, 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중요한 매개체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애국주의 교육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문화유산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는 1991년 국가교육위원회, 문화부, 국가문물국 등과 공동으로 「문화재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애국주의와 혁명전통 교육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充分運用文物進行愛國主義和革命傳統教育的通知)」를 전국에 하달하여, 문화유산이 애국주의의 확립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1994년에는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개요(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를 통해 박물관, 기념관, 열사기념건축물, 문물보호단위, 역사유적, 명승지 등에서 청소년을 중점 대상으로 애국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 해인 1995년에는 전국에 애국주의 교육기지 100곳을 1차로 선정하였다. 1997년 국무원에서도 「문화재 업무의 강화와 개선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務院關於加強和改善文物工作的通知)」를 통해 문화유산을 통한 애국주의 함양과 이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시켰다. 각 지역의 문화유산 관련 기관과 박물관은 각종 전시와 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혁명전통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일부 혁명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⁴⁴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제10차 5개년 계획에도 애국주의 교육기지의 건설과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중국 국공립 박물관의 입구에는 대부분 ‘애국주의 교육기지(愛國主義教育基地)’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사진 6〉-①). 근래 문화유산과 박물관을 통한 애국주의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중국 각지의 박물관이 그 본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⁵

44 張玉艷, 2010, 「新時期加強和改進愛國主義教育基地工作對策研究-以河北省爲例」, 『博物館研究』 2010-3; 정준호, 2015, 「중국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애국주의의 영향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144쪽.

45 黃穎, 2019, 「新媒體環境下博物館在愛國主義教育方面的思考」, 『文物鑒定與鑒賞』 2019-10.

최근 중국 동북지역의 박물관은 동북공정(東北工程)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0년대 초중반과는 달리 부여, 고구려, 발해 전시에 중원왕조의 직접 지배를 받는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수민족 지역의 문화는 모두 중원의 중화문명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다는 식의 전시구성이 확인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중화문명의 위대성, 전파성, 강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그 영향을 받은 주변의 소수민족이 모두 중화대가정의 일원으로 편입되었다는 흐름이다.⁴⁶ 필자가 직접 경험한 바에 따르면, 통화시박물관이나 지안시박물관(集安市博物館), 지린시박물관(吉林市博物館) 등의 중국 동북지역 지방 박물관에서는 유독 한국인만 관람이나 사진 촬영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다.⁴⁷ 통화시박물관에서는 전시장 내 사진 촬영은 물론 한국어 설명이 제지를 당하기도 했고, 한국인 인솔자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당국에 보고한 경우도 있었다. 지방박물관의 이러한 상황은 고대 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왜곡하면서 발생한 국가 간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또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처럼 근래 중국에서는 문화유산을 매개체로 한 애국주의가 강조되면서, 문화유산을 수집, 보호, 전시, 연구, 교육하는 기능을 가진 박물관이 애국주의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한층 강화된 중화민족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46 김현숙, 2017,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48회 학술대회 자료집, 70쪽.

47 중국의 국가급, 성급박물관의 경우에는 외국인도 관람과 사진 촬영 등의 활동이 자유롭다.

5. 문화유산 관광과 박물관

현대적 관광의 대표적 장르 중 하나인 문화유산⁴⁸ 관광(heritage tourism)은 과거를 문화상품의 형태로 재현, 소비하는 활동으로써 일차적으로 시장과 상품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경제적 과정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선택적이고 가치가 개입된 문화적 과정으로서 과거의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힘들이 경합하는 복잡한 ‘기억의 정치학’을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홍색관광(紅色旅游)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관광산업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 홍색관광은 사회주의 혁명 영웅들의 탄생지나 기념관, 홍군의 대장정 루트, 국공내전과 항일전쟁 전적지 등을 찾아 사회주의 혁명의 영광과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되새기고 학습하는 활동을 테마로 한 중국 특유의 문화유산관광이다.⁴⁹ 붉은 색상을 선호하는 중국인에게 홍색은 일상생활에서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인식되는 것 이외에, 혁명의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하여 중국 공산당의 창당 초기부터 정치선전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⁵⁰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당 관련 전시의 개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동북3성의 성급박물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전역의 박물관에서 개최된 공산당의 역사와 혁명 관련 특별전을 들 수 있다. 혁명 당시 사용하였던 물건이나 관련 사진, 문서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충분히 이용하여 전시를 구성

48 중국의 국가지정 역사문화유산과 관련한 내용은 오일환, 2015b, 「중국의 선사고고 유적지와 유적지박물관-한·중 선사유적지박물관의 비교연구를 위한」, 『박물관학보』 29를 참고하기 바람.

49 박중환, 2011,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방개혁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기」, 『현대중국학연구』 13-1, 119쪽.

50 이광수, 2013, 「중국공산당의 정치선전과 홍색문화열」, 『동북아연구』 28-2, 326쪽.

하고, 전시 해설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관람객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도심의 전통적인 박물관 외에도 국가고고유적지공원(國家考古遺址公園)⁵¹을 비롯한 대유적지(大遺址)⁵²와 연계한 유적지박물관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유적지박물관의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고 애국주의 교육기구나 청소년 교육기지 등으로 지정하며 주변의 관광지와의 연계하는 움직임이 확인된다.⁵³ 중국 동북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구려 유적 외에도 최근 조사와 정비가 이루어진 주요 고구려 유적이나 발해 유적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물관을 관광자원화하고 있다.⁵⁴

전술한 것처럼 중국 정부는 박물관의 공공문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박물관의 무료 개관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정부의 문화 활성화 정책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나 각종 교육 활동이 증가하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와 고품격 문화적 수요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중국의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화와 역사 그리고 관광을 통합하여 개발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고, 박물관은 중요한 교육 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문화 자원이자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

51 ‘국가고고유적지공원관리법(國家考古遺址公園管理辦法)’, 2009. http://www.china.com.cn/policy/txt/2010-01/07/content_19196178.htm

52 ‘대유적지보호전문경비관리법(大遺址保護專項經費管理辦法)’에 따르면, 대유적은 중국 고대 역사의 각 발달단계에 정치, 종교, 군사, 과학기술, 공업, 농업, 건축, 교통, 수리 등 역사문화 정보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고, 가치도 중하며, 영향도 큰 대형 취락, 성터, 궁실, 능침 묘장 등의 유적, 유적군 및 문화 경관을 갖추고 있다.

53 오일환, 2015a, 「중국의 고고유적지공원과 선사유적지박물관 현황과 실태」, 『글로벌문화콘텐츠』 21, 179쪽.

54 고광의, 2010, 「중국의 고구려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고구려발해연구』 36; 김봉숙, 2019, 「중국의 동북공정과 발해사 인식 현황」, 『동서인문학』 56; 양시은, 2017, 앞의 글.

어가고 있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는 국가 중점 산업정책에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정책에는 문화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소비를 유도하며 관광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최근 중국 정부가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 문화부가 최근 문화관광부로 확대개편된 것 또한 상통하는 흐름으로 이해된다.

VI. 맺음말

근래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물질적인 소비 외에도 정신적인 만족감을 중시하는 문화소비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에 문화가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문화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다. 중국의 문화산업은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 주도의 문화사업과 소비 중심의 문화산업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1세기 들어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공공문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박물관 역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박물관은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왔다. 이는 본문에서 살펴본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북공정 이후 한층 강화된 중화민족주의가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에서 애국주의 교육기지인 박물관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혁명전통을 전시와 사회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주요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문화 서비스를 강화한 결과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박물관을 찾게 되었다. 중국 정

부는 박물관의 전시와 홍보, 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민에게는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있다. 전체 5,350여 개가 넘는 박물관 중에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박물관에는 국가1급박물관부터 국가3급박물관까지의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재정을 지원하고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된 중국 정부의 문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은 중국 박물관의 전례 없는 발전을 가져왔다. 무료 개관, 박물관 수의 폭발적인 증가, 다양한 전시회 개최와 청소년 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교육 활동 등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증대로 이어졌다. 물론 다양한 주제 박물관의 부족, 유물 관리, 전시의 품질이나 박물관 서비스,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중국 박물관의 질적인 성장 또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근래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혹은 애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홍색관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박물관은 매력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의 장은 아니지만, 박물관이 공공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 국가가 목표하는 이데올로기의 정책적 시행과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로 적극 활용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채지영, 2015, 『주요 국가 문화산업 정책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논문

고광의, 2010, 「중국의 고구려 역사문화 관광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고구려발해연구』 36.

김봉숙, 2019, 「중국의 동북공정과 발해사 인식 현황」, 『동서인문학』 56.

김현숙, 2017, 「박물관 전시를 통해 본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상고사』, 한국상고사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48회 학술대회 자료집.

김병수, 2012, 「12.5규획으로 본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정책」, 『글로벌문화콘텐츠』 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중국 12·5규획 기간 문화산업 배증계획의 주요 내용」,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박중환, 2011, 「홍색관광과 기억의 정치학: 개방개혁 후 중국, 가까운 과거와 관계 맺기」, 『현대중국학연구』 13-1.

선정규, 2011, 「중국 문화산업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목표」, 『한국학연구』 37.

XIONG ZHIMING, 2020, 「중국박물관의 대외교류 발전 연구-랴오닝성박물관, 베이징 고궁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시은, 2017, 「중국의 고구려 세계문화유산 활용-집안 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59.

양평섭·박민숙, 2015,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3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일환, 2015a, 「중국의 고고유적지공원과 선사유적지박물관 현황과 실태」, 『글로벌문화콘텐츠』 21.

_____, 2015b, 「중국의 선사고고유적지와 유적지박물관-한·중 선사유적지박물관의 비교연구를 위한」, 『박물관학보』 29.

- 오혜정, 2012, 「개혁개방이후 중국문화산업의 정책적 발전과 주요 특징에 관한 연구」, 『CHINA 연구』 13.
- 왕진경, 2016, 「중국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수, 2013, 「중국공산당의 정치선전과 홍색문화열」, 『동북아연구』 28-2.
- 이동기, 2011, 「중국의 문화재 보호 관련 법률 체계 연구」, 『법학논총』 23-2.
- 이상훈·허유미, 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동북지역」, 『지역 기초자료』 16-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방, 2018,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한·중 박물관 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중국 박물관 등급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동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준호, 2015, 「중국 문화유산정책에 대한 애국주의의 영향분석」, 『한국비교정부학보』 19-1.
- TANG KE, 2016, 「중국 박물관 교육의 특징과 평생교육적 함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연, 2017, 「중국감오전쟁박물관의 애국주의 교육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杜鵑, 2015, 「談談《博物館條例》與《博物館管理辦法》的不同」, 『博物館研究』 2015-3.
- 王莉, 2020, 「博物館免費開放后的公共服務分析」, 『品位經典』 2020-04.
- 張玉艷, 2010, 「新時期加強和改進愛國主義教育基地工作對策研究-以河北省為例」, 『博物館研究』 2010-3.
- 刑成朋, 2014, 「論博物館在國民教育建設中的作用」, 鄭州大學 碩士學位論文.
- 黃穎, 2019, 「新媒體環境下博物館在愛國主義教育方面的思考」, 『文物鑒定與鑒賞』 2019-10.

기타 자료

- 「關於加快構建現代公共文化服務體系的意見」.
- 「關於全國博物館、紀念館免費開放的通知」.
- 「國家“十一五”時期文化發展規劃綱要」.

「國家考古遺址公園管理辦法」.
 「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綱要」.
 「大遺址保護專項經費管理辦法」.
 「文化及相關產業分類(2018)」.
 「文化部“十三五”時期文化產業發展規劃」.
 「文化部“十二五”時期文化產業倍增計劃」.
 「文化產業振興規劃」.
 「博物館管理辦法」.
 「博物館事業中長期發展規劃綱要(2011-2020年)」.
 「博物館藏品管理辦法」.
 「博物館條例」.
 「博物館評估暫行標準」.
 「中共中央關於深化文化體制改革,推動社會主義文化大發展大繁榮若干重大問題的決定」.
 「中共中央關於制定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個五年計劃的建議」.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三個五年規劃綱要」.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一個五年規劃」.
 「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中華人民共和國憲法」.

遼寧省博物館 홈페이지.
 吉林省博物院 홈페이지.
 黑龍江省博物館 홈페이지.

문화정책에 따른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

양시은

중국 문화산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국가적 이데올로기를 홍보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의 문화사업과 소비 중심의 문화산업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정부는 제12차 5개년 계획 시기를 전후한 2010년부터 문화산업을 중국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중국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랴오닝성박물관, 지린성박물관, 헤이룽장성박물관의 사례를 통해 중국 문화정책에 따른 박물관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박물관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왔으며, 애국주의 교육기지로써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문화와 혁명전통을 보여주는 전시나 사회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방식으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중국 동북지역 박물관의 여러 활동에서도 동북공정 이후 한층 강화된 중화민족주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공공문화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박물관을 무료로 개

방하고 있다. 무료 개관에 맞춰 전시와 홍보, 교육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창구로 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박물관 등급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5,350여 개가 넘는 박물관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850여 개 박물관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문화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10년 이상 지속하면서 중국 박물관은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다. 무료 개관, 박물관 수의 폭발적인 증가, 다양한 전시회 개최 및 청소년 교육을 위시한 각종 사회교육 활동은 관람객의 증대로 이어졌다. 또한 근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애국주의 기반의 홍색관광에서도 박물관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제어: 중국, 문화산업, 박물관, 랴오닝성박물관, 지린성박물관, 헤이룽장성박물관

ABSTRACT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Museums in Northeast China according to Cultural Policy

Yang Sieun

One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ultural industry is the coexistence of cultural business and consumption-oriented cultural industry as a means of promoting and strengthening national ideology. The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cultural policies i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Since 2010, around the time of the 12th Fiv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Chinese government has set a goal of fostering the cultural industry as a key industry for the Chinese economy. In this paper, I took the example of Liaoning Province Museum, Jilin Province Museum and Heilongjiang Province Museum to look at the role and characteristics of the museum in Chinese cultural industry policy.

In the 21st century, the Chinese government began to discuss cultural industry policies. In particular, museums in charge of public

cultural services have become a main target of the policy. The museum has been actively us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o emphasize patriotism and nationalism, with the core values of socialism as a top priority. In China, the museum is a patriotic educational base, and it promotes patriotism to teenagers and visitors through exhibitions and social education of the excellent historical culture and revolutionary tradition of the Chinese people.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 policy to open museums free of charge since 2008 to strengthen public cultural services. And the government has made the museum's exhibition, publicity, and education functions even stronger. So, the government has made the Chinese people feel proud of the country and the foreign tourists understand the history and culture of China through the museum. In addition, the rating system is implemented to manage the quality of museums by classifying from national first-class museums to national third-class museums.

The government's full support policy, which lasted more than 10 years, has brought about the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Chinese museums. Free opening, explosive increase in the number of museums, various exhibitions, and various social education activities such as youth education led to the increase of visitors to the museum. It is also confirmed that museums are an important part of the red tourism based on patriotism.

Keywords: China, Cultural Industry Policy, Museum, Liaoning Province Museum, Jilin Province Museum, Heilongjiang Provinc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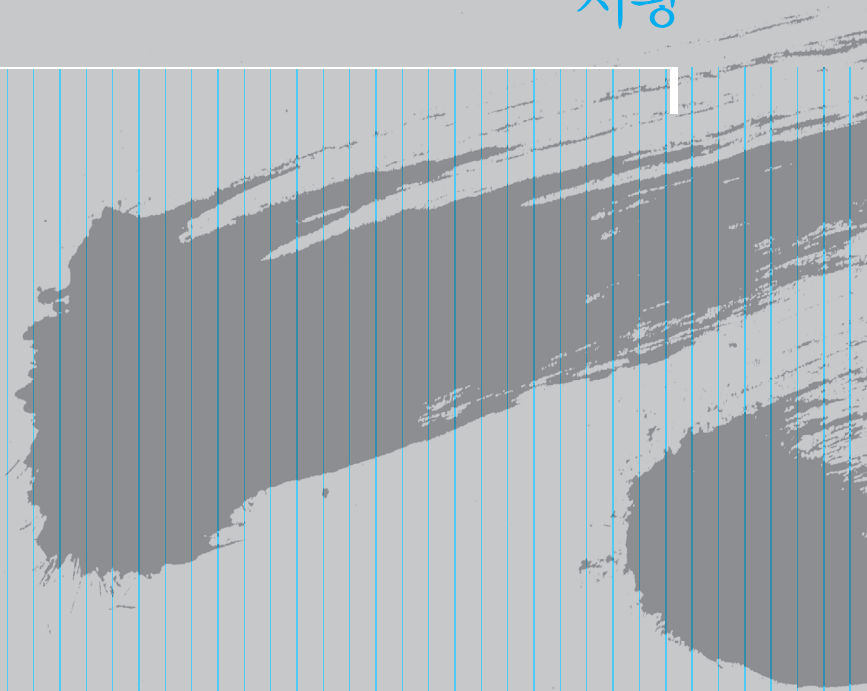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637년 청나라의 조선 정복 전쟁

– 구범진,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까치, 2019)에

대한 서평

계승범 |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지난 2019년에 국내 역사학계는 병자호란을 천착한 학술서 두 권을 품에 안는 기쁨을 누렸다. 2009년에 한명기가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를¹ 출간한 이래 다소 뜸하다가, 작년 2월 구범진이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을,² 4월에는 허태구가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라는³ 굵직한 저서를 잇달아 출간하였다. 이 3종의 학술서는 연구시각과 내용에서도 각기 독특한 장점을 자랑한다. 한명기의 연구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대 사건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대하여 조명함으로써, 병자호란 연구의 지평을 넓힌 의의가 있다. 구범진의 연구는 그동안 조선 위정자의 무능함을 결과론적으로 비판하는 데 익숙한 국내 학계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어, 침공 당사자인 홍타이지를 주인공 삼아 매우 정치한 미시적 전쟁사의 장을 열었다. 허태구는 전쟁 당사자의 입장이나 관점의 확대 차원을 넘어 병자호란을 예교(禮敎)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와 인식론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전쟁사의 지평을 거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 서평의 대상은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이다. 평자는 작년 12월에 이미 『병자호란과 예(禮), 그리고 중화』에 대한 비평논문을 발표한 바 있기에,⁴ 이번에는 중국사 전공자인 구범진의 걸작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서평은 일반적인 서평 형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으려 한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서평에서 상세히 제공하였으므로,⁵ 여기서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최고 장점인 전쟁의 ‘디테일’과 저자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 마치 지정 토론하듯이 몇 가지 제기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1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 구범진, 2019, 『병자호란, 홍타이지의 전쟁』, 까치.

3 허태구, 2019,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4 계승범, 2019, 「삼전도항복과 조선의 국가정체성 문제」, 『조선시대사』 91.

5 허태구, 2019, 「병자호란 연구의 새로운 정초」, 『인문논총』 73-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이 책의 수월성(秀越性)은 명확하다. 학술서치고는 매우 상세하고도 알기 쉬운 목차만 보아도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기승전결을 타며 촘촘하게 흘러갈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추리소설 같은 구성과 풍부한 내러티브(narrative)는 이 책을 한번 잡으면 손을 놓지 못하게 한다. 학술서와 일반 교양서를 굳이 구분하지 않는 영어권 학계의 흐름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함을 보여준 수작이다. 각 전투에 대한 파악도 없이 참패라는 결과만으로 병자호란을 재단한 국내 학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만주어 자료까지 섭렵한 고증을 통해 전쟁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것은 이 책의 압권이다. 지금까지 정작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병자호란의 주체와 전쟁의 ‘디테일’을 성공적으로 친착하였다. 이 밖에도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고중에 입한 점, 관련 지도를 적소에 잘 제시한 점, 강화도 함락 과정에서 물리적 해양 환경이라는 주요 변수를 꼼꼼하게 고증한 점, 정월 17일부터 청나라 지휘부가 보인 극적인 태도 변화의 이유 등, 이 책의 장점은 밤을 새워 열거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다만 지면에 제한이 있기에, 토론거리에 중점을 두어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해본다.

▶ ‘홍타이지의 전쟁’이 어떻게 ‘병자호란’일 수 있을까?

이 책의 주어이자 주인공은 홍타이지다. 제목만 보아도 이점은 분명하며, 저자도 이를 거듭 밝혔다. 특히 저자는 “홍타이지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 홍타이지는 왜 병자호란을 일으켰는가?”라는(34쪽) 질문을 던졌다. 청나라 쪽에서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는 시각이 별로 없다시피 한 국내 학계에 던지는 신선하고도 당연한 문제 제기다. 다만, 조어상(造語上)의 문제가 한눈에 보인다. 평자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접한 순간 이런 의문이 일감으로 떠올랐다. 모순어법(oxymoron)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언’에서 이에 대한 저자의 해명을 볼 수 없었다. 책의 결론부도 사실상 없다 보니, 독자로서는 이런 궁금증을 책만 읽어서는 해소할 수 없다. 한글 독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 병자호란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쓴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그래도 이 책이 홍타이지를 주인공 삼아 집필한 국내 최초의 저서임을 고려하면, 이런 모순어법을 사용한 저자의 의도를 서두에

서 간략하게라도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 양국의 전력 비교는 충분한가?

저자는 사료의 치밀한 대조와 분석을 통해 병자년 침공에 참여한 청군 전투병을 3만 1,000여 명 정도로 추산하였다. 쿠들러(노복) 1만 1,000여 명을 합치면 약 4만 5,000여 병력이(42~60쪽) 한반도를 침입한 것이다. 논증이 정치하므로 저자의 추산은 설득력이 매우 높다. 다만, 이런 고증을 위해 저자는 모두 열여덟 쪽의 지면을 할애하였다. 부록, 사진, 지도 등을 제외한 본문 분량(약 290쪽)의 6%를 웃돈다. 저자가 청군의 규모를 고증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쟁 상대인 조선군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면을 별로 할애하지 않았다. 저자 자신도 “전쟁에는 교전 상대가 있다. 아군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한들 적군이 아군보다 훨씬 더 강했다거나 훨씬 더 잘 싸웠다면 승리할 수 없는 법이다”라고(74쪽) 하면서 프랑스의 마지노선까지 언급하였다. 그런데도 비교의 출발점인 양국 병력의 비교를 위한 소절조차 설정하지 않은 점은 다소의 아하다.

더 나아가, 전쟁이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는 병력 규모도 중요하지만, 군사 1인당 전투력도 그에 못지않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 저자도 이점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하지만 양국의 전투력이 책의 군데군데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탓에, 독자로서는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다. 화력에 대해서도 청나라의 홍이포(紅夷砲)를 두어 군데에서 설명했을 뿐 다른 화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 특히 방어에 치중하던 조선군의 화력과 그 배치에 대해서도 논하지 않았다. 꼼꼼한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둔 이 책에서 전쟁 당사자인 청나라와 조선의 전력 비교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크게 아쉽다. 조선 피로인의 규모로 알려진 50만, 60만 규모가 터무니없음을 “여담 삼아” 부각하는 데 거의 네 쪽(60~64쪽)이나 할애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숫자를 그대로 믿는 국내 학자가 요즘엔 거의 없으므로) 차라리 그 지면에 양국의 전력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 침공의 핵심 원인이 과연 나덕헌·이확 문제 때문일까?

전쟁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치·외교·군사·경제 등 허다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발생한다. 이는 전쟁사의 상식이다. 그런데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요인이나 원인을 거의 다 부정하고 유독 나덕헌·이확 문제만 클로즈업하였다. 구실에 불과한 절화교서를 원인으로 보며 침공을 정당화한 홍타이지의 논리에 빠지는 꼴이라고까지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저자의 말대로 절화교서는 구실에 불과하고 나덕헌·이확 사건이 핵심 원인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홍타이지는 왜 나덕헌과 이확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까? 명나라 사신까지 포함하여 당시 천하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나덕헌과 이확이 홍타이지에게 그야말로 ‘깡판’을 쳤고 그것이 바로 홍타이지가 친정(親征)을 결심한 핵심 이유였다면, 홍타이지로서는 그 둘을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 둘을 압송하여 “너희 국왕이 짐에게 항례를 올렸는데, 너희는 지금도 내게 고두례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적어도 떠보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홍타이지는 그 둘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영똥하게도’ 삼학사만 끌고 갔다. 이는 홍타이지가 관대했기 때문일까? 혹시라도 나덕헌·이확 사건은 홍타이지가 친정을 결정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책의 서두에서는 침공의 원인을 논하면서 나덕헌·이확의 이름을 한껏 부각했는데, 정작 결말(원인의 해소) 부분에서는 그 둘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허전하다.

아울러, 만일 나덕헌·이확이 삼궐구고두를 행하였다면, 과연 홍타이지는 인조가 직접 칭신(稱臣)하지 않은 조선을 침공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나덕헌·이확 사건이 친정의 한 요인이자 계기였음은 분명하나, 그것만으로는 전쟁의 발발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기존 해석을 인정하면서 나덕헌·이확 문제를 추가로 강조했으면 설득력이 훨씬 높았을 것 같다.

▶ 병자호란 참패는 정녕 인재(人災)가 아닐까?

저자는 “병자호란 패전의 참극을 무책임과 무능력의 극을 달린 조선의 위정자들이 초래한 사상 최악의 인재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라고(74쪽) 하였다. 또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조선 조정이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확연히 드러났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술함으로써 기존의 인재론을 비판하였다(73~83쪽). 그러나 문제가 적지 않다.

저자 스스로 전쟁에는 교전 상대가 있음을 강조했듯이, 상대방의 전력 및 작전 가능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조차 없이 자기 생각(정묘호란의 경험)으로만 ‘나름대로’ 준비한 방어책에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전쟁 준비를 자기중심적으로만 하였고 그것이 참혹한 패배의 원인임은 이 책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다. 저자도 “조선은 지피지기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라고(111쪽) 하여, 조선군의 자기중심적 준비 실태의 맹점을 지적하였다. 전쟁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지피지기는 병가의 상식인데, 그걸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중심적으로 방어 전략을 짠 게 인재가 아니라면, 역사상 어떤 사례를 인재로 불러야 할까?

또한 병력만 배치하면 그게 충분한 준비일까? 왜란 중에도 호란 중에도 조선은 왜 그렇게도 병력이 부족했나? 강화도에서는 왜 북문을 지킬 병사조차 확보할 수 없었는가? 군역 문제라는 근본적 구조 문제를 도외시한 위정자들의 안일함과 이기적 태도야말로 참패의 구조적 원인(遠因)이자, 주요 배경이 아닐까? 일반 대중이 당시 조선의 위정자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그 점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싸웠으나 상대가 워낙 강한 탓에 역부족으로 패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후대인이 그런 패배에 돌을 던질까? 그런데 이런 근본 문제는 함구한 채, 조선 조정이 ‘나름대로 준비’했음을 강조하고, 심지어 마지노선 문제와 연동하여 그것을 인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가로서는 솔직히 수긍하기 힘들다.

직도(直擣)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도성 직도 전략은 공격자 측에서는 승리의 확신이 분명할 때만 쓸 수 있는 전략이다. 퇴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산성에 입보한 조선군은 무슨 수로 적의 퇴로를 막겠다는 작전을 세웠는가? 성 밖으로 나오면 그대로 패배뿐임은 저자도 인정하였는데 말이다. 조선 영내로 깊숙이 들어온 적병의 퇴로를 막을 방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이라 부를 수 있을까? 저자도 책에서 지적했듯이 당대에도 이미 많은 신료가 직도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을 거듭 거론하였다. 그런데 정작 전운이 짙어가던 전야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오히려 저승의 목소리까지(115쪽) 가상으로 끌어들이 무능하고 안일한 위정자들을 변호하는 저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저자는 강화도 함락을 인재로 보는 통설도 비판하였다(167쪽). 그러나 청군이 구사한 ‘뚝박의’ 작전에 허를 찔렸다고 해서 강화도의 함락을 불가항력적이라거나 인재가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도 곤란하다. 지구전을 구상했다는 조선 조정은 도대체 강화도 방어를 위해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였나? 침공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도 정묘호란 때의 경험에 기대어 입도(入島)를 즉시 실행하지 않은 점은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강화도 방어를 위한 충분한 식량과 병력(동원 체계) 그리고 무기 정도는 현지에 충분히 갖춰 놓는 것이 상식 아닐까? 그런데 정작 저자의 고증에 따르면, 강화도의 조선 육군은 고작 1,000여 명에 불과했다. 비상시에 대비한 강화도 내 예비군 동원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 편제를 갖춘 일부 군사는 그나마도 사실상 “빈주먹 상태였다”(179쪽). 청군이 강화도에 상륙하기만 하면 강화도 수비 대책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염해수로는 어떻게 방어하였는가? 청군의 도해 당일 작전 현장에서 조선 수군의 유효 전력은 도합 34척이었다(175~176쪽). 그런데 이들 전선은 모두 판옥선으로 규모가 제법 커서 염해수로같이 물살이 세고 수심이 얇은 곳에서는 적을 막는 데 유용하지 않았다. 저자도 “염해수로서 대형 전선의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대의 상식이었음을”(214쪽) 광해군 대의 조정 논의와 후대의 자료를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이는 당시 위정자들이 강화도 방어의 기본 상식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매우 ‘안일하게’ 방어에 임했음을 저자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런 게 무능이요 인재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역사에서 어떻게 패해

야 비로소 인재라 부를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이 너무 어이가 없어 지하에서 통곡할 정도의 대인재(大人災) 아닌가?

기존 통설이 변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조선의 무능만 너무 일방적으로 부각한 문제를 과감히 지적하고 꼼꼼하게 변증한 저자의 문제의식은 당연하며, 평자도 100% 동의한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수록, 역시 병자호란은 심각한 인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평자가 보기에 이 책은 병자호란의 참패가 왜 인재였는지 매우 꼼꼼하게 논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존의 인재론을 훨씬 더 강화해 준 셈이다.

▶ 입보(入保)가 과연 최선의 방어 전략이었을까?

홍타이지의 침공 조짐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조선 조정의 대비 점수는 솔직히 50점 이상 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였다. 낙제점이라는 뜻이다. 후금의 침공 우려는 광해군 대부터 항존하였다. 광해군 때 조정 중신들은 거의 한 목소리로 청야(淸野)를 말했다. 이 책에서 사용한 입보와 같은 맥락이다. 어차피 평지에서 후금의 철기(鐵騎)를 막을 방도가 없으니, 적이 압록강을 건너면 청야하고 근처의 산성으로 입보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입보 작전 자체는 그런대로 잘 실행했다고 보았지만, 평자가 보기에 입보는 청야와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은 관계이다. 청야하지 않은 채 입보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입보만 설명했을 뿐 청야 실패에 대해서는 함구하였다. 당시는 이미 전운이 짙어가던 때였으므로, 가을걷이 후부터는 이미 청야에 들어갔어야 상식이다. 그런데 조선의 위정자들은 손을 놓고 있었다.

한편, 입보 작전에 대한 광해군의 생각도 살필 필요가 있다. 그는 무조건 입보만 한다면 한양까지 무인지경이니, 적이 침공하기 좋은 대로의 주요 도시(城)를 지키며 적의 남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작전의 효용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책에서도 적의 직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광해군 대부터 컸다고 지적하였다(111~115쪽). 실제로 저자는 당시 조선 조정은 “직도의 치명적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었다. ... 인조는 이괄의 난 때 반란군의 서울 직도로 큰 낭패를

본 경험까지 있었다. ... 적어도 병자호란 전야에 관한 한 조선 조정이 적의 서울 직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113쪽) 하여, 그것을 치명적인 과오로 평가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은 왜 이괄의 난 이후로 직도의 위협성에 대한 관심과 대책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까? 독자로서는 당연히 궁금한데, 아쉽게도 책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입보 전략에 ‘올인’한 인조와 입보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도 최대한 방어해야 한다고 한 광해군의 생각을 비교하여 분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홍타이지에게 ‘칭신’과 ‘출성’은 다른 의미였을까?

정월 21일에 홍타이지에게 보낸 국서에서 인조는 자신을 신(臣)이라 칭하면서 성과 이름을 그대로 쓰고 홍타이지를 폐하라고 불렀다. 저자는 이를 완전한 칭신의 서식이라 하였다. 더 나아가, 홍타이지의 조선 침공이 궁극적으로 인조의 칭신 거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인조의 완전한 칭신으로 전쟁의 발발 원인은 일단 해소되었다고 하였다(224쪽). 그러나 저자도 지적했듯이, 홍타이지는 인조의 출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224쪽). 왜 그랬을까? 혹시 홍타이지가 칭신과 출성을 같은 의미로 파악했다는 증거는 아닐까?

침공의 핵심 원인이 해소되었는데, 홍타이지는 왜 철군하지 않고 인조의 출성을 타협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가? 심지어 저자에 따르면 당시 홍타이지를 비롯한 청군 지휘부는 갑자기 발생한 마마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우 쫓기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21일에 인조의 칭신 국서를 받은 후에도 전쟁을 마무리하지 않고 오로지 인조의 출성 항례를 받기 위해 ‘무려’ 열하루나 더 머물다가 회군하였다. 저자가 누차 강조했듯이 홍타이지가 마마를 그렇게 무서워했다면, 정벌(친정)의 핵심 원인을 해소한 상태에서 왜 굳이 열흘 넘도록 계속 성하에 머물렀을까? 그런데도 머문 사실은 혹시 애초 친정의 목적이 단순한 칭신이 아니라 분명한 출성 항례였음을 에둘러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또는 애초 친정을 단행할 때부터 홍타이지에게 인조의 칭신이란 곧

직접 출성하여 자신에게 항례를 행하는 광경 아니었을까? 항례가 없는 칭신이 라면 홍타이지가 굳이 친정에 나설 동기도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친정(親征)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단순히 외교 서신을 통한 칭신이 목적일 수 없다. 그런데 저자는 시종토록 칭신과 출성을 분리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그러면서 홍타이지가 “삼전도 의례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는지를 웅변한다”라고(303쪽) 하였다. 저자의 논지를 따를 경우, 홍타이지는 애초 칭신을 받아내려고 친정을 감행하였는데, 마마가 발생하여 다급해진 상황에서 갑자기 목적을 바꿔서 인조의 출성 항례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셈이 된다. 말이 안 된다. 평자가 보기에, 당시 홍타이지에게 칭신은 곧 출성 항례였지, 별개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 둘을 달리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마를 강조한 이 책에서는 저자의 논지에 불리할 수 있다. 마마에 대한 홍타이지의 두려움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가 친정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굳이 출성 항례를 직접 받기 위해 열흘 이상이나 삼전도에 머문 행동에 의문만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정월 16일에 인조와 최명길 사이에 오간 자료를 직접 인용하면서(243쪽) 사책(史冊)에 차마 쓰기 힘든 ‘제일층지설’의 의미(내용)를 칭신으로 보았다. 그것을 출성으로 이해한 허태구의 연구가 이미 있음에도 그것을 부정하였다. 상식적으로 볼 때 칭신보다 출성이 더 고강도임이 분명한데, 칭신이 제 1층이라면 출성은 과연 몇 층일 수 있을까? 0층이란 말인가? 아울러 최고 수준(제1층)인 칭신을 받았는데도 홍타이지가 출성 항례를 직접 받기 위해 마마의 두려움 속에서도 굳이 열흘 이상이나 더 체류한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평자가 보기에 ‘제일층지설’의 내용은 허태구의 해석이 단연코 설득력이 높다.

▶ 마마의 발생은 전쟁의 양상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지구사 시각의 역사 연구는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자연 환경적 요인을 너무 부각할 경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봉착할 수밖에 없다. 당나라가 100년 넘게 이어진 모래바람 때문에 망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연 그 때문에 망했을까? 자연 요소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요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역사에서 인간의 역할이 사라질 수도 있다. 병자호란 중 마마라는 자연 요소도 마찬가지다. 홍타이지가 서둘러 철수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매우 탁월한 고증이다. 다만 “조선의 마마가 전쟁의 결말을 바꾸다”라는 소설 제목 및 그 논지는(279~284쪽) 너무 지나친 면이 있다. 모래바람 때문에 당나라가 망했다는 격이다.

먼저, 무슨 결말을 바꾸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마마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병자년 침공의 결말은 어떻게 달라졌을 것인가? 다른 말로, ‘출성향례’라는 홍타이지의 애초 친정 목적이 바뀌기라도 했을 것이란 말인가? 마마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홍타이지는 아예 조선을 직접 병합할 계획이었던 말인가? 그러나 그런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저자 스스로 논증하였다. 심지어 “더군다나 병자호란 당시의 청나라는 조선을 직접 통치할 능력도 없었다”라고(295쪽) 확인하였다. 또한 “기껏해야 간접 지배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막연한 수준의 구상” 정도로 해석하였다(296쪽). 하지만 이런 해석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자도 “그러나 ㉠홍타이지가 정말 정권 교체를 구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인정하였다(296쪽).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조 정권의 온존은 애초의 구상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병자호란 발발 이후 조선 땅에서 진행된 전쟁과 협상의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296~297쪽) 하였다. 이는 홍타이지가 조선의 정권 교체를 실제로 구상했음을 전제한 해석으로, 구상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한 ㉠의 내용과 모순이다. 그래서 논리의 오류이다. 증거 없는 가능성을 사실로 전제한 논법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홍타이지는 성안의 인조에게 들여보낸 국서에서 잘못을 깨닫고 항복하면 풀어주겠다는 표현을 반복하였다. 그것이 인조를 성 밖으로 끌어내려는 속임수라는 증거는 역시 없다. 그렇다면 국서에서 인조에게 말한 홍타이지의 경고와 설득을 부정할 근거도 없는 셈이다. 따라서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를 통해 볼 때, 홍타이지는 친정 당시부터 조선을 병합한다거나 조선의 국왕을 바꿀 의사가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마의 발생이 만든 영향은 평가가 보기에 홍타이지와 청군 지휘부가 예정보다 빨리 회군한 것 외에는 없다. 마마를 찾아낸

것은 이 책의 크나큰 성과이지만, 마마가 전쟁의 결말까지 바꾸었다는 설명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단순 추정일 뿐이다. 오히려 침공의 전말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할 때 사실에서 꽤 벗어난 해석일 수도 있다.

▶ 홍타이지는 왜 조선을 병합하지도 국왕을 바꾸지도 않았을까?

이어지는 얘기지만, 이에 대한 저자의 답은 명료하다. 조선에서 발생한 마마 때 문이라는 것이다. 마마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비평하였으니, 여기서는 역사상 북방 정복왕조(conquest dynasty)의 한반도 침공에서 읽을 수 있는 통시적 패턴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당 제국 몰락 이래 중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한반도를 제압한 패턴을 말한다. 거란(요)제국은 중원 공략에 앞서 고려를 끝내 평정하지 못했기에 중원 깊숙이 들어가는 데 실패하였다. 여진(금)제국은 전쟁도 없이 고려를 복속시키고 2년 후에 중원을 장악하였다. 몽골(원)제국은 오랜 전쟁과 협상 끝에 고려의 항복을 받은 지 9년 만에 남송을 무너뜨렸다. 만주(청)제국도 무력으로 조선의 항복을 받아낸 지 8년째 되던 해에 중원으로 난입해 들어갔다.

이런 통시적 패턴은 정복왕조의 한반도 침공 전쟁의 지정학적 구조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요긴하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난 침공은 역사상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들 정복왕조는 한반도를 제압한 후에는 모두 바로 철수함으로써 한반도 왕국을 외국이자 번국으로 두었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공통 패턴이다. 정복왕조 가운데 한반도를 가장 확실하게 제압한 경우는 바로 청의 조선 정복이다. 극적인 항례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청나라는 조선을 그대로 두었다. 변발도 강요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평자는 이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으나, 가설적 해석에 지나지 않으므로 여기서 굳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런 장기사 맥락의 사실(주요 패턴)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나덕헌·이확 문제만 침공의 핵심 원인으로 반복해 강조하는 것은 (이 책이 전쟁의 ‘디테일’을 고증하는 미시사적 접근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더라도) 평가가 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시사가 미시적 디테일을 고증하는 것

으로만 끝난다면, 다른 말로 미시를 통한 거시를 행간으로라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미시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마무리하자면, 역사학 연구의 출발점인 다양한 사료의 섭렵과 치밀한 대조와 분석에 이처럼 충실한 연구서를 평자는 읽은 기억이 많지 않다. 내용도 흥미진진하여, 책을 읽기 시작하여 끝까지 손에 땀을 쥐며 읽었다. 문학적 작품성이 매우 뛰어난 수작이다. 이 서평에서 제기한 내용은 평자의 개인 견해이지, 이 책의 흠결은 전혀 아니다. 역사학자가 쓴 어떤 책이라도 다양한 토론거리는 무궁무진하다. 역설적이지만, 토론거리가 많은 책일수록 잘 쓴 저서라는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인간들의 과거를 탐구하여 책으로 쓸 때, 그것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수준 높은 학술서일수록 의미 있는 토론거리가 많게 마련이다. 이 책도 바로 그렇다. 이에 힘을 얻어 몇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제시해보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형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 제24조(재심)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 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 편집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소장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중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신주백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익주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차혜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9호(2020. 9)

초판 1쇄 인쇄 2020년 9월 25일

초판 1쇄 발행 2020년 9월 29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